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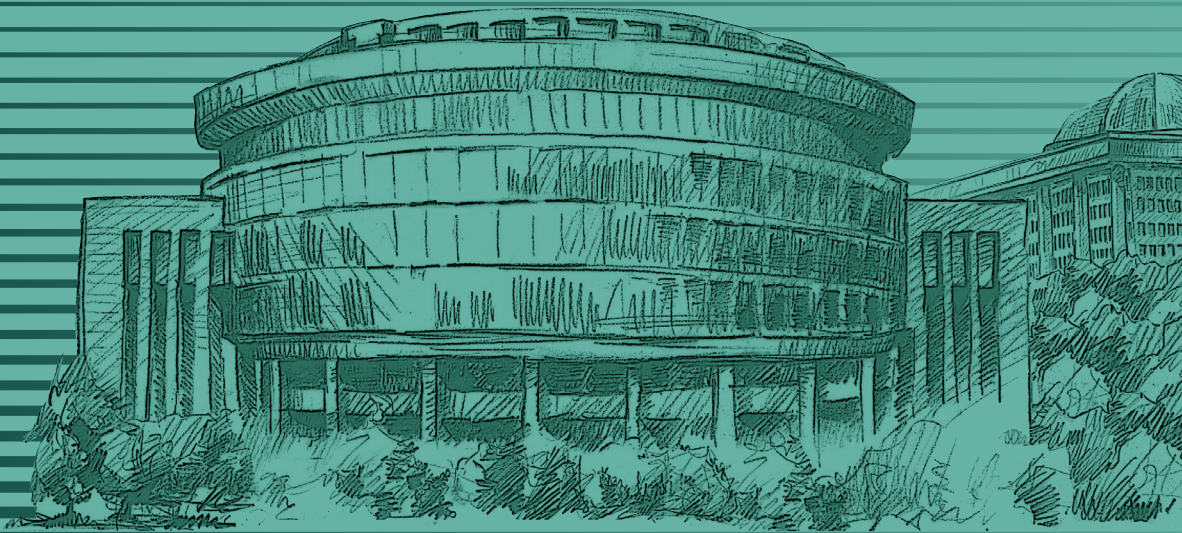


2021.10.

국회예산정책처 | 예산안 분석

# 2022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보건복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국회에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2022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 예산안분석시리즈 II

### 2022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총 괄** | 송병철 예산분석실장

**기획·조정** | 서세욱 사업평가심의관  
이현중 예산분석총괄과장  
신은호 산업예산분석과장  
박세용 사회예산분석과장  
이종구 행정예산분석과장  
전용수 경제산업사업평가과장  
정석배 사회행정사업평가과장  
이은경 공공기관평가과장

**작성** | 이은미 예산분석관  
김정선 예산분석관  
최경덕 예산분석관

**지원** | 강숙자 행정실무원  
김수정 자료분석지원요원

본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문의 : 예산분석실 사회예산분석과 | 02) 6788-3771 | sba@nabo.go.kr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예산안분석시리즈 II

# 2022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 【 보건복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2021. 10.

---

이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발간심의위원회의 심의 (2021. 10. 21.)를 거쳐 발간되었습니다.

---

# 발 간 사



정부는 지난 9월 3일 총수입 548.8조원, 총지출 604.4조원 규모의 2022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한국판 뉴딜 2.0으로의 전환, 미래 산업에 대한 전략적인 투자와 탄소 중립 경제를 선도하는 등 미래를 대비할 뿐만 아니라 신 양극화에 대응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청년 희망사다리 패키지를 추진하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총지출을 전년 본예산 대비 46.4조원(8.3%)을 증액하는 한편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중기적으로도 확장적 재정기조를 계획하고 있어, 2022년 국가채무는 1,068.3조원으로 GDP 대비 50.2%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가 경제회복과 성장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지속됨에 따라 개별 사업의 효과와 함께 전략적 자원 배분, 재정의 지속가능성 등을 점검해야 할 국회의 역할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2022년도 예산안 분석시리즈」를 발간하였습니다. 이번 시리즈는 「총괄 분석」, 「위원회별 분석」, 「공공기관 예산안 분석」, 「성인지 예산서 분석」 등 총 4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괄 분석」에서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건전성 등을 중심으로 재정총량에 대한 현황을 제시하고 분석하는 한편, 한국판 뉴딜 사업, 청년희망사다리 패키지 사업, 탄소 중립경제 사업, 백신·방역 등 감염병 대응 사업 등 주요 정책 사업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위원회별 분석」에서는 개별사업 단위로 각 부처의 주요 증액 또는 현안 사업에 대한 효과성·필요성 등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공공기관 예산안 분석」에서는 보조금·출연금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 예산안을 각 공공기관별로 살펴보았으며, 「성인지 예산서 분석」에서는 성인지 대상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국회 심사가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보고서가 국회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국회예산정책처는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으로 예·결산 심사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021년 10월

국회예산정책처장 임 의 상





## 보건복지위원회

### [보건복지부]

#### I. 예산안 개요

- 1. 현 황 ..... 1
-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 6
-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 7

#### II. 주요 현안 분석

- 1. 저출산 대응을 위한 아동 지원 사업 검토사항 ..... 12
  - 1-1. 영아수당 사업의 지원 형평성을 고려한 지원대상 검토 필요 ..... 13
  - 1-2. 첫만남이용권 사업의 이용권 사용처 명시 등 면밀한 이용방안 마련 필요 ..... 17
  - 1-3. 아동수당 사업의 대상자 확대와 국가 및 지방 재정부담 등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 마련 필요 ..... 25
- 2. 아동학대 대응 사업 관련 고려사항 ..... 29
  - 2-1. 학대피해아동쉼터 확충 계획의 준수를 위한 노력 필요 ..... 36
  - 2-2.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녹취록 작성장비 한시지원 사업의 조사 업무량을 고려한 장비 배부기준 마련 필요 ..... 40

|  |    |
|--|----|
| 2-3. 방문형 가정회복 시범사업의 사업운영에 대한 성과평가 강화 필요 .....                    | 43 |
| 3. 코로나19 백신 임상지원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통한 코로나19 국산<br>백신 개발 역량 확보 필요 ..... | 47 |

### III. 개별 사업 분석

|  |     |
|--|-----|
| 1. 기초생활보장제도 사업 예산안 검토사항 .....  | 54  |
| 1-1.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인한 신규 지원 대상자 추계의<br>정확성 제고 필요 .....             | 55  |
| 1-2.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른 재정지출 관리 방안 마련<br>필요 .....                    | 60  |
| 2.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기준 마련 등 사업<br>준비 철저 .....                  | 67  |
| 3.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의 사업준비 철저 필요 .....                                  | 74  |
| 3-1. 수요조사 등에 기초한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유형의 인원 조정 필요 .....                         | 76  |
| 3-2.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 시범사업의 구체적 지원내용 마련 등 사업준비<br>철저 필요 .....               | 82  |
| 4. 다함께 돌봄 센터 설치 실적을 고려한 예산편성 필요 .....                                  | 84  |
| 5.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을 위한 설계비의 연례적 전액 불용 및<br>법안의 논의 상황을 고려한 예산 편성 필요 ..... | 91  |
| 6. 공중보건장학제도 운영 사업의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재학 장학생<br>모집 부진 .....                 | 95  |
| 7.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의 시행 첫 해 차질없는 도입 및 운영 필요 .....                           | 101 |

|  |     |
|--|-----|
| 8. 전문인력 등 인건비 지원 사업의 모니터링수당에 대한 관리·감독<br>필요 .....                    | 106 |
| 9. 국가신약개발사업 시행 첫 해 추진 지연을 고려한 2022년도<br>예산안에 대한 일부 감액 필요 .....       | 112 |
| 10.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통한 상병수당 제도<br>도입의 차질없는 준비 필요 .....        | 117 |
| 11. 권역 정신응급의료센터의 신속한 지정을 바탕으로 권역 정신응급의료<br>센터 운영 사업의 원활한 수행 필요 ..... | 122 |
| 12. 자살예방 상담전화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관련 인력의 차질없는<br>충원 필요 .....                 | 127 |
| 13.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사업 지원 사업의 차질없는 수행 필요 .....                            | 132 |
| 14. 건강증진조사연구 및 지역보건사업관리 사업 수행 연구의 특성을<br>고려한 비목 편성 필요 .....          | 137 |

## [식품의약품안전처]

### 1. 예산안 개요

|                         |     |
|-------------------------|-----|
| 1. 현 황 .....            | 143 |
|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     | 145 |
|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 | 147 |

## II. 개별 사업 분석

|   |     |
|---|-----|
| 1. 수입식품 현지 안전관리 사업의 차질 없는 수행 필요 .....                 | 149 |
| 1-1. 비대면 현지실사 체계 구축 필요 .....                          | 150 |
| 1-2. 수입식품 현지실사 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 필요 .....           | 153 |
| 2. 관계 부처 간 적극적인 협의를 통하여 통합위해성평가의 실효성 제고<br>필요 .....   | 159 |
| 3. 소비기한 표시제도 도입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대비 필요 .....               | 165 |
| 4. 방사능 검사장비 도입 및 삼중수소 검사법 개발 절차의 차질 없는<br>수행 필요 ..... | 170 |

## [질병관리청]

### I. 예산안 개요

|                         |     |
|-------------------------|-----|
| 1. 현 황 .....            | 177 |
|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     | 181 |
|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 | 182 |

## II. 주요 현안 분석

1. 코로나19 백신 접종계획의 철저한 수립 및 추가 접종에 대한 충분한 안전성 검증 등 필요 ..... 185
2.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인과성 인정 불충분건에 대한 지속 지원 검토 필요 ..... 191

## III. 개별 사업 분석

1.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지원 사업의 생활지원비 지급 기준 개선 필요 ..... 197
2. 선별진료소 장비 및 운영 지원 사업 예산의 적기 집행을 통한 원활한 코로나19 검사 수행 필요 ..... 205
3.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구축 사업의 연내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적정 수준의 예산 편성 필요 ..... 209
4.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통한 위탁의료기관 시행비 적기 지급 필요 ..... 215
5. HPV 접종대상자 확대 첫 해 국가예방접종실시 사업의 원활한 수행 필요 ..... 220

## 여성가족위원회

### [여성가족부]

#### I. 예산안 개요

- 1. 현 황 ..... 231
-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 235
-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 236

#### II. 개별 사업 분석

- 1.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종합적·체계적인 추진 필요 ..... 238
  - 1-1. 여성폭력통계 체계의 조속한 구축 필요 ..... 239
  - 1-2. '디지털 성범죄 특화프로그램 운영 사업' 및 '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의 통합 또는 사업 조정 등 검토 필요 ..... 243
- 2. 아이돌봄 지원 사업 수행기관 간 업무·인력 등 이관 대비 필요 ..... 250
- 3. 생리용품 지원 소외 사례 등 예방 방안 마련 필요 ..... 255
- 4. 성과평가를 통한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 점검 필요 ..... 260
- 5. 청소년 근로권의 보호 사업의 지자체 보조사업 전환에 대한 대비 필요 ..... 266
- 6. 청소년육성기금의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 마련 필요 ..... 271

#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 I 예산안 개요

## 1 현 황

### 가. 총수입·총지출

보건복지부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하 “예산안”)은 일반회계, 3개 특별회계(농어촌구조개선, 국가균형발전, 책임운영기관) 및 3개 기금(국민건강증진기금, 국민연금기금, 응급의료기금)으로 구성된다.

보건복지부 소관 2022년도 총수입은 77조 4,052억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3조 9,981억원(5.4%) 증가하였다. 회계·기금별로는 일반회계 5,131억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8억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75억원,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447억원, 국민건강증진기금 2조 9,308억원, 응급의료기금 1,850억원, 국민연금기금 73조 7,131억원이다.

[2022년도 예산안 보건복지부 소관 총수입]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20<br>결산 | 2021 <sup>1)</sup> |            | 2022<br>예산안(B) | 증감        |         |
|---------------|------------|--------------------|------------|----------------|-----------|---------|
|               |            | 본예산                | 추경(A)      |                | B-A       | (B-A)/A |
| 예 산           | 612,525    | 559,476            | 559,476    | 576,102        | 16,626    | 3.0     |
| - 일반회계        | 537,310    | 512,866            | 512,866    | 513,078        | 212       | 0.0     |
|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925        | 836                | 836        | 816            | △20       | △2.4    |
|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24,821     | -                  | -          | 17,500         | 17,500    | 순증      |
| -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 49,469     | 45,774             | 45,774     | 44,708         | △1,066    | △2.3    |
| 기 금           | 75,527,692 | 72,847,668         | 72,847,668 | 76,828,925     | 3,981,257 | 5.5     |
| - 국민건강증진기금    | 3,045,894  | 3,104,911          | 3,104,911  | 2,930,816      | △174,095  | △5.6    |
| - 응급의료기금      | 88,279     | 22,016             | 22,016     | 185,026        | 163,010   | 740.4   |
| - 국민연금기금      | 72,393,519 | 69,720,741         | 69,720,741 | 73,713,083     | 3,992,342 | 5.7     |
| 합 계           | 76,140,217 | 73,407,144         | 73,407,144 | 77,405,207     | 3,998,063 | 5.4     |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하며, 기금은 각각 2021년 당초계획과 9월말 기준 수정계획(자체변경 포함)을 의미

자료: 보건복지부

이은미 예산분석관(eunmee@assembly.go.kr, 6788-4638)

최경덕 예산분석관(choi8807@assembly.go.kr, 6788-3728)

보건복지부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총지출은 96조 9,377억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4조 1,945억원(4.5%) 증가하였다. 기금별로는 일반회계 60조 9,380억원, 농어촌구조특별회계 490억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2,921억원,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1,708억원, 국민건강증진기금 3조 4,520억원, 국민연금기금 31조 7,611억원, 응급의료기금 2,747억원이다.

[2022년도 예산안 보건복지부 소관 총지출]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20<br>결산 | 2021 <sup>1)</sup> |            | 2022<br>예산안(B) | 증감        |         |
|---------------|------------|--------------------|------------|----------------|-----------|---------|
|               |            | 본예산                | 추경(A)      |                | B-A       | (B-A)/A |
| 예 산           | 57,505,646 | 55,903,469         | 59,070,084 | 61,449,909     | 2,379,825 | 4.0     |
| - 일반회계        | 56,916,772 | 55,303,018         | 58,469,633 | 60,938,045     | 2,468,412 | 4.2     |
|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47,438     | 54,558             | 54,558     | 48,982         | △5,576    | △10.2   |
|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364,566    | 381,408            | 381,408    | 292,089        | △89,319   | △23.4   |
| -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 176,870    | 164,485            | 164,485    | 170,793        | 6,308     | 3.8     |
| 기 금           | 30,937,943 | 33,673,124         | 33,673,124 | 35,487,752     | 1,814,628 | 5.4     |
| - 국민건강증진기금    | 3,369,606  | 3,424,212          | 3,424,212  | 3,451,978      | 27,766    | 0.8     |
| - 국민연금기금      | 26,453,946 | 30,002,504         | 30,002,504 | 31,761,093     | 1,758,589 | 5.9     |
| - 응급의료기금      | 1,114,391  | 246,408            | 246,408    | 274,681        | 28,273    | 11.5    |
| 합 계           | 88,443,589 | 89,576,593         | 92,743,208 | 96,937,661     | 4,194,453 | 4.5     |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하며, 기금은 각각 2021년 당초계획과 9월말 기준 수정계획(자체변경 포함)을 의미

자료: 보건복지부

#### 나. 세입·세출예산안

보건복지부 소관 2022년도 세입예산안은 7,127억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245억원(3.6%) 증가하였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5,131억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8억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75억원,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1,813억원이다.

[2022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세입예산안]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20<br>결산 | 2021    |         | 2022<br>예산안(B) | 증감     |         |
|-------------|------------|---------|---------|----------------|--------|---------|
|             |            | 본예산     | 추경(A)   |                | B-A    | (B-A)/A |
| 일반회계        | 537,310    | 512,866 | 512,866 | 513,078        | 212    | 0.0     |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925        | 836     | 836     | 816            | △20    | △2.4    |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24,821     | -       | -       | 17,500         | 17,500 | 순증      |
|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 225,045    | 174,473 | 174,473 | 181,291        | 6,818  | 3.9     |
| 합 계         | 788,103    | 688,175 | 688,175 | 712,685        | 24,510 | 3.6     |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

1. 총계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은 61조 8,063억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2조 3,948억원(4.0%) 증가하였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61조 2,840억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490억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2,921억원,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1,813억원이다.

[2022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세출예산안]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20<br>결산 | 2021       |            | 2022<br>예산안(B) | 증감        |         |
|-------------|------------|------------|------------|----------------|-----------|---------|
|             |            | 본예산        | 추경(A)      |                | B-A       | (B-A)/A |
| 일반회계        | 57,252,430 | 55,634,493 | 58,801,108 | 61,283,984     | 2,482,876 | 4.2     |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47,438     | 54,558     | 54,558     | 48,982         | △5,576    | △10.2   |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364,566    | 381,408    | 381,408    | 292,089        | △89,319   | △23.4   |
|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 187,867    | 174,473    | 174,473    | 181,291        | 6,818     | 3.9     |
| 합 계         | 57,852,302 | 56,244,932 | 59,411,547 | 61,806,346     | 2,394,799 | 4.0     |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

1. 총계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 다. 기금운용계획안

보건복지부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135조 6,424억원으로 전년 수정 계획 대비 2조 8,153억원(2.0%) 감소하였다. 기금별로는 국민건강증진기금 4조 4,375억원, 응급의료기금 4,627억원, 국민연금기금 130조 7,422억원이다.

[2022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20<br>결산  | 2021        |             | 2022<br>계획안(B) | 증감         |         |
|----------|-------------|-------------|-------------|----------------|------------|---------|
|          |             | 당초          | 수정(A)       |                | B-A        | (B-A)/A |
| 국민건강증진기금 | 4,116,764   | 4,362,946   | 4,380,946   | 4,437,480      | 56,534     | 1.3     |
| 응급의료기금   | 1,377,501   | 307,926     | 307,926     | 462,728        | 154,802    | 50.3    |
| 국민연금기금   | 164,073,364 | 133,768,799 | 133,768,799 | 130,742,209    | △3,026,590 | △2.3    |
| 합 계      | 169,567,629 | 138,439,671 | 138,457,671 | 135,642,417    | △2,815,254 | △2.0    |

주: 총계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 라. 재정구조

2022년도 예산안의 보건복지부 소관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은 다음과 같다.

일반회계의 경우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로 1,220억원, 국민연금기금으로 102억원, 응급의료기금으로 2,136억원 전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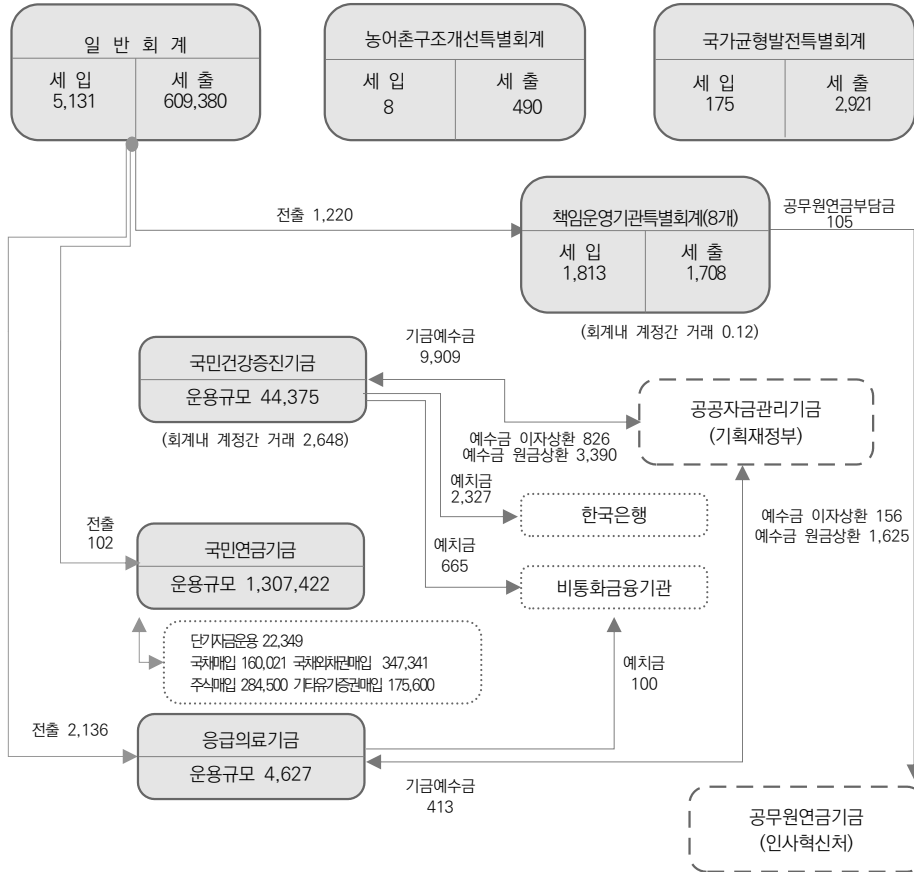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경우 공무원연금기금으로 105억원 전출된다.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경우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9,909억원을 예수하고, 3,390억원의 예수 원금 및 예수 이자를 상환한다.

응급의료기금의 경우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413억원을 예수하고, 1,625억원의 예수 원금 및 예수 이자를 상환한다.

[2022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회계 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

(단위: 억원)



주: 총계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2022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① 취약계층 소득생활 안정, ② 저출산·고령사회 인구구조 변화대응, ③ 국민 건강안전망 강화, ④ 바이오 헬스 선도국가 도약 등 미래 보건복지 대응을 위해 예산이 확대되었다.

2022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분석 결과 향후 국회 심의 및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첫째, 2022년 신규 사업인 저출산 대응을 위한 영아수당 및 첫만남바우처 사업과 관련하여, 영아수당의 경우 지원대상 선정에 있어 형평성을 고려하고, 첫만남이용권 사업의 경우 아동 양육에 필요한 물품 구입이 되도록 이용방안을 면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 생계급여 사업의 경우 신규 지원 대상자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여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고, 의료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으로 수급자 증가가 예상되고 재정지출 규모도 지난 7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9%로 증가하고 있어 세밀한 재정지출 관리 방안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코로나19 백신 임상지원 사업은 2020~2021년 기편성된 예산 2,157억원 비하여 다소 적은 규모인 384억원이 실제 국내 제약사에게 지원이 확정된 상황에서 동 사업의 2022년도 예산안에 418억원이 편성된 바, 보건복지부는 국내 제약사의 임상시험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적시에 지원하여 국내 백신 개발 역량을 신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보건복지부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을 위한 설계비를 2019~2021년 3년 연속 편성하여 2019, 2020년 예산은 전액 불용되었으며, 2021년 예산도 전액 불용될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이므로 2022년 예산안 편성에 대하여는 관련 논의의 진행상황 및 법안의 통과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다섯째, 국가신약개발사업은 수행 첫 해인 2021년 사업 추진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이를 고려하지 않고 2022년도 예산안에 해당 연구과제들에 대하여 12개월치 예산을 반영한 바, 관련 지침에 따라 동 사업의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심의 과정에서 감액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3

##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보건복지부의 2022년도 신규사업은 총 27개 사업, 8,766억원 규모이다.

일반회계 사업 중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은 '22년 출생아동부터 출산지원비용 200만원을 지급하여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이고, 영아수당지원사업은 '22년 출생아부터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0~1세 아동에 월별 영아수당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감염병 의료안전강화 기술개발(R&D)' 사업은 감염병 재난 대비 및 원내감염 제어에 대한 의료안전강화를 위하여 구조·시스템·장비·인력 최적화 기술개발을 위한 사업이며, '백신기술개발(R&D)' 사업은 백신 효과 확대를 위한 면역증강제, 인체 내 주입 접종 기술, 약효 유지를 위한 보관 기술 등 백신 기반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사업이다.

[보건복지부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 구 분           | 세부사업명                             | 예산안     |
|---------------|-----------------------------------|---------|
| 일반회계<br>(26개) | ○ 감염병 의료안전강화 기술개발(R&D)            | 10,800  |
|               | ○ 차세대 의료연구기반 육성사업(R&D)            | 5,000   |
|               | ○ 정신건강연구개발사업(R&D)                 | 6,200   |
|               | ○ 포스트 코로나시대 적정수혈을 위한 의료기술 개발(R&D) | 2,000   |
|               | ○ K-Medi 융합 인재 양성사업(R&D)          | 5,875   |
|               | ○ 혁신형 의리기기 기업 기술 상용화 지원 사업(R&D)   | 4,800   |
|               | ○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 26,525  |
|               | ○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 10,990  |
|               | ○ 첨단 ICT기반의 차세대 임전문 정보시스템 구축(정보화) | 446     |
|               | ○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체계 구축               | 6,405   |
|               | ○ 첫만남 이용권 지원                      | 373,145 |
|               | ○ 영아수당지원                          | 373,132 |
|               | ○ 고독사예방관리체계구축                     | 1,000   |
|               | ○ 국민연금재정계산                        | 600     |
|               | ○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 400     |
|               | ○ 보건의료 빅데이터 큐레이션 기술개발사업(R&D)      | 2,695   |
|               | ○ 실사용데이터(RWD) 기반의 임상연구지원(R&D)     | 5,000   |
|               | ○ 전자약기술개발(R&D)                    | 2,025   |
|               | ○ 자폐혼합형디지털치료제 개발(혁신도전형)(R&D)      | 3,077   |
|               | ○ 재생의료 임상연구 기반조성(R&D)             | 4,325   |

(단위: 백만원)

| 구 분                    | 세부사업명                        | 예산안     |
|------------------------|------------------------------|---------|
|                        | ○ 신변중감염병대응 mRNA 백신 임상지원(R&D) | 10,500  |
|                        | ○ 미래성장 고부가가치 백신 개발(R&D)      | 4,756   |
|                        | ○ 백신기반기술 개발(R&D)             | 6,525   |
|                        | ○ 신속 범용 백신 기술개발(R&D)         | 5,639   |
|                        | ○ 백신 원부자재 시장 경쟁력 강화          | 3,300   |
|                        | ○ 글로벌백신허브화추진단 기본경비(총액)       | 73      |
|                        | ○ 글로벌백신허브화추진단 기본경비(비총액)      | 881     |
| 책임운영기관<br>특별회계<br>(1개) | ○ 국립정신건강센터 연구개발사업(R&D)       | 500     |
| 합 계                    |                              | 876,614 |

자료: 보건복지부

2022년도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기초연금 지급, 의료급여, 건강보험가입자 지원(일반), 생계급여 등이 있다.

① 기초연금 지급 사업은 수급 대상자가 증가하고 기준연금액이 30만 1,500원으로 인상되었고, ② 의료급여 사업은 노인(기초연금수급자)대상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인한 대상자 확대가 반영되었으며, ③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사업은 보장성 강화를 통한 의료 안전망 확충 지원 등을 위해 정부지원금이 확대되었고, ④ 생계급여 사업은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2% 인상이 반영되어 증액되었다.

[보건복지부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주요 증액사업]

(단위: 백만원, %)

| 구분            | 세부사업                | 2021 <sup>1)</sup> |            | 2022<br>예산안(B) | 증 감       |         |
|---------------|---------------------|--------------------|------------|----------------|-----------|---------|
|               |                     | 본예산                | 추경(A)      |                | B-A       | (B-A)/A |
| 일반회계<br>(62개) | 기초연금지급              | 14,963,468         | 14,963,468 | 16,114,031     | 1,150,563 | 7.7     |
|               | 건강보험가입자지원<br>(일반회계) | 7,583,350          | 7,655,350  | 8,584,293      | 1,000,943 | 13.2    |
|               | 생계급여                | 4,607,864          | 4,655,454  | 5,264,772      | 656,908   | 14.3    |
|               | 의료급여                | 7,680,461          | 7,680,461  | 8,123,234      | 442,773   | 5.8     |
|               |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       | 1,710,700          | 1,710,700  | 2,035,442      | 324,742   | 19.0    |
|               | 장애인활동지원             | 1,506,974          | 1,506,974  | 1,740,523      | 233,549   | 15.5    |

(단위: 백만원, %)

| 구분 | 세부사업                 | 2021 <sup>1)</sup> |           | 2022<br>예산안(B) | 증 감     |         |
|----|----------------------|--------------------|-----------|----------------|---------|---------|
|    |                      | 본예산                | 추경(A)     |                | B-A     | (B-A)/A |
|    | 아동수당 지급              | 2,219,455          | 2,219,455 | 2,403,949      | 184,494 | 8.3     |
|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 1,315,156          | 1,330,679 | 1,442,195      | 127,039 | 9.7     |
|    | 공무원교원 국가부담금보험료       | 913,105            | 913,105   | 1,027,161      | 114,056 | 12.5    |
|    | 자활사업                 | 620,031            | 687,887   | 696,342        | 76,311  | 12.3    |
|    | 제약산업 육성지원            | 17,120             | 37,920    | 71,973         | 54,853  | 320.4   |
|    | 발달장애인 지원             | 152,352            | 152,352   | 200,628        | 48,276  | 31.7    |
|    |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 1,614,123          | 1,624,972 | 1,659,378      | 45,255  | 2.8     |
|    |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 580,436            | 582,848   | 621,289        | 40,853  | 7.0     |
|    | 노인단체 지원              | 39,487             | 39,487    | 74,243         | 34,756  | 88.0    |
|    | 차상위계층 지원             | 349,282            | 349,282   | 381,291        | 32,009  | 9.2     |
|    | 장애아동가족지원             | 117,326            | 117,326   | 149,151        | 31,825  | 27.1    |
|    | 국가신약개발사업(R&D)        | 15,051             | 15,051    | 46,119         | 31,068  | 206.4   |
|    | 아동발달지원계획(보조)         | 25,038             | 25,038    | 55,445         | 30,407  | 121.44  |
|    | 긴급복지                 | 185,639            | 681,544   | 215,639        | 30,000  | 16.2    |
|    | 장애인일자리지원             | 159,593            | 159,593   | 183,223        | 23,630  | 14.8    |
|    | 지역거점병원 공공성강화         | 143,266            | 143,266   | 165,748        | 22,482  | 15.7    |
|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418,299            | 418,299   | 436,571        | 18,272  | 4.4     |
|    | 근로능력있는수급자의탈수급지원      | 91,276             | 91,276    | 108,298        | 17,022  | 18.6    |
|    | 법부처 재향의료 기술개발사업(R&D) | 6,411              | 6,411     | 19,926         | 13,515  | 210.8   |
|    | 다함께 돌봄 사업            | 41,259             | 43,702    | 52,594         | 11,335  | 27.5    |
|    |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      | 9,402              | 9,402     | 20,060         | 10,658  | 113.4   |
|    | 보건의료 인프라 연계 창업지원     | 7,480              | 7,480     | 17,820         | 10,340  | 138.2   |
|    | 개인 의료데이터 활용지원 사업(장비) | 5,000              | 5,000     | 14,071         | 9,071   | 181.4   |
|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18,338             | 18,338    | 27,000         | 8,662   | 47.2    |
|    | 정신의료서비스 및 당사자 지원     | 5,787              | 8,797     | 14,076         | 8,289   | 143.2   |
|    | 글로벌 화장품 육성 인프라 구축    | 9,083              | 9,083     | 16,143         | 7,060   | 77.7    |
|    | 공익적 의료기술 연구사업(R&D)   | 4,173              | 4,173     | 10,800         | 6,627   | 158.8   |
|    | 의료기기산업 경쟁력 강화        | 18,356             | 18,356    | 24,034         | 5,678   | 30.9    |
|    | 안산마음건강센터 설치운영        | 11,969             | 11,969    | 16,298         | 4,329   | 36.2    |
|    | 한의학혁신기술개발(R&D)       | 10,177             | 10,177    | 14,213         | 4,036   | 39.7    |

(단위: 백만원, %)

| 구분                         | 세부사업                   | 2021 <sup>1)</sup> |        | 2022<br>예산안(B) | 증 감    |         |
|----------------------------|------------------------|--------------------|--------|----------------|--------|---------|
|                            |                        | 본예산                | 추경(A)  |                | B-A    | (B-A)/A |
|                            | 국가시험원운영                | 4,411              | 4,411  | 7,955          | 3,544  | 80.3    |
|                            | 국민건강스마트관리 연구개발사업(R&D)  | 4,815              | 4,815  | 8,358          | 3,543  | 73.6    |
|                            | 가정위탁 지원·운영             | 940                | 940    | 4,366          | 3,426  | 364.5   |
|                            | 질병중심중개연구사업(R&D)        | 3,663              | 3,663  | 7,050          | 3,387  | 92.5    |
|                            |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R&D)        | 7,877              | 7,877  | 11,243         | 3,366  | 42.7    |
|                            | 융합형 의과과학자 양성           | 5,910              | 5,910  | 9,009          | 3,099  | 52.4    |
|                            | 포항지진트라우마센터 설치 운영       | 1,734              | 1,734  | 4,742          | 3,008  | 173.5   |
|                            | 바이오헬스 투자인프라 연계형 R&D 사업 | 5,635              | 5,635  | 8,175          | 2,540  | 45.1    |
|                            | 차량의료원 등 정보화 지원(정보화)    | 640                | 640    | 2,978          | 2,338  | 365.3   |
|                            |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 6,668              | 6,668  | 8,878          | 2,210  | 33.1    |
|                            | 소록도병원관리                | 4,817              | 4,817  | 6,525          | 1,708  | 35.5    |
|                            | 기관운영 기본경비(비총액)         | 1,973              | 1,973  | 3,480          | 1,507  | 76.4    |
|                            | 의료기관 진료정보교류 기반 구축      | 2,303              | 2,303  | 3,725          | 1,422  | 61.7    |
|                            | 재생의료 안전관리체계 구축         | 1,452              | 1,452  | 2,773          | 1,321  | 91.0    |
|                            | 국가보건의료표준화              | 1,623              | 1,623  | 2,941          | 1,318  | 81.2    |
|                            | 국가암빅데이터구축(정보화)         | 2,453              | 2,453  | 3,661          | 1,208  | 49.2    |
|                            | 치의학 의료기술 연구개발(R&D)     | 3,157              | 3,157  | 4,200          | 1,043  | 33.0    |
|                            |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국민인식개선      | 2,048              | 2,048  | 3,048          | 1,000  | 48.8    |
|                            | 사회복지시설장보시스템 운영(정보화)    | 98                 | 98     | 482            | 384    | 391.8   |
|                            | 한의학산업 혁신성장 지원          | 830                | 830    | 1,130          | 300    | 36.1    |
|                            | 중앙사고수습본부 기본경비(비총액)     | 363                | 363    | 493            | 130    | 35.8    |
|                            | 중앙사고수습본부 기본경비(총액)      | 77                 | 77     | 187            | 110    | 142.9   |
|                            | 보건산업정책사업관리             | 73                 | 73     | 173            | 100    | 137.0   |
|                            |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기본경비(총액)   | 53                 | 53     | 109            | 56     | 105.7   |
|                            | 보건산업정책국 기본경비(총액)       | 49                 | 49     | 80             | 31     | 63.3    |
|                            | 첨단의료지원관 기본경비(총액)       | 27                 | 27     | 37             | 10     | 37.0    |
| 국가균형<br>발전<br>특별회계<br>(1개) | 첨단의료복합단지조성<br>(지역지원)   | 56,045             | 56,045 | 82,061         | 26,016 | 46.4    |

(단위: 백만원, %)

| 구분                           | 세부사업                     | 2021 <sup>1)</sup> |            | 2022<br>예산안(B) | 증 감       |         |
|------------------------------|--------------------------|--------------------|------------|----------------|-----------|---------|
|                              |                          | 본예산                | 추경(A)      |                | B-A       | (B-A)/A |
| 책임운영<br>기관특별<br>회계<br>(2개)   | 국립재활원 병원관리 및 운영(자본)      | 1,061              | 1,061      | 1,757          | 696       | 65.6    |
|                              | 공주병원 전산주요사업<br>(정보화, 손익) | 91                 | 91         | 128            | 37        | 40.7    |
| 국민<br>건강<br>증진<br>기금<br>(5개) |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사업 지원         | 8,000              | 8,000      | 210,800        | 202,800   | 2535.0  |
|                              | 국가예방접종실시                 | 347,789            | 347,789    | 374,930        | 27,141    | 7.8     |
|                              | 정신건강 증진사업                | 91,903             | 91,903     | 108,621        | 16,718    | 18.2    |
|                              |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 13,290             | 13,290     | 21,890         | 8,600     | 64.7    |
|                              | 만성병 관리기술 개발연구(R&D)       | 15,847             | 15,847     | 20,951         | 5,104     | 32.2    |
| 국민<br>연금<br>기금<br>(5개)       | 국민연금급여지급                 | 29,172,591         | 29,172,591 | 30,908,472     | 1,735,881 | 6.0     |
|                              | 공단관리운영 인건비               | 397,881            | 397,881    | 412,703        | 14,822    | 3.7     |
|                              | 국민연금정보화사업비<br>(정보화)      | 17,869             | 17,869     | 30,684         | 12,815    | 71.7    |
|                              | 국민연금 기금운용 사업비            | 25,607             | 25,607     | 34,481         | 8,874     | 34.7    |
|                              | 국민연금공단 사옥신축 및 매입         | 1,157              | 1,157      | 3,130          | 1,973     | 170.5   |
| 응급<br>의료<br>기금<br>(2개)       | 119구급대 지원                | 23,394             | 23,394     | 31,278         | 7,884     | 33.7    |
|                              | 신종감염병 국가격리시설 운영          | 527                | 527        | 6,353          | 5,826     | 1,105.5 |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하며, 기금은 각각 2021년 당초계획과 9월말 기준 수정계획(자체변경 포함)을 의미

1. 총계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 1

## 저출산 대응을 위한 아동 지원 사업 검토사항

정부는 최근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0.84명)으로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고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음(2025년 예상)에 따라 지난 2020년 12월 향후 5년간 인구정책의 근간이 될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동 제4차 기본계획은 모두가 생애 주기에 따른 삶의 권리를 보장받음으로써「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 가능 사회」를 구현한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청년층과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정책 체감도를 제고하며 가족지원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의 기본방향을 설정하였다. 특히 복지분야의 저출산 대응과 관련해서는 육아부담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위하여 2022년부터 영아수당 도입, 첫만남이용권 신설, 아동수당의 지급 연령 확대(만 7세 미만→만 8세 미만) 등을 포함하였다.

[2022년도 저출산 대응을 위한 아동 지원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사업 내용   | 2022년도 예산안                |
|---------------------|---|---------------------------|
| 영아수당 지원<br>(신규)     | · 2022년 1. 1.일 이후 출생한 만 0~1세 아동에게 매월 30만원 지원<br>(2023년 35만원, 2024년 40만원, 2025년 50만원 등 단계적으로 상향) | 373.132                   |
| 첫만남이용권<br>(신규)      | · 2022년 1. 1.일 이후 출생아에게 출생순위 상관없이 1회 200만원 바우처 지급(일시금)  | 373.145                   |
| 아동수당 지급<br>(대상자 확대) | · 아동수당(월 10만원) 연령기준을 현행 만 7세 미만에서 2022년부터 만 8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                                       | 2,403,949<br>(184,494 증액) |

자료: 보건복지부

## 1-1. 영아수당 사업의 지원 형평성을 고려한 지원대상 검토 필요

### 가. 현황

영아수당 지원 사업<sup>1)</sup>은 주 양육자의 직접돌봄이 중요한 0~1세 아동에 대하여 주 양육자가 돌봄에 투자하는 시간 대비 포기해야 하는 소득을 보전하고, 영아부모의 실질적 양육선택권 보장을 위하여 가정에서 양육하는 2022년 1. 1.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 영아에 대하여 2022년 예산안 편성 기준으로 월 30만원을 지원하도록 계획되었다.

이 사업은 2022년도 신규사업으로 예산안은 3,731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2년도 영아수당 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20<br>결산 | 2021 <sup>1)</sup> |       | 2022<br>예산안(B) | 증감      |         |
|---------|------------|--------------------|-------|----------------|---------|---------|
|         |            | 본예산                | 추경(A) |                | B-A     | (B-A)/A |
| 영아수당 지원 | -          | -                  | -     | 373,132        | 373,132 | 순증      |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하며, 기금은 각각 2021년 당초계획과 9월말 기준 수정계획(자체변경 포함)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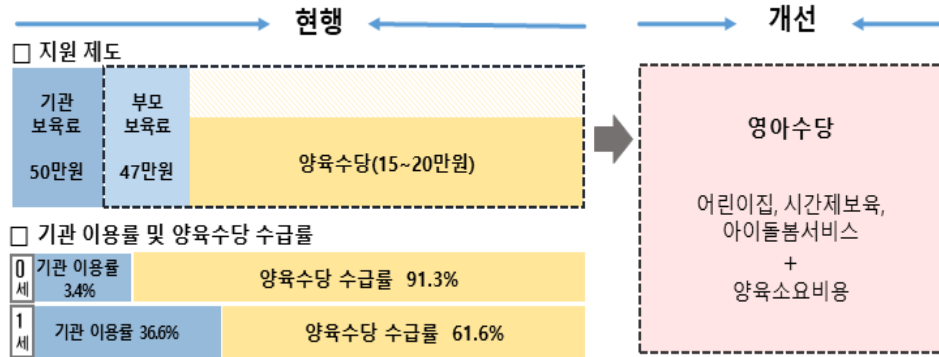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

동 사업의 목적은 ① 영아기 부모가 아동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포기하는 소득의 보전과 아동의 주 양육자의 집중돌봄을 받을 권리 보장, ② 영아기 양육비용을 지원함을 통한 영아기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③ 영아부모의 실질적 양육선택권 보장이다. 정부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0.12.)을 수립하면서 2022년 1.1.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 영아를 대상으로 영아수당 제도를 2022년 1월 도입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영아수당 지원 사업의 지급 대상은 2022년 1. 1.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 영아(약 월 151,000명)로서, 2022년 기준 월 30만원을 지원하도록 계획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영아수당 지급액을 2022년 월 30만원부터 2025년 월 5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sup>2)</sup>.

1) 일반회계 3143-300

[0~1세 지원제도 개편 방안]



주: 2021년 이전 출생아는 현행제도(보육료, 양육수당) 적용하고 2022년 출생아부터 신규제도를 적용  
 자료: 보건복지부

나. 분석 의견

2022년부터 신규로 도입하는 영아수당의 지원 대상자를 2022. 1. 1. 이후 출생아로 계획함에 따라 2021년 말 출생아의 경우 2022년과 2023년 만 0세 또는 1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가정양육수당(월 15~20만원)을 수급하게 되어 2022년 출생아와 출생시점의 작은 차이로 인해 수급액 차이가 상당한 수준으로 발생하게 되어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2022년 신규 도입하는 영아수당의 지원 대상자는 2022. 1. 1. 이후 출생한 어린이집,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만 2세 미만(0~1세)의 영아이며, 지원액은 아동 1인당 월 30만원으로 시작하여 연도별로 2025년까지 월 50만원으로 상향할 예정이다.

동 사업은 현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은 아동에게 월 10~20만원을 지급하는 가정양육수당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에게 월 50만원을 지급하는 보육료와의 차등화된 지원을 통합하여 보호자로 하여금 영아기 양육방식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가구특성에 맞는 양육 환경의 조성 및 영아 양육과정의 소득보전 등을 위하여 계획되었다.

2) 영아수당의 지급근거와 관련하여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803)이 발의되어 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



[영아수당 제도 도입 전후 비교]

(단위: 만원)

| 현행     |            |           |             |          | 2022년 이후 |        |           |   |                |              |
|--------|------------|-----------|-------------|----------|----------|--------|-----------|---|----------------|--------------|
| 연령     |            | 0세        | 1세          | 2~7세     | 연령       |        | 0세        | 1세  | 2~7세           |              |
| 보<br>육 | 시설<br>미이용  | 가정양육수당 지원 |             |          | ⇒        | 보<br>육 | 시설<br>미이용 | (22년)<br>현금 월 30<br>↓<br>(25년)<br>현금 월 50 |                | 가정양육수당<br>지원 |
|        |            | 월 20      | 월 15        | 월 10     |          |        |           | 월 10                                      |                |              |
|        | 보육료(바우처)지원 |           |             | 시설<br>이용 |          |        |           | 바우처<br>(보육료)<br>월 50                      | 보육료<br>(바우처)지원 |              |
|        | 월 50       | 월 50      | 월 28<br>~36 |          |          |        |           |   | 월28 ~ 월36      |              |

자료: 보건복지부

현재 지급되고 있는 가정양육수당은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3)에 근거하여 어린이집, 유치원 등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만 0~6세 영유아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 만 0세 월 20만원, 만 1세 월 15만원, 만 2~6세 월 10만원을 2013년부터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 어린이집, 유치원 등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에게 지급하는 보육료 바우처의 지원금액은 만 0~1세 월 50만원, 만 2~6세 월 28~36만원 수준이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계획 중인 영아수당의 지원 대상자는 2022. 1. 1. 출생아부터인 바, 2021년 출생아의 경우 2022년과 2023년에 만 0~1세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가정양육수당액(0세 20만원, 1세 15만원)을 수급하게 되어 2022년 출생아부터 지급받게 되는 영아수당인 30만원 등과 차액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차액은 만 2년 가량에 해당하는 영아기 동안 지속적으로 누적되는 바, 예를 들어 2021년 12월생 영아

- 3) 제34조의2(양육수당)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이나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영유아의 연령을 고려하여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영유아가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그 영유아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영유아가 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양육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을 정지한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양육수당의 지급을 정지하는 경우 서면으로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대상·기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 경우 출생시점부터 2년간 총 420만원(20만원×12월+15만원×12월)의 가정양육수당을 지급받는 반면, 2022년 1월 출생아의 경우 780만원(30만원×12월+35만원×12월)을 수령하게 되어 약 360만원 가량의 수급액 차이가 발생한다.

[출생시점에 따른 생후 2년간 가정양육수당과 영아수당 수급액 차이(예시)]

| 구분            | 2021년                       | 2022년                      |                             | 2023년                      |     | 수급액<br>(만0~1세) |
|---------------|-----------------------------|----------------------------|-----------------------------|----------------------------|-----|----------------|
|               | 12월                         | 1월~11월                     | 12월                         | 1월~11월                     | 12월 |                |
| 2021.<br>12월생 | 가정양육수당<br>(만0세)<br>[월 20만원] |                            | 가정양육수당<br>(만1세)<br>[월 15만원] |                            | -   | 420만원          |
| 2022.<br>1월생  | -                           | 영아수당<br>(만 0세)<br>[월 30만원] |                             | 영아수당<br>(만 1세)<br>[월 35만원] |     | 780만원          |

자료: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그런데, 후술할 첫만남이용권 사업의 경우 출생시점에 1회성으로 급여를 지급함에 따라 수급대상자의 출생시점을 명확히 정해야 하는 것과 달리, 영아 수당의 경우 제도 시행일 이후 매월 지급하므로 지급 시점에서 수급 영아의 연령(개월수)을 따지는 것만으로도 수급대상을 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sup>4)</sup>

그럼에도 영아수당은 영아기 양육방식에 대한 가정의 선택권을 강화시키고 양육가정의 소득을 보전하는 측면이 있음을 고려할 때, 제도가 시행 중인 시점에서 같은 만 0세~1세 연령의 아동이 출생 시점의 작은 차이로 인하여 장기간 수령액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영아수당 지원의 취지와 형평성, 재정부담의 확대 등을 감안하여 정책 대상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sup>5)</sup>

4)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2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당시 대상을 명확하게 한정하여 발표한 점,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25년 50만원 지급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도입을 추진한 점, 지자체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점 등을 고려하여 2022. 1. 1. 이후 출생아부터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5) 2022년 1월부터 출생시점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고 2022년 기준 만 0세 또는 1세를 대상으로 30만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국비 기준으로 2022년 10,366억원, 2023년 11,795억원으로 2022년 예산안 대비 2년간 8,269억원의 예산소요가 발생하나 0~1세 양육수당 지원이 없어지는 만큼 양육수당 지원예산이 추가로 절감하여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국비 기준으로 2년간 3,821억원, 지방비 1,716억원이다.

## 1-2 첫만남이용권 사업의 이용권 사용처 명시 등 면밀한 이용방안 마련 필요

### 가. 현황

첫만남이용권 사업<sup>6)</sup>은 출생 초기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2022년 1. 1. 이후 출생 아동에게 첫만남이용권 200만원을 지급하는 신규 사업이다.

이 사업의 2022년도 예산안은 3,731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2년도 첫만남이용권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20<br>결산 | 2021 <sup>1)</sup> |       | 2022<br>예산안(B) | 증감      |         |
|--------|------------|--------------------|-------|----------------|---------|---------|
|        |            | 본예산                | 추경(A) |                | B-A     | (B-A)/A |
| 첫만남이용권 | -          | -                  | -     | 373,145        | 373,145 | 순증      |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하며, 기금은 각각 2021년 당초계획과 9월말 기준 수정계획(자체변경 포함)을 의미

자료: 보건복지부

동 사업은 ‘제4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에 영아기 집중투자 과제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것으로 보편적 수당방식으로 지원하도록 편성되었다.

[첫만남이용권 사업 2022년도 예산안 편성내역]

| 구분         | 편성내역  |
|------------|---|
| 첫만남<br>이용권 | 372,870백만원<br>· 2백만원 × 275천명(22년 장래인구추계 중저위) × 67.8%(평균보조율) |
| 사업운영<br>관리 | 275백만원<br>· 시스템운영관리 245백만원<br>· 사업관리 및 지원 30백만원             |

자료: 보건복지부

첫만남이용권 사업은 2022년 출생아 약 27만 5,000명에 대하여 출산 및 아동의 생애초기에 필요한 물품서비스 구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동 1명당 200만원의 이

6) 코드: 일반회계 2533-306

용권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현재 각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출산률 제고 등을 위하여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2020년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지원금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광역지방자치단체 17개 중 서울, 경기, 전북을 제외한 14개 시도가 출산지원금 사업을 시행(82.4%) 중이며 광역지방자치단체의 2020년 출산지원금 예산액은 1,607억원으로 나타났다.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219개 시군구가 출산지원금 사업을 시행(96.9%)하고 있으며 기초지방자치단체의 2020년 출산지원금 예산액은 2,216억원이다.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출산지원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및 출산 순위별(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등)로 지원액에 차이가 있는데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첫째 아이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의 경우 총 지급액 기준으로 10~1,440만원으로 나타났다.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출산지원금은 상위 10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기준으로 첫째 아이의 경우 총 지급액은 480~700만원으로 파악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하여 출산지원금 지원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는 출산지원금 100만원 증가에 따른 유배우자 1,000명당 출생아 수가 약 42~60명으로 증가세를 보이며, 출산지원금 지원은 지방자치단체 개별 단위보다는 전국적인 범위에서의 지원이 장기적인 효과 측면에서 더 효율적이라는 관련 연구<sup>7)</sup> 등으로 첫만남이용권 지원에 타당성을 밝히고 있다.

현재 동 사업의 추진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853호, 서영석의원 대표발의)이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중이다.

첫만남이용권의 재정소요액은 2022년 예산안 기준으로 연간 국비 3,728억 7,000만원과 지방비 1,771억 3,000만원 등 총 5,500억원으로 약 5년간 2조 7,380억원의 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7) '아동수당 및 출산·양육지원체계 발전방안 연구(2019,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한국조세정책연구원)

[광역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금 지원 현황: 2020년]

| 구분 | 출산 순위별 지원액(천원)       |                                 |                                  |                                  |                                  | 2020년<br>예산<br>(백만원) |
|----|----------------------|---------------------------------|----------------------------------|----------------------------------|----------------------------------|----------------------|
|    | 첫째                   | 둘째                              | 셋째                               | 넷째                               | 다섯째<br>이상                        |                      |
| 서울 | 미시행                  |                                 |                                  |                                  |                                  |                      |
| 부산 |                      | 500<br>(50만원×1회)                | 1,500<br>(150만원×1회)              | 1,500<br>(150만원×1회)              | 1,500<br>(150만원×1회)              | 5,900                |
| 대구 |                      | 1,400<br>(20만원×1회)<br>(5만원×24월) | 4,100<br>(50만원×1회)<br>(20만원×18월) | 4,100<br>(50만원×1회)<br>(20만원×18월) | 4,100<br>(50만원×1회)<br>(20만원×18월) | 14,755               |
| 인천 | 1,000<br>(100만원×1회)  | 1,000<br>(100만원×1회)             | 1,000<br>(100만원×1회)              | 1,000<br>(100만원×1회)              | 1,000<br>(100만원×1회)              | 19,062               |
| 광주 | 100<br>(10만원×1회)     | 200<br>(20만원×1회)                | 600<br>(60만원×1회)                 | 600<br>(60만원×1회)                 | 600<br>(60만원×1회)                 | 1,900                |
| 대전 | 300<br>(30만원×1회)     | 400<br>(40만원×1회)                | 600<br>(60만원×1회)                 | 600<br>(60만원×1회)                 | 600<br>(60만원×1회)                 | 3,708                |
| 울산 | 100<br>(10만원×1회)     | 500<br>(50만원×1회)                | 1,000<br>(100만원×1회)              | 1,000<br>(100만원×1회)              | 1,000<br>(100만원×1회)              | 2,540                |
| 세종 | 1,200<br>(120만원×1회)  | 1,200<br>(120만원×1회)             | 1,200<br>(120만원×1회)              | 1,200<br>(120만원×1회)              | 1,200<br>(120만원×1회)              | 4,620                |
| 경기 | 미시행                  |                                 |                                  |                                  |                                  |                      |
| 강원 | 14,400<br>(30만원×48월) | 14,400<br>(30만원×48월)            | 14,400<br>(30만원×48월)             | 14,400<br>(30만원×48월)             | 14,400<br>(30만원×48월)             | 45,580               |
| 충북 | -                    | 1,200<br>(10만원×12월)             | 2,400<br>(20만원×12월)              | 2,400<br>(20만원×12월)              | 2,400<br>(20만원×12월)              | 8,509                |
| 충남 | 2,400<br>(10만원×24월)  | 2,400<br>(10만원×24월)             | 2,400<br>(10만원×24월)              | 2,400<br>(10만원×24월)              | 2,400<br>(10만원×24월)              | 37,368               |
| 전북 | 미시행                  |                                 |                                  |                                  |                                  |                      |
| 전남 | 300<br>(30만원×1회)     | 300<br>(30만원×1회)                | 300<br>(30만원×1회)                 | 300<br>(30만원×1회)                 | 300<br>(30만원×1회)                 | 3,570                |
| 경북 | 100<br>(10만원×1회)     | 600<br>(60만원×1회)                | 600<br>(60만원×1회)                 | 600<br>(60만원×1회)                 | 600<br>(60만원×1회)                 | 5,900                |
| 경남 | -                    | -                               | 500<br>(50만원×1회)                 | 500<br>(50만원×1회)                 | 500<br>(50만원×1회)                 | 1,040                |
| 제주 | 500<br>(50만원×1회)     | 2,000<br>(200만원×1회)             | 2,000<br>(200만원×1회)              | 2,000<br>(200만원×1회)              | 2,000<br>(200만원×1회)              | 6,207                |

자료: 보건복지부

[기초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금 지원 현황: 2020년]

(단위: 개, 백만원)

| 구 분 | 기초 지자체 수 | 출산지원금 지원<br>기초 지자체 수 | 출산지원금 예산 |
|-----|----------|----------------------|----------|
| 서울  | 25       | 25                   | 17,241   |
| 부산  | 16       | 16                   | 4,276    |
| 대구  | 8        | 4                    | 3,055    |
| 인천  | 10       | 9                    | 11,138   |
| 광주  | 5        | 5                    | 372      |
| 대전  | 5        | 3                    | 507      |
| 울산  | 5        | 5                    | 6,225    |
| 세종  | -        | -                    | -        |
| 경기  | 31       | 31                   | 55,721   |
| 강원  | 18       | 18                   | 7,609    |
| 충북  | 11       | 11                   | 6,707    |
| 충남  | 15       | 15                   | 12,654   |
| 전북  | 14       | 14                   | 12,145   |
| 전남  | 22       | 22                   | 27,953   |
| 경북  | 23       | 23                   | 33,344   |
| 경남  | 18       | 18                   | 22,635   |
| 제주  | -        | -                    | -        |
| 합계  | 226      | 219                  | 221,582  |

자료: 보건복지부

[기초지방자치단체 첫째아 출산지원금 지원 상위 10개소: 2020년]

| 구분        | 출산 순위별 지원액(천원)                    |                                    |                                    |                                    |                                    | '20년예산<br>(백만원) |
|-----------|-----------------------------------|------------------------------------|------------------------------------|------------------------------------|------------------------------------|-----------------|
|           | 첫째                                | 둘째                                 | 셋째                                 | 넷째                                 | 다섯째이상                              |                 |
| 경북<br>봉화군 | 7,000<br>(100만원×1회)<br>(10만원×60월) | 9,000<br>(15만원×60월)                | 1,500<br>(25만원×60월)                | 1,800<br>(30만원×60월)                | 1,800<br>(30만원×60월)                | 1,410           |
| 경북<br>울릉군 | 6,800<br>(200만원×1회)<br>(10만원×48월) | 11,600<br>(200만원×1회)<br>(20만원×48월) | 26,000<br>(200만원×1회)<br>(50만원×48월) | 26,000<br>(200만원×1회)<br>(50만원×48월) | 26,000<br>(200만원×1회)<br>(50만원×48월) | 223             |
| 경북<br>울진군 | 6,000<br>(10만원×60월)               | 6,000<br>(10만원×60월)                | 6,000<br>(10만원×60월)                | 12,000<br>(10만원×60월)               | 12,000<br>(10만원×60월)               | 852             |
| 경북<br>청송군 | 5,800<br>(100만원×1회)<br>(10만원×48월) | 7,000<br>(100만원×1회)<br>(10만원×60월)  | 16,000<br>(100만원×1회)<br>(25만원×60월) | 19,000<br>(100만원×1회)<br>(30만원×60월) | 19,000<br>(100만원×1회)<br>(30만원×60월) | 454             |
| 경북<br>영덕군 | 5,800<br>(50만원×2회)<br>(20만원×24월)  | 8,200<br>(50만원×2회)<br>(20만원×36월)   | 8,200<br>(50만원×2회)<br>(20만원×36월)   | 8,200<br>(50만원×2회)<br>(20만원×36월)   | 8,200<br>(50만원×2회)<br>(20만원×36월)   | 1,240           |
| 충남<br>금산군 | 5,000<br>(100만원×5년)               | 7,000<br>(100만원×7년)                | 10,000<br>(100만원×10년)              | 20,000<br>(200만원×10년)              | 20,000<br>(200만원×10년)              | 570             |
| 전남<br>광양시 | 5,000<br>(100만원×1회)<br>(100만원×4년) | 5,000<br>(100만원×1회)<br>(100만원×4년)  | 10,000<br>(200만원×1회)<br>(200만원×4년) | 20,000<br>(400만원×1회)<br>(400만원×4년) | 20,000<br>(400만원×1회)<br>(400만원×4년) | 3,940           |
| 전남<br>영광군 | 5,000<br>(100만원×1회)<br>(20만원×20월) | 12,000<br>(120만원×1회)<br>(30만원×36월) | 30,000<br>(150만원×1회)<br>(50만원×57월) | 30,000<br>(150만원×1회)<br>(50만원×57월) | 30,000<br>(150만원×1회)<br>(50만원×57월) | 2,491           |
| 전남<br>진도군 | 5,000<br>(100만원×1회)<br>(100만원×4년) | 10,000<br>(100만원×1회)<br>(100만원×9년) | 20,000<br>(200만원×1회)<br>(100만원×9년) | 20,000<br>(200만원×1회)<br>(100만원×9년) | 20,000<br>(200만원×1회)<br>(100만원×9년) | 350             |
| 전남<br>고흥군 | 4,800<br>(20만원×24월)               | 4,800<br>(20만원×24월)                | 7,200<br>(20만원×36월)                | 14,400<br>(40만원×36월)               | 14,400<br>(40만원×36월)               | 1,101           |

자료: 보건복지부

## 나. 분석 의견

첫만남이용권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첫만남이용권이 초기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명확한 이용권 사용처 명시 등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첫만남이용권의 지원 목적은 출산 양육초기에 필요한 비용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여 영아가구의 경제적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있다.

동 이용권의 이용절차는 출생신고 이후부터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영유아의 보호자 및 보호자 대리인이 신청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신청접수일로부터

터 30일 이내에 지급을 결정하고 신용카드사와 연계한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가 생성되어 보호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첫만남이용권은 지원대상자에게 현금, 서비스, 물품을 직접 제공하는 대신에 정해진 사용처에서 물품이나 서비스로 교환할 수 있는 이용권을 제공하는 바우처 형태의 사업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에 대한 경감을 목적으로 하는 동 사업의 목적을 고려하여 이용권 사용을 유흥업소 및 사행사업 등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으로 지나친 사용처의 제한을 지양한다는 입장이다.

동 이용권 지원액 200만원이 충전될 국민행복카드의 경우 현재 진료비·의료비 지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등 사회서비스사업 8종,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등 국민행복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나 교환할 수 있는 물품 등을 명시하고 있다.

[국민행복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2021년]

| 구 분                    | 지원 내용                             |
|------------------------|-----------------------------------|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임산부라면 누구나 60~100만원 지원             |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청소년산모라면 120만원 지원                  |
| 사회서비스사업 8종             | ①노인돌봄종합서비스                        |
|                        | ②장애인활동지원사업                        |
|                        | ③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
|                        | ④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
|                        | ⑤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                        | ⑥발달재활서비스                          |
|                        | ⑦언어발달지원사업                         |
|                        | ⑧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                   |
|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만 2세미만 영아 대상, 최대 24개월 지원          |
| 에너지바우처 지원              | 에너지 취약계층, 86,000원~145,000원 지원     |
|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 양육공백 가정, 가구 소득에 따라 이용요금 차등지원      |
|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       | 자격·연령 기준에 따른 여성청소년에게 생리대 구매 비용 지원 |
| 장애인, 노년, 다문화, 건강, 교육 등 | 추가 예정                             |

자료: 보건복지부



동 이용권은 바우처 형태로 구입할 수 있는 물품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이용권의 바우처가 생성되는 국민행복카드는 여러 신용카드사와 제휴를 통하여 발급이 되고 있어 사용처에 대한 명확한 범위를 정하지 않을 경우 보호자의 결정으로 이용권 지원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물품 등으로 소비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이용권 사용에 대하여 결제 가능한 업종과 제한 업종 등을 명확하게 정하여 출생한 영유아 양육 등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용권으로 구매 가능 물품 및 사용처에 관하여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등 면밀한 사업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급 대상자 범위 선정과 관련하여 복수국적자 및 해외체류자에 대한 첫만남이용권 지급 여부를 검토하고 이와 관련한 규정 및 예산 소요 등을 사전에 조치할 필요가 있다.**

첫만남이용권은 2022년 1월 이후 출생자에게 20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지급 대상은 출생신고된 영유아, 영유아의 보호자로 예정하고 있다.

과거 양육수당과 아동수당 지급 사업의 경우, 복수국적자와 해외출생아, 특히 국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해외교포의 자녀 등에 대한 지급과 관련하여 해당 아동에 대한 지원 대상 여부 등에 대한 논의가 있어 왔다. 이와 관련하여 정책적으로 장기 해외 체류자에 대해서는 지급을 정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되었으나, 지급을 정지할 법적 근거가 도입되기 전까지 지급이 계속되었다.

[해외체류 아동에 대한 지급정지제도 운영 현황]

| 구분        | 아동수당   | 양육수당  |
|-----------|--|---|
| 지원대상      | 7세 미만의 아동  | 무상보육과 영아종일돌봄서비스를 받지 않는 6세 미만의 취학전아동   |
| 해외체류 지급정지 | 「아동수당법」 제정(2018. 3. 27.)<br>수급아동이 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 체류시 지급 정지<br>(보호자가 30일 이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br>(2021년 9월 현재 109,222건(누적)) | 「영유아보육법」 개정(2015. 5. 18.)<br>영유아가 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체류시 지급 정지<br>(2021년 9월 현재 178,499건(누적)) |
| 환수        | 아동수당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 지급된 경우<br>(2021년 9월 현재 환수결정건수 2,454건(누적))  | 양육수당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 지급된 경우<br>(2021년 9월 현재 환수결정건수 9,783건(누적))                             |

자료: 보건복지부

이와 유사하게, 첫만남이용권의 지급과 관련하여 해외출생자에 대한 수급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바, 먼저 해외에서 우리 국적을 지닌 국민이 출생을 하였을 때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정책적인 검토가 우선될 필요가 있다.

첫만남이용권과 관련하여 법적 근거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저출산·고령화법 개정안」(의안번호 8853, 서영석의원 대표발의)은 해외체류자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신청자가 장기 해외 체류자인 경우에도 영유아의 출생신고가 있는 지자체에서는 이용권 청구 시 지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으나 해외에서 장기간 거주하고 있는 재외교포나 90일 이상 국외에 체류 중인 국민의 자녀인 출생아에 대하여 지급을 제한하려면, 지급을 제한하는 법령상의 근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업무차 해외에 장기체류하며 국내에 세금을 납부하는 주재원 가족이나 향후 국내 거주를 희망하나 학업 등을 위해 해외체류 중인 국민에 대한 지급 여부도 정책 결정 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 1-3 아동수당 사업의 대상자 확대와 국가 및 지방 재정부담 등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 마련 필요

### 가. 현 황

아동수당 지급 사업<sup>8)</sup>은 「아동수당법」 제3조<sup>9)</sup>에 따라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 균등한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보장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모든 만 7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2022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1,844억 9,400만원이 증액된 2조 4,039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2년도 아동수당 지급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20<br>결산 | 2021 <sup>1)</sup> |           | 2022<br>예산안(B) | 증감      |         |
|---------|------------|--------------------|-----------|----------------|---------|---------|
|         |            | 본예산                | 추경(A)     |                | B-A     | (B-A)/A |
| 아동수당 지급 | 2,302,798  | 2,219,455          | 2,219,455 | 2,403,949      | 184,494 | 8.3     |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하며, 기금은 각각 2021년 당초계획과 9월말 기준 수정계획(자체변경 포함)을 의미

자료: 보건복지부

2018년 9월 도입된 아동수당 지급 사업은 소득재산 하위 90% 가구의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시작되었고, 2019년 1월부터는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였다.

2019년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 월 1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2022년 예산안에는 아동수당 지원 대상자를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8) 코드: 일반회계 2539-300

9) 「아동수당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및 제4조(아동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수당이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수준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재원을 조성하여야 한다. ③ 보호자는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수당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 ① 아동수당은 7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한다.

## 나. 분석 의견

2022년부터 도입되는 첫만남이용권 등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추진하는 저출산 대응에 따른 영유아에 대한 현금성 지원의 증가 추이 및 대상자 추가 연령 확대에 따른 재정부담 등을 고려하여 아동수당 지원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18년 9월에 도입된 아동수당은 만 6세 미만 아동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전체 가구의 90% 이하일 경우 지급하는 선별적 지급방식으로 실시되었으나, 2019년 1월부터는 만 7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보편적 지급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아동수당의 지원을 위한 예산액도 도입 첫해인 2018년에는 사업 시작을 9월부터 수행하여 4개월분인 국비와 지방비를 합한 9,647억원이 편성되었고, 현재 지급방식이 시작된 2019년에는 2조 9,657억원과 2020년에는 3조 761억원이 편성되었으며 2021년 예산은 2조 9,516억으로 매년 약 3조원의 재정이 투입되고 있다.

[아동수당 예산 현황: 2018~2021년]

(단위: 만명, 억원)

| 구분   | 대상인원 | 국비     | 지방비   | 합계     |
|------|------|--------|-------|--------|
| 2018 | 238  | 7,096  | 2,551 | 9,647  |
| 2019 | 247  | 21,627 | 8,030 | 29,657 |
| 2020 | 263  | 22,834 | 7,927 | 30,761 |
| 2021 | 247  | 22,195 | 7,321 | 29,516 |

주: 1) 2018년은 4개월분(9~12월)

2) 예산액은 확정내시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2022년 예산안에 반영된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자 확대(만 0~6세 → 만 0~7세)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아동수당 사업의 평균 국고보조율은 2018년 도입 당시 71.8%, 2019년 및 2020년 각각 72.89%에서 2021년에는 75.1%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2022년 예산안

에는 73.6%<sup>10)</sup>으로 예산안에 반영되었다.

또한, 아동수당 지급에 소요되는 지방비 부담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사회복지비지수 및 재정자주도를 고려한 차등보조율(±10)을 적용하여 지원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국고보조율은 기본 50%이나 아동수당 도입 당시인 2018년 9월부터 차등보조율 10%를 더한 60%를 보조하고 있다.

지방의 경우 국고보조율은 기본 70%이나 차등보조율 10%를 적용받는 기초지방자치단체는 2018년 9월 도입 당시 73개소였으나 2022년(안)에는 107개소로 34개소가 증가(46.6%)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도별 차등보조율 적용 지자체 현황: 2018~2022년(안)]

(단위: 개소)

| 구 분                                 | 서울        | 지방        |           |
|-------------------------------------|-----------|-----------|-----------|
|                                     | 차등보조율 60% | 차등보조율 70% | 차등보조율 80% |
| 2018년<br>(2016년 재정자주도 및 사회복지비지수)    | 25        | 130       | 73        |
| 2019년<br>(2017년 재정자주도 및 사회복지비지수)    | 25        | 135       | 68        |
| 2020년<br>(2018년 재정자주도 및 사회복지비지수)    | 25        | 123       | 80        |
| 2021년<br>(2019년 재정자주도 및 사회복지비지수)    | 25        | 115       | 88        |
| 2022년(안)<br>(2020년 재정자주도 및 사회복지비지수) | 25        | 96        | 107       |

자료: 보건복지부

10)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고보조율은 산출방식은 장래인구 추계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비지수 및 재정자주도 등을 고려하여 산출하며 2022년도 예산안에 반영한 국고보조율은 기존 산출방식에서와는 다르게 당해연도 차등보조율은 전전년도 사회복지비지수 및 재정자주도만 고려하여 계산하였다.

2022년 예산안에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와 함께 저출산 대응을 위하여 영아수당 및 첫만남이용권 사업 등 아동에 대한 현금지급 사업이 신규 도입을 계획하고 있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출산율 저하로 인한 아동 수의 감소 경향으로 아동수당 지급에 소요되는 재정부담은 다소 감소할 전망이나, 아동복지 증진 및 양육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 강화로 지급 대상 확대 및 수당액 상향 조정 등의 요구가 많아지고 있다

더욱이 아동수당 사업의 경우 아동 연령이 높아질수록 양육비가 증가하는 등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아동수당의 지급대상 연령 상한(18세 미만 아동까지 확대 등) 및 연령별 수당의 차등 지급 등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sup>11)</sup>

따라서 아동수당 수급 실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중장기 재정부담 등을 포함한 아동수당제도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아동수당 지원 확대 범위 및 지원액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

11) 현재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18세 미만까지 확대(「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7999호), 고영인 의원 대표발의) 등의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아동학대 대응을 위하여 2022년 예산안부터 기존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복권기금 및 일반회계로 분리되어 편성되어 있었던 아동학대 대응 재원을 일반회계로 일원화하고, 학대피해아동쉼터 등 아동학대 대응을 위한 인프라 확충 사업 실시 등으로 2022년도 예산액은 2021년 대비 45.4% 증가한 615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2년도 아동학대 대응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사업 내용   | 2022년도 예산안                                      |
|------------------------------|---|---|
| 아동정책<br>조정 및 인권증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담공무원 녹취록 작성장비 1,145백만원(신규)</li> <li>· 전담의료기관 활성화 시범사업 500백만원(신규)</li> <li>· 인프라 기능보강사업 500백만원(신규)</li> <li>·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717백만원</li> <li>· 연구용역비 187백만원</li> </ul>                         | 3,049   |
| 아동권리보장원<br>운영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학대 인식개선 홍보 1,786백만원</li> <li>· 전문성 강화(교육예산) 1,076백만원</li> <li>· 연구용역비, 콘텐츠 개발 등 148백만원</li> </ul>  | 3,010   |
| 아동학대<br>예방 및<br>피해아동<br>보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치비(14개소) 4,200백만원</li> <li>· 아동보호전문기관 인건비 23,490백만원</li> <li>·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 4,008백만원</li> <li>· 아동보호전문기관 사업비 4,235백만원</li> <li>· 거점 심리지원팀 1,271백만원</li> <li>· 아동학대정보시스템 879백만원</li> </ul> | 38,083<br>(범죄피해자보<br>호기금<br>→ 보건복지부<br>일반회계 이관) |
| 요보호아동<br>그룹홈<br>운영지원<br>(쉼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치비(35개소) 6,149백만원</li> <li>· 쉼터 인건비 9,134백만원</li> <li>· 쉼터 운영비 608백만원,</li> <li>· 쉼터 사업비 1,506백만원</li> </ul>  | 17,397<br>(복권기금<br>→ 복지부<br>일반회계 이관)            |
| 합 계                          |   | 61,539  |

자료: 보건복지부

그동안 아동학대 대응과 관련하여 사업 수행은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였으나 관련 재원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2항<sup>1)</sup>에 따른 기획재정부(복권기금) 및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6조<sup>2)</sup>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4항에 따른 법무부(범죄피해자보호기금)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그러나 2022년도 예산안부터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재원으로 수행하던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2021년도 예산 287억 3,600만원)과 복권기금의 재원으로 수행하였던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및 운영사업(2021년도 예산 86억 5,500만원)을 모두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재원으로 전환하여 편성되었다.

[아동학대 대응 관련 일반회계로 전환: 2022년도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 사업명<br>(내역사업명)                        | 재 원                                   |        |              |        |
|---------------------------------------|---------------------------------------|--------|--------------|--------|
|                                       | 2021년<br>예산                           |        | 2022년<br>예산안 |        |
|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 법무부<br>(범죄피해자<br>보호기금 <sup>1)</sup> ) | 28,736 | 보건<br>복지부    | 38,083 |
|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br>(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및 운영) | 기획재정부<br>(복권기금 <sup>1)</sup> )        | 8,655  | (일반<br>회계)   | 8,742  |

주: 2021년은 본예산 기준으로 작성

- 1)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 법무부, 복권기금은 기획재정부가 관리하고 있으나 본 표에 제시된 해당 사업의 실제 수행은 보건복지부가 담당

자료: 보건복지부

1)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② 제1항에 따라 복권수익금을 배분받은 기금 등은 이를 별표에 규정된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2)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
2.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3. 다른 법률에 따른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에 관련된 사업이나 활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영을 위한 경비의 지출
5.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정부는 아동학대 방지를 위하여 ‘아동학대 방지 보완대책’(2018. 3.), ‘포용국가 아동정책’(2019. 5.),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대책’(2020. 7.)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2018년 3월에 발표한 ‘아동학대 방지 보완대책’에서는 아동학대 발굴을 위하여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신설하여 위기아동의 정기적 안전 확인을 수행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아동학대대책단의 설치와 함께 아동학대 대응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아동학대대응과를 신설하는 등 공공 지원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아동학대 사후관리를 위하여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를 운영하고, 보호시설에서 퇴소한 아동에 대하여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2019년 5월 발표한 ‘포용국가 아동정책’에서는 2020년 10월부터 민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수행한 학대조사 업무를 시군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으로 이관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를 학대피해아동 사례관리에 집중하도록 하는 등 관련 계획을 수립하였다.

2020년 7월에는 아동학대 대응 관련기관 간 정보연계 및 인프라 확충과 함께 아동학대 발생시 대응 단계별 실효성을 제고하는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을 발표하였다. 동 대책에서는 지역별 정보연계협의체를 구성하여 위기아동 정보를 공유하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전 지방자치단체에 배치하는 일정을 기존 2022년에서 1년 앞당겨 2021년까지 완료하고, 학대 발생 즉시 피해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는 즉각분리제도를 도입하고, 아동학대 사례관리 거부 시 제재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단계별 실효성을 강화하였다.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 주요내용]

| 정보공유·연계협력 강화   | 친권 제한보완   |
|--|---|
| ①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현장 발굴 강화<br>② 부처 간 정보 연계 강화<br>③ 학대아동 빅데이터 분석·활용 | ① 징계권 조항 개정<br>② 보호대상아동의 친권보충제도 등 개선<br>③ 즉각 분리제도 도입  |
| 인프라의 과감한 개선  | 대응 단계별 실효성 제고   |
| ① 아동보호전문기관·보호시설 확대<br>② 학대조사업무 공공화 전면 시행                       | ① [예방 맞춤형 교육]을 통한 인식개선 등<br>② [발굴] 신고제도 내실화 등<br>③ [초기대응] 현장조사 이행력 강화 등<br>④ [보호·지원] 지원 편차 완화 등<br>⑤ [재발방지] 학대발생가정 사후관리 등 |

자료: 보건복지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행정안전부 기준 인건비 반영(2021년 664명)에 따라 배치 중이며, 2021년 연말까지 모든 시군구에 전담공무원 최소 1명 이상 배치를 할 계획이다.<sup>3)</sup>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2021년 9월 기준으로 652명이 배치되어 활동하고 있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현황: 2021. 9. 1. 기준]

(단위: 개소, 건)

| 시도 | 시군구  | 배치완료 인원 | 2020년 학대의심 사례건수 | 시군구       | 배치완료 인원   | 2020년 학대의심 사례건수 |
|----|------|---------|-----------------|-----------|-----------|-----------------|
| 서울 | 강남구  | 4       | 137             | 서대문구      | 3         | 154             |
|    | 강동구  | 3       | 151             | 서초구       | 2         | 78              |
|    | 강북구  | 4       | 209             | 성동구       | 2         | 54              |
|    | 강서구  | 5       | 344             | 성북구       | 5         | 152             |
|    | 관악구  | 3       | 126             | 송파구       | 5         | 154             |
|    | 광진구  | 4       | 133             | 양천구       | 4         | 291             |
|    | 구로구  | 4       | 138             | 영등포구      | 3         | 109             |
|    | 금천구  | 3       | 138             | 용산구       | 2         | 93              |
|    | 노원구  | 5       | 423             | 은평구       | 6         | 368             |
|    | 도봉구  | 4       | 301             | 종로구       | 2         | 55              |
|    | 동대문구 | 2       | 145             | 중구        | 2         | 38              |
|    | 동작구  | 2       | 44              | 중랑구       | 4         | 215             |
|    | 마포구  | 3       | 117             | <b>합계</b> | <b>86</b> | <b>4,167</b>    |
| 부산 | 강서구  | 2       | 64              | 사하구       | 3         | 272             |
|    | 금정구  | 2       | 106             | 서구        | 2         | 60              |
|    | 기장군  | 2       | 156             | 수영구       | 2         | 65              |
|    | 남구   | 3       | 126             | 연제구       | 2         | 146             |
|    | 동구   | 2       | 86              | 영도구       | 2         | 105             |
|    | 동래구  | 4       | 112             | 중구        | 2         | 15              |
|    | 부산진구 | 6       | 284             | 해운대구      | 5         | 294             |
|    | 북구   | 3       | 88              | <b>합계</b> | <b>46</b> | <b>2,112</b>    |
|    | 사상구  | 4       | 133             |           |           |                 |
| 대구 | 남구   | 3       | 167             | 서구        | 1         | 102             |
|    | 달서구  | 9       | 485             | 수성구       | 4         | 152             |
|    | 달성군  | 6       | 287             | 중구        | 1         | 41              |
|    | 동구   | 3       | 186             | <b>합계</b> | <b>32</b> | <b>1,719</b>    |
|    | 북구   | 5       | 299             |           |           |                 |

3)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수요, 업무량, 재정 여건, 정원 반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담공무원 기준 인건비 추가 보장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시도  | 시군구  | 배치완료<br>인원 | 2020년<br>학대의심<br>사례건수 | 시군구       | 배치완료<br>인원   | 2020년<br>학대의심<br>사례건수 |
|-----|------|------------|-----------------------|-----------|--------------|-----------------------|
| 인천  | 강화군  | 1          | 45                    | 서구        | 9            | 741                   |
|     | 계양구  | 5          | 227                   | 연수구       | 5            | 296                   |
|     | 남동구  | 7          | 453                   | 용진군       | 2            | 11                    |
|     | 동구   | 1          | 62                    | 중구        | 2            | 159                   |
|     | 미추홀구 | 6          | 599                   | <b>합계</b> | <b>45</b>    | <b>3,099</b>          |
|     | 부평구  | 6          | 506                   |           |              |                       |
| 광주  | 광산구  | 6          | 250                   | 북구        | 4            | 247                   |
|     | 남구   | 2          | 104                   | 서구        | 2            | 220                   |
|     | 동구   | 1          | 37                    | <b>합계</b> | <b>16</b>    | <b>858</b>            |
| 대전  | 대덕구  | 2          | 212                   | 유성구       | 4            | 375                   |
|     | 동구   | 3          | 257                   | 중구        | 3            | 227                   |
|     | 서구   | 7          | 574                   | <b>합계</b> | <b>19</b>    | <b>1,645</b>          |
| 울산  | 남구   | 6          | 280                   | 울주군       | 5            | 198                   |
|     | 동구   | 8          | 324                   | 중구        | 4            | 237                   |
|     | 북구   | 4          | 363                   | <b>합계</b> | <b>27</b>    | <b>1,402</b>          |
| 경기  | 가평군  | 1          | 39                    | 안양시       | 5            | 270                   |
|     | 고양시  | 5          | 372                   | 양주시       | 2            | 194                   |
|     | 과천시  | 1          | 41                    | 양평군       | 1            | 38                    |
|     | 광명시  | 4          | 329                   | 여주시       | 2            | 65                    |
|     | 광주시  | 0          | 119                   | 연천군       | 1            | 32                    |
|     | 구리시  | 2          | 113                   | 오산시       | 4            | 246                   |
|     | 군포시  | 3          | 274                   | 용인시       | 2            | 404                   |
|     | 김포시  | 2          | 309                   | 의왕시       | 3            | 51                    |
|     | 남양주시 | 4          | 359                   | 의정부시      | 5            | 322                   |
|     | 동두천시 | 2          | 95                    | 이천시       | 0            | 159                   |
|     | 부천시  | 8          | 694                   | 파주시       | 2            | 138                   |
|     | 성남시  | 8          | 381                   | 평택시       | 5            | 423                   |
|     | 수원시  | 10         | 666                   | 포천시       | 0            | 176                   |
|     | 시흥시  | 11         | 495                   | 하남시       | 1            | 60                    |
|     | 안산시  | 18         | 1,711                 | 화성시       | 7            | 524                   |
| 안성시 | 1    | 93         | <b>합계</b>             | <b>72</b> | <b>9,192</b> |                       |
| 강원  | 강릉시  | 2          | 174                   | 정선군       | 1            | 79                    |
|     | 고성군  | 0          | 14                    | 철원군       | 0            | 17                    |
|     | 동해시  | 3          | 139                   | 춘천시       | 4            | 198                   |
|     | 삼척시  | 2          | 73                    | 태백시       | 2            | 72                    |
|     | 속초시  | 0          | 53                    | 평창군       | 1            | 23                    |
|     | 양구군  | 1          | 7                     | 홍천군       | 1            | 30                    |
|     | 양양군  | 1          | 5                     | 화천군       | 0            | 19                    |
|     | 영월군  | 1          | 34                    | 횡성군       | 2            | 49                    |
|     | 원주시  | 2          | 404                   | <b>합계</b> | <b>24</b>    | <b>1,404</b>          |
|     | 인제군  | 1          | 14                    |           |              |                       |

| 시도 | 시군구        | 배치완료<br>인원 | 2020년<br>학대의심<br>사례건수 | 시군구       | 배치완료<br>인원 | 2020년<br>학대의심<br>사례건수 |
|----|------------|------------|-----------------------|-----------|------------|-----------------------|
| 충북 | 괴산군        | 1          | 40                    | 제천시       | 3          | 113                   |
|    | 단양군        | 1          | 22                    | 증평군       | 1          | 62                    |
|    | 보은군        | 1          | 49                    | 진천군       | 1          | 57                    |
|    | 영동군        | 1          | 56                    | 청주시       | 8          | 576                   |
|    | 옥천군        | 1          | 64                    | 충주시       | 2          | 166                   |
|    | 음성군        | 1          | 83                    | <b>합계</b> | <b>21</b>  | <b>1,288</b>          |
| 충남 | 계룡시        | 1          | 20                    | 서천군       | 1          | 32                    |
|    | 공주시        | 2          | 101                   | 아산시       | 7          | 362                   |
|    | 금산군        | 1          | 54                    | 예산군       | 2          | 167                   |
|    | 논산시        | 9          | 194                   | 천안시       | 9          | 714                   |
|    | 당진시        | 2          | 171                   | 청양군       | 1          | 34                    |
|    | 보령시        | 1          | 66                    | 태안군       | 1          | 67                    |
|    | 부여군        | 2          | 91                    | 홍성군       | 2          | 102                   |
|    | 서산시        | 3          | 199                   | <b>합계</b> | <b>44</b>  | <b>2,374</b>          |
| 세종 | <b>세종시</b> | <b>4</b>   | <b>371</b>            |           |            |                       |
| 전북 | 고창군        | 1          | 67                    | 익산시       | 7          | 388                   |
|    | 군산시        | 3          | 433                   | 임실군       | 1          | 23                    |
|    | 김제시        | 3          | 77                    | 장수군       | 1          | 26                    |
|    | 남원시        | 3          | 141                   | 전주시       | 14         | 868                   |
|    | 무주군        | 2          | 19                    | 정읍시       | 2          | 132                   |
|    | 부안군        | 1          | 57                    | 진안군       | 1          | 28                    |
|    | 순창군        | 0          | 17                    | <b>합계</b> | <b>44</b>  | <b>2,453</b>          |
|    | 완주군        | 3          | 177                   |           |            |                       |
| 전남 | 강진군        | 1          | 59                    | 여수시       | 4          | 310                   |
|    | 고흥군        | 1          | 29                    | 영광군       | 0          | 88                    |
|    | 곡성군        | 1          | 17                    | 영암군       | 2          | 113                   |
|    | 광양시        | 2          | 163                   | 완도군       | 0          | 26                    |
|    | 구례군        | 1          | 20                    | 장성군       | 0          | 63                    |
|    | 나주시        | 2          | 236                   | 장흥군       | 1          | 83                    |
|    | 담양군        | 0          | 81                    | 진도군       | 0          | 29                    |
|    | 목포시        | 9          | 367                   | 함평군       | 1          | 83                    |
|    | 무안군        | 2          | 155                   | 해남군       | 0          | 88                    |
|    | 보성군        | 1          | 46                    | 화순군       | 1          | 70                    |
|    | 순천시        | 4          | 224                   | <b>합계</b> | <b>34</b>  | <b>2,368</b>          |
|    | 신안군        | 1          | 18                    |           |            |                       |
| 경북 | 경산시        | 2          | 191                   | 영양군       | 0          | 8                     |
|    | 경주시        | 3          | 135                   | 영주시       | 1          | 84                    |
|    | 고령군        | 0          | 9                     | 영천시       | 1          | 27                    |
|    | 구미시        | 8          | 272                   | 예천군       | 0          | 31                    |
|    | 군위군        | 0          | 6                     | 울릉군       | 0          | 5                     |
|    | 김천시        | 2          | 91                    | 울진군       | 1          | 25                    |

| 시도         | 시군구  | 배치완료<br>인원 | 2020년<br>학대의심<br>사례건수 | 시군구       | 배치완료<br>인원 | 2020년<br>학대의심<br>사례건수 |
|------------|------|------------|-----------------------|-----------|------------|-----------------------|
|            | 문경시  | 1          | 41                    | 의성군       | 1          | 29                    |
|            | 봉화군  | 1          | 15                    | 청도군       | 0          | 21                    |
|            | 상주시  | 0          | 28                    | 청송군       | 0          | 15                    |
|            | 성주군  | 1          | 29                    | 칠곡군       | 2          | 134                   |
|            | 안동시  | 3          | 151                   | 포항시       | 9          | 488                   |
|            | 영덕군  | 0          | 40                    | <b>합계</b> | <b>39</b>  | <b>1,875</b>          |
| 경남         | 거제시  | 3          | 208                   | 진주시       | 6          | 231                   |
|            | 거창군  | 1          | 18                    | 창녕군       | 1          | 19                    |
|            | 고성군  | 1          | 25                    | 창원시       | 7          | 431                   |
|            | 김해시  | 7          | 357                   | 통영시       | 2          | 109                   |
|            | 남해군  | 1          | 2                     | 하동군       | 1          | 7                     |
|            | 밀양시  | 1          | 41                    | 함안군       | 1          | 17                    |
|            | 사천시  | 2          | 55                    | 함양군       | 1          | 11                    |
|            | 산청군  | 1          | 3                     | 합천군       | 1          | 22                    |
|            | 양산시  | 3          | 179                   | <b>합계</b> | <b>41</b>  | <b>1,743</b>          |
|            | 의령군  | 1          | 8                     |           |            |                       |
| 제주         | 제주시  | 6          | 611                   | <b>합계</b> | <b>10</b>  | <b>859</b>            |
|            | 서귀포시 | 4          | 248                   |           |            |                       |
| <b>합 계</b> |      | <b>652</b> | <b>38,929</b>         |           |            |                       |

자료: 보건복지부

## 2-1. 학대피해아동쉼터 확충 계획의 준수를 위한 노력 필요

### 가. 현황

학대피해아동쉼터 지원사업<sup>4)</sup>은 「아동복지법」 제53조의2<sup>5)</sup>에 따라 아동학대사건 발생 시 학대재발위험이 높아서 원가정보보호가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 피해아동을 보호자로부터 분리·보호하여 학대피해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요보호아동그룹홈 운영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이다.

동 사업의 2022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65억 8,200만원이 증가한 173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2년도 학대피해아동쉼터 지원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20<br>결산 | 2021 <sup>1)</sup> |        | 2022<br>예산안(B) | 증감     |         |
|---------------------|------------|--------------------|--------|----------------|--------|---------|
|                     |            | 본예산                | 추경(A)  |                | B-A    | (B-A)/A |
| 요보호아동그룹홈<br>운영지원    | 22,585     | 26,746             | 26,746 | 39,426         | 12,680 | 47.4    |
| 학대피해아동쉼터<br>설치 및 운영 | 5,932      | 8,655              | 10,815 | 17,397         | 6,582  | 60.9    |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하며, 기금은 각각 2021년 당초계획과 9월말 기준 수정계획(자체변경 포함)을 의미

자료: 보건복지부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또는 경찰이 분리보호 조치한 학대피해아동에 한하여 입소하는 공동생활가정으로 학대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제공, 생활지원(생필품 지원, 일상생활 훈련 등), 상담 및 치료(심리치료 및 병원진료 등), 교육 및 정서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학대피해아동쉼터의 1개소당 인력은 2021년 7월 기준 6명으로 상근원장, 보육사 4명, 심리치료전문인력 1명으로 구성하며, 학대피해아동은 자신의 보호자가 가해

4) 일반회계 1334-301

5) 「아동복지법」

제53조의2(학대피해아동쉼터의 지정)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 중에서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치료, 양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지정할 수 있다.

자가 됨에 따라 심리적 후유증이 심각하여 쉼터마다 심리치료전문인력을 상근 배치하고 있다.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운영 형태는 최소 100㎡(방 4, 심리치료실 1 포함) 이상으로 아파트·단독주택 등으로 아동 7명이 생활하는 공동생활가정이다.

#### 나. 분석의견

**학대피해아동이 증가하는 상황에 대응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를 계획된 일정에 따라 실시하고 학대피해아동의 성별을 구분하여 설치하는 등 피해아동 특성에 따른 적절한 보호 인프라가 확충되도록 내실있는 사업관리가 필요하다.**

학대피해아동쉼터는 학대를 당한 피해아동을 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하여 안전하게 보호하는 곳으로 피해아동에게 숙식, 생활지원, 상담 및 치료, 교육 등을 제공한다.

2020년 학대피해아동쉼터(76개소)가 보호한 아동 수는 총 1,026명이었으며, 2020년 이전에 입소하여 지속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 수는 374명(36.5%), 2020년도에 입소한 아동은 652명(63.5%)로 나타났다.

[학대피해아동쉼터 입소현황]

| 구분   | 2020년 이전 입소아동 | 2020년 입소아동  | 총 보호아동       |
|------|---------------|-------------|--------------|
| 아동 수 | 374명(36.5%)   | 652명(63.5%) | 1,026명(100%) |

자료 : 보건복지부

2020년 학대피해아동쉼터에서 보호한 아동 1,026명 중 퇴소한 아동은 526명(51.3%)으로 학대피해아동쉼터에서 거주한 기간은 1개월 미만 175명(33.3%), 6개월 이상 ~ 1년 미만 113명(21.5%), 1개월 이상~3개월 미만이 107명(20.3%) 순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피해아동은 학대피해아동쉼터에 3~6개월 정도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지역별 수용와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 1개당 최소 2개소(남, 여) 설치를 원칙으로 하여, 관련 연구결과 등을 참조하여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적정한 설치 규모를 120개소<sup>6)</sup>로 정할 시 학대피해아동쉼터 240개소를 확충 목표로 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1년도에 학대피해아동쉼터 확충 계획으로 신규 29개소를 더한 105개소로 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 예산안에는 35개의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신규로 확충할 계획이다.

그러나 2021년 8월 현재 2021년도 학대피해아동쉼터 신규 설치 목표 개수인 29개소 중 5개소만 설치되어 계획 대비 설치 실적이 17.2%로 부진하고 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현황]

| 구분 | 2020 | 2021       |                | 2022(안)    |
|----|------|------------|----------------|------------|
|    |      | 목표         | 실적<br>8.18. 현재 |            |
| 개소 | 76개소 | 105(+29)개소 | 81(+5)개소       | 140(+35)개소 |

자료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러한 저조한 설치 실적 사유로 예산지원 범위에 부합한 적정한 장소 확보가 어렵고 위탁법인 모집절차 수행 및 개소준비 시일이 소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2021년 3월 말부터 정부는 아동학대사건이 발생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학대피해아동을 아동일시보호시설이나 학대피해아동쉼터에 입소시키거나 위탁가정 및 개인에게 일시 위탁하는 ‘즉각분리 제도’<sup>7)</sup>를 시행하고 있고, 아동학대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학대피해 아동을 가해자와 분리하여 보호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의 확보가 필수적이다.<sup>8)</sup>

또한 학대피해아동쉼터는 피해아동의 성별을 분리하여 입소시켜야 하는데 학대

6)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적정 규모 산출은 ‘2020년 아동보호전문기관 적정규모 연구(가톨릭대 산학협력단)’ 결과에 의한 것이다.

7) 즉각 분리제도란 「아동복지법」 제15조제6항에 근거하여 1년 이내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경우 등 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조치 전까지 아동학대 피해아동을 보호시설, 위탁가정 등에 위탁하는 제도이다.

8) 2020년 기준으로 아동학대사례로 판단된 30,905건 중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정원 초과 등의 사유로 쉼터에 입소하지 못하고 대부분의 피해아동은 원가정으로 복귀(25,916건(83.9%))하고 있다.



피해아동의 성별 비율은 비슷하나(남아 51%, 여아 49%), 현재 여아를 위한 쉼터가 전체 쉼터 81개소 중 50개소(61%)로 나타나 피해 아동 중 남아를 위한 쉼터 설치가 더욱 필요한 실정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는 당초 계획대로 학대피해 아동 쉼터를 아동보호전문기관 1개당 최소 남아·여아용 쉼터를 각각 1개소씩 확충하는 계획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분리보호가 필요한 학대피해아동이 증가하는 상황에 대응하여 쉼터설치를 계획된 일정에 따라 설치하여 피해아동 특성에 따른 적절한 보호 인프라가 확충되도록 내실있는 사업관리가 필요하다.<sup>9)</sup>

---

9) 또한, 연령 및 장애아동 등 아동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보호 인프라 확충과 관련해서 복지부는 만 6세 미만 영유아는 전문교육을 받은 위탁 가정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위기아동 가정보호” 사업을 활성화하고, 장애아동은 내년부터 별도의 쉼터 신설을 추진하여 보호하는 등 피해아동 특성에 따른 보호 인프라 설치 계획을 수행할 계획이다.

## 2-2.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녹취록 작성장비 한시지원 사업의 조사 업무량을 고려한 장비 배부기준 마련 필요

### 가. 현 황

아동학대조사 녹취록 작성장비 한시지원 사업<sup>10)</sup>은 「아동복지법」 제22조제1항<sup>11)</sup>에 따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녹취록 작성 업무를 자동화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조사업무 효율화 및 업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아동정책조정 및 인권증진’ 사업의 내역사업이다.

이 사업은 2022년도 신규사업으로 예산안은 11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2년도 아동학대조사 녹취록 작성장비 한시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20<br>결산 | 2021 <sup>1)</sup> |       | 2022<br>예산안(B) | 증감     |         |
|-------------------------------|------------|--------------------|-------|----------------|--------|---------|
|                               |            | 본예산                | 추경(A) |                | B-A    | (B-A)/A |
| 아동정책조정 및<br>인권증진사업            | 4,803      | 4,313              | 4,313 | 3,152          | △1,161 | △26.9   |
| 아동학대조사<br>녹취록 작성장비<br>한시지원 사업 | 0          | 0                  | 0     | 1,145          | 1,145  | 순증      |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하며, 기금은 각각 2021년 당초계획과 9월말 기준 수정계획(자체변경 포함)을 의미

자료: 보건복지부

10) 일반회계 1337-304

11) 「아동복지법」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교육·홍보 및 아동학대 실태조사
3. 아동학대에 관한 신고체계의 구축·운영
4.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피해아동의 가정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사항

## 나. 분석의견

보건복지부는 녹취록 작성장비 도입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각 지방자치단체의 아동학대 발생에 따른 조사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보급하는 등 배부기준을 합리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동학대조사 녹취록 작성장비 한시지원 사업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학대를 당한 피해아동 등에 대하여 피해 조사 시에 녹취한 음성자료를 텍스트로 정리하는 업무를 자동화하는 장비를 구입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조사업무를 효율화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이동형 음성인식 녹취록 작성 장비를 229개 시군구에 1대씩 보급하는 사업으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작성 장비를 이용하여 학대피해사례조사 등에 활용하게 할 계획이다.

[아동학대조사 녹취록 작성장비 한시지원 사업 2022년도 예산안 편성내역]

| 편성내역  |
|---|
| 1,145백만원<br>· 229개 시군구 × 10백만원 × 50% = 1,145백만원 |

자료: 보건복지부

이동형 음성인식 녹취록 작성 장비를 사용하게 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2021년 9월 기준으로 652명이 배치되어 있으며, 배치 인원이 많은 광역지방자치단체 순으로 경기 120명, 서울 86명, 부산 46명, 인천 45명, 충남 및 전북 44명 등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현황: 2021. 9. 1. 기준]

(단위: 명, 건)

| 구 분 | 배치완료 인원 | 2020년 학대의심 사례건수 |
|-----|---------|-----------------|
| 서울  | 86      | 4,167           |
| 부산  | 46      | 2,112           |
| 대구  | 32      | 1,719           |
| 인천  | 45      | 3,099           |
| 광주  | 16      | 858             |
| 대전  | 19      | 1,645           |
| 울산  | 27      | 1,402           |
| 경기  | 120     | 9,192           |
| 강원  | 24      | 1,404           |
| 충북  | 21      | 1,288           |
| 충남  | 44      | 2,374           |
| 세종시 | 4       | 371             |
| 전북  | 44      | 2,453           |
| 전남  | 34      | 2,368           |
| 경북  | 39      | 1,875           |
| 경남  | 41      | 1,743           |
| 제주  | 10      | 859             |
| 합계  | 652     | 38,929          |

자료: 보건복지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전문성 강화 방안 연구용역’(2020.12.~2021.5.)에 따르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연간 적정 사례 건수는 44.7건(장거리지역), 52.5건(단거리지역)으로 분석되었으나, 2020년 사례 건수를 기준으로 볼 때도, 2021년 9월 기준으로 배치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1인당 학대의심사례 60건 가량을 담당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되며, 아동학대 발견율<sup>12)</sup>이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할 때 이 부담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동형 음성인식 녹취록 작성 장비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업무부담을 경감시키는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시군구별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현황 및 1인당 학대의심사례건수 조사량 등을 고려하여 배부계획을 마련하는 등 실제 업무여건에 부합하도록 사업계획을 면밀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12) 2016년 2.15%, 2017년 2.64%, 2018년 2.98%, 2019년 3.81%, 2020년 4.02%

## 2-3. 방문형 가정회복 시범사업의 사업운영에 대한 성과평가 강화 필요

### 가. 현황

방문형 가정회복 시범 사업<sup>13)</sup>은 「아동복지법」 제45조<sup>14)</sup>에 따라 아동학대가 발생한 가정을 대상으로 재학대 예방 등을 위하여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가족 회복 프로그램 등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보호’ 사업의 내역사업이다.

이 사업은 2022년도 신규사업으로 예산안은 22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2년도 방문형 가정회복 시범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20<br>결산 | 2021 <sup>1)</sup> |        | 2022<br>예산안(B) | 증감    |         |
|---------------------|------------|--------------------|--------|----------------|-------|---------|
|                     |            | 본예산                | 추경(A)  |                | B-A   | (B-A)/A |
| 아동학대 예방 및<br>피해아동보호 | 23,735     | 28,735             | 28,735 | 38,083         | 9,348 | 32.5    |
| 방문형 가정회복<br>시범사업    | 0          | 0                  | 0      | 2,215          | 2,215 | 순증      |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하며, 기금은 각각 2021년 당초계획과 9월말 기준 수정계획(자체변경 포함)을 의미

자료: 보건복지부

### 나. 분석의견

방문형 가정회복 시범사업은 학대피해아동, 가족, 등에 맞춤형 사례관리를 통해 재학대 방지 및 치유 회복을 돕기 위함 뿐 아니라, 2023년 10월부터 심층 사례관리기관으로 전환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 정립과 기능 체질화를 위해 도입하였으므로, 시범사업 우수사례 공유 등 사업 운영에 대한 성과평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13) 일반회계 1339-301

14) 「아동복지법」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② 지방자치단체는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도 및 시·군·구에 1개소 이상 두어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아동 수 및 지리적 요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는 경우 시·도지사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관할 구역의 아동의 수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방문형 가족회복 시범사업은 재학대 예방을 위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직접 원 가정 보호아동 1,000가구를 대상으로 가족기능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아동·부모·가족 대상 심리검사 및 심리치료 등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방문형 가족회복 시범사업을 실제 추진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수는 2020년 기준으로 중앙 및 지역기관 68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각 기관의 종사자 수는 평균 17명이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현황: 2020년]

| 지자체명 | 개소 수  | 지자체명 | 개소 수 | 지자체명 | 개소 수 |
|------|-------|------|------|------|------|
| 서울   | 10(2) | 울산   | 2    | 전북   | 4    |
| 부산   | 4(1)  | 세종   | 1    | 전남   | 4    |
| 대구   | 3     | 경기   | 14   | 경북   | 4    |
| 인천   | 3     | 강원   | 4    | 경남   | 3    |
| 광주   | 2     | 충북   | 3    | 제주   | 2    |
| 대전   | 2     | 충남   | 3    | 합계   | 68   |

주: ( )의 수는 지방자치단체 직영 운영기관의 수이며, 서울의 경우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수를 포함함  
 자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동 시범사업은 기존에 민간에서 실시한 심층사례관리 사업('아동보호 통합지원 전문서비스 모형 개발·시범사업'<sup>15)</sup>, 굿네이버스)을 벤치마킹하여 재학대를 발생이 억제된 효과<sup>16)</sup>에 따라 계획하였다고 설명하였다.

2022년도 방문형 가족회복 시범사업에 대해 추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나 세부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프로그램 진행비와 심리검사 및 심리치료비로 전체 사업비의 66.8%인 14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다.

15) '아동보호 통합지원 전문서비스 모형 개발·시범사업'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서비스 실천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학대피해아동과 가족을 위한 아동보호 통합지원 전문서비스 개발을 목적으로 2016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33개월 동안 실시된 사업이다. 총 10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참여하였으나 실제 4개 기관만 실시하였으며, 480가정(아동 820명)이 참여하였다. 상담원 1인당 15가구(25사례) 이하를 담당하여 서비스를 운영하였다.

16) 동 기간(18개월) 내 서비스이용집단에서 발생한 재학대율은 3.92%, 미이용 집단 재학대율은 8.28%로 4.4%p 차이로 서비스 이용집단 아동의 재학대율이 서비스 미이용 집단에 비해 약 2배 가량 낮아 재학대 발생 억제 효과가 나타났다.

또한, 프로그램 운영비인 직접 사업비 외에 가정방문에 따른 여비와 아동보호전문기  
 관의 상담원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비 718백만원이 편성되어있다.

[방문형 가족회복 시범사업 2022년도 예산안 편성 세부내역(안)]

| 구 분         |                        | 프로그램 운영 세부 편성내역   |
|-------------|------------------------|---|
| 운<br>영<br>비 | 프로그램<br>진행비            | 632백만원<br>· 가족관계개선 프로그램 운영 및 활동지원비 등                              |
|             | 심리검사<br>및<br>심리치료<br>비 | 780백만원<br>· 법원 보호처분 이행관리비(상담 및 교육위탁)<br>· 심리검사 및 치료 도구 구입 및 심리치료비 |
|             | 기타                     | 68백만원<br>· 설문조사 수행, 전문가 자문, 내·외부 사례회의 등                           |
| 관<br>리<br>비 | 상담원<br>여비<br>교육비       | 718백만원<br>· 상담원 전문성 확보를 위한 외부교육비 지원 및 상담원 여비                      |
|             | 사업관리<br>지원             | 17백만원<br>· 사업 매뉴얼 제작 및 우수사례 공유회<br>· 사업평가 및 자문회의, 점검 및 간담회        |

자료: 보건복지부

방문형 가족회복 시범사업의 대상 가정은 수행기관인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 67  
 개소 중 20개소에서 각 50가정을 선정하여 수행할 계획이다.

2020년 10월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sup>17)</sup> 이전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피해  
 아동의 안전확인 및 외부기관 서비스 연계 위주의 사례관리를 수행하고 하였으나,  
 2023년 10월부터 심층 사례관리기관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22년부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강화를 위하여 보건복지부

17) 아동학대조사 공공화(2020년 10월)란 그동안 민간이 중심이 되어온 아동보호체계를 전면 개편하여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공적 책임 강화를 위한 노력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아동학대 신고의 접수(112 또는 지  
 방자치단체) 이후에 시군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경찰과 함께 아동학대 여부 조사, 필요 시 응급조치(분  
 리보호 등), 학대 여부 판단과 피해 아동 보호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는 아동학대를 유발하는 요인을 제거하고 재학대 방지를 위해 가족기능 회복 등 가정 환경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는 사례관리 사업의 추진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번 시범사업 대상 가정은 재학대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심화 사례관리사업으로서 성공적인 운영성과 관리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시범사업의 운영에 대한 사례공유 성과분석 및 평가 횟수를 확대하고, 예산 안에 편성된 사업추진현황 점검 지원도 강화하는 등 시범사업의 성과분석을 강화하고 동 사업의 원활한 도입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충실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 가. 현황

코로나19 백신 임상지원 사업<sup>1)</sup>은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하여 국내 유망 백신 개발 기업을 대상으로 개발에 필요한 임상시험 비용을 지원하여 국내 자체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촉진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2022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1,249억원(74.9%)이 감액된 418억원이 편성되었다.

[2022년도 코로나19 백신 임상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20<br>결산 | 2021 <sup>1)</sup> |         | 2022<br>예산안(B) | 증감       |         |
|--------------------|------------|--------------------|---------|----------------|----------|---------|
|                    |            | 본예산                | 추경(A)   |                | B-A      | (B-A)/A |
| 코로나19 백신 임상지원(R&D) | 49,000     | 68,700             | 166,700 | 41,800         | △124,900 | △74.9   |
| 코로나19 백신 임상지원      | 48,000     | 68,000             | 166,000 | 41,500         | △124,500 | △75.0   |
| 사업단 운영비            | 1,000      | 500                | 500     | 300            | △200     | △40.0   |
| 기획평가관리비            | -          | 200                | 200     | -              | △200     | △100.0  |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함

자료: 보건복지부

백신은 병원체를 약하게 만들어 인체에 주입, 항체를 형성하게 하여 그 질병에 저항하는 후천적 면역이 생기도록 하는 의약품이다. 또한, 임상시험은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증명하고자 해당약물의 효과를 확인하고 이상반응을 조사하기 위하여 비임상시험 이후에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시험 또는 연구를 의미하며, 제1상 임상시험~제4상 임상시험으로 구분된다.

최경덕 예산분석관(choi8807@assembly.go.kr, 6788-3728)

1) 코드: 일반회계 2750-303

[임상시험(제1상~제4상)의 단계별 구분]

| 구분       | 내용                                      |
|----------|---|
| 제1상 임상시험 | 비임상 이후 최초로 사람에게 투여, 안전성·약동학 등을 평가       |
| 제2상 임상시험 | 1상 종료 후, 대상 환자들에게 투여하여 치료효과를 탐색         |
| 제3상 임상시험 | 2상 종료 후, 많은 환자들에게 투여하여 안전성 및 치료효과를 확증   |
| 제4상 임상시험 | 약물의 최적 사용법 등을 포함한 부가적 정보를 얻기 위해 시판 후 진행 |

자료: 보건복지부

2022년 동 사업 수행을 위한 예산안에는 총 418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중 415억원은 기업들의 임상시험 지원, 나머지 3억원은 사업단 운영비를 위한 금액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1상 임상시험 2개 과제에 각 22.5억원씩 45억원, 제2상 임상시험 3개 과제에 각 60억원씩 180억원, 제3상 임상시험 1개 과제에 190억원이 편성되어 있다. 제1상~제3상 임상시험 과제의 단가는 각각 30억원, 80억원, 900억원이며 국고지원비율은 75%를 적용하였는데, 이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제1항<sup>2)</sup> 및 별표1<sup>3)</sup>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연구개발비의 100분의 75까지 국고를 지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지원과제수 및 연구비는 후보물질, 임상단계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특히 제3상 임상시험에 대한 지원은 제약사의 진행상황 등에 따라 2021년 예산(본예산 및 제2회 추경예산)과 통합하여 유동적으로 대응 및 지원할 예정이다.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연구개발비의 지원과 부담)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으로 하여금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이하 “기관부담연구개발비”라 한다)를 부담하게 해야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이하 “공기업”이라 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3)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1 중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 구분                                | 지원기준               |
|-----------------------------------|--------------------|
| 가. 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 연구개발비의 100분의 75 이하 |
| 나. 제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 연구개발비의 100분의 70 이하 |
| 다. 제1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 연구개발비의 100분의 50 이하 |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코로나19 백신 임상지원 사업의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내역]

|  |
|--|
| ○ 코로나19 백신 임상지원 = 418억원                          |
| - 백신 임상지원 = 415억원                                |
| (임상 1상) 2개 과제 × 22.5억원(30억원 × 75%) = 45억원        |
| (임상 2상) 3개 과제 × 60억원(80억원 × 75%) = 180억원         |
| (임상 3상) 1개 과제 × 190억원(900억원 × 75% × 28%) = 190억원 |
| - 사업단 운영비 = 3억원                                  |

자료: 보건복지부

참고로, 국내 백신 개발을 위한 동 사업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간의 협약,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신약개발사업단 간의 협약을 통해 추진된다. 총괄기관인 보건복지부는 사업 구성 및 출연금 편성 등 관리 총괄을 담당하며, 전문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출연금에 대한 관리 및 사업단 관리 등을 수행하며,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신약개발사업단은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데, 세부과제 선정, 세부과제의 협약·평가·성과 등에 대한 관리를 담당한다.

[코로나19 백신 임상지원 사업 추진 절차 개요]



나. 분석의견

동 사업에 2020~2021년 기편성된 예산 2,157억원 비하여 다소 적은 규모인 384억원이 실제 국내 제약사에게 지원이 확정된 상황에서 동 사업의 2022년도 예산안에 418억원이 편성된 바, 보건복지부는 국내 제약사의 임상시험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적시에 지원하여 국내 백신 개발 역량을 신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내 코로나19 백신 개발 제약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2020년 제3회 추경예산에 490억원, 2021년 본예산에 687억원, 2021년 제2회 추경예산에 980억원 등 총 2,15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번 2022년 예산안에는 418억원을 추가적으로 편성하였다.

과제선정을 위한 공모는 2020년 3차례, 2021년 4차례 등 총 7차례가 진행되었다. 2020년에는 총 9개(1차 5개, 2차 2개, 3차 2개)의 과제가 접수되었으며, 이 중 1차 공모에서 제넥신, SK바이오사이언스, 진원생명과학의 과제가 각 1개씩 총 3개, 3차 공모에서 셀리드, 유바이오로지스의 과제가 각 1개씩 총 2개 등 2020년에 총 5개의 과제가 선정되었다.

2021년에는 총 9개(1차 1개, 2차 1개, 3차 4개, 4차 3개)의 과제가 접수되었으며, 이 중 3차 공모에서 큐라티스, HK이노엔의 과제가 각 1개씩 총 2개의 과제가 선정되었다. 4차 공모는 9월 24일 마감되었으며, 4차 공모에 접수된 3개의 과제에 대한 선정은 11월 중순에 완료될 예정이다.

[코로나19 백신 임상지원 사업 공모 및 선정 현황(2020~2021년)]

| 연도   | 차수 | 공모기간              | 접수 및 선정 과제 현황 |                                       |
|------|----|-------------------|---------------|---------------------------------------|
|      |    |                   | 접수 과제 수       | 선정 제약사(과제 수)                          |
| 2020 | 1차 | 2020.7.27.~8.5.   | 5개            | 제넥신(1),<br>SK바이오사이언스(1),<br>진원생명과학(1) |
|      | 2차 | 2020.9.23.~10.12. | 2개            | -                                     |
|      | 3차 | 2020.12.1.~12.23. | 2개            | 셀리드(1),<br>유바이오로지스(1)                 |
| 2021 | 1차 | 2021.1.25.~2.15.  | 1개            | -                                     |
|      | 2차 | 2021.3.12.~4.2.   | 1개            | -                                     |
|      | 3차 | 2021.5.25.~6.25.  | 4개            | 큐라티스(1),<br>HK이노엔(1)                  |
|      | 4차 | 2021.8.20.~9.24.  | 3개            | 11월 중순 선정완료(예정)                       |

자료: 보건복지부

동 사업을 통해 현재까지 선정된 6개 제약사의 국비 지원액은 제넥신 92.7억원, SK바이오사이언스 16억원, 진원생명과학 73.7억원, 셀리드 63.3억원, 유바이오로지스 94.2억원, HK이노엔 44억원이며, 지원기간은 SK바이오사이언스는 6개월, 나머지 5개 제약사는 약 1년이다. 큐라티스는 2021년 3차 공모에서 선정되었으나, 현재 국비 지원액 관련 협약이 진행 중이다.

선정된 7개 제약사 중 큐라티스와 HK이노엔을 제외한 5개 제약사는 제1상 임상시험 접종을 완료하였으며, 제넥신, 셀리드, 유바이오로지스는 제2상 임상시험 접종 완료 후 현재 결과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코로나19 백신 임상지원 사업 선정 및 해당 기업 임상시험 진행 현황]

(단위: 억원)

| 기관명       | 연구개발비  |        | 선정일        | 지원기간                    | 플랫폼<br>(개발대상)              | 임상시험 진행 현황   |                          |
|-----------|--------|--------|------------|-------------------------|----------------------------|--|--------------------------|
|           | 총 연구비  | 국비 지원액 |            |                         |                            | 제1상  | 제2상                      |
| 제넥신       | 124    | 92.7   | '20.08.19. | '20.09.15. ~ '21.09.14. | DNA백신 <sup>1)</sup>        | 접종 완료/<br>중간결과<br>보고서 확보                             | 접종 완료/<br>결과분석중          |
| SK바이오사이언스 | 32     | 16     | '20.12.7.  | '20.12.7. ~ '21.6.6.    | 합성항원<br>백신 <sup>2)</sup>   | 접종 완료/<br>중간결과<br>보고서 확보                             | -                        |
| 진원생명과학    | 98     | 73.7   | '20.12.29. | '20.12.29. ~ '21.12.28. | DNA백신                      | 접종 완료/<br>결과분석완료                                     | 임상진행중                    |
| 셀리드       | 84     | 63.3   | '21.1.22.  | '21.2.1. ~ '22.1.31.    | 바이러스<br>백터백신 <sup>3)</sup> | (초기물질)<br>결과분석완료/<br>(개량물질)<br>1상 진행 중 <sup>4)</sup> | (초기물질)<br>접종완료/<br>결과분석중 |
| 유바이오로지스   | 126    | 94.2   | '21.1.22.  | '21.2.1. ~ '21.11.30.   | 합성항원<br>백신                 | 접종 완료/<br>결과분석완료                                     | 접종완료/<br>결과분석중           |
| 큐라티스      | 협약 진행중 |        | '21.7.30.  | -                       | mRNA백신                     | -  | -                        |
| HK이노엔     | 73.5   | 44     | '21.7.30.  | '21.9.1. ~ '22.8.31.    | 합성항원<br>백신                 | 임상진행중  | -                        |

주: 1) 바이러스의 표면항원 유전자(DNA)를 주입해 체내에서 표면항원 단백질을 생성해 면역반응을 유도  
 2) 유전자재조합 기술을 이용해 만든 바이러스의 표면항원 단백질을 직접 주입하여 면역반응 유도  
 3) 바이러스의 표면항원 유전자를 다른 바이러스 주형에 넣어 주입해 체내에서 표면항원 단백질을 생성하여 면역반응 유도  
 4) AdCLDCoV19(초기 물질): 임상 2상 접종 완료, AdCLDCoV19-1(개량물질): 임상 1상 진행 중  
 1. 동 표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원받은 과제를 기준으로 진행 현황을 작성하였음

자료: 보건복지부

그런데, 상술한 바와 같이 동 사업에 3차례(2020년 제3회 추경예산, 2021년 본예산, 2021년 제2회 추경예산)에 걸쳐 편성된 예산은 총 2,157억원이나 2021년 9월 24일 기준으로 실제 국내 제약사에게 지원이 확정된 금액은 2,157억원<sup>4)</sup>의 17.8% 수준인 384억원이다.

[코로나19 백신 임상지원 사업의 편성액 중 지원확정액 및 잔액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 편 성          |                     |     | 지원<br>확정액(B) | 잔액<br>(A-B) |
|--------------|--------------|---------------------|-----|--------------|-------------|
|              | 제약사<br>지원(A) | 기타<br>(사업단 운영비+기평비) | 계   |              |             |
| 2020년 제3회 추경 | 480          | 10                  | 490 | 384          | 96          |
| 2021년 본예산    | 680          | 7                   | 687 | 0            | 680         |
| 2021년 제2회 추경 | 980          | -                   | 980 | 0            | 980         |

자료: 보건복지부

편성된 예산에 비하여 실제 국내 제약사에게 지원이 확정된 금액이 상당히 적은 상황에서 보건복지부는 2022년도 예산안에 418억원을 편성하였다. 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동 사업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의 결과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2021년 8월 24일)를 거쳐 도출되었으며 이에 따른 총사업비는 국고 기준 2,582억원인 바, 해당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기편성액인 2,157억원을 고려하여 2022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다고 설명하였다.<sup>5)</sup>

또한, 보건복지부는 2021년 하반기에 아이진(1/2a상, 2021년 8월 31일 식약처 임상시험계획 승인) 등 1~2개 제약사가 추가로 새롭게 임상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진행이 순조로운 경우 2022년에는 이들 기업이 제2상~제3상 임상시험에 진입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 외에, 2021년 코로나19 치료제·백신 비임상시험 지원 사업에서 선정하여 지원중인 4개 제약사(아이진, LG화학, 스마젠, 유바이오로직스<sup>6)</sup>) 및 자체적으로 코로나19 백신 비임상단계 개발중인 제약사들 중 일부가 내년

4) 2,157억원 중 사업단 운영비와 기평비를 제외한 금액은 2,140억원이다.

5) 국고 기준 총사업비는 2,582억원과 기편성액 2,157억원(2020년 제3회 추경예산 490억원 + 2021년 본예산 687억원 + 2021년 제2회 추경예산 980억원)의 차이는 425억원이다.

6) 유바이오로직스는 현재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위한 제2상 임상시험을 진행중으로, 변이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을 추가로 개발중이다.

에 새롭게 임상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각 임상 단계별 성공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2년도 예산안 규모를 결정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코로나19 백신 임상지원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결과]

(단위: 억원)

| 구 분    | 2021(A) |       |     | 2022(B) |     |     | 합계(A+B)          |                  |     |
|--------|---------|-------|-----|---------|-----|-----|------------------|------------------|-----|
|        | 계       | 국고    | 민간  | 계       | 국고  | 민간  | 계                | 국고               | 민간  |
| 임상 1상  | 60      | 42    | 18  | 40      | 28  | 12  | 100              | 70               | 30  |
| 임상 2상  | 40      | 28    | 12  | 120     | 84  | 36  | 160              | 112              | 48  |
| 임상 3상  | 1,800   | 1,262 | 538 | 900     | 631 | 269 | 2,700            | 1,893            | 807 |
| 사업단운영비 | 7       | 7     | -   | 10      | 10  | -   | 17               | 17               | -   |
| 합계     | 1,907   | 1,339 | 568 | 1,070   | 753 | 317 | 2,977<br>(3,467) | 2,092<br>(2,582) | 885 |

주: 1. 팔호안의 숫자는 2020년 기투자액 490억원을 고려한 2020~2022년 총 규모임  
 2. 동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결과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및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2021년 8월 24일)를 거침  
 3. 동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결과에 따르면, 2021~2022년 적정 지원과제 수는 제1상 임상시험 5개, 제2상 임상시험 4개, 제3상 임상시험 3개이며, 동 표의 총사업비는 이에 필요한 총사업비를 의미함  
 자료: 보건복지부

현재 시점에서 편성된 예산에 비하여 실제 국내 제약사에게 지원 확정된 금액이 다소 적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제3상 임상시험은 제1상~제2상 임상시험에 비하여 소요되는 예산의 규모가 크다는 점<sup>7)</sup>, 제3상 임상시험에 진입하여 수행중인 국내 제약사가 있다는 점<sup>8)</sup>, 동 사업의 2022년도 예산안 규모가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결과를 충분히 반영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동 사업의 2022년도 예산안 편성 규모는 적절한 수준으로 보인다.

다만, 동 사업에 기편성된 예산 2,157억원 비하여 다소 적은 규모인 384억원이 실제 국내 제약사에게 지원이 확정된 상황에서 동 사업의 2022년도 예산안에 418억원을 편성한 바, 보건복지부는 국내 제약사의 임상시험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적시에 지원하여 국내 백신 개발 역량을 신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7) 동 사업을 기준으로 제1상 임상시험의 단가는 30억원, 제2상 임상시험의 단가는 80억원이나, 제3상 임상시험의 단가는 이들의 약 30배, 11배 수준인 900억원이다.  
 8) 현재 SK바이오사이언스는 동 사업에서 지원받고 있는 후보물질을 활용한 임상시험 외에 제3상 임상시험을 진행중에 있으며, 해당 제3상 임상시험이 진행중인 후보물질에 대하여는 국제민간기구인 전염병대비혁신연합(CEPI)으로부터 대규모 투자지원을 받았다.

### III

## 개별 사업 분석

### 1 기초생활보장제도 사업 예산안 검토사항

2000년부터 도입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존 통합급여<sup>1)</sup>에서 2015년 7월부터 시행된 ‘맞춤형 급여’로 개편되면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급여별 수급자를 선정하고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생계, 의료, 해산장제급여를 소관하고, 국토교통부는 주거급여, 교육부는 교육급여를 소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소관 2022년도 생계 및 의료급여 사업 주요 제도개선]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대상자 기준         | 주요 제도개선   |
|------|----------------|---|
|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 2017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 및 2021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2017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자료: 보건복지부

2015년 7월부터는 생계, 의료, 주거 및 교육급여의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을 별도로 마련하고, 급여별로 대상자를 선정하는 ‘맞춤형 급여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부양의무자 기준<sup>2)</sup> 적용과 관련해서는 교육급여의 경우 2015년 7월 맞춤형 급여 시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고, 주거급여의 경우 2018.10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였다. 생계급여의 경우 2017년 11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여 2021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였고, 의료급여의 경우 2017년 11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2022년에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이은미 예산분석관(eunmee@assembly.go.kr, 6788-4638)

- 1) 통합급여란 기준선을 초과할 경우 모든 급여가 중지("All or Nothing") 되고, 낮은 급여수준, 엄격한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탄력적인 보호에 한계가 존재하였다.
- 2)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가구의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1촌 직계혈족(부모·자녀)의 소득·재산 수준을 고려하여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이다



## 1-1.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인한 신규 지원 대상자 추계의 정확성 제고 필요

### 가. 현황

생계급여 사업<sup>3)</sup>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sup>4)</sup>에 따라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생계급여 지급을 통해 수급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2022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6,569억 800만원이 증가한 5조 2,647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2년도 생계급여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20<br>결산 | 2021      |           | 2022<br>예산안(B) | 증감      |         |
|------|------------|-----------|-----------|----------------|---------|---------|
|      |            | 본예산       | 추경(A)     |                | B-A     | (B-A)/A |
| 생계급여 | 4,001,124  | 4,607,864 | 4,655,454 | 5,264,772      | 656,908 | 14.3    |

자료: 보건복지부

생계급여 시설수급자를 제외한 일반 수급 가구 수는 2021년 7월 기준으로 159만 가구이며, 수급자 수는 230만명으로 인구 대비 약 4.46%를 차지하고 있다.

수급자의 비중은 매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서, 2017년 11월부터 시작된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 등으로 인하여 증가한 수급가구 및 수급권자수는 2021년 6월 기준 18만 9,980가구, 24만 2,033명으로 집계된다<sup>5)</sup>. 또한, 정부는 2021년

3) 코드: 일반회계 1131-300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급여의 종류)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解産給與), 장제급여(葬祭給與), 자활급여 이다.

5)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른 수급권자 현황: 2017~2021.6월 제도개선 실적(누계)]

| 노인(부양의무자) |         | 장애인(부양의무자) |        | 한부모      |         |
|-----------|---------|------------|--------|----------|---------|
| 가구수       | 수급권자수   | 가구수        | 수급권자수  | 가구수      | 수급권자수   |
| 144,582   | 201,005 | 20,118     | 27,491 | 1,993    | 3,807   |
| 보호종료      |         | 중증장애인      |        | 합계(중복제외) |         |
| 가구수       | 수급권자수   | 가구수        | 수급권자수  | 가구수      | 수급권자수   |
| 630       | 764     | 35,517     | 48,585 | 189,980  | 242,033 |

자료: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2022년 1월부터 폐지 계획이었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1년 10월로 앞당겨 조기 폐지하여 시행함에 따라 2021년 말과 2022년에도 생계급여 수급자의 수는 증가할 전망이다.

[최근 5년간 기초생활보장 가구 수, 수급자 수 및 인구현황]

| 연 도    | 수급자 가구수<br>(시설수급 제외) | 수급자 수<br>(천명) | 인구<br>(천명) | 인구 대비<br>수급자 비율(%) |
|--------|----------------------|---------------|------------|--------------------|
| 2016   | 1,035,435            | 1,631         | 51,696     | 3.15               |
| 2017   | 1,032,996            | 1,582         | 51,779     | 3.06               |
| 2018   | 1,165,175            | 1,744         | 51,826     | 3.37               |
| 2019   | 1,281,759            | 1,881         | 51,850     | 3.63               |
| 2020   | 1,459,059            | 2,134         | 51,829     | 4.11               |
| 2021.7 | 1,586,239            | 2,303         | 51,672     | 4.46               |

자료: 보건복지부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현황]

| 구분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추진 내용  |
|------------------|--|
| 1단계<br>(‘17.11월) | ▶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 장애인 또는 노인이 모두 포함된 소위 ‘老-老 부양, 障-障 부양’인 경우   |
| 2단계<br>(‘18.10월) | ▶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 3단계<br>(‘19.1월)  | ▶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 장애인(장애인연금 수급자)이 포함된 경우 생계급여는 노인(기초연금 수급자)이 포함된 경우*도 기준 적용 제외<br>▶ 만 30세미만 한부모가구 및 보호종결아동에 대한 생계·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br>* 저소득층 일자리·소득 지원 대책(‘18.7월)에 따라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당초 ‘22년 1월 시행예정이었으나, ‘19.1월부터 조기 시행 |
| 4단계<br>(‘22.1월)  | ▶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기초연금 수급자)이 포함된 경우 의료급여에 대한 기준 적용 제외<br>*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는 2021년 10월부터 조기 시행(2021년 제2회 추경 반영)  |

자료: 보건복지부

## 나. 분석의견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제도개선에 따른 차년도 지원 수급자 수를 정확히 추계함으로써 예산이 과소·과다추계되지 않도록 하고, 예산편성 시 ‘제도개선분’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기존에는 생계급여 수급권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 및 자산 기준 외에도 부양의무자 기준<sup>6)</sup>을 충족해야 했으나, 2017년 11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 시작하여 2021년 10월부터는 부양의무자가 연 1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거나 9억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하였다.

2022년 생계급여 예산안은 수급자 가구에 대한 급여비 5조 2,647억 7,200만원과 사업관리비 36억 9,200만원(실태조사비 20억원 포함)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2020년 평균 생계급여 수급자수와 2022년 생계급여액 기준을 기초로 급여액을 산출한 후,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및 근로소득공제 확대 등 제도개선에 따른 증액 6,345억 7,800만원과 평균 국고보조율 83.13%를 반영하여 산출한 금액이다.

[생계급여 사업 2022년 예산안 세부 내역]

| 구분           | 주요 내용   | 예산안                     |
|--------------|---|-------------------------|
| 생계급여         | ·(대상자 수) '20년 평균 수급자 수 적용<br>( '21년) 125만명(일반 116만명, 시설9만명) 85.2만가구<br><b>( '22년) 128만명(일반 119만명, 시설9만명) 89.8만가구</b> ·(급여 수준) 기준 중위소득 변동에 따른 급여액 증액<br>최대급여액(4인가구) : ( '21년) 1,462,887원 → ( '22년) 1,536,324원<br>시설생계급여 : ( '21년) 265,404원 → ( '22년) 270,429원<br>·(제도개선)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근로소득공제 확대 등<br>6,345억 7,800만원<br>·(국고보조율 83.13%) '20년 기초지방자치단체 최종예산 기준 재정자주도 및 사회복지비지수를 활용하여 '22년 적용 차등보조율 도출 | 5조<br>2,647억<br>7,200만원 |
| 기초생활<br>보장관리 | · 실태조사비 20억원 등  | 36억<br>9,200만원          |

자료: 보건복지부

생계급여의 예산산출 내역은 일반적인 예산 산정 방식인 ‘수량 × 단가’를 통해

6)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급여를 신청한 가구의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1촌 직계혈족(부모·자녀)의 소득·재산 수준을 고려하여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이다

산출되는 것이 아니라, 전전년도 평균 수량(수급가구 수) × 단가를 곱한 값에 ‘제도 개선분’을 더하는 방식으로 산출되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개선분은 세부내역이 없이 하나로 합쳐진 금액으로 나타나 구체적인 산출 내역과 예산편성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곤란하다.

특히 2017년 11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인 폐지 이후의 생계급여 예산의 집행행률 추이는 살펴보면, 2018년 생계급여는 98%의 집행행률로 준수한 실적을 보였으나, 2019년에는 95.5%, 제도개선이 많았던 2020년에는 90.9%의 집행행률을 보여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인 폐지 이후 예산 추계의 부적확성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계급여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 집행행현황(2018~2020년)]

| 구분   | 예산액       | 교부액       | 실집행액      | 실집행률  |
|------|-----------|-----------|-----------|-------|
| 2018 | 3,719,773 | 3,701,773 | 3,646,136 | 98.0% |
| 2019 | 3,747,180 | 3,643,284 | 3,580,087 | 95.5% |
| 2020 | 4,336,031 | 3,998,696 | 3,941,119 | 90.9% |

주: 실집행액은 각 시도가 제출한 월별 e-호조 집행실적을 취합한 금액으로, 연도말 기준 결산내역과는 상이할 수 있음

자료: 보건복지부

또한, 2021년 7월 현재까지의 신규 수급자수 지정 실적을 살펴보면 1~7월의 예상진입 가구수는 109,900가구인데 비해 실제 진입 가구수는 94,820가구로 약 14% 가량 적게 나타나고 있다.

[2021년 생계급여 수급자 월별 목표치 대비 실제 진입 추이]

(단위: 가구, 누계)

| 구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
| 목표 | 15,700 | 31,400           | 47,100  | 62,800  | 78,500  |
| 실제 | 922    | 22,989           | 47,887  | 62,618  | 78,788  |
| 구분 | 6월     | 7월 <sup>1)</sup> | 8월      | 9월      | 10월     |
| 목표 | 94,200 | 109,900          | 125,600 | 141,300 | 157,000 |
| 실제 | 89,296 | 94,820           | 집계중     | 집계중     | 집계중     |

주: '21년 생계급여 신청가구 중 노인포함·한부모포함 신청가구 중 보장 적합결정 가구 규모

1) 조사 진행 중인 신청 건수: 약 24,000건

자료: 보건복지부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예산 편성 시 생계급여 수급자 수의 산출에 있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제도개선에 따른 차년도 지원 수급자 수를 정확히 추계함으로써 예산이 과소·과다추계되지 않도록 하고 예산편성에 있어 '제도개선분'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생계급여 지급은 신청주의로서 급여 수급이 필요한 가구가 직접 급여 신청을 하여야 하고, 그 후에도 시군구의 수급자격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수급자로 선정 여부를 결정하게 됨에 따라 신규 수급자 수를 정확히 예측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제도 개선에 따른 예산증액분을 별도로 산정하는 것도 복잡한 제도 변경에 따른 개별적인 효과를 구분하여 산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설명이다.

## 1-2.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른 재정지출 관리 방안 마련 필요

### 가. 현황

의료급여 사업<sup>7)</sup>은 「의료급여법」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 등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2022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4,427억 7,300만원이 증가한 8조 1,232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2년도 의료급여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20<br>결산 | 2021      |           | 2022<br>예산안(B) | 증감      |         |
|------|------------|-----------|-----------|----------------|---------|---------|
|      |            | 본예산       | 추경(A)     |                | B-A     | (B-A)/A |
| 의료급여 | 7,003,747  | 7,680,461 | 7,680,461 | 8,123,234      | 442,773 | 5.8     |

자료: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지원 대상자인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자와 다른 법에 따라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이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 구분 | 수급권자  |
|----|---|
| 1종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br>(근로무능력가구, 희귀난치성질환등록자, 중증질환자, 시설수급자)  |
|    | 타법적용자<br>(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 미만), 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
|    | 행려환자  |
| 2종 |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중 의료급여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

자료: 보건복지부

7) 코드: 일반회계 1132-302

의료급여 수급자 수는 2020년 연평균 기초 1종 1,026,388명, 기초 2종 389,049명, 타법 1종 92,544명으로 총 151만명으로 나타났다.

[의료급여 수급자 현황: 2016~2020년]

(단위: 명)

| 구 분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
| 기초1종 | 966,034   | 964,264   | 976,468               | 997,916   | 1,026,388 |
| 기초2종 | 461,861   | 435,283   | 415,698               | 395,365   | 389,049   |
| 타법1종 | 101,393   | 98,884    | 101,447 <sup>1)</sup> | 94,276    | 92,544    |
| 합 계  | 1,529,288 | 1,498,431 | 1,493,613             | 1,487,557 | 1,507,981 |

주: 1) 2018년 포항지진으로 인한 이재민 수급권자의 일시적 증가로 인함(제외 시 95,235명)

자료: 보건복지부

#### 나. 분석의견

지난 7년간 의료급여 재정 지출 규모는 연평균 증가율이 9%로 증가하고 있어 적정 의료 유도 등 지출관리를 제고하고,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일정에 따른 신규 의료급여 수급자의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한 면밀한 의료보장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의료급여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진료비 지원, 본인부담금 및 기타 지원비, 위탁수수료 등으로 구성되며 의료급여비 예산액 8조 1,214억원 중 8조 37억원으로 진료비 지원이 98.6%를 차지하고 있다.

[의료급여 예산 편성 세부 내역: 2022년 예산안]

| 구 분        |              | 주요 내용  |
|------------|--------------|--|
| 기관 부담금     | 진료비 지원       | 의료기관 등을 이용 시 발생한 진료비(비급여 제외) 중 법정분<br>인부담금을 제외한 비용 지원<br>· 기본진료비: 7조 7,363억 4,900만원<br>· 의료보장성 강화 진료비: 3,220억 2,900만원<br>·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3,386억 4,100만원<br>· 의료급여 정액수가 개선: 360억 7,900만원<br>· 장기입원자 지역사회 복귀 지원비: 25억 8,800만원<br>· 제도개선에 따른 재정절감액: 4,319억 7,200만원 |
| 본인 부담금 지원비 | 임신출산관련 본인부담금 | 임산부 수급자의 임신·출산에 소요되는 진료비 지원<br>9억 9,300만원  |
|            | 건강생활 유지비 지원  | 1종 수급권자(본인부담면제자 제외)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 지원 : 1인당 월 6천원 (연 72천원)<br>463억 4,500만원   |
|            | 본인부담보상금, 상한제 |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일정액 이상의 본인부담이 발생할 경우 이를 수급자에게 보상<br>35억 600만원   |
| 기타 지원비     | 장애인보장구, 요양비  | 등록장애인의 의자보조기 등 장애인보장구 구입 또는 수급권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급여기관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장소에서 질병·부상·출산 등 의료급여를 받았을 때 발생하는 비용 지원(526억 600만원)  |
|            | 위탁수수료        | 건보공단, 심평원에 급여비 심사조정·지급 등 의료급여 업무 위탁수수료: 142억 5,400만원   |
|            | 기타           | 진료내역 허위·부당청구 신고포상금: 2,000만원<br>의료급여사례관리지원단: 9억 7,900만원   |

자료: 보건복지부



예산편성 내역 중 진료비 지원의 항목을 살펴보면 기본 진료비에는 진료이용에 대한 비용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인한 진료비 증가분이 반영되어 있으며, 부양의 무자 기준 완화에 따른 수급자 증가로 인한 진료비 증가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료급여 진료비(본인부담금 포함)는 2020년도에는 9조 489억원으로 지난 5년간(2016~2020년) 연평균 증가율은 7.7%로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율과 동일하게 증가하고 있다.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진료비 현황(본인부담금 포함): 2016~2020년]

(단위: 억원)

| 구분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연평균<br>증가율 |
|----------|--------------------|-------------------|--------------------|--------------------|-------------------|------------|
| 의료<br>급여 | 67,375<br>(12.6%)  | 71,157<br>(5.6%)  | 78,070<br>(9.8%)   | 85,900<br>(10.0%)  | 90,489<br>(5.3%)  | 7.7%       |
| 건강<br>보험 | 645,768<br>(11.4%) | 693,352<br>(7.4%) | 776,583<br>(12.0%) | 864,775<br>(11.4%) | 869,545<br>(0.6%) | 7.7%       |

자료: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재정 지출 규모는 2021년부터 국비와 지방비를 합하여 10조원을 초과하였고, 2016년 6조 3,904억원에서 2022년(안) 10조 8,035억원으로 7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9%로 나타났다.

[의료급여 재정 지출 규모 현황: 2016~2022년(안)]

(단위: 억원)

| 구 분     | 국 비    | 지방비    | 합 계     |
|---------|--------|--------|---------|
| 2016    | 48,192 | 15,712 | 63,904  |
| 2017    | 52,427 | 17,075 | 69,502  |
| 2018    | 56,067 | 18,761 | 74,828  |
| 2019    | 68,784 | 22,269 | 91,053  |
| 2020    | 70,038 | 22,991 | 93,029  |
| 2021    | 76,805 | 25,321 | 102,126 |
| 2022(안) | 81,232 | 26,803 | 108,035 |

주: 국비는 의료급여 경상보조 결산 기준, 사업운영비 등을 포함  
 자료: 보건복지부

2022년 예산안에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통하여 2021년 7월 말 기준으로 83,568명(65,123가구)<sup>8)</sup>이 수급권자로 편입되어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의료급여 수급자 수 현황]

(단위: 명)

| 구 분     | 기초 1종     | 기초 2종   |
|---------|-----------|---------|
| 2018    | 958,800   | 438,200 |
| 2019    | 967,813   | 398,561 |
| 2020    | 967,942   | 363,618 |
| 2021    | 981,163   | 349,245 |
| 2022(안) | 1,074,945 | 372,728 |

주: 의료급여 수급자 수는 예산 편성 기준임  
 자료: 보건복지부

8) 부양의무자 재산소득환산율 인하에 따른 신규 수급권자는 포함하지 않은 실적이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제도개선]

| 구 분            |   | 계획            | 시행                     |
|----------------|---|---------------|------------------------|
| 1차<br>종합<br>계획 | · 부양의무자 가구 및 수급자 가구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 '18.1~        | '17.11~                |
|                | ·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 중증 장애인이 있는 경우          | '19.1~        | '19.1~                 |
|                | · <b>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있는 경우</b>        | <b>'22.1~</b> | <b>'22.1~<br/>(예정)</b> |
|                | · 부양의무자 일반·금융·자동차 재산 환산율 인하 (4.17% → 2.08%) | '22.10~       | '19.9~                 |
| 추가<br>완화       | · 수급자 가구에 만 30세 미만 보호종료아동이 있는 경우            | 추가            | '19.1~                 |
|                | · 수급자 가구가 만 30세 미만 한부모가족인 경우                | 추가            | '19.1~                 |
| 2차<br>종합<br>계획 | · 부양비 및 수급자 소득·재산기준 개선                      | 2차 계획         | '23(예정)                |

자료: 보건복지부

2022년부터 신규 의료급여 지원 범위에 포함되는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있는 가구에 대한 지원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의 증가<sup>9)</sup> 등으로 진료비 및 본인부담금에 대한 지원액이 증가하고, MRI·초음파 비급여의 급여화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과 연계한 의료급여 보장성 확대<sup>10)</sup>, 의료급여 식대 수가 단계적 현실화<sup>11)</sup> 등에 따른

9)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65세 이상 인구 비율 및 1인당 평균 급여비

(단위: %, 천원)

|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
| 비율      | 32.9  | 34.2  | 35.1  | 36.5  | 38.0  |
| 1인당 급여비 | 6,041 | 6,391 | 6,962 | 7,451 | 7,565 |

자료: 보건복지부

\* (비율) 해당연도 연평균 65세 이상 수급권자 수 / 해당연도 연평균 수급권자 수  
(1인당 급여비) 해당연도 총 급여비(원자 본인부담금 제외) / 해당연도 65세 이상 수급권자 수

10) '18~22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등에 따라 2022년 척추 MRI, 근골격계 MRI·초음파 등 비급여의 급여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등을 추진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과

진료비 증가로 의료급여 재정 지출 규모<sup>12)</sup>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장기입원자 지역사회 복귀 지원 사업(2022년 예산안 25억 8,800만원)과 의료급여 사례관리 사업(2022년 예산안 183억원) 등을 통한 적정 의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을 더욱 강화하고, 의료비 지급과 의료기관을 감독·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진료비 부당 청구 등에 대한 관리 등에 대한 조사를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의료급여 재정 지출관리 노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연계하여 의료보장성을 확대할 예정이다.

- 11) 2022년 의료급여 식대의 경우 일반식은 건강보험 의원급 기본식대 수준, 산모식·분유 등 특수식은 건강보험과 동일 수준으로 인상 예정이다.
- 12) 이와 관련하여 의료급여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을 살펴보면 2020~2024년 중기재정계획에서는 2022년도 의료급여 지출 전망액은 8조 3,546억원, 2021~2025년 중기재정계획에서는 8조 9,319억원으로 지출 전망액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의료급여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2022년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
| '20~'24 | 7,003,762 | 7,680,461 | 8,354,559 | 9,123,178  | 9,962,511  | -          |
| '21~'25 | -         | 7,680,461 | 8,931,859 | 10,003,198 | 10,845,198 | 11,754,049 |

자료: 보건복지부

##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기준 마련 등 사업 준비 철저

### 가. 현 황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사업<sup>1)</sup>은 「국민연금법」 제100조의4<sup>2)</sup>에 따라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사업중단·실직·휴직의 사유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은 납부예외자 중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신규 사업이다

이 사업의 2022년도 예산안은 265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2년도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20<br>결산 | 2021 |       | 2022<br>예산안(B) | 증감     |         |
|---------------------|------------|------|-------|----------------|--------|---------|
|                     |            | 본예산  | 추경(A) |                | B-A    | (B-A)/A |
| 저소득 지역가입자<br>보험료 지원 | 0          | 0    | 0     | 26,525         | 26,525 | 순증      |

자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국정과제인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국민 노후소득보장 강화’(2017. 7.)에 따라 2018년 12월 국민연금 제4차 종합운영계획 수립과 2020년 1월 관련 법적근거(「국민연금법」 제100조의4(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를 마련하고, 2022년 7월부터 사업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은미 예산분석관(eunmee@assembly.go.kr, 6788-4638)

1) 코드: 일반회계 2008-206

2) 「국민연금법」 제100조의4(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① 국가는 국민인 지역가입자로서 제9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고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1. 연금보험료 납부를 재개할 것. 다만,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아 납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재산 및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18세 이상에서 60세 미만인 자로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되고 2021년 5월 기준 2,199만명이다.

[국민연금 가입자 현황(2021년 5월 기준)]

| 구분          | 주요 내용                                | 가입자 수   |
|-------------|--------------------------------------|---------|
| 사업장가입자      | 고용된 근로자 및 사용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          | 1,438만명 |
| 지역가입자       |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           | 668만명   |
| 임의가입자       | 사업장 및 지역가입자 외의 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       | 3.8만명   |
| 임의계속<br>가입자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65세까지 가입을 신청한 자 | 5.4만명   |
| 합 계         |                                      | 2,199만명 |

주: 가입자 수는 「국민연금법」 제7조에 따른 가입자로 동법 91조에 따른 납부예외자를 포함한다. 단, 가입자는 사업장 입퇴사, 사업의 등록·폐업 등으로 가입자 수는 매일 변경되므로 매월말 통계를 관리하고 있으며, 본 통계에서는 해당 연도 말일 기준 등록된 가입자수를 의미  
자료: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가입자 중 지역가입자는 보험료의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고 있으며, 납부예외 48.1%, 장기체납 13.4% 등 타 가입자에 비해 보험료 납부 실적이 상대적으로 저조하였고 2018년 6월말 기준 평균 가입기간도 67개월에 불과한 실정이었다.<sup>3)</sup>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평균 납부개월 수 현황: 2018. 6월말 기준]

(단위: 명, 개월, 2018.6.30.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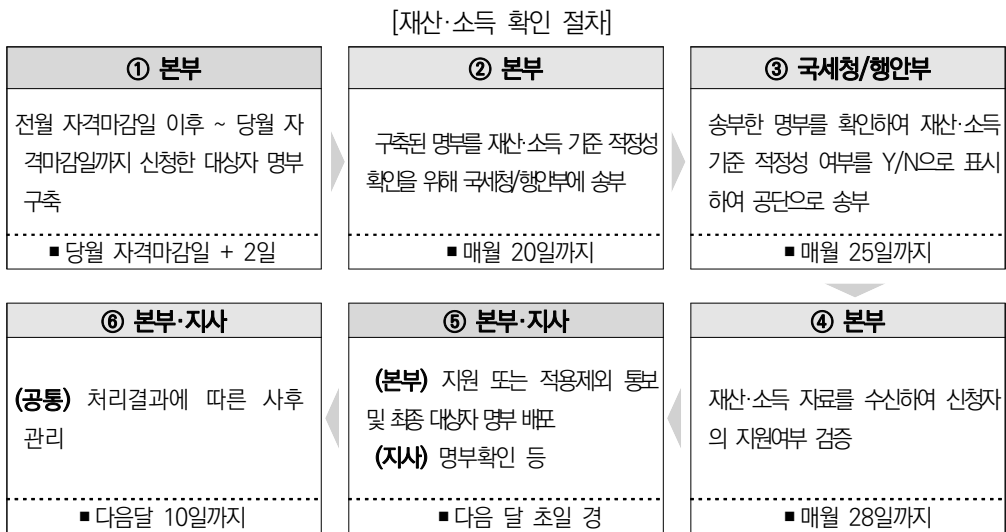
| 구 분       | 합계         | 사업장<br>가입자 | 지역가입자     |           |           |         |                  |
|-----------|------------|------------|-----------|-----------|-----------|---------|------------------|
|           |            |            | 소계        | 소득신고자     |           |         | 납부<br>예외자        |
|           |            |            |           | 소계        | 납부자       | 체납자     |                  |
| 납부이력자 수   | 21,107,746 | 13,653,432 | 7,454,314 | 3,865,085 | 2,867,414 | 997,671 | <b>3,589,229</b> |
| 평균납부 개월 수 | 105        | 126        | 67        | 103       | 125       | 40      | <b>29</b>        |

자료: 보건복지부

3) 국민연금 가입자 중 사업장 가입자의 평균가입기간은 126개월이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보험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원신청 후 지원대상 여부 판단을 위한 재산·소득 확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

우선 지원 신청에 대하여 국민연금공단은 가입자 요건, 재산 및 소득기준 등의 지원 신청자 적격 여부 확인하고, 신청자의 재산·소득 기준 적정성을 확인하는 데 전월 자격마감일 이후 당월 자격마감일까지의 신청자 명부를 작성하여 국세청 등에 대상자의 재산·소득 기준 적정성 여부 확인하게 된다.



자료: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

구체적으로 재산·소득의 확인방법을 살펴보면, 신규지원자는 납부재개 시점에 확인 가능한 공적자료로 판단하며 새로운 공적자료 입수 시까지 적용하고, 소득의 경우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여 판단하므로 모든 소득자료가 확인되는 매년 11월에 공적자료 입수 시 다시 판단하게 된다. 재산 확인의 경우 전년도 재산세 과세표준(6.1. 기준) 자료를 입수하여 신청자 재산 기준을 확인한다.

[재산·소득 세부 확인사항]

| 구분   | 확인방법   |
|------|--|
| 재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의 재산세 과세표준액 합산</li> <li>• 전년도 재산세 과세표준(6.1. 기준)으로 입수되는 공적자료만 판단</li> </ul>  |
| 종합소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소득 총급여액, 사업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합산하여 판단</li> <li>• 근로소득 총급여액: 근로소득총액 - 비과세 공제</li> <li>•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포함)을 모두 합산</li> <li>• 일용근로소득은 동일 과세년도의 국세청 입수자료 합산</li> <li>• 종합소득 입수시기(매년 11월)에 따라 입수되는 공적자료만 판단</li> <li>•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경정 신고하여 종합소득 변동 주장하는 경우 입증자료 제출 시 판단</li> </ul> |

자료: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 후 납부재개를 위해서는 재가입 신청 후 보험료 산정을 위한 소득 확인 과정을 거쳐야 하며, 신규 지역가입자와 마찬가지로 국세청 과세 자료 및 고용노동부 소득 자료 등을 통해 소득유형별로 파악하여 유형별 지역가입자 소득자료를 입수하여 연금보험료 납부액을 산정한다.

[소득유형(Ⅰ~Ⅳ 유형)]

|   |
|---|
| <p>* 국세청 사업자등록과 과세자료 보유 여부를 기준으로 유형 분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Ⅰ 유형 : 사업자등록 &amp; 과세자료 보유자</li> <li>▪ Ⅱ 유형 : 사업자등록 보유자 (과세자료 無)</li> <li>▪ Ⅲ 유형 : 과세자료 보유자 (사업자등록 無)</li> <li>▪ Ⅳ 유형 : 無자료자</li> </ul> |
|---|

자료: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



## 나. 분석의견

동 사업의 대상자 선별에 있어 지원대상자인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의 소득에 대한 명확한 소득 부과기준 마련으로 고소득자에게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등 보험료 지원의 공정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사업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사업은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을 통하여 사각지대에 있는 납부예외자의 납부예외 장기화를 방지하고 국민연금 가입기간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2022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사업의 2022년 예산안은 예상 납부재개자 22만명을 대상으로 평균지원기간 3개월을 적용하여 국민연금보험료 지원금 265억 2,200만원과 운영비 300만원을 편성하였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사업 2022년도 예산안 편성내역]

| 구분                 | 편성내역   |
|--------------------|--|
| 국민연금<br>보험료<br>지원금 | 26,522백만원<br>· 22만명(납부재개자) × 893천원(납부재개자 평균 인정소득) × 9%(보험료율) × 50%(지원율) × 3개월(평균 지원 기간)*<br>- 22만명(납부재개자) 산출:<br>370만명(납부예외자, '18) × 86%(사업중단 등 해당인원 비중) <sup>1)</sup> × 6.93%(납부재개율) <sup>2)</sup> × 99.65%(재산·소득기준 지원제외 비율) <sup>3)</sup><br>1)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 중 경제적사유(사업중단, 실직 등)에 해당하는 인원 비중('18년)<br>2) 납부예외자 중 납부재개자 비율('18년)<br>3) 실업크레딧 신청자 중 재산·소득 기준으로 인한 지원제외 비율(0.35%) 반영('18년) |
| 운영비                | 3백만원<br>· 여비 1백만원(2명×80천원×6.25회)<br>· 업무추진비 2백만원(업무협의(10명×10천원×5회) + 전문가 등 간담회(10명×30천원×5회))   |

자료: 보건복지부

동 사업의 2022년 예산안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사업 대상자인 납부재개자의 산출은 2018년 기준 납부예외자 370만명 중 경제적사유(사업중단, 실직 등)에 해당하는 인원 비중 86%와, 납부예외자 중 납부재개자 비율 6.93% 및 재산·소득기준 지원제외 비율인 0.35%를 적용하여 22만명을 산출하였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납부재개자 평균 인정소득은 지역가입자의 평균 중위소득을 참고하고,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사업 중 저임금근로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두루누리사업'의 지원대상자의 소득 등을 참고하여 월 89만 3,000원으로 정하였으나 현재 소득 및 재산기준에 대한 세부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중으로 확인되었다.

동 사업의 유사 사례로 수행되어지는 저소득 사업장가입자에 대한 지원인 '두루누리사회보험지원사업'과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두루누리 지원사업의 경우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 220만원 미만 근로자로서 고용주가 피고용인인 근로자의 임금 등을 신고하고 있도록 되어 있어 지원 대상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그러나 지역가입자의 경우 지원 대상 기준 적용여부가 본인이 신고하는 소득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또한 사업 및 근로소득의 경우 전년도 증빙자료만 존재하여 소득요건에서 제외할 예정으로 있어, 이자 및 배당소득 등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별할 경우 사업 및 근로소득이 존재하는 지원대상자와 그렇지 않은 지원대상자 간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두루누리 지원사업과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 비교]

| 구분            | 두루누리 지원 사업                              |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                                 |
|---------------|---|---|
| 시행시기          | '12. 7월 ~                               | '22. 7월 ~   |
| 근거            | 국민연금법 제100조의3                           | 국민연금법 제100조의4                                     |
| 도입목적          | 저임금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                          |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노후소득보장                                 |
| 지원대상          | 10인 미만 사업장의<br>월 220만원 미만 근로자           | 납부예외자 중 납부재개자 (지역가입자)                             |
| 지원수준          | (신규가입자) 보험료의 80%<br>※ 기존가입자 지원 중단('21~) | 본인 신고소득에 해당하는<br>연금보험료의 50%를 지원<br>(월 최대 45,000원) |
| 재산·소득<br>요건   | (재산) 6억원 미만<br>(종합소득) 3,800만원 미만        | (재산) 6억원 미만<br>(종합소득) 1,680만원 미만<br>※ 사업·근로소득 제외  |
| 지원기간          | 최대 36개월                                 | 최대 12개월   |
| 재원<br>( '20년) | 10,871억원<br>(고용부 일반회계)                  | 265억원<br>※ '22년 예산안                               |

자료: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

따라서 2022년 예산안에 반영된 지원 대상자의 규모는 지원대상인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의 신고 소득에 따라 지원 여부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지원기준에 부합하나 실제 고소득자 등이 지원 대상이 되지 않도록 신고 소득에 대한 객관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 등을 포함한 지원대상 선별에 대한 세밀한 기준 마련 등 사업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원을 받은 수혜자의 납부 지속성 여부 등을 확인하여 동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성실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 고려 등 제도 보완 방안을 면밀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 3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의 사업준비 철저 필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sup>1)</sup>은 「노인복지법」 제23조2)에 따라 취약노인의 소득보충 및 건강하고 의미있는 노후생활을 위하여 노인일자리와 다양한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2022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1,115억 1,600만원이 증액된 1조 4,421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2년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20<br>결산 | 2021 <sup>1)</sup> |           | 2022<br>예산안(B) | 증감      |         |
|-------------------|------------|--------------------|-----------|----------------|---------|---------|
|                   |            | 본예산                | 추경(A)     |                | B-A     | (B-A)/A |
| 노인일자리 및<br>사회활동지원 | 1,299,565  | 1,315,156          | 1,330,679 | 1,442,195      | 111,516 | 8.4     |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하며, 기금은 각각 2021년 당초계획과 9월말 기준 수정계획(자체변경 포함)을 의미

자료: 보건복지부

2004년부터 시작된 노인일자리사업은 초창기에는 공익참여형과 공익강사형, 인력파견형과 시장참여형으로 구성되었으나, 2011년 시장자립형 노인일자리사업(시니어인턴십, 고령자친화기업 등), 2014년에는 재능나눔활동, 2017년 기업연계형 사업 등이 도입되어 추진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18~2022 제2차 노인일자리 종합계획(양코르라이프 플랜)」에 따라 노인일자리 양적인 확대에 중점을 둔 제1차 종합계획(2013~2017)와 비교하

이은미 예산분석관(eunmee@assembly.go.kr, 6788-4638)

1) 코드: 일반회계 2139-302

2)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능력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 및 취업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노인지역봉사기관, 노인취업알선기관 등 노인복지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여 일자리 참여자의 역량과 부합한 양질의 일자리를 매칭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소득 보전을 위한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와 함께 민간일자리 발굴의 기반을 확립하는 것으로 정책목표를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① 일자리 참여자 역량 및 보호 강화, ② 일자리 정보의 체계적 운영을 통하여 개인별 역량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하는 인프라 강화, ③ 노인이 보유한 기술, 경력 등을 활용하여 민간일자리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④ 치매공공후견인 등 공익활동 분야를 개척하여 사회적 공공서비스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역특화 및 지역 기여사업을 육성하는 정책과제를 수립하였다.

### 3-1 수요조사 등에 기초한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유형의 인원 조정 필요

#### 가. 현황

노인일자리 사업 중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사회적인 도움이 필요한 영역인 지역사회 돌봄, 안전 분야 등에 대하여 관련 경력과 활동역량을 보유한 어르신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 사업이다.

동 사업대상은 만 65세 이상(시니어 안전모니터링, 시니어컨설턴트 등 특정유형은 60세 이상) 노인으로 세부 일자리 참여유형으로는 보육교사 보조 등 가정 및 세대간 서비스, 장애인 보호시설 및 시설이용 노인 서비스 지원 등 취약계층 전문서비스, 노인일자리 안전사고 예방활동 등 공공전문서비스 등이 있다.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세부유형별 사업내용]

| 유형           | 세부 사업내용  |
|--------------|--|
| 가정 및 세대간 서비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육교사 보조, 돌봄서비스 이용 아동 등·학교 및 귀가지원, 급식 지원 등</li> <li>· 한부모 가족의 아동보호 및 교육지원 등</li> <li>· 새터민 등 정서지원을 통한 정착지원 등</li> </ul>  |
| 취약계층 전문서비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 보호시설 등 대상자 보조 및 지원, 장애인 이동보조 및 활동보조 등</li> <li>· 시설이용 노인 서비스 지원 및 환경정비 지원 등</li> <li>·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업무보조 등</li> <li>· 시니어 금융업무지원, 소비피해예방, 취약계층 교육지원 등</li> </ul> |
| 공공전문서비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인일자리 안전사고 예방활동 및 안전교육 등</li> <li>· 시니어 취업상담, 동행면접, 정보제공 및 기업 일자리 발굴 등</li> <li>· 산재신청 안내, 공항 출입국 관리, 도서 대여, 공공정보 수집 및 구축지원 등</li> </ul>                          |
| 기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타 지역내 취약시설 또는 사회적 공헌유형 지원 등</li> </ul>   |

자료: 보건복지부

2022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대상인원은 65,000명으로, 2021년도 본예산 기준 대상 인원 45,000명 대비 20,000명을 확대하여 편성하였다.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사업량 현황]

| 유형  | 대상                       | 사업량                                    |              | 월<br>평균시간    | 보수<br>(활동개월)                 |  |
|-----|--------------------------|--|--------------|--------------|------------------------------|--|
|     |                          | 2021년<br>예산                            | 2022년<br>예산안 |              |                              |  |
| 공공형 | 공익활동                     | 기초연금<br>수급자                            | 59만명         | 60.8만명       | 30<br>(3시간,<br>10일)          | 월 27만원<br>(11개월)                                     |
|     | <b>사회서비스형</b>            | <b>만65세<br/>이상<br/>(일부유형<br/>만60세)</b> | <b>4.5만명</b> | <b>6.5만명</b> | <b>60<br/>(3시간,<br/>20일)</b> | <b>월 59.4만원<br/>(연차,<br/>주휴수당<br/>별도)<br/>(10개월)</b> |
|     | 사회서비스형<br>선도모델<br>(신규시범) | 만60세<br>이상                             | -            | 0.5만명        | 공모 신청 및 선정에 따라<br>상이         |  |
| 민간형 | 시장형<br>사업단               | 만60세<br>이상                             | 3.5만명        | 3.8만명        | 근로 조건에 따라 상이                 |  |
|     | 취업알선형                    |  | 7.5만명        | 8.2만명        | 근로 조건에 따라 상이                 |  |
|     | 시니어<br>인턴십               |  | 3.8만명        | 4.5만명        | 근로 조건에 따라 상이                 |  |
|     | 고령자<br>친화기업              |  | 0.2만명        | 0.2만명        | 근로 조건에 따라 상이                 |  |
| 합계  |                          |  | 78.5만명       | 84.5만명       |                              |  |

자료: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사업의 사업추진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사업을 총괄 및 지원을 담당하고, 각 시·군·구의 노인복지관 및 시니어클럽 등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 나. 분석의견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대상인원 산정 시 일자리 참여 수요 조사 및 일자리 제공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참여 대상인원 규모를 적정수준으로 계획할 필요가 있다.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사업은 2019년에 도입되어 2019년 20,000명, 2020년 45,764명이 참여하였으며, 2021년에는 제2회 추경을 포함하여 참여자 수를 55,000명으로 하고, 2022년 예산안에는 65,000명으로 계획하였다.

[노인일자리 사업유형 중 사회서비스형 사업량 계획현황]

(단위: 명)

| 구 분           | 2019<br>결산 | 2020<br>결산 | 2021   |        |        | 2022<br>예산(안) |
|---------------|------------|------------|--------|--------|--------|---------------|
|               |            |            | 예산     | 제2회 추경 | 소계     |               |
| 사회서비스형<br>사업량 | 20,000     | 45,764     | 45,000 | 10,000 | 55,000 | 65,000        |

주: 2019년과 2020년은 결산 기준 사업량이고, 2021년은 계획사업량임  
자료: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 사업 유형별 목표 대비 실적을 살펴보면 2020년 결산 결과 사회서비스형은 계획인원 37,000명 대비 실제 참여자는 45,764명으로, 당초 예상 대비 8,764명이 증가하였다. 이에 정부는 2021년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대상 인원을 산정할 시 2020년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참여 현황 추이를 고려하여 45,000명을 배정하였고,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감소한 노인 소득 보전과 사회참여 지원을 위해 10,000명을 추가하였다.



[2020년도 노인일자리 유형별 사업 실적 현황]

(단위: 명)

| 구분 | 합계      |         | 공익활동형   |         | 사회서비스형        |               | 시장형사업단형 |        | 취업알선형  |        |
|----|---------|---------|---------|---------|---------------|---------------|---------|--------|--------|--------|
|    | 목표      | 실적      | 목표      | 실적      | 목표            | 실적            | 목표      | 실적     | 목표     | 실적     |
| 서울 | 76,000  | 72,429  | 60,700  | 58,179  | <b>4,000</b>  | <b>3,439</b>  | 9,000   | 9,136  | 2,300  | 1,675  |
| 부산 | 49,070  | 50,717  | 38,300  | 38,102  | <b>3,400</b>  | <b>4,241</b>  | 6,270   | 7,095  | 1,100  | 1,279  |
| 대구 | 27,770  | 29,220  | 22,100  | 22,457  | <b>2,000</b>  | <b>2,323</b>  | 3,330   | 3,797  | 340    | 643    |
| 인천 | 41,090  | 46,907  | 33,700  | 35,577  | <b>2,700</b>  | <b>5,066</b>  | 3,990   | 5,260  | 700    | 1,004  |
| 광주 | 25,460  | 27,330  | 21,000  | 21,300  | <b>1,100</b>  | <b>1,295</b>  | 2,610   | 3,969  | 750    | 766    |
| 대전 | 18,830  | 19,270  | 15,600  | 15,433  | <b>1,100</b>  | <b>1,347</b>  | 1,880   | 2,087  | 250    | 403    |
| 울산 | 12,220  | 13,216  | 9,800   | 10,065  | <b>800</b>    | <b>1,284</b>  | 1,120   | 1,249  | 500    | 618    |
| 세종 | 3,030   | 3,160   | 2,400   | 2,320   | <b>200</b>    | <b>252</b>    | 230     | 299    | 200    | 289    |
| 경기 | 81,700  | 84,495  | 64,700  | 65,338  | <b>6,500</b>  | <b>7,451</b>  | 8,200   | 9,300  | 2,300  | 2,406  |
| 강원 | 49,770  | 53,206  | 43,300  | 45,841  | <b>1,640</b>  | <b>1,918</b>  | 4,070   | 4,718  | 760    | 729    |
| 충북 | 28,820  | 29,926  | 24,800  | 25,597  | <b>1,500</b>  | <b>1,678</b>  | 1,840   | 2,005  | 680    | 646    |
| 충남 | 34,630  | 35,167  | 29,000  | 28,968  | <b>2,200</b>  | <b>2,561</b>  | 2,840   | 3,085  | 590    | 553    |
| 전북 | 54,870  | 57,897  | 47,400  | 48,898  | <b>2,350</b>  | <b>3,072</b>  | 4,120   | 4,731  | 1,000  | 1,196  |
| 전남 | 46,760  | 48,955  | 41,700  | 42,977  | <b>2,000</b>  | <b>2,360</b>  | 2,630   | 3,130  | 430    | 488    |
| 경북 | 45,700  | 50,426  | 38,500  | 41,691  | <b>2,400</b>  | <b>3,111</b>  | 3,800   | 4,266  | 1,000  | 1,358  |
| 경남 | 48,280  | 50,493  | 40,850  | 42,066  | <b>2,460</b>  | <b>2,917</b>  | 3,020   | 3,389  | 1,950  | 2,121  |
| 제주 | 11,350  | 12,130  | 9,500   | 9,292   | <b>650</b>    | <b>1,449</b>  | 1,050   | 1,213  | 150    | 176    |
| 합계 | 655,350 | 684,944 | 543,350 | 554,101 | <b>37,000</b> | <b>45,764</b> | 60,000  | 68,729 | 15,000 | 16,350 |

자료: 보건복지부

2022년 예산에서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사업의 목표인원을 2021년 추경보다 1만명이 더 많은 65,000명을 설정하였는데, 이는 노인일자리의 제공이 노인의 소득 보충 뿐 아니라 노인의 건강, 사회참여 욕구 등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효과가 있고, 노인인구의 증가와 다양한 사회복지 사업의 증가로 인하여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의 수요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2021년 5월, 제2회 추경안 편성을 준비하면서 2022년 노

인일자리 사업의 유형별 수요조사를 실시한 바 있고, 그 결과 사회서비스형의 사업량은 51,389개로 파악되었다.

[2022년도 시도별, 사업유형별 노인일자리 수요조사 결과: 2021. 5.]

(단위: 명, %)

| 구분 | 2021년        | 2022년 수요 |          |               | 시장형<br>사업단 | 취업<br>알선형 | 증감<br>(C=B-A) | 증감율<br>(C/A) |
|----|--------------|----------|----------|---------------|------------|-----------|---------------|--------------|
|    | 내시<br>사업량(A) | 사업량(B)   | 공익<br>활동 | 사회<br>서비스     |            |           |               |              |
| 서울 | 71,836       | 80,078   | 68,040   | <b>4,750</b>  | 5,334      | 1,954     | 8,242         | 11.5         |
| 부산 | 51,760       | 54,503   | 45,084   | <b>4,952</b>  | 3,167      | 1,300     | 2,743         | 5.3          |
| 대구 | 28,110       | 28,375   | 24,697   | <b>2,350</b>  | 928        | 400       | 265           | 0.9          |
| 인천 | 43,366       | 46,920   | 40,407   | <b>3,169</b>  | 2,534      | 810       | 3,554         | 8.2          |
| 광주 | 26,520       | 33,597   | 29,001   | <b>1,505</b>  | 2,081      | 1,010     | 7,077         | 26.7         |
| 대전 | 19,250       | 20,179   | 17,539   | <b>1,348</b>  | 1,032      | 260       | 929           | 4.8          |
| 울산 | 12,740       | 13,411   | 11,380   | <b>985</b>    | 636        | 410       | 671           | 5.3          |
| 세종 | 3,330        | 3,615    | 2,922    | <b>313</b>    | 120        | 260       | 285           | 8.6          |
| 경기 | 87,970       | 93,375   | 77,943   | <b>7,608</b>  | 5,619      | 2,205     | 5,405         | 6.1          |
| 강원 | 53,590       | 61,211   | 54,503   | <b>2,942</b>  | 3,246      | 520       | 7,621         | 14.2         |
| 충북 | 30,240       | 32,229   | 28,472   | <b>1,776</b>  | 1,231      | 750       | 1,989         | 6.6          |
| 충남 | 37,290       | 40,534   | 34,303   | <b>3,685</b>  | 2,036      | 510       | 3,244         | 8.7          |
| 전북 | 59,500       | 70,029   | 61,639   | <b>5,254</b>  | 2,272      | 864       | 10,529        | 17.7         |
| 전남 | 50,514       | 57,000   | 52,070   | <b>2,600</b>  | 1,930      | 400       | 6,486         | 12.8         |
| 경북 | 49,180       | 52,893   | 46,051   | <b>3,635</b>  | 1,897      | 1,310     | 3,713         | 7.5          |
| 경남 | 50,140       | 53,344   | 45,392   | <b>3,407</b>  | 2,455      | 2,090     | 3,204         | 6.4          |
| 제주 | 10,800       | 13,010   | 11,240   | <b>1,110</b>  | 460        | 200       | 2,210         | 20.5         |
| 합계 | 686,136      | 754,303  | 650,683  | <b>51,389</b> | 36,978     | 15,253    | 68,167        | 9.9          |

자료: 보건복지부

즉, 2022년 예산안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사업의 참여인원은 2021년 5월 수요조사 결과 대비 13,000명(26%) 가량 큰 값으로, 수요조사 결과를 초과하여 설정한 목표량을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3년간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사업의 규모가 가파르게 증가(2019년 2

만개 → 2021년 5.5만개)한 점 등을 함께 고려할 때, 빠르게 확대하고 있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사업이 내실있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유형의 대상 인원 확대 규모는 2021년 수요조사 결과를 감안하되, 각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사업의 수행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파악하고 있는 일자리 수요와 신규 일자리 발굴 추이 등을 면밀하게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

### 3-2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 시범사업의 구체적 지원내용 마련 등 사업준비 철저 필요

#### 가. 현황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 시범사업은 노인일자리 사업의 2022년도 신규 내역사업으로 기업 사회공헌, 지역사회 인프라 등과 연계하여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의 선도 모델을 발굴하는 사업으로 2022년 예산안으로 79억원을 편성하였다.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 시범사업 2022년 예산안]

| 주요 내용   | 예산액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인원: 5,000명</li> <li>- 부대경비, 전담인력 등 지원:<br/>5,000명×320,000원×5개월×100%</li> </ul> | 79억원 |

자료: 보건복지부

#### 나. 분석의견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 시범사업은 공공분야의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수요처에 대한 사전 조사를 실시하고 사전조사에 따른 일자리 수요에 적합한 지원내용을 파악하여 예산에 반영하는 등 사업 추진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 시범사업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민간기업 인프라를 기반으로 하여 지역사회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2022년부터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2022년 예산안에는 대상인원 5,000명에게 사업지원금으로 1인당 320,000원을 5개월간 지원하는 내용으로 79억원을 편성하였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원 규모 5,000명에 대한 산출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지방자치단체·기업·수요자 등에 배정할 예정이며, 사업추진방식은 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동 시범사업의 대상 인원, 지원액 및 수행방식을 살펴보면, 일자리 수요처에 대

한 사전조사가 되어 있지 않아 지원 대상 인원을 선별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지원 단가인 1인당 320,000원의 산출도 인건비 및 사업비 지원으로 구체적인 일자리 형태를 알기 어려워 해당 경비가 필수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인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 시범사업은 기존 노인일자리 사업의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유형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일자리 사업 모델을 창출하기 위해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어르신이 수행할 수 있는 분야에서의 적합한 직무 분석 등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수적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동 시범사업의 예산안에 대하여 외부 자원을 끌어내기 위한 사업 지원금(1인당 월 320,000원으로 5개월간 총 160만원)만 반영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동 시범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에서 채용 분야에 대한 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예산안에 반영한 사업지원금(인건비, 사업비 등) 항목이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알기 어렵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동 시범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공, 민간분야의 일자리 수요처에 대한 사전 조사를 실시하여 채용 가능한 규모, 지원 품목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 가. 현 황

다함께 돌봄센터 사업<sup>1)</sup>은 「아동복지법」 제44조의2<sup>2)</sup>에 따라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육아부담 경감을 위한 보편적 돌봄서비스의 확충과 지원을 위해 안전하고 접근성이 높은 지역 내 공공시설 등을 활용하여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2022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88억 9,200만원이 증액된 525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2년도 다함께 돌봄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20<br>결산 | 2021 <sup>1)</sup> |        | 2022<br>예산안(B) | 증감    |         |
|-----------|------------|--------------------|--------|----------------|-------|---------|
|           |            | 본예산                | 추경(A)  |                | B-A   | (B-A)/A |
| 다함께 돌봄 사업 | 22,733     | 41,259             | 43,702 | 52,594         | 8,892 | 20.3    |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하며, 기금은 각각 2021년 당초계획과 9월말 기준 수정계획(자체변경 포함)을 의미

자료: 보건복지부

이은미 예산분석관(eunmee@assembly.go.kr, 6788-4638)

1) 코드: 일반회계 1338-314

2)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이하 "방과 후 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등·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4. 체험활동 등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의 연계·제공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④ 다함께돌봄센터의 장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보호자에게 제1항 각 호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⑤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종사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정부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돌봄 지원의 부족으로 방과후·방학중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함에 따라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돌보는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 실행계획’(2018. 4.)을 발표하였다.

동 실행계획의 추진방향으로는 돌봄 대상을 기존 초등 1,2학년 위주에서 초등 전 학년으로 단계적인 확대를 하고, 학교-지자체 협업을 통해 지역사회 인적·물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초등학생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구체적으로, 학교돌봄 계획에서는 초등돌봄교실, 지자체와 연계된 교실활용 등을 통해 돌봄 대상을 확대(24만명 대상 → 34만명 대상)하고, 마을돌봄 계획에서는 취약 계층 중심 돌봄에서 돌봄대상을 확대(9만명 → 19만명 대상자 확대)하기 위하여 지역 내 공공시설 활용(9만명 추가 지원)하고 지역아동센터(1만명 추가)에서 일반아동 비율을 확대하는 등 돌봄 제공을 확대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2022년 정부는 다함께 돌봄센터 기존 923개와 신규 450개소, 학교돌봄처 기존 100개 교실 및 신규 100개 교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시범사업으로 30개 다함께 돌봄센터를 대상으로 돌봄선생님 1명을 추가로 배치하여 야간돌봄 실시 등 운영시간 확대를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 나. 분석의견

**다함께 돌봄 센터 설치 실적을 고려하여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에 대한 편성 예산 규모를 재검토하고, 지역아동센터 등 유사 돌봄사업과의 연계 등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018년부터 설치가 시작된 다함께 돌봄 센터는 2020년도 말까지 설치계획 517개소 중 424개소(82%)가 설치되었고, 2021년에는 8월 현재 누적 555개소가 설치 완료하였다.

[다함께 돌봄 센터 설치 현황: 2021. 8. 기준]

| 구분 | 센터수 | 정원수    | 현원     |
|----|-----|--------|--------|
| 서울 | 181 | 4,714  | 4,892  |
| 부산 | 40  | 872    | 587    |
| 대구 | 2   | 59     | 48     |
| 인천 | 15  | 369    | 252    |
| 광주 | 5   | 118    | 111    |
| 대전 | 6   | 174    | 67     |
| 울산 | 19  | 409    | 283    |
| 세종 | 5   | 135    | 99     |
| 경기 | 120 | 3,317  | 2,709  |
| 강원 | 23  | 691    | 496    |
| 충북 | 21  | 431    | 387    |
| 충남 | 21  | 525    | 531    |
| 전북 | 28  | 620    | 484    |
| 전남 | 17  | 437    | 413    |
| 경북 | 31  | 736    | 635    |
| 경남 | 19  | 427    | 279    |
| 제주 | 2   | 40     | 31     |
| 합계 | 555 | 14,074 | 12,304 |

자료: 보건복지부

다함께 돌봄센터에 대한 예산은 인건비(센터장 1명, 선생님 2명), 운영비(개소당 월 30만원), 신규 설치비(리모델링비 개소당 5,000만원, 기자재비 개소당 2,000만원), 시범사업 30개소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개소당 선생님 1명, 운영비 월 15만원), SOC복합화 설치비(82개소 각 5,000만원)로 구성되어 있다.



[다함께 돌봄 센터 2022년 예산안 세부편성 내역]

| 구분  | 주요 내용   | 예산안             |
|-----|---|-----------------|
| 인건비 | · 센터장: (기존) 923명, 12개월 / (신규) 450명, 4개월<br>- (기존) 923개소×1명×2,251천원×12개월×48% = 11,968백만원<br>- (신규) 450개소×1명×2,251천원×4개월×48% = 1,945백만원<br>· 돌봄선생님: (기존) 1,846명, 12개월 / (신규) 900명, 4개월 / (시범사업) 30명, 10개월<br>- (기존) 923개소×2명×1,115천원×12개월×48% = 11,860백만원<br>- (신규) 450개소×2명×1,115천원×4개월×48% = 1,927백만원<br>- (시범사업) 30개소×1명×1,115천원×10개월×48% = 161백만원 | 278억<br>6,100만원 |
| 운영비 | · (기존) 923개소×300천원×12개월×48% = 1,595백만원<br>· (신규) 450개소×300천원×4개월×48% = 259백만원<br>· (시범사업) 30개소×150천원×10개월×48% = 21백만원   | 18억<br>7,500만원  |
| 설치비 | · (리모델링비) 450개소×50,000천원×48%=10,800백만원<br>· (기자재비) 450개소×20,000천원×100%=9,000백만원<br>· (SOC복합화 가산분) 82개소×50,000천원×10%=410백만원  | 202억<br>1,000만원 |
| 합 계 |   | 499억<br>4,600만원 |

자료: 보건복지부

다함께 돌봄센터의 예산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2022년 예산안에 기 설치된 센터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은 2021년말까지 설치 완료될 센터 수를 적용하여 예산의 과다 편성이 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함께 돌봄 센터 사업의 2022년 예산안에는 2021년까지 센터 923개소가 설치될 것으로 예상하여 연간 소요될 인건비와 운영비를 편성하였으나, 2021년 8월 현재까지 계획된 2021년 신규 센터 420개소 중 현재 131개를 합하여 555개소가 설치 완료된 상태이며, 보건복지부의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sup>3)</sup> 연말까지 최대 818개소가 설치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22년 예산안 중 다함께 돌봄 센터에 계상된 개소 수 923개소 대비 105개(13%)가 적은 값이다.

3)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1년 지방자치단체 수요조사 결과 연내 394개소 설치 예정으로 파악되었다.

[다함께 돌봄 센터 설치 현황: 2018~2021.8]

(단위: 개소, 백만원)

| 구분      | 계획       | 실적       | 예산액    |
|---------|----------|----------|--------|
| 2018    | 17       | 17       | 925    |
| 2019    | 150(167) | 156(173) | 10,635 |
| 2020    | 350(517) | 251(424) | 23,698 |
| 2021.8. | 420(937) | 131(555) | 34,251 |

주:( )는 누적치임  
자료: 보건복지부

[2021년 다함께 돌봄 센터 운영 현황]

(단위: 개소)

| 구분            | 설치 계획<br>(1월 기준)<br>(A) | 설치완료<br>(8월 기준) | 2022년<br>설치 완료 계획<br>(지자체 수요조사) | 2022년 예산안에<br>운영비 등이 반영된<br>센터 수(B) | 차이<br>(B-A) |
|---------------|-------------------------|-----------------|---------------------------------|-------------------------------------|-------------|
| 다함께돌봄<br>센터 수 | <b>844</b>              | 555             | 818                             | <b>923</b>                          | <b>79</b>   |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따라서 다함께 돌봄 센터의 인건비와 운영비 항목의 기존 설치 센터 수는 실제 2021년말까지 설치가 완료되어 2022년 초부터 운영이 되는 센터 수를 반영하여<sup>4)</sup> 인건비 및 운영비 항목이 과다 예산편성이 되지 않도록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4) 동 예산에서 설정하고 있는 다함께 돌봄센터의 연간 운영비용은 인건비(센터장 1명, 선생님 2명) 및 운영비 등을 합하여 5,737만원이며, 국비 보조율을 반영하면 국가는 개소당 2,754만원을 보조하게 된다. 이 경우 센터 105개소의 국비지원액은 약 29억원으로 추산된다.

둘째, 보건복지부는 초등돌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사업’과의 연계 방안 마련 등 종합적인 돌봄 추진방향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다함께 돌봄 센터 사업은 유사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와 함께 초등돌봄을 강화하고자 추진되어 왔으나, 사업 초반기부터 지역의 돌봄 수요에 따른 신규 센터 확충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수행해 왔다. 이는 초등 돌봄의 수요 대비 공급의 부족한 상황에서 정책 목표가 공급 확대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sup>5)</sup>

2018년부터 추진된 다함께 돌봄 센터 사업 시작 3년이 넘어가는 시점인 2022년 이후에는 다함께 돌봄 센터 사업의 장기적인 발전방향 등을 포함한 보건복지부의 중장기 사업계획 마련이 필요하다.

보건복지부는 초등돌봄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 돌봄 장소 확충과 함께 돌봄 서비스의 질을 제공하는 방안<sup>6)</sup>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고, 다함께 돌봄 센터 사업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 등과의 통합적인 연계 운영 및 지원방안을 포함한 향후 추진 방향 설정과 함께 관련 세부 수행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5)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1년 4월 기준으로 초등학생수 274.3만명 대비 돌봄공급은 44.2만명(초등돌봄교실 29.7만명, 다함께돌봄센터 1.3만명, 지역아동센터 12.6만명,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0.7만명)으로 전체 학생수 대비 16%로 나타났다.

또한, ‘법정부 온종일돌봄 수요조사’(교육부) 기준 초등돌봄 수요는 2020년 42.5만명, 2021년 47.4만명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6) 시설 면적이나 정원과 관계없이 센터당 동일 지원 방식에서 시설 규모별 차등 지원 및 돌봄종사자 처우개선 등 돌봄서비스 질 제고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 초등 돌봄사업 현황]

| 구 분          |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                   | 다함께 돌봄센터 지원 사업               |
|--------------|--------------------------------|------------------------------|
| 시행시기         | 2004                           | 2017                         |
| 지원근거         | 「아동복지법」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br>「아동복지법」     |
|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                       | 만 12세 미만                     |
| 지원내용         | 보호, 교육, 문화, 정서지원,<br>지역사회 연계 등 | 시간제돌봄, 프로그램 지원 등             |
| 운영규모         | 4,169개소<br>총 11만명<br>(초등 8만명)  | 555개소<br>(1.2만명)             |
| 운영형태         | 취약계층 중심 상시돌봄                   | 맞벌이 가정 중심<br>정기·일시 돌봄        |
| 지원형태         | 무상<br>(소득별 이용료 5만원 이내 부담)      | 이용료<br>자부담                   |
| 2022년<br>예산안 | 4,075억원<br>(국비 48%, 지방비 52%)   | 1,039억원<br>(국비 48%, 지방비 52%) |

자료: 보건복지부

### 가. 현황

취약지 등 전문의료인력 양성 사업<sup>1)</sup>은 취약지 등에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보건 의료서비스의 지역별 격차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2022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6억 6,100만원(41.4%)이 감액된 9억 3,400만원이 편성되었다.

공공의료인력 양성기관 구축운영 사업은 취약지 등 전문의료인력 양성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의료의 공공성 강화 및 공공보건의료 선도를 목적으로 의료인을 양성하기 위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2022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7억 9,500만원(67.1%)이 감액된 3억 9,0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22년도 취약지 등 전문의료인력 양성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20<br>결산 | 2021 <sup>1)</sup> |       | 2022<br>예산안(B) | 증감   |         |
|---------------------|------------|--------------------|-------|----------------|------|---------|
|                     |            | 본예산                | 추경(A) |                | B-A  | (B-A)/A |
| 취약지 등 전문의료인력 양성     | 143        | 1,595              | 1,595 | 934            | △661 | △41.4   |
| 공공의료인력<br>양성기관 구축운영 | 0          | 1,185              | 1,185 | 390            | △795 | △67.1   |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함

자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2018년 4월 지역별 의료격차 해소 및 필수 공공의료의 공백을 방지하고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추진을 결정하였다.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은 전북 남원 지역에 설립될 예정이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을 교육 및 실습기관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재학생은 입학금, 수업료 등 4년간의 학업에 필요한 경비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 간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복무를 해야 한다.

최경덕 예산분석관(choi8807@assembly.go.kr, 6788-3728)

1) 코드: 일반회계 2750-303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개요]

| 구 분      | 내 용                                 |
|----------|-------------------------------------|
| 소재지      | 전북 남원                               |
| 교육·실습 기관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
| 교육기간     | 타 의학전문대학원과 동일한 4년제                  |
| 학생 정원    | 최초 49명 선발, 추후 총 정원 200명으로 운영 예정     |
| 의무복무     | 졸업,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간 공공보건의료기관 복무      |

자료: 보건복지부

나. 분석의견

보건복지부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을 위한 설계비를 2019~2021년 3년 연속 편성하여 2019, 2020년 예산은 전액 불용되었으며, 2021년 예산도 전액 불용될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이므로 2022년 예산안 편성에 대하여는 관련 논의의 진행상황 및 법안의 통과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보건복지부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을 위한 공공의료인력 양성기관 구축운영 사업에 설계비 명목으로 2019년 3억원, 2020년 9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전액 불용되었다.

동 사업의 2021년 예산은 2021년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4일 대한의사협회의와의 합의 취지를 존중하며, 관련 근거법률이 마련된 이후 '공공의료 인력양성기관 구축 운영' 사업 예산을 집행한다.'는 부대의견과 함께 설계비 명목으로 11억 8,500만원이 편성되었다. 그러나 2021년 8월말 현재까지 집행되지 못하였다.

[공공의료인력 양성기관 구축운영 사업의 집행 현황(2019~2021년)]

(단위: 백만원)

| 구분   | 편성액  | 집행액 | 불용액         |
|------|------|-----|-------------|
| 2019 | 300  | 0   | 300 (전액 불용) |
| 2020 | 955  | 0   | 955 (전액 불용) |
| 2021 | 1185 | 0   | -           |

주: 2021년은 8월말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이와 같이 동 사업의 예산이 연례적으로 불용되는 것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보건복지부가 관련 법 제정을 전제로 예산안을 편성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20대 국회에서는 2018년 9월 21일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동 법안이 20대 국회 임기만료 폐기되어 제정되지 않았다. 21대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이 세 차례(2020년 6월 25일, 2020년 6월 30일, 2021년 3월 23일) 발의된 바 있으며, 해당 법안들은 모두 2021년 8월말 현재 보건복지위원회 계류중이다.

[20대 및 21대 국회 발의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관련 법안 목록]

| 의안번호        | 의안명                           | 대표발의<br>(발의일자)         | 비고      |
|-------------|-------------------------------|------------------------|---------|
| 201572<br>0 |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br>운영에 관한 법률안  | 김태년의원<br>(2018.09.21.) | 임기만료 폐기 |
| 210019<br>8 |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br>운영에 관한 법률안 | 이용호의원<br>(2020.06.05.) | 복지위 계류  |
| 210120<br>4 |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br>운영에 관한 법률안  | 김성주의원<br>(2020.06.30.) | 복지위 계류  |
| 210903<br>5 |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치에 관한<br>법률안      | 김형동의원<br>(2021.03.23.) | 복지위 계류  |

자료: 의안정보시스템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동 사업은 ① 2020년 9월 4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합의한 내용에 따르면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하며,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하여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한다. 또한, 논의 중에는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2021년도 예산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4일 대한의사협회와의 합의 취지를 존중하며, 관련 근거법률이 마련된 이후 ‘공공의료 인력양성기관 구축 운영’ 사업 예산을 집행한다.’ 는 부대의견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③ 델타 변이의 출현 등 코로나19의 확산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동 사업의 2021년 예산도 2019년, 2020년과 마찬가지로 집행 여부가 불투명한 측면이 있다.

보건복지부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을 위한 설계비를 2019~2021년 3년 연속 편성하여 2019년, 2020년 예산은 전액 불용되었으며, 상기 언급한 바와 같이 2021년 예산의 집행 여부도 불투명한 측면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건복지부는 또 다시 2022년 예산안에도 법적 근거 없이 설계비를 편성한 바, 이에 대하여는 관련 논의의 진행상황 및 법안 통과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 가. 현황

취약지 등 전문의료인력 양성 사업<sup>1)</sup>은 취약지 등에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보건의료서비스의 지역별 격차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2022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6억 6,100만원(41.4%)이 감액된 9억 3,400만원이 편성되었다.

공중보건장학제도 운영 사업은 취약지 등 전문의료인력 양성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졸업 후 2~5년간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종사할 것을 조건으로 ①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재학생, ② 간호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2022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1억 3,400만원(32.7%)이 증액된 5억 4,4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22년도 취약지 등 전문의료인력 양성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20<br>결산 | 2021 <sup>1)</sup> |       | 2022<br>예산안(B) | 증감   |         |
|-----------------|------------|--------------------|-------|----------------|------|---------|
|                 |            | 본예산                | 추경(A) |                | B-A  | (B-A)/A |
| 취약지 등 전문의료인력 양성 | 143        | 1,595              | 1,595 | 934            | △661 | △41.4   |
| 공중보건장학제도 운영     | 143        | 410                | 410   | 544            | 134  | 32.7    |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안을 의미함

자료: 보건복지부

의사·치과의사 또는 간호사가 되려는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공중보건 업무에 종사할 의료 요원 확보를 통해 공중보건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sup>2)</sup>이 1976년 제정되어 1977년부터 1996년까지 꾸준히 공중보건장

최경덕 예산분석관(choi8807@assembly.go.kr, 6788-3728)

1) 코드: 일반회계 2750-303

2)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의료 요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사·치과의사 또는 간호사가 되려는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이의 관리를 적절히 함으로써 공중보건의 향상에 이바

학의사와 공중보건장학간호사가 배출되었다. 그러나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 등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sup>3)</sup>에 따라 신설된 공중보건(의사)<sup>4)</sup> 제도 및 공중보건장학제도 지원자 감소로 인하여 1996년 이후 신규 장학생 선발이 중단된 바 있다.

한편,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의 취학인원 구성의 변화 등으로 인해 공중보건(의사) 수가 2010년 5,179명에서 2017년 3,622명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료기관 및 의료인 등 의료자원의 대도시, 수도권 집중문제<sup>5)</sup>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역 간 의료자원 불균형 해소, 공공의료의 정상화 등을 도모하고자 2019년부터 동 사업을 통해 공중보건장학제도 운영을 재개하였다.

공중보건장학제도는 의사, 간호사 면허 취득 후 장학금을 지원받은 기간(2~5년) 동안 지방 의료취약지 등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것을 조건으로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또는 간호대학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재학생 1인당 연간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의 경우 2,040만원, 간호대학의 경우 1,6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해당 장학금은 등록금 및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은 2019년부터 선발을 시작하였으며, 간호대학 재학생은 2021년부터 선발을 시작하였다.

---

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3)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 등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이 고르게 의료혜택을 받게 하고 국민의 보건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4) 「병역법」 제34조1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에 편입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의미하며, 동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3년간의 복무를 마치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된다.  
「병역법」  
제34조(공중보건(의사) 등의 편입)  
① 병무청장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원할 경우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편입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역병입영 대상자는 보충역에 편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편입된 사람은 해당 분야에 3년간 복무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마치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 5) 통계청 「e지방지표: 인구 천명당 의료기관 종사 의사 수」에 따르면 2017~2020년 서울의 인구 천명당 의료기관 종사 의사 수는 4.1명, 4.2명, 4.4명, 4.5명으로 나타났으나, 같은 기간 울산 2.3명, 2.3명, 2.3명, 2.4명, 충북 2.3명, 2.3명, 2.4명, 2.4명, 전남 2.4명, 2.5명, 2.5명, 2.6명 등으로 나타났다.

[공중보건장학제도 개요]

| 구 분     | 내 용   |
|---------|---|
| 법적 근거   |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
| 지원 대상   | 전국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및 간호대학 재학생   |
| 지원 조건   | 졸업 후 장학금을 지원받은 기간(최소 2년~최대 5년)동안 의무적으로<br>공공보건의로 업무에 종사할 것을 조건으로 장학금 지원                     |
| 지원 금액   |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재학생) 1인당 연간 2,040만원 <sup>1)</sup><br>(간호대학 재학생) 1인당 연간 1,640만원 <sup>1)</sup> |
| 의무복무 장소 | 장학금을 지원한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소재 지방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로<br>수행기관 <sup>2)</sup>                                |

주: 1) 해당 금액은 학생 1인당 지원받는 금액이며, 국고보조율 50%인 자치단체경상보조사업으로 국비 지원액은 1인당 1,020만원(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820만원(간호대학)임

2) 의무복무시 보수는 해당 기관의 보수지급 기준에 따라 다른 의사와 동등한 보수체계를 적용함

자료: 보건복지부

동 사업의 2022년도 예산안에는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재학생 20명, 간호대학 재학생 40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한 5억 3,200만원과 장학생 교육 및 관리를 위하여 1,200만원 등 총 5억 4,400만원이 편성되었다.

[공중보건장학제도 운영 사업의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내역]

|  |
|--|
| ○ 공중보건장학제도 운영 = 544백만원                       |
| - (장학금) = 532백만원                             |
|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재학생 20.4백만원 × 20명 × 국고보조율 50% |
| 간호대학 재학생 16.4백만원 × 40명 × 국고보조율 50%           |
| - (장학생 교육 및 관리비) = 12백만원                     |

자료: 보건복지부

나. 분석의견

공중보건장학제도 운영 사업은 2019~2021년 3년간 매년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재학생 지원 목표인원 20명 중 절반 수준을 지원하는데 그치고 있으므로, 보건복지부는 제도 개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여 2022년도 예산 집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동 사업은 수행 첫 해인 2019년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재학생 20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총 8명이 신청하여 해당 재학생들을 모두 선발, 8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데 그쳤으며, 2020년에는 신규로 14명을 선발하여 총 20명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6명이 신규로 신청, 해당 인원을 모두 선정하여 총 12명을 지원하는데 그쳤다.

간호대학 재학생이 지원 대상자로 새롭게 포함된 2021년에는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재학생 20명, 간호대학 재학생 20명 등 총 40명을 지원할 계획이었다. 간호대학 재학생은 총 108명이 신청하여 이 중 21명이 선발되어 장학금을 지원받고 있으나,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은 신규로 1명만 신청, 해당 인원이 선발되어 2019년, 2020년에 이어서 총 10명이 지원받는데 그치고 있다.

[2019~2021년 공중보건장학생 선발 및 지원 현황]

(단위: 명)

| 구분                |      | 목표 인원              |          | 신청 인원 | 실제 지원 인원 |          |
|-------------------|------|--------------------|----------|-------|----------|----------|
|                   |      | 총 인원<br>(예산 편성 근거) | 신규 선발 인원 |       | 총 지원 인원  | 신규 지원 인원 |
| 의과대학 및<br>의학전문대학원 | 2019 | 20                 | 20       | 8     | 8        | 8        |
|                   | 2020 | 20                 | 14       | 6     | 12       | 6        |
|                   | 2021 | 20                 | 11       | 1     | 10       | 1        |
| 간호대학              | 2021 | 20                 | 20       | 108   | 21       | 21       |

주: 2021년 8월 31일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2021년 공중보건장학생 지원 현황]

| 구분                | 목표인원 | 지원인원  |
|-------------------|------|---|
| 의과대학 및<br>의학전문대학원 | 20명  | 10명(2019년 선발인원 8명 중 3명, 2020년 선발인원 6명, 2021년 선발인원 1명) |
| 간호대학              | 20명  | 21명   |

주: 1. 2019년 선발된 8명 중 5명에 대하여는 졸업 후 전공의 수련 등으로 장학금 지급이 중단되었음  
2. 2021년 8월 31일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당초 목표 인원 대비 실제 선발되어 장학금을 지원받는 인원이 부족함에 따라 동 사업의 2019~2021년 집행 실적도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9년과 2020년의 집행액(집집행률)은 각각 7,140만원(35.0%), 1억 200만원(50.0%)으로 나타났으며, 2021년은 8월 31일 기준으로 2억 4,000만원이 집행되어 집행행률은 65.2%로 나타났다.

[공중보건장학제도 운영 사업의 집행 현황(2019~2021년)]

(단위: 백만원, %)

| 구분               | 예산액 | 다음연도<br>이월액 | 불용액   | 집행액<br>(실집행액)  | 집행률<br>(실집행률)  |
|------------------|-----|-------------|-------|----------------|----------------|
| 2019             | 204 | -           | 117.3 | 86.7<br>(71.4) | 42.5<br>(35.0) |
| 2020             | 204 | -           | 96.9  | 107.1<br>(102) | 52.5<br>(50.0) |
| 2021<br>(8월 31일) | 368 | -           | -     | 262<br>(240)   | 71.2<br>(65.2) |

주: 본 표의 예산액은 사업추진비(1,200만원)와 연구용역비(3,000만원)를 제외하고 장학금 예산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자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동 사업의 수행 두 번째 해인 2020년에도 당초 목표인원인 20명의 60% 수준인 12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데 그치자 동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장학금 이외의 유인이 될 수 있는 추가적인 인센티브 제공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관련 연구용역을 수행하였다. 연구용역 결과, 공중보건장학제도 개선방안으로는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해외연수 지원, 공공의료기관 등에 대한 취업 가산점 지원 등의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한편, 동 사업의 수행 실적을 살펴보면 간호대학 재학생 모집은 비교적 수월하게 이루어졌으나,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재학생들 모집에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하여 엄밀한 원인 분석을 진행한 바는 없으나, 다음과 같이 추측하고 있다.

재학생들이 졸업 후 지방의료원 등에서 수행하게 될 의무복무에 대하여 대도시, 수도권에서의 근무에 비하여 다양한 임상환자 등을 접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 근무 여건이 열악할 수 있다는 점, 이로 인해 자신의 진로 개척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할 수 있다는 점 등 부정적 인식을 가지는 경우가 있으며, 특히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재학생들에게서 이러한 인식이 만연할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동 사업의 대상자들 중 특히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이 공중보건장학제도에 충분히 참여할 수 있도록 연구용역의 결과 뿐 아니라, 추가적으로 충분한 유인책을 검토하는 등 동 사업 운영상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 가. 현황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사업<sup>1)</sup>은 건강친화적 일터를 만들고,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건강관리에 힘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업에 인증을 부여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을 보조사업자로 하는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2022년도 예산안은 신규로 4억원이 편성되었다.

[2022년도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20<br>결산 | 2021 <sup>1)</sup> |       | 2022<br>예산안(B) | 증감  |         |
|-------------|------------|--------------------|-------|----------------|-----|---------|
|             |            | 본예산                | 추경(A) |                | B-A | (B-A)/A |
|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 -          | -                  | -     | 400            | 400 | 순증      |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함

자료: 보건복지부

고도 비만인구의 지속적 증가와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규모의 지속적 증가 등으로 인해 2018년 7월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이 수립되었다. 동 대책은 ① 올바른 식습관 교육 강화 및 건강한 식품 소비 유도, ② 신체활동 활성화 및 건강친화적 환경조성, ③ 고도비만자 적극 치료 및 비만관리 지원 강화, ④ 비만에 대한 대국민 인식 개선 및 과학적 기반 구축의 4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는데,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는 신체활동 활성화 및 건강친화적 환경조성 분야의 일환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동 사업은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2022년에는 본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2022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4억원은 인증체계 운영 1억 4,600만원, 건강친화경영 지원 1억 5,400만원, 시스템 구축 및 운영 1억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경덕 예산분석관(choi8807@assembly.go.kr, 6788-3728)

1) 코드: 일반회계 3340-307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사업의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내역]

-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 400백만원
  - 인증체계 운영 = 146백만원
    - 건강친화기업 인증 설명회 개최 = 15백만원
    - 건강친화 인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 10백만원
    - 건강친화 인증심사단 구성 및 운영 = 50백만원
    - 건강친화 포럼·성과대회 운영 = 40백만원
    - 건강친화 인증 운영 질 관리 = 31백만원
  - 건강친화경영 지원 = 154백만원
    - 건강친화 직장교육 기획·운영 = 64백만원
    - 기업 건강친화 컨설팅 기획·운영 = 60백만원
    - 건강친화 조사·연구 = 30백만원
  -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100백만원

자료: 보건복지부

## 나. 분석의견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는 올해 시범사업 중인 바 보건복지부는 인증 심사지표 적정성 점검 및 사업 운영체계·절차상 보완 등을 거쳐 2022년도 동 인증제도가 시행 첫 해 차질이 도입·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성이 있다.**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는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 제6조의2)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직장 내 문화와 환경을 건강 친화적으로 조성하고, 직원 스스로 건강관리를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등 건강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 2) 「국민건강증진법」

#### 제6조(건강친화 환경 조성 및 건강생활의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 제6조의2(건강친화기업 인증)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친화 환경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건강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 대하여 건강친화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⑥ 생략)

[시행일 : 2021. 12. 4.]



인증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인증심사단의 서류 심사 및 현장 심사를 바탕으로 하여 보건복지부 인증위원회의 최종 결정을 통해 이루어지며,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인증 심사비용은 시범사업이 진행중인 2021년에는 무료이다.<sup>3)</sup>

또한, 건강친화 직장환경의 조성을 촉진하고, 동 인증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하여는 인증마크 부여, 직장 내 건강친화 교육 실시, 건강친화 우수기업 선정 및 포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프로그램 등에 대한 우선 참여 및 보상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의 2022년 본사업 수행을 앞두고 인증 심사지표 적정성 점검 및 사업 운영체계·절차상 보완 등을 위하여 올해는 시범사업을 수행중이다. 시범사업 수행 현황에 대하여 살펴보면, 2021년 5~6월 중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에 대한 홍보 등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총 14개 기업이 참여 신청을 완료, 현재는 이 중 서류 심사를 통과한 12개 기업<sup>4)</sup>에 대하여 현장 심사가 진행중이며, 향후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성과대회 개최, 우수사례집 발간 등을 계획하고 있다.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시범사업 2021년 수행 경과 및 계획]

| 구 분               | 내 용                          |
|-------------------|------------------------------|
| 사업 설명회(5~6월, 완료)  | 건강친화기업 인증제 홍보, 시범사업 추진 방향 안내 |
| 기업 모집(6월, 완료)     | 인증 시범사업 추진 공고, 참여기업 선정       |
| 인증 심사(7~10월, 진행중) | 심사단 구성, 서류 심사, 현장 심사         |
| 인증 심의(11월, 예정)    |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 성과 환류(11월, 예정)    | 성과대회 개최, 우수사례집 발간            |

자료: 보건복지부

현재 12개 기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심사기준으로 현장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11월 중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인증 여부를 결정할 계획인데, 올해는 개발된 인증평가지표 및 평가체계에 대한 검증에 위한 단계이므로 현재 심사를 받고 있

- 3)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2년 이후 본사업 기간에는 대기업에 대하여 신규 인증신청 100만원, 유효기간 연장 신청 50만원씩 부과할 계획이나, 확정된 사항은 아니며 추후 변경될 여지가 있다.
- 4) 국민은행, 현대그린푸드, 기아, 삼성전자(이상 대기업), 동일고무벨트, 디알비동일,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의과연구소(이상 비영리 및 중견기업), 씨제이케이얼라이언스, 엔공구, 미디어이지, 케이티오파트너스(이상 중소기업)를 포함한다.

는 기업들은 향후 동 인증제도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경우 올해 최종 인증 여부와 관계없이 2022년 본사업 수행을 위한 확정된 평가기준으로 인증평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

아래의 심사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영리더십은 근로자 건강관리가 기업 경영방침의 구성요소에 포함되어 있으며, 경영진은 이를 공표·지지하고 적극 이행하는지 등을 평가하며, 자원은 기업 내 건강친화제도 기획·운영 역량과 책임을 가진 조직이 구성되어 있는지, 기업 내 건강친화제도 추진을 위한 충분한 규모의 예산을 정기적으로 편성하여 지원하는지 등을 평가한다. 건강친화환경은 기업 전반의 건강 친화적 근로환경 조성(적절한 채광, 과도한 소음방지, 친환경 물질 사용, 건강관리실, 운동기구, 건강계단, 구내식당 식단관리 등)을 위한 활동을 실시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프로그램 운영·지원은 직장 내 건강위험요인을 고려하여 적절한 건강증진 프로그램(비만을 개선 위한 걷기 실천 활동, 고혈압 등의 개선을 위한 주기적 상담, 직장 내 금연프로그램 등)을 계획하여 추진하였는지 등을 평가한다.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심사기준]

| 심사항목            | 심사영역       | 심사지표                               | 배점                 |
|-----------------|------------|------------------------------------|--------------------|
| 건강친화경영<br>(100) | 경영리더십      | 경영방침 수립·이행, 경영진의 의지                | 대기업 20<br>중소기업 30  |
|                 | 자원         | 조직구성, 인력확보, 정기적 예산 편성, 충분한 예산편성    | 대기업 30<br>중소기업 30  |
|                 | 협력·소통      | 직원 의사 결정 참여, 의견 반영·환류              | 대기업 20<br>중소기업 30  |
|                 | 역량관리·강화    | 복직·적응 관리, 직원 교육·훈련, 담당인력 교육        | 대기업 30<br>중소기업 10  |
| 건강친화제도<br>(100) | 건강친화환경     | 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                       | 대기업 40<br>중소기업 60  |
|                 | 건강친화문화     | 휴가·휴직 지원제도, 근로시간 관리제도, 참여·기여 인센티브  | 대기업 60<br>중소기업 40  |
| 건강친화활동<br>(100) | 프로그램 운영·지원 | 계획 수립·이행, 프로그램 다양성, 직원 참여·지지       | 대기업 50<br>중소기업 100 |
|                 | 사회적 책임     | 지역사회 건강친화 공헌, 건강형평성 제고, 직원 가족 건강지원 | 대기업 50             |
| 직원만족도(100)      |            |                                    | 100                |

자료: 보건복지부

우리나라 성인 남성의 비만율이 2014년 30.9%에서 2019년 33.8%로 증가하였다는 점,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연평균 노동시간(1,993시간)이 OECD평균(1,734시간)보다 259시간 길다는 점, 대부분의 시간을 직장에서 보내는 우리나라 근로자 특성상 소속 직장의 문화나 환경에 따라 건강수준이 크게 좌우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건강친화경영·환경조성을 장려하여 근로자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의 중요성이 부각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올해 시범사업 기간동안 인증 심사지표 적정성 점검 및 사업 운영체계·절차상 보완 등을 거쳐 2022년도 동 인증제도가 시행 첫 해 차질없이 도입·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성이 있다.

### 가. 현황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sup>1)</sup>은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발생·유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전문인력 등 인건비 지원, 생활치료센터 운영, 손실보상금 지급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2022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1조 99억 3,500만원(53.7%)이 감액된 8,704억 4,600만원이 편성되었다.

전문인력 등 인건비 지원 사업은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진료 등을 위해 파견된 의료인력에게 근무수당 및 출장비 등을 지급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2022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843억 200만원(58.2%)이 감액된 604억 4,6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22년도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20<br>결산 | 2021 <sup>1)</sup> |           | 2022<br>예산안(B) | 증감         |         |
|------------------------|------------|--------------------|-----------|----------------|------------|---------|
|                        |            | 본예산                | 추경(A)     |                | B-A        | (B-A)/A |
|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br>구축 및 운영 | 1,312,236  | -                  | 1,880,381 | 870,446        | △1,009,935 | △53.7   |
| 전문인력 등 인건비 지원          | 33,840     | -                  | 144,748   | 60,446         | △84,302    | △58.2   |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함

자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의3<sup>2)</sup>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4제1항<sup>3)</sup>에 따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파견된 의료인력에 대하여 인건

최경덕 예산분석관(choi8807@assembly.go.kr, 6788-3728)

1) 코드: 일반회계 2740-309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의3(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 감시, 예방·관리 및 역학조사업무에 조력한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약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내용, 절차, 방법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비와 출장비를 지급하고 있다. 2020년 2월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2022년도에도 코로나19에 대응하고자 파견 의료인력에 대한 인건비와 출장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한 2022년도 예산안에는 아래와 같이 총 604억 4,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이 중 파견 의료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444억 3,200만원, 출장비는 117억 3,600만원, 4대보험 부담금은 42억 7,800만원이다. 참고로, 동 예산안은 3개월분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는 코로나19의 유행상황을 사전적으로 예측하기가 어려워 우선적으로 2022년 1분기 소요액만을 편성한 것이다.

[전문인력 등 인건비 지원 사업의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내역]

○전문인력 등 인건비 지원 = 60,446백만원

-인건비 = 44,432백만원

(기본수당) 1,304명 × 20.7만원 × 30일 × 3개월 = 24,294백만원

(교육수당) 1,304명 × 15만원 × 3회 = 587백만원

(위험수당) 1,304명 × 5만원 × 30일 × 3개월 = 5,868백만원

(초과근무수당) 1,304명 × 1만원 × 20일 × 3개월 × 3시간 = 2,347백만원

(모니터링수당) 1,304명 × 20.7만원 × 14일 × 3개월 = 11,337백만원

-출장비 = 11,736백만원

(숙박비) 1,304명 × 6만원 × 30일 × 3개월 = 7,042백만원

(일·식비) 1,304명 × 4만원 × 30일 × 3개월 = 4,694백만원

-4대보험 부담금 = 4,278백만원

자료: 보건복지부

## 나. 분석의견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파견 의료인력에 대한 인건비 및 출장비를 적시에 충분한 수준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나, 이 과정에서 모니터링수당에 대하여는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동 사업을 통한 의료인력의 파견은 기본적으로 ① 의료기관의 인력지원 요청, ②

###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4(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 등에 대한 지원 등)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70조의3제1항에 따라 감염병의 발생 감시, 예방·관리 또는 역학조사업무에 조력한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약사에게 수당 및 여비 등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파견인력 인원 및 기간 등 협의·조정, ③ 인력모집 및 매칭, ④ 의료기관 등에 파견 절차로 이루어진다. 파견인력은 공공인력과 민간인력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중 공중보건의, 군의관, 간호장교 등의 공공인력에 대하여는 각 시·도, 국방부, 소방청 등 소속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파견이 이루어지며, 민간인력에 대하여는 별보 소속이 없는 의료인력을 대상으로 중앙사고수습본부 파견인력관리시스템을 통해 희망자를 모집·매칭하여 파견이 이루어진다.

동 사업을 통한 의료인력 파견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에는 의사 924명, 간호사 1,636명, 간호조무사 392명 등 총 3,276명이 파견되어 코로나19에 대응하였다. 2021년에는 전년대비 파견인력 수가 상당히 증가하였는데, 의사 623명, 간호사 5,511명, 간호조무사 631명 등 8월까지 총 9,489명이 파견되었다.

[전문인력 등 인건비 지원 사업의 의료인력 파견 현황]

(단위: 명)

| 구분                              | 의사  | 간호사   | 간호조무사 | 임상병리사 | 방사선사 | 기타 <sup>2)</sup> | 계     |
|---------------------------------|-----|-------|-------|-------|------|------------------|-------|
| 2020년<br>(2~12월 <sup>1)</sup> ) | 924 | 1,636 | 392   | 229   | 33   | 62               | 3,276 |
| 2021년<br>(1~8월)                 | 623 | 5,511 | 631   | 2,129 | 124  | 471              | 9,489 |
| 1월                              | 132 | 1,005 | 246   | 319   | 25   | 84               | 1,811 |
| 2월                              | 91  | 752   | 127   | 268   | 19   | 64               | 1,321 |
| 3월                              | 74  | 542   | 64    | 254   | 14   | 66               | 1,014 |
| 4월                              | 74  | 500   | 51    | 254   | 13   | 50               | 942   |
| 5월                              | 69  | 473   | 43    | 256   | 12   | 46               | 899   |
| 6월                              | 63  | 472   | 28    | 225   | 11   | 46               | 845   |
| 7월                              | 54  | 666   | 22    | 239   | 10   | 41               | 1,032 |
| 8월                              | 66  | 1,101 | 50    | 314   | 20   | 74               | 1,625 |

주: 1) 의료인력 파견은 2020년 2월부터 이루어졌음

2) 요양보호사, 간병인 등을 포함함

자료: 보건복지부

상술한 파견인력에 대한 인건비 및 출장비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다. 공중보건의, 군의관, 간호장교 등의 공공인력에 대하여는 특별지원활동수당, 추가업무활동장려금(이상 개별수당) 및 교육수당, 초과근무수당, 출장비(이상 공통수당)가 지원되며, 민간인력에 대하여는 근무수당, 전문의수당, 모니터링수당(이상 개별수당), 위험수당, 특수수당, 교육수당, 초과근무수당, 출장비(이상 공통수당)가 지원된다.

[전문인력 등 인건비 지원 사업의 인건비 및 출장비 지급 기준]

| 구분       | 지급 기준    |  |
|----------|----------|--|
| 공공<br>인력 | 개별<br>수당 | (특별지원활동수당) 군 및 공공기관 소속 인력에 대해 1일당 의사 12만원,<br>간호사·방사선사·임상병리사·행정지원 각 7만원                        |
|          |          | (추가업무활동장려금) 공중보건에 대해 1일당 12만원  |
|          | 공통<br>수당 | (교육수당) 최초 교육 이수에 대하여 15만원  |
|          |          | (초과근무수당) 1시간당 1만원  |
|          |          | (출장비) 서울시 11만원, 광역시 10만원, 그 외지역 9만원  |
| 민간<br>인력 | 개별<br>수당 | (근무수당) 1일당 의사 35만원 또는 65만원, 간호사 20만원, 간호조무사 10만원,<br>방사선사 21만원, 임상병리사 18만원, 영양보호사 8만원, 간병인 6만원 |
|          |          | (전문의수당) 1일 10만원  |
|          |          | (모니터링수당) 근무종료 후 모니터링기간(14일 이내)에 대하여 직종별<br>근무수당 상당액 지급   |
|          | 공통<br>수당 | (위험수당) 1일차에 15만원, 2일차부터 5만원(단, 근무회차 반복 시 1일<br>차부터 5만원)  |
|          |          | (특수수당) 병원내 확진자 치료에 투입시 5만원   |
|          |          | (교육수당) 최초 교육 이수에 대하여 15만원  |
|          |          | (초과근무수당) 1시간당 1만원  |
|          |          | (출장비) 서울시 11만원, 광역시 10만원, 그 외 지역 9만원을 매일 지급하되<br>특정일 및 1주일 이내 단기 근무 시 실근무일에만 지급                |

주: 개별수당은 직종별 구분 지급하는 수당을, 공통수당은 직종별 구분 없이 지급하는 수당을 의미함  
자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인건비 및 수당 지급을 위하여 2020년에는 추가경정예산, 이전용, 예비비 등으로 확보한 총 406억 8,000만원 중 338억 4,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21년에는 8월 30일 기준으로 확보한 1,447억 4,800만원 중 974억 6,800만원을 집행하였다.

[전문인력 등 인건비 지원 사업의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 추경     | 이전용   | 예비비     | 예산현액    | 집행액    | 불용액   |
|------|--------|-------|---------|---------|--------|-------|
| 2020 | 18,150 | 1,564 | 20,966  | 40,680  | 33,840 | 6,840 |
| 2021 | 0      | 3,400 | 141,348 | 144,748 | 97,468 | -     |

주: 2020년은 결산 기준, 2021년은 8월 30일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상술한 수당들 중 민간인력에게 지급되는 모니터링수당은 파견인력의 파견활동 종료 후 그들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파견활동 종료 후 파견인력의 코로나19 증상발현 여부를 스스로 점검하기 위해 당사자가 자기모니터링 기간을 요청하는 경우, 14일 이내의 모니터링 기간을 부여받게 되며 해당 기간동안 모니터링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모니터링수당은 직종별 근무수당 상당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1일당 의사 35만원 또는 65만원, 간호사 20만원, 간호조무사 10만원, 방사선사 21만원, 임상병리사 18만원, 영양보호사 8만원, 간병인 6만원씩 지급된다.

실제 파견인력에 대한 모니터링수당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6월 파견인원 845명 중 308명(36.4%)이 모니터링수당을 신청·수령, 총 8억 4,580만원을 수령하였으며, 2021년 7월 파견인원 1,032명 중 213명(20.6%)이 모니터링수당을 신청·수령, 총 5억 4,440만원을 수령하였다.

[파견인력에 대한 모니터링수당 지급 현황]

(단위: 명, %, 백만원)

| 구분    | 6월 파견(7월 지급) |           |       | 7월 파견(8월 지급) |           |       |
|-------|--------------|-----------|-------|--------------|-----------|-------|
|       | 파견인원         | 모니터링수당    |       | 파견인원         | 모니터링수당    |       |
|       |              | 수령인원      | 수령금액  |              | 수령인원      | 수령금액  |
| 의사    | 63           | 7(11.1)   | 63.5  | 54           | 6(11.1)   | 54.3  |
| 간호사   | 472          | 161(34.1) | 461.2 | 666          | 126(18.9) | 325.0 |
| 간호조무사 | 28           | 18(64.3)  | 23.4  | 22           | 5(22.7)   | 5.4   |
| 임상병리사 | 225          | 107(47.6) | 269.6 | 239          | 55(23.0)  | 132.1 |
| 방사선사  | 11           | 7(63.6)   | 20.7  | 10           | 3(30.0)   | 8.9   |
| 기타    | 46           | 8(17.4)   | 7.4   | 41           | 18(43.9)  | 18.7  |
| 계     | 845          | 308(36.4) | 845.8 | 1,032        | 213(20.6) | 544.4 |

주: 1. 6월 파견에 대한 모니터링 수당은 7월에 지급되었으며, 7월 파견에 대한 모니터링 수당은 8월에 지급되었음

2. 파견 시작 이후 2021년 8월까지의 자료를 보건복지부에 요청하였으나,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하여 각 지자체들의 여력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하여 2021년 6월, 7월 파견인력에 대한 모니터링수당 현황만을 제공받았음

3. 괄호안은 파견인원 대비 모니터링수당 수령인원의 비율을 의미함

자료: 보건복지부



자기모니터링 기간은 파견인력 스스로의 건강 뿐 아니라,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기관에 파견되었던 인력들이 파견활동 종료 후 지역사회로 코로나19를 전파시킬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설정한 것이다. 그런데, 「코로나19 대응 파견인력 지원·운영 지침」의 별첨14 모니터링수당 신청서<sup>4)</sup>에 따르면 자기모니터링 기간 동안 자가격리는 권고사항에 해당하며, 이들의 자가격리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자기모니터링 기간이 파견인력 스스로의 건강, 파견인력으로부터의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마련되었음을 고려하면 해당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직종별 근무수당 상당액인 모니터링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에 대한 적절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모니터링수당 신청서에 따르면 자기모니터링 기간 중 수익활동 시에는 지급받은 수당을 반납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보건복지부는 해당 인력들의 자기모니터링기간 중 수익활동 여부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까지 수익활동이 실제 이루어진 적이 있는지에 대한 정보 및 모니터링수당의 반납 사례가 존재하지 않는다.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파견된 인력들의 노고를 보상하기 위한 충분한 수준의 지원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인건비 지급 기준 상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면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모니터링수당에 관하여는 수당 지급 취지에 맞는 적절한 기준 마련과 함께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4) [파견인력 모니터링수당 신청서 상 서명란]

자기모니터링은 일상 생활 속에서 증상발현 여부를 스스로 점검하는 것으로, 모니터링기간 중에는 외부활동을 자제하고 건강상태를 매일 체크하여 보고하는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모니터링기간 중 수익활동 시에는 지급받은 수당을 반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자료: 보건복지부

## 국가신약개발사업 시행 첫 해 추진 지연을 고려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일부 감액 필요

### 가. 현 황

국가신약개발사업<sup>1)</sup>은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의약주권 확보를 위해 신약개발 전주기에 대해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1년에 신규로 편성되어 추진되고 있다. 동 사업의 2022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310억 6,800억 (206.4%)이 증액된 461억 1,9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동 사업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국가신약개발사업단을 통해 수행되는 출연사업이다.

[2022년도 국가신약개발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20<br>결산 | 2021 <sup>1)</sup> |        | 2022<br>예산안(B) | 증감     |         |
|------------------|------------|--------------------|--------|----------------|--------|---------|
|                  |            | 본예산                | 추경(A)  |                | B-A    | (B-A)/A |
| 국가신약개발사업         | -          | 15,051             | 15,051 | 46,119         | 31,068 | 206.4   |
| 신약 기반확충 연구       | -          | 3,934              | 3,934  | 13,767         | 9,833  | 249.9   |
| 신약 R&D 생태계 구축 연구 | -          | 4,594              | 4,594  | 16,077         | 11,483 | 250.0   |
| 신약 임상개발          | -          | 3,792              | 3,792  | 13,271         | 9,479  | 250.0   |
| 신약 R&D 사업화 지원    | -          | -                  | -      | 812            | 812    | 순증      |
| 사업단 운영비          | -          | 1,634              | 1,634  | 2,192          | 558    | 34.1    |
| 기획평가관리비          | -          | 1,097              | 1,097  | -              | △1,097 | 순감      |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함  
자료: 보건복지부

기존 신약개발은 각 부처별로 분절된 지원체계(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초연구~후보물질 최적화), 보건복지부(비임상~임상), 산업통상자원부(생산 및 사업화))에서 수행되어 연구주체간 공동 연구나 기술이전이 미흡하고, 기초연구가 임상이나 사업화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것이 한계점으로 지적된 바 있다.

이에, 동 사업에서는 단일 사업체계 내에서 신약개발 전주기에 대하여 효율적으

최경덕 예산분석관(choi8807@assembly.go.kr, 6788-3728)

1) 코드: 일반회계 3031-444

로 지원하고, 학연(대학교, 연구소)-기업, 기업-기업 간 공동연구를 활성화하고자 2021년부터 추진된 범부처 연구개발(R&D)사업이며, 동 사업의 예산은 과학기술정부 통신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가 각 1/3씩 부담하고 있다.

동 사업은 4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2021년부터 추진된 3개 내역사업(신약 기반확충 연구, 신약 R&D 생태계 구축 연구, 신약 임상개발)은 연구과제를 직접 수행하는 것이며, 2022년부터 신규로 추진될 신약 R&D 사업화 지원 사업은 맞춤형 컨설팅, 사업화 전략기획 등을 통해 연구과제를 지원하는 것이다. 각각의 내역사업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국가신약개발사업 내 내역사업 개요]

| 내역사업명            | 내 용  |
|------------------|--|
| 신약 기반확충 연구       | 유효물질 도출 및 선도물질 도출 단계 연구과제 지원   |
| 신약 R&D 생태계 구축 연구 | 후보물질 도출·최적화 및 비임상 단계에 대한 연구과제 지원                                     |
| 신약 임상개발          | 실용화 성과 창출(기술이전, 신약 개발 등)을 목표로 시장성과 성공가능성에 기초하여 임상 1상 및 2상 단계 연구과제 지원 |
| 신약 R&D 사업화 지원    | 맞춤형 컨설팅 지원, 기술사업화 추진전략 기획 및 사업개발 활동 지원, 의약품 제조 및 생산에 대한 컨설팅 등        |

자료: 보건복지부

## 나. 분석의견

동 사업은 수행 첫 해인 2021년 사업 추진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이를 고려하지 않고 2022년도 예산안에 해당 연구과제들에 대하여 12개월치 예산을 반영한 바, 관련 지침에 따라 동 사업의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심의 과정에서 감액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의 2022년도 예산안에는 신약 기반확충 연구를 위해 137억 6,700만원, 신약 R&D 생태계 구축 연구를 위해 160억 7,700만원, 신약 임상개발을 위해 132억 7,100만원 등 총 461억 1,900만원이 편성되어 있다.

이 중 2022년 기준으로 2년차 연구과제인 2021년 기준 신규 연구과제들에 대한 2022년도 예산안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신약 기반확충 연구 78억 6,700만원, 신약 R&D 생태계 구축 연구 91억 8,700만원, 신약 임상개발 75억 8,400만원이 편성

되어 있으며 동 내역사업들에서 수행하는 과제들은 모두 12개월에 대한 예산안이 편성되어 있다.

[국가신약개발사업의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내역]

|  |
|--|
| ○ 신약 기반확충 연구(2021년 신규) = 13,767백만원                                       |
| - (계속) 59개 × 400백만원 × 12/12개월 × 100% × 1/3 <sup>1)</sup> = 7,867백만원      |
| - (신규) 59개 × 400백만원 × 9/12개월 × 100% × 1/3 = 5,900백만원                     |
| ○ 신약 R&D 생태계 구축 연구(2021년 신규) = 16,077백만원                                 |
| - (계속) (24개 × 600백만원 + 28개 × 1,000백만원) × 12/12개월 × 65% × 1/3 = 9,187백만원  |
| - (신규) (24개 × 600백만원 + 28개 × 1,000백만원) × 9/12개월 × 65% × 1/3 = 6,890백만원   |
| ○ 신약 임상개발(2021년 신규) = 13,271백만원  |
| - (계속) (10개 × 1,750백만원 + 8개 × 3,500백만원) × 12/12개월 × 50% × 1/3 = 7,584백만원 |
| - (신규) (10개 × 1,750백만원 + 8개 × 3,500백만원) × 9/12개월 × 50% × 1/3 = 5,687백만원  |
| ○ 신약 R&D 사업화 지원(2022년 신규 예정) = 812백만원                                    |
| - (신규) 1개 × 4,060백만원 × 9/12개월 × 80% × 1/3 = 812백만원                       |
| ○ 사업단운영비 = 2,192백만원  |

주: 1) 3개 부처 중 보건복지부 부담비율을 의미함  
 자료: 보건복지부

한편, 동 사업의 수행 첫 해인 2021년도 추진 계획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신약 기반확충 연구 내역사업에서 59개, 신약 R&D 생태계 구축 연구 내역사업에서 52개, 신약 임상개발 내역사업에서 18개의 과제를 2021년 7월 이전에 선정하여, 2021년 7월 실제 연구에 착수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동 사업의 2021년도 연구과제 선정 등 실제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9월 14일 기준으로 신약 기반확충 연구 내역사업에서 29개, 신약 R&D 생태계구축 연구 내역사업에서 20개, 신약 임상개발 내역사업에서 6개 연구과제가 선정되었다. 신약 기반확충 연구 내역사업에서 선정된 29개 과제 중 15개는 2021년 7월에 착수하였으며, 나머지 14개는 2021년 9월에 착수하였다. 신약 R&D 생태계구축 연구, 신약 임상개발 사업에서 선정된 연구과제들은 모두 2021년 9월에 착수하였다.

[국가신약개발사업의 2021년도 추진 현황(연구과제 선정)]

| 구 분              | 계획<br>(2021년 예산 편성 기준) |          | 실제 추진 현황   |                                |
|------------------|------------------------|----------|------------|--------------------------------|
|                  | 선정 과제 수                | 과제 착수일자  | 선정 과제 수    | 과제 착수일자                        |
| 신약 기반확충 연구       | 59개                    | 2021.07. | 29개(49.2%) | 15개: 2021.07.<br>14개: 2021.09. |
| 신약 R&D 생태계 구축 연구 | 52개                    |          | 20개(38.5%) | 2021.09.                       |
| 신약 임상개발          | 18개                    |          | 6개(33.3%)  | 2021.09.                       |

주: 괄호 안의 숫자는 목표 선정 과제 수 대비 실제 선정된 과제 수의 비율을 의미함  
자료: 보건복지부

이와 같이 각 내역사업별로 선정된 연구과제(29개, 20개, 6개)는 당초 보건복지부의 계획(59개, 52개, 18개) 대비 49.2%, 38.5%, 33.3% 수준이며, 선정된 연구과제들의 대부분도 당초 계획하였던 착수일자 2021년 7월에 비하여 두 달 지연된 2021년 9월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신약 기반확충 연구 내역사업에서 30개(59개 - 29개), 신약 R&D 생태계 구축 연구 내역사업에서 32개(52개 - 20개), 신약 임상개발 내역사업에서 12개(18개 - 6개)의 연구과제는 아직 선정되지도 못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미선정된 연구과제의 추가 선정을 위한 과제접수는 2021년 8월 20일~9월 2일에 진행되었으며, 해당 과제들은 평가를 거쳐 2021년 11월~12월 중 선정 및 협약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런데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당해 회계연도에 실제 소요되는 연구기간 및 협약시기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회계연도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특히 회계연도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는 계속과제에 대하여는 회계연도 불일치 개선을 위해 2개월 감액한 10개월 예산을 반영하도록 명시되어 있다.<sup>2)</sup> 동 사업은 당초 계획했던 과제의 절반 정도가 선정되어 있는 점, 선정되어 있는 과제들도 당초 계획 착수일자보다 두 달 지연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지침에 따라 회계연도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정

2)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p.33)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당해 회계연도에 실제 소요되는 연구기간 및 협약시기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회계연도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이를 위하여 원칙적으로 아래 기준에 따라 예산을 편성  
(계속과제) 회계연도 불일치 개선을 위해 2개월 감액한 10개월 예산을 반영

수준의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나, 보건복지부는 이를 고려하지 않고 2022년 예산안 편성 시 해당 과제들에 대하여 모두 12개월치 예산을 편성하였다.

따라서 동 사업의 2022년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심의 과정에서 회계연도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22년 기준으로 2년차 연구과제인 2021년 기준 신규 연구 과제들에 대하여 2개월 감액한 10개월에 대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sup>3)</sup>

---

3) 다만, 2021년 기준 신규 연구과제(2022년도 기준 2년차 연구과제)에 대한 2022년도 예산은 2개월분 감액이 필요하나 해당 감액분을 2023년에 반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통한 상병수당 제도 도입의 차질없는 준비 필요

### 가. 현황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sup>1)</sup>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모형별 정책 효과성을 분석·평가하여 상병수당 제도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의 2022년도 예산안은 109억 9,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으며, 동 사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보조사업자로 하는 국고보조율 100%인 민간경상보조사업이다.<sup>2)</sup>

[2022년도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20<br>결산 | 2021 <sup>1)</sup> |       | 2022<br>예산안(B) | 증감     |         |
|---------------|------------|--------------------|-------|----------------|--------|---------|
|               |            | 본예산                | 추경(A) |                | B-A    | (B-A)/A |
|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 -          | -                  | -     | 10,990         | 10,990 | 순증      |
| 상병수당 사업비      | -          | -                  | -     | 10,390         | 10,390 | 순증      |
| 사업운영비         | -          | -                  | -     | 600            | 600    | 순증      |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함  
자료: 보건복지부

상병수당 제도는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사회보장제도로, OECD 36개국 중 한국 및 미국(일부 주 도입)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도입하였으며, 국제사회보장협회(ISSA: International Social Security Association) 182개 회원국 중 163개국에서 도입하였다. 우리나라는 상병수당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sup>3)</sup>에

최경덕 예산분석관(choi8807@assembly.go.kr, 6788-3728)

1) 코드: 일반회계 4931-309

2) 단, 민간경상보조목으로 103억 9,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 외에 연구용역 등을 위해 타 비목으로도 6억원이 편성되어 있다.

3) 「국민건강보험법」

명시되어 있으나 아직 실시되고 있지 않으며, 보건복지부는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단계별 수행을 통해 모형별 정책 효과성 등을 분석·평가하여 상병수당 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시범사업은 2022년 7월부터 약 3년간 수행될 예정이며, 시범사업 결과 및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상병수당 제도(본사업)는 향후 도입될 계획이다.<sup>4)</sup>

이를 위한 동 사업의 2022년도 예산안 109억 9,000만원은 상병수당 급여 92억 원, 상병수당 신청 관련 진단서 발급 비용을 지원하는 의료인증 지원 11억 9,000만원(이상 상병수당 사업비 103억 9,000만원), 연구용역비 5억원, 운영비 1억원(이상 사업운영비 6억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내역]

|   |
|---|
| <p>○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 10,990백만원<br/>         - (상병수당 사업비) 상병수당 급여 9,200백만원 + 의료인증 지원 1,190백만원<sup>1)</sup> = 10,390백만원<br/>         - (사업운영비) 연구용역비 500백만원 + 운영비 100백만원 = 600백만원</p> |
|---|

주: 1) 예상 수급자 1.19만명 × 10만원(후유장애진단서, 상해진단서 등)  
 자료: 보건복지부

**나. 분석의견**

**보건복지부는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바탕으로 효과성을 엄밀히 분석·평가하여 상병수당 제도 도입을 위한 준비를 차질없이 진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상병수당 제도의 도입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2022년 7월부터 시행할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개요에 대해 살펴보면, 사업모형은 3개로 구성되어 있다. 모형1은 취업자가 질병·부상으로 근로할 수 없는 경우 7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 최대 90일 까지 상병수당을 지급하며, 모형2는 취업자가 질병·부상으로 근로할 수 없는 경우 14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 최대 120일까지 상병수당을 지급하며, 모형3은 취업자가 질병·부상으로 입원한 경우 3일을 초과하는 입원 및 입원 관련 외래일수에 대해

제50조(부가급여) 공단은 이 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신·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그 밖의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4) 정확한 도입 시기에 대하여는 현재 시점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최대 90일까지 상병수당을 지급한다. 모형1과 모형2는 상병수당 지급을 위해 입원을 요하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대기기간과 지급기간에 차이점이 있다. 모형1은 대기기간이 7일로 수급 대상자가 더 많을 수 있으나, 최대 지급기간이 90일로 상대적으로 짧게 설정되었으며, 모형2는 대기기간이 14일로 수급 대상자는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으나, 최대 지급기간이 120일로 상대적으로 길게 설정되어 있다.

지원 대상은 질병·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 취업자(임금근로자<sup>5</sup>)+비임금근로자<sup>6</sup>)이며, 이들은 상병수당 지급기간 동안 하루에 최저임금의 60% 수준인 41,860원씩 지급받게 될 예정이다.

국제노동기구(ILO)의 상병급여협약 제22조제1호<sup>7</sup>)에서는 상병급여 수급자의 상병 발생 이전 소득의 60% 이상을 보장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상병수당 제도를 도입한 여러 국가들에서는 기여에 비례한 보상 원칙에 따라 상병 발생 이전 소득의 정률로 상병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동 사업의 시범사업 기간 중에는 상병 발생 이전 소득의 정률이 아닌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할 예정이다. 이는 1단계 시범사업의 우선적 목적이 상병수당의 보장범위(대기기간, 최대 지급기간의 길이, 요양방법 제한 여부 등)에 따른 제도의 효과 및 근로자의 행태 변화 등을 분석·평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장범위 외의 변수들이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급여의 수준을 정액으로 통제된 것이며, 향후 2단계 시범사업에서는 급여의 수준을 정률로 지원하는 모형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보장범위, 보장수준을 원칙으로 하여 지역선정위원회를 구성, 지역의 인구 규모, 경제활동인구 분포, 지자체의 의지 등을 바탕으로 시범사업 대상 지역 6개(각 모형별로 2개 지역에 적용)를 선정할 계획이다.

5) 개인, 가구, 사업체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일하고 그 대가로 급여 등을 받는 근로자를 의미한다.

6) 자신 또는 가족의 수입을 위해 일한 사람으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등을 의미한다.

7) 「Medical Care and Sickness Benefits Convention, 1969」  
Article 22

1. In the case of a periodical payment to which this Article applies, the rate of the benefit, increased by the amount of any family allowances payable during the contingency, shall be such as to attain for the standard beneficiary, in respect of the contingency referred to in subparagraph (b) of Article 7, at least 60 per cent of the total of the previous earnings of the beneficiary and of the amount of any family allowances payable to a person protected with the same family responsibilities as the standard beneficiary.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개요]

| 구 분  | 내 용                               |   |
|------|-----------------------------------|---|
| 사업모형 | 모형 1                              | 취업자가 질병·부상으로 근로할 수 없는 경우<br>7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 최대 90일까지 상병수당 지급        |
|      | 모형 2                              | 취업자가 질병·부상으로 근로할 수 없는 경우<br>14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 최대 120일까지 상병수당 지급      |
|      | 모형 3                              | 취업자가 질병·부상으로 입원한 경우 3일 초과하는 입원 및 입원 관련<br>외래일수에 대해 최대 90일까지 상병수당 지급 |
| 지원대상 | 질병·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 취업자(임금근로자+비임금근로자) |   |
| 보장수준 | 일 41,860원(최저임금의 60%)              |   |
| 지역   | 6개 지역(모형별 2개 지역)                  |   |

자료: 보건복지부

상병수당 지원 절차는 신청, 심사, 결정, 지급의 단계로 구분되는데, 신청인이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진단서 등을 포함하는 구비서류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이를 심사, 지급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집행(지원) 절차]

| 구 분 | 내 용   |
|-----|---|
| 신청  | 신청인이 구비서류 <sup>1)</sup> 를 갖춰 건강보험공단에 상병수당 지급 신청 |
| 심사  | 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인의 자격 심사 및 의료인증                      |
| 결정  | 건강보험공단에서 상병수당 지급 결정 및 결과 통보                     |
| 지급  | 건강보험공단에서 상병수당 및 진단서 발급 비용 지급                    |

주: 1)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진단서 등을 포함함

자료: 보건복지부

한편, 상병수당은 「고용보험법」 제63조8)에 근거한 고용보험 상병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9)에 근거한 산재보험 휴업급여와 성격이 유사한 측면이 있다.

8) 「고용보험법」

제63조(질병 등의 특례)

①수급자격자가 제42조에 따라 실업의 신고를 한 이후에 질병·부상 또는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대하여는 제4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수급자격자의 청구에 의하여 제46조의 구직급여일액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상병급여”라 한다)을 구직급여를 갈음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직급여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상병급여(傷病給與)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상병급여는 실업의 신고를 한 이후에 질병·부상 등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대하여 지급하는 급여이며, 휴업급여는 산재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로,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하는 급여이다.

먼저, 상병수당과 고용보험 상병급여 간 중복 지급 가능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상병수당은 기본적으로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상병급여는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여 원칙적으로 상호 중복 지급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만, 상병급여 수급 중 상병수당을 신청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중복 지급을 방지하고자 신청자의 취업 여부를 확인하고, 상병급여 수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다음으로, 상병수당과 산재보험 휴업급여 간 중복 지급 가능성에 대하여도 보건복지부는 상병수당은 업무 외 상병, 휴업급여는 업무상 상병에 대한 소득 보전 제도이므로 관계부처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상호 중복 지급되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할 계획이다. 예를 들면 상병수당 수급 후 휴업급여 지급 신청을 하는 경우 산재보험에서 해당 상병의 업무 관련성을 심사하게 되는데,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휴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나, 기존 상병수당 지급분에 대하여 기관 간 상계처리가 가능하도록 하여 중복 지급을 방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3년간(잠정) 수행될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통해 상병수당의 정책 효과성을 엄밀하게 분석·평가하여 향후 도입될 상병수당 제도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특히 시범사업 수행 간 보장범위, 보장수준, 타 급여와의 중복성 등을 철저히 수정·보완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sup>10)</sup>

---

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10) 더불어, 지원 대상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특정할 것인지, 취업자의 지속 근로 여부를 어떻게 증빙할 것인지 등에 대하여도 향후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 권역 정신응급의료센터의 신속한 지정을 바탕으로 권역 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 사업의 원활한 수행 필요

### 가. 현황

정신의료서비스 및 당사자 지원 사업<sup>1)</sup>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퇴원 환자의 사회복귀 등을 지원하며 관련 정보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신의료기관 통합정보시스템, 국가입퇴원관리시스템 등을 운영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의 2022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52억 7,900만원(60.0%)이 증액된 140억 7,600만원이 편성되었다.

권역 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 사업은 정신의료서비스 및 당사자 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정신 응급상황에 대하여 상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권역 정신응급의료센터를 지정·운영하기 위해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국고보조율이 50%인 자치단체경상보조사업이며, 2022년도 예산안은 신규로 18억 8,8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22년도 정신의료서비스 및 당사자 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20<br>결산 | 2021 <sup>1)</sup> |       | 2022<br>예산안(B) | 증감    |         |
|---------------------|------------|--------------------|-------|----------------|-------|---------|
|                     |            | 본예산                | 추경(A) |                | B-A   | (B-A)/A |
| 정신의료서비스 및<br>당사자 지원 | 3,679      | 5,787              | 8,797 | 14,076         | 5,279 | 60.0    |
| 권역 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      | -          | -                  | -     | 1,888          | 1,888 | 순증      |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함

자료: 보건복지부

최경덕 예산분석관(choi8807@assembly.go.kr, 6788-3728)

1) 코드: 일반회계 2750-30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0조의5<sup>2)</sup>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위하여 응급의료기관<sup>3)</sup> 중 정신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현재는 정신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이 없으며, 보건복지부는 2021년 1월 14일 수립된 「온국민 마음건강 종합대책」에 따라 2025년까지 총 14개의 정신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예정인데, 2022년에 우선적으로 8개소를 지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지정된 개소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할 예정이며, 이를 위한 동 사업의 2022년도 예산안 18억 8,800만원 중 인건비는 14억 7,200만원이며, 8개소에 대하여 전문의 1명당 1억 4,400만원씩 2명, 간호사 1명당 4,000만원씩 2명, 국고보조율 50%을 고려하였다.

운영비(필수병상 사용료)는 4억 1,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권역 정신응급의료센터는 응급상황에 놓인 정신질환자를 위한 2개의 전담병상을 비워놓아야 하는데<sup>4)</sup>, 이에 대한 보상의 성격으로 병상당 25만원<sup>5)</sup>씩 2개 병상에 대하여 병상가동율 약 57%를 고려하였다.

[권역 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 사업의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내역]

|   |
|---|
| ○ 권역 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 = 1,888백만원                                   |
| - (인건비) = 1,472백만원  |
| 8개소 × [(전문의 2명 × 144백만원) + (간호사 2명 × 40백만원)] × 50% = 1,472백만원 |
| - (운영비) = 416백만원  |
| 8개소 × 병상당 25만원 × 2병상 × 208일(병상가동율 약 57% 가정) × 50%             |

자료: 보건복지부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0조의5(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의 지정 등)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질환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응급의료를 위하여 응급의료기관 중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 ②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의 지정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응급의료기관이란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의미한다.

4) 이에 관하여는, 권역 정신응급의료센터의 지정 기준 등에 대하여 후술되어 있다.

5) 각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운영중인 응급실 기반 정신응급 지정병상의 경우 1병상당 평균 25만원(주중 18만원, 주말 28~38만원)정도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고려하여 평균단가 25만원을 산출하였다.

## 나. 분석의견

보건복지부는 관련 대책에 따라 2025년까지 권역 정신응급의료센터 총 14개소 지정을 계획하고 있는 바, 지정 첫 해인 2022년 목표로 하고 있는 8개소에 대한 지정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동 사업의 집행도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sup>6)</sup>에 따르면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을 발견한 사람은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한 경우에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그 사람에 대한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으며, 동법 제50조제3항<sup>7)</sup>에 따르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응급입원이 의뢰된 사람을 3일 이내의 기간 동안 응급입원 시킬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정신응급 상황 발생 시 판단유보, 치료병상 확보의 어려움으로 이송이 지연되는 등 초기 대응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20년 1월부터 ‘급성기 치료 활성화 시범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해당 시범사업에는 총 13개 의료기관이 참여<sup>8)</sup>하고 있으며, 해당 개소

- 6)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0조(응급입원)

①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을 발견한 사람은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원등을 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그 사람에 대한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

- 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0조(응급입원)

③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응급입원이 의뢰된 사람을 3일(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의 기간 동안 응급입원을 시킬 수 있다.

- 8) [급성기 치료 활성화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현황]

| 소재지 | 기관명        | 소재지 | 기관명        |
|-----|------------|-----|------------|
| 서울  | 서울특별시 은평병원 | 울산  | 세광병원       |
| 대구  | 경북대학교병원    | 강원  | 강원대학교병원    |
|     |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 전북  | 원광대학교병원    |
|     | 대구카톨릭대학교병원 | 전남  | 전라남도 순천의료원 |
|     | 영남대학교의료원   | 경남  | 양산부산대학교병원  |
| 인천  | 인천광역시의료원   | 제주  | 제주대학교병원    |
| 광주  | 해피뷰병원      |     |            |

자료: 보건복지부

들에서 급성 정신질환자의 입원 치료, 병원 내 사례관리, 퇴원 후 사례관리를 수행하는 등 급성기 정신질환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만성 정신질환자가 되는 것을 예방하고자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체 질환을 동반하는 경우에는 기존 정신의료기관에서의 적절한 대응이 곤란하여 응급실 기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보건복지부는 2025년까지 총 14개의 권역 정신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하여, 해당 정신응급의료센터가 정신응급 상황에 24시간 상시 대응하고, 정신응급 상황 등에 대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에 우선적으로 권역 정신응급의료센터 8개소를 지정할 계획이며, 2021년 10월 말 공모, 11월 참여 희망기관에 대한 평가 및 지정 등을 거쳐 권역 정신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의료기관들이 2022년 1월부터 운영을 시작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의3에 따른 정신응급의료센터의 지정 기준을 살펴보면, 정신응급의료센터로 지정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관련법에 따라 입원하는 환자 2명 이상을 즉시 수용할 수 있는 응급전용 입원실, 자해 및 폭행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있는 응급전용 보호실을 갖춰야 한다. 또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최소 2명(응급입원환자가 30명을 초과하는 때에는 응급입원환자 15명당 1명 필요) 및 응급입원환자 4명당 간호사 1명을 요한다.

[정신응급의료센터 지정 기준]

| 구 분 |            | 기 준   |
|-----|------------|---|
| 시설  | 응급전용 입원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입원하는 환자(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은 후 입원하는 환자로 한정) 2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을 것   |
|     | 응급전용 보호실   | 자해 및 폭행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있는 보호실 1개 이상 갖출 것   |
| 인력  |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 최소 2명을 두고, 응급입원환자가 30명을 초과하는 때에는 응급입원환자 15명당 1명을 둘 것(정신건강의학과전공의 1명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0.5명으로 간주하며, 정신응급의료센터에는 정신건강의학과전공의 또는 전문의 1명 이상이 항상 근무할 것) |
|     | 간호사        | 응급입원환자 4명당 1명을 둘 것  |

자료: 보건복지부

이와 같이, 보건복지부는 관련 대책에 따라 2025년까지 권역 정신응급의료센터 총 14개소 지정을 계획하고 있는 바, 지정 첫 해인 2022년 목표로 하고 있는 8개소에 대한 지정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동 사업은 2022년 신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2022년 1월에 지정·운영을 시작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12개월치 예산을 편성하였으므로, 공모, 심사, 지정 등의 사전 절차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동 사업의 예산집행도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sup>9)</sup>

---

9) 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2021년 10월 말 지정공모, 11월 평가 및 지정 등을 거쳐 2022년 1월 정신응급 의료센터의 운영을 시작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 가. 현황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 사업<sup>1)</sup>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근거한 자살예방 대책마련 및 생명존중 사회·문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의 2022년도 계획안은 전년대비 55억 1,500만원(14.0%)이 증액된 450억 4,600만원이 편성되었다.

자살예방 상담전화 운영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자살 고위험군의 선제적 발굴 지원을 위해 특수번호(1393)를 사용하는 자살예방 상담 전화를 운영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2022년도 계획안은 전년대비 2억 1,300만원 (4.6%)이 감액된 44억 5,1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22년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 사업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20<br>결산 | 2021 <sup>1)</sup> |        | 2022<br>계획안(B) | 증감    |         |
|-----------------|------------|--------------------|--------|----------------|-------|---------|
|                 |            | 당초                 | 수정(A)  |                | B-A   | (B-A)/A |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 | 28,874     | 36,780             | 39,531 | 45,046         | 5,515 | 14.0    |
| 자살예방 상담전화 운영    | 1,910      | 1,913              | 4,664  | 4,451          | △213  | △4.6    |

주: 1) 기금은 각각 2021년 당초계획과 9월말 기준 수정계획(자체변경 포함)을 의미

자료: 보건복지부

2018년 1월 23일 수립된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는 2018년 12월 27일부터 자살예방 상담전화를 운영하고 있다. 기존 자살예방 상담전화가 각 지자체별로 운영되고 있었으나, 전담 인력이 충분치 않고 각 지자체별로 8자리의 서로 다른 전화번호를 활용해 인지도가 떨어지는 문제 등이 있어 4자리 특수번호 1393을 활용해 통합 운영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최경덕 예산분석관(choi8807@assembly.go.kr, 6788-3728)

1) 코드: 국민건강증진기금 3346-302

자살예방 상담전화 운영을 위해 동 사업에 편성된 2022년도 계획안 44억 5,100만원은 인건비 27억 300만원, 운영비 11억 7,600만원(사무 공간 보증금, 임차료, 외부이전에 따른 사무공간 구축비용<sup>2)</sup> 등)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살예방 상담전화 운영 사업의 2022년도 계획안 편성 내역]

|  |
|--|
| ○ 자살예방 상담전화 인력 확충 및 사무환경 구축 운영 = 3,880백만원                        |
| - (인건비) 57명(계속) × 36.5백만원 × 12/12개월 + 23명(신규) × 36.1백만원 × 9/12개월 |
| = 2,703백만원   |
| - (운영비) 사무 공간 보증금, 임차료 등 418백만원 + 외부 이전에 따른 사무공간                 |
| 구축비용 758백만원 = 1,176백만원   |
| ○ 자원봉사체계 연장 운영 = 571백만원  |
| - (인건비) 상담사 등 38명 = 448백만원                                       |
| - (운영비) 사무환경 구축 및 운영 = 123백만원                                    |

자료: 보건복지부

나. 분석의견

자살예방 상담전화는 그 성격상 금연 등 여타 상담전화에 비하여 전화 응답률의 중요성이 부각됨에도 불구하고 응대 실패율이 2019~2021년 36.0%, 57.6%, 27.8%로 나타난 바, 응답률 제고를 위해 상담 인력 채용에 만전을 기할 필요성이 있다.

보건복지부는 자살예방 상담전화 운영 사업을 통해 기존 번호보다 기억하기 쉬운 4자리 특수 번호인 1393을 2018년 12월 27일 신규 개통하고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자살예방 상담전화를 운영하고 있다. 참고로, 동 사업을 통해 채용하는 전문인력의 채용 우대사항은 다음과 같다.

[자살예방 상담전화 전문인력 채용 우대사항]

2) 기존 과천 정부 청사 내 추가 사무 공간 확보의 한계로 인해 2021년 7월 26일 서울 영등포구 효성아이티 엑스 건물로 이전을 완료하였으며, 상담인력 57명에 대한 사무공간을 구축하였다. 2022년에는 상담인력 23명을 신규로 채용할 예정으로, 해당 인력이 근무할 사무공간 구축 등에 필요한 예산이 포함되어 있다.

| 구분 | 자격 사항   | 경력 사항                                    |
|----|---|--|
| 내용 | ① 사회복지사, 청소년 상담사 자격 소지자<br>②정신건강전문요원 <sup>1)</sup> 임상심리사 자격 소지자<br>③상담 및 심리계열 전공자 | ①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콜센터 상담업무<br>관련 1년 이상 근무 경험자 |

주: 1)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및 정신건강사회복지사를 포함  
자료: 보건복지부

자살예방 상담전화는 상담사가 걸려온 전화에 응답을 하여 발신자와 상담을 진행하며, 발신자의 상황에 따라 후속 조치가 달라지게 된다. 발신자가 자살 등 위기상황에 놓여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12 또는 119로 연계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긴급복지지원 또는 유관기관(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전화) 등으로 연계된다.

1393 자살예방 상담전화는 개통 이후 상담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2019년 한 해 동안 걸려온 전화 건수는 89,488건이었으며, 2020년에는 170,047건으로 전년대비 약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1년은 1~8월 8달 동안 124,095건이 걸려온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걸려온 전화 중 응답에 실패한 건수(비율)를 살펴보면, 2019년 32,206건(36.0%), 2020년 97,885건(57.6%), 2021년 34,505건(27.8%)으로 나타났다. 2019년(36.0%), 2020년(57.6%)과 비교하면 2021년의 응답 실패율이 하락하긴 하였으나 걸려온 전화 10건 중 약 3건은 응답하지 못하는 수치로,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1393 자살예방 상담전화 이용 현황]

(단위: 건, %)

| 구 분          | 총 전화 건수<br>(응답 성공+실패, A) | 응답 성공  |         | 응답 실패  |         |
|--------------|--------------------------|--------|---------|--------|---------|
|              |                          | 건수(B)  | 비율(B/A) | 건수(C)  | 비율(C/A) |
| 2019년(1~12월) | 89,488                   | 57,282 | 64.0    | 32,206 | 36.0    |
| 2020년(1~12월) | 170,047                  | 72,162 | 42.4    | 97,885 | 57.6    |
| 2021년(1~8월)  | 124,095                  | 89,590 | 72.2    | 34,505 | 27.8    |
| 1월           | 13,999                   | 10,885 | 77.8    | 3,114  | 22.2    |
| 2월           | 14,331                   | 11,124 | 77.6    | 3,207  | 22.4    |
| 3월           | 16,951                   | 11,755 | 69.3    | 5,196  | 30.7    |
| 4월           | 14,324                   | 10,109 | 70.6    | 4,215  | 29.4    |
| 5월           | 16,428                   | 11,686 | 71.1    | 4,742  | 28.9    |
| 6월           | 14,311                   | 10,608 | 74.1    | 3,703  | 25.9    |
| 7월           | 15,095                   | 10,695 | 70.9    | 4,400  | 29.1    |
| 8월           | 18,656                   | 12,728 | 68.2    | 5,928  | 31.8    |

주: 1. 2019년(1~12월)과 2020년(1~12월)은 각 년도별 1~12월의 합산 수치를 의미하며, 2021년(1~8월)은 1~8월의 합산 수치를 의미함

자료: 보건복지부

이와 같이 자살예방 상담전화 응답률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은 일정 부분 인력 채용 부진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상담인력 채용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에는 정원(26명) 대비 11명 부족한 15명이 채용되어 있었으며, 2020년에는 정원(26명) 대비 6.3명이 부족한 19.7명이 채용되어 있었다. 2021년에는 1~8월 평균 결원이 4.9명으로 전전년도, 전년도에 비하여 채용상황이 개선<sup>3)</sup>되었으나, 2021년 7월 정원이 57명으로 확대된 이후 상담인력 충원에 일부 지연이 발생하고 있는 등 2021년 8월 기준으로 결원은 1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채용 지연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동 사업을 통해 채용되는 자살예방 상담전화 인력은 자살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들과 상담을 진행하므로, 그들의 전화상담 과정이 생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서류심사 이후 고객응대의 친절성, 자살예방 상담에 대한 기본소양 및 상황대처능력 등을 면접심사에서 엄격히 평가하여 적격자들만을 채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3) 특히, 2021년 3~6월에는 정원(26명)에 비하여 현원(각 31, 31, 31, 29명)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393 자살예방 상담전화 상담인력 현황]

(단위: 명)

| 구 분          | 정원(A) | 현원(B) | 결원(A-B) |
|--------------|-------|-------|---------|
| 2019년(1~12월) | 26    | 15    | 11      |
| 2020년(1~12월) | 26    | 19.7  | 6.3     |
| 2021년(1~8월)  | 33.8  | 28.9  | 4.9     |
| 1월           | 26    | 20    | 6       |
| 2월           | 26    | 20    | 6       |
| 3월           | 26    | 31    | △5      |
| 4월           | 26    | 31    | △5      |
| 5월           | 26    | 31    | △5      |
| 6월           | 26    | 29    | △3      |
| 7월           | 57    | 30    | 27      |
| 8월           | 57    | 39    | 18      |

주: 2019년(1~12월)과 2020년(1~12월)은 매월 말일기준 수치 12개(1~12월)의 평균값을 의미하며, 2021년(1~8월)은 매월 말일기준 수치 8개(1~8월)의 평균값을 의미함

자료: 보건복지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사업의 2022년 예산안 편성 내역에 따르면 현재 기준 정원 57명에 대한 12개월치 인건비, 2022년에 신규로 채용할 23명에 대한 9개월치 인건비가 편성되어 있다는 점, 현재 기준 현원이 39명에 그치는 점을 감안하면 빈틈없는 전화상담 제공과 해당 예산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상담인력의 신속한 충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동 사업은 전화상담 과정이 발신자의 생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상담인력의 상황대처능력 및 전문성이 여타 상담전화에 비하여 중요한 측면이 있어 채용에 다소 시일이 소요될 여지가 있으나, 보건복지부는 자살예방 상담전화의 응답률 제고 등 상담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인력 채용에 만전을 기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 가. 현황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사업 지원 사업<sup>1)</sup>은 국가 차원에서 제공되어야 하는 응급, 중증외상, 재난의료, 감염병 관리 등 필수의료의 국가 중앙 센터로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재 서울시 중구 을지로에 위치한 국립중앙의료원의 신축·이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2022년도 계획안은 전년대비 1,848억원(710.8%)이 증액된 2,108억원이 편성되었다.

[2022년도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사업 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20<br>결산 | 2021 <sup>1)</sup> |        | 2022<br>계획안(B) | 증감      |         |
|------------------|------------|--------------------|--------|----------------|---------|---------|
|                  |            | 당초                 | 수정(A)  |                | B-A     | (B-A)/A |
|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사업 지원 | 147        | 8,000              | 26,000 | 210,800        | 184,800 | 710.8   |
|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사업    | 20         | 6,283              | 6,283  | -              | △6,283  | 순감      |
| 중앙감염병병원 구축사업     | 127        | 1,717              | 1,717  | -              | △1,717  | 순감      |
| 미 공병단 부지 유상 관리전환 | -          | -                  | 18,000 | 210,000        | 192,000 | 1,066.7 |
| 을지로부지 감정평가 등     | -          | -                  | -      | 800            | 800     | 순증      |

주: 1) 기금은 각각 2021년 당초계획과 9월말 기준 수정계획(자체변경 포함)을 의미  
자료: 보건복지부

노후화된 국립중앙의료원을 리모델링만으로 현대화를 실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 도심에 위치하여 교통체증 등의 문제가 있다는 점 등으로 인해 국립중앙의료원의 신축 및 이전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2003년 서울시가 서초구 원지동 일대를 추모공원<sup>2)</sup>으로 조성하되 주민설득방안으로 국립중앙의료원을 추모공원 옆으로 이전하는 안을 제시하면서 동 사업이 추진되기 시작하였으며, 2014년부터 동

최경덕 예산분석관(choi8807@assembly.go.kr, 6788-3728)

1) 코드: 국민건강증진기금 2701-301

2) 공식명칭은 서울추모공원이며, 2011년 12월 14일 준공을 거쳐 2012년 1월 16일 개원하였다.

사업에 예산이 편성되기 시작하였다.

중앙감염병전문병원 구축사업은 2015년 메르스 이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1항<sup>3)</sup> 및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140호<sup>4)</sup>에 따라 국립중앙의료원이 중앙감염병전문병원으로 지정됨에 따라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부지 인근에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을 신축하려는 사업으로, 이를 위한 예산은 2017년부터 동 사업에 편성되기 시작하였다.

동 사업의 2022년도 계획안을 살펴보면, 총 2,108억원 중 2,100억원은 미군 공병단 부지의 관리권을 국방부로부터 이관받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국방부로 납부해야 할 유상관리전환대금이며, 8억원은 현 국립중앙의료원 부지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비와 동 부지의 적정 매각 시점 도출 등을 위한 컨설팅 비용이다.

#### 나. 분석의견

**동 사업 추진이 다년간 지연된 바, 향후 국립중앙의료원의 미군 공병단 부지 이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는 총사업비 조정 협의, 부지 환경정화 및 문화재 조사, 설계 등 제반사항 이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보건복지부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원지동 이전을 위하여 2014년부터 동 사업에 예산을 편성, 총 5개년에 걸쳐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문화재 발굴, 추가부지 및 진입로 확보 문제, 중앙감염병전문병원 건립 반대 민원 등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다년간 지연된 바 있다. 이에, 사업추진 약 5년만인 2018년 9월과 12월에 국립중앙의료원과 중앙감염병전문병원 구축을 위한 총사업비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국립중앙의료원 총사업비 4,395억원, 중앙감염병전문병원 총사업비 1,316억원)를 토대로 각각 4,415억원, 1,294억원으로 확정되었다.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감염병병원)

① 국가는 감염병의 연구·예방, 전문가 양성 및 교육, 환자의 진료 및 치료 등을 위한 시설, 인력 및 연구능력을 갖춘 감염병전문병원 또는 감염병연구병원을 설립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한다.

4) 「감염병전문병원 지정 의료기관 등」(보건복지부고시 제2020-140호)

제2조(중앙감염병병원의 지정) 중앙감염병병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으로 한다.

이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는 2018년 중 설계에 착수할 계획이었으나, 경부고속도로 확장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sup>5)</sup> 관련 소음환경기준 미충족 문제가 발생하여 또 다시 동 사업의 추진이 지연되었다.<sup>6)7)</sup>

해당 소음환경기준 문제를 해결하고자 방음터널을 설치하는 방안 등도 고려된 바 있으나, 원지동으로의 이전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하에 보건복지부는 원지동으로의 이전 계획을 철회하고 국립중앙의료원을 서울시 중구 미군 공병단 부지로 이전하기로 서울시와 합의,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와 2020년 7월 1일 업무협약 체결, 2021년 4월 5일 합의각서 체결을 완료하였다.

5) 전략환경영향평가란 개발사업 등의 공사가 대기질, 수질, 토양, 소음 등 환경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예측하고 분석 및 평가하는 것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의한 의무사항이다.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도시의 개발에 관한 계획

6) 원지동 부지로의 이전이 몇 년간 지연됨에 따라 동 사업의 예산도 원활히 집행되지 못하였으며, 2017~2020년 4년간 동 사업의 비용액 규모는 총 469억 5,500만원이다. 또한, 동 사업 집행액의 대부분은 부지매입비로, 같은 기간 부지매입비로 집행된 금액은 414억 3,500만원이다.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사업 지원 사업 집행 현황(2017~2020년)]

(단위: 백만원, %)

| 구분    | 예산현액(A) | 집행액    | 실집행액(B) | 비용액    | 실집행액(B/A) |
|-------|---------|--------|---------|--------|-----------|
| 2017년 | 19,455  | 11,247 | 11,079  | 8,208  | 56.9      |
| 2018년 | 42,276  | 28,949 | 28,907  | 13,327 | 68.4      |
| 2019년 | 44,156  | 30,849 | 2,141   | 13,307 | 4.8       |
| 2020년 | 12,259  | 147    | 146     | 12,112 | 1.2       |

자료: 보건복지부

7)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사업 추진경과(서울시 중구 미군 공병단 부지 이전 결정 이전)]

| 일자                   | 내용   |
|----------------------|--|
| 2010.2.              |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관련 의료원-서울시 간 MOU 체결             |
| 2013.6.~2014.2.      | 국립중앙의료원 KDI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진행, 총사업비 4,395억원   |
| 2014.12.             |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관련 복지부-서울시 간 MOU 체결             |
| 2016.8.~2018.7.      | 중앙감염병전문병원 KDI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진행, 총사업비 1,316억원 |
| 2017.5.~2018.5.      |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사업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추진               |
| 2018.6.~9.           |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사업 총사업비 조정, 총사업비 4,415억원        |
| 2018.8.~12.          | 중앙감염병전문병원 구축사업 총사업비 조정, 총사업비 1,294억원       |
| 2017.12.~ / 2018.3.~ | 도시관리계획결정,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수행 중단                |

자료: 보건복지부



미군 공병단 부지는 현재 국방부가 관리하는 국유재산에 해당하여, 「국유재산법」 제16조 및 제17조8)에 따라 부처 간 협의를 통한 유상관리전환 대상이며, 국방부와 보건복지부는 2021년 3월부터 관련 협의를 진행 하였으며, 현재까지 협의된 바에 따르면, 2021~2023년 3년에 걸쳐 미군 공병단 부지 재산가액 7,599억원을 보건복지부가 국방부로 납부 완료하면 부지관리권이 보건복지부로 이관될 예정이다.

부지관리권의 이관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1차 납입금 180억원을 2021년 4월 2일 확보, 4월 8일에 납부하였으며 잔금은 2023년까지 2회에 걸쳐 분납할 계획이다.

동 사업은 향후 문화재 조사, 설계(2021~2023년) 등을 거쳐 2023년 착공, 2026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보건복지부는 기획재정부와 국립중앙의료원, 중앙감염병전문병원에 대한 총사업비 조정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기존 총사업비(국립중앙의료원 4,415억원, 중앙감염병전문병원 1,294억원)는 원지동 부지를 기준으로 결정되었으나, 국립중앙의료원의 이전부지가 기존 원지동에서 미군 공병단 부지로 변경되었으며, 150병상 이상의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을 목적으로 국립중앙의료원에 5,000억원이 기부된 바<sup>9)</sup>, 국립중앙의료원을 당초 600병상에서 800병상 규모로,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을 당초 100병상에서 150병상 규모로 확대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 8) 「국유재산법」

##### 제16조(국유재산의 관리전환)

① 국유재산의 관리전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기금 간에 관리전환을 하려는 경우: 총괄청과 해당 특별회계·기금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 간의 협의
2. 서로 다른 특별회계·기금 간에 관리전환을 하려는 경우: 해당 특별회계·기금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 간의 협의

제17조(유상 관리전환 등) 국유재산을 관리전환하거나 서로 다른 회계·기금 간에 그 사용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각호 생략)

#### 9) 기부자는 故 이진희 삼성 회장 유족이다.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추진 계획(서울시 중구 미군 공병단 부지 이전 결정 이후)]

| 일 자           | 내 용                                       |
|---------------|---|
| 2020.8~2021.1 | 복지부, 서울시, NMC 실무협의체 구성·운영하여 구체적 이행사항 협의   |
| 2021.1        | 미 공병단 부지 유상관리전환 관련 복지부-국방부 간 양해각서 체결      |
| 2021.3        | 미 공병단 부지 유상관리전환 협의 완료                     |
| 2021.4        | 복지부·서울시 간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관련 내용 구체화 합의각서 체결 |
| 2021.3~2021.6 | 미 공병단 부지 감정평가 실시 및 계약금 납부                 |
| 2021.5~       | 총사업비 조정 협의                                |
| 2021~2023     | 미 공병단 부지 환경정화 및 문화재 조사, 설계 등 제반사항 진행      |
| 2023~2026     | 착공, 완공                                    |

자료: 보건복지부

참고로, 원지동 부지는 보건복지부가 부지매입비를 완납하지 않아 현재 서울시 소유이며, 양측이 체결한 합의각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서울시에 납부한 부지 매입 대금 466억 2,311만 3,090원 중 원지동 부지 신축·이전을 위해 서울시가 지출한 용역비 6억 729만 4,500원을 차감한 460억 1,581만 8,590원을 서울시가 보건복지부로 2021년 12월 1일까지 반환하도록 되어있다.<sup>10)</sup> 해당 금액은 서울시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확보해야 하는 상황인 바 아직 반환되지 않았으며, 반환될 금액은 국민건강증진기금 수입으로 편성될 예정이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중앙감염병전문병원 및 중앙외상센터 등을 설치하여 국가 중앙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으로, 동 사업의 중요성이 부각되나 신축·이전이 다년간 지연된 바 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국립중앙의료원의 미군 공병단 부지의 이전이 향후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성이 있다.

10) 다만, 보건복지부는 합의각서에 따르면 양측의 동의가 있을 경우, 대금의 반환 시기를 2024년 12월 1일 까지 연장, 연차별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 건강증진조사연구 및 지역보건사업관리 사업 수행 연구의 특성을 고려한 비목 편성 필요

### 가. 현황

건강증진조사연구 및 지역보건사업관리 사업<sup>1)</sup>은 건강증진과 관련된 정책개발, 인프라 구축, 프로그램 개발 등에 관한 조사 연구, 프로그램의 효과성 평가 및 지역사회의 보건·건강 문제에 관한 조사연구에 대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2022년도 계획안은 전년대비 1억 3,000만원(10.0%)이 감액된 11억 7,0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22년도 건강증진조사연구 및 지역보건사업관리 사업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20<br>결산 | 2021 <sup>1)</sup> |       | 2022<br>계획안(B) | 증감   |         |
|------------------------|------------|--------------------|-------|----------------|------|---------|
|                        |            | 당초                 | 수정(A) |                | B-A  | (B-A)/A |
| 건강증진조사연구 및<br>지역보건사업관리 | 1,174      | 1,300              | 1,300 | 1,170          | △130 | △10.0   |

주: 1) 기금은 각각 2021년 당초계획과 9월말 기준 수정계획(자체변경 포함)을 의미  
자료: 보건복지부

동 사업은 연구과제 수요조사, 연구수행기관 선정, 계약 체결, 연구수행 및 관리, 결과보고서 제출, 연구결과 평가 등의 단계로 추진되며, 수행기간이 1년 이내인 다수의 연구과제들로 구성되어 있는 단년도 계속사업이다. 동 사업을 통한 지난 몇 년간의 연구과제 수행 실적을 살펴보면, 2017년 28건(정책연구과제 26건, 일반연구과제 2건), 2018년 26건(정책연구과제 26건) 등 2017~2021년 5년간 총 128건(정책연구과제 123건, 일반연구과제 5건)이 수행되었다.<sup>2)</sup> 참고로, 해당 정책연구과제, 일반연구과제의 구분은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수행한 것이다.

최경덕 예산분석관(choi8807@assembly.go.kr, 6788-3728)

1) 코드: 국민건강증진기금 3332-301

2) 2021년 연구과제는 진행중이며, 대부분이 2021년 10~12월 중 완료될 예정이다.

[건강증진조사연구 및 지역보건사업관리 사업의 연구과제 수행 실적]

(단위: 건)

| 구 분  | 정책연구과제 | 일반연구과제 | 계   |
|------|--------|--------|-----|
| 2017 | 26     | 2      | 28  |
| 2018 | 26     | 0      | 26  |
| 2019 | 25     | 0      | 25  |
| 2020 | 26     | 1      | 27  |
| 2021 | 20     | 2      | 22  |
| 계    | 123    | 5      | 128 |

자료: 보건복지부

#### 나. 분석의견

건강증진조사연구 및 지역보건사업관리 사업에서 매년 다수의 정책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2022년에도 22건의 정책연구과제를 수행할 계획이나 이를 위한 예산이 전액 일반연구비로 편성되어 있으므로 이를 정책연구비 목으로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

동 사업의 2022년도 계획안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11억 4,200만원이 총 30개의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전액 일반연구비로 편성되어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활용하여 정책연구과제 22건, 일반연구과제 8건을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건강증진조사연구 및 지역보건사업관리 사업의 2022년도 계획안 편성 내역]

- 건강증진조사연구 및 지역보건사업관리 = 1,170백만원
  - 연구과제 수행(일반연구비) = 1,142백만원
    - (정책) 22개 과제 × 45백만원 = 990백만원
    - (일반) 8개 과제 × 39백만원 = 312백만원
  - 일반수용비 = 28백만원

자료: 보건복지부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일반연구비(260-01)와 정책연구비(260-02)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수행되는 연구의 내용을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반연구비는 학술, 기술, 평가, 자문 및 시운전, 실태조사, 전산개발, 임상연구 등 지식기반의 업무에 대한 용역 비용을 의미하며, 정책연구비는 각 부처에서 정책 개발을 위해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 관련 비용을 의미한다.

[일반연구비 및 정책연구비의 정의 및 포함 내역]

| 구 분               | 해당 내역  |
|-------------------|--|
| 일반연구비<br>(260-0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술, 기술, 평가, 자문 및 시운전 실태조사, 전산개발, 임상연구 등 지식기반의 업무에 대한 용역 비용</li> <li>- 기술용역<sup>1)</sup>, 전산용역<sup>2)</sup>, 임상연구용역<sup>3)</sup>, 기타 연구용역<sup>4)</sup> 포함</li> </ul> |
| 정책연구비<br>(260-0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부처에서 정책 개발을 위해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 관련 비용</li> <li>- 과학기술·생산기술 및 정책개발에 관한 연구,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협의회 개최 등의 제반 용역과 계약직 연구원의 보수 등 관련 경비 포함</li> </ul>                               |

- 주: 1)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운전, 평가, 자문, 지도, 산업관리 등을 행하는 경우의 용역  
 2) 행정업무의 전산화와 관련한 데이터 입력,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행하는 경우의 용역  
 3) 국립병원, 교도소 등 국가기관에서 의료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임상연구  
 4) 실태조사, 자료제작 등 일상적인 조사·연구업무와 관련된 제반 용역

자료: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그런데, 동 사업에서 올해 수행되고 있는 연구과제들을 살펴보면, ‘건강친화기업 인증제 심사체계 구축 연구’, ‘마약류 중독자 지원 종합 대책 수립 연구’, ‘지역 기반 정신응급 대응체계 구축 연구’ 등 정책과 관련한 연구들이 상당 수 수행되고 있다.

또한,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정책연구비로 편성되어 수행하는 정책연구에 대하여 정책연구심의위원회를 통해 정책연구용역 수행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계약 체결 내용과 정책연구용역 결과 등을 정책연구용역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일반연구비로 편성·수행되고 있는 동 사업에서도 과제선정은 정책연구심의위원회를 거치고 있으며, 연구결과를 정책연구용역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공개하고 있다.

이와 같이, 동 사업은 일반연구비로 편성·집행되고 있으나, 정책연구에 수반되어야 하는 절차들을 이행하고 있다는 점, 정책과 관련된 연구들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책연구비로 편성·집행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2021년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심의 당시에 동 사업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 중 정책연구가 일반연구의 수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향후 정책연구와 일반연구의 필요성에 따라 매년 그 비율이 유동적으로 결정될 수 있으므로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위해 일반연구비로 일괄 편성하였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한, 금번 2022년 예산안에 대하여도 종전과 동일한 사유로 일괄 일반연구비로 편성하였다는 입장이다.<sup>3)</sup>

보건복지부의 이와 같은 설명에도 불구하고,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동 사업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비목으로 편성·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3) 다만, 보건복지부는 2022년 동 사업 수행시 목간조정을 통해 정책연구와 일반연구에 맞는 비목으로 집행하고, 2023년 예산안 편성시에는 사전에 연구수요 등을 파악하여 일반연구비와 정책연구비를 구분하여 편성·집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하였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 I 예산안 개요

## 1 현 황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2022년도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 및 1개 특별회계(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로 구성되며,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및 2개 특별회계(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구성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2022년도 세입예산안은 501억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181억원(56.4%) 증가하였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501억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0.1억원이다.

[2022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세입예산안]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20<br>결산 | 2021 <sup>1)</sup> |        | 2022<br>예산안(B) | 증감     |         |
|-------------|------------|--------------------|--------|----------------|--------|---------|
|             |            | 본예산                | 추경(A)  |                | B-A    | (B-A)/A |
| 일반회계        | 31,608     | 32,052             | 32,052 | 50,135         | 18,083 | 56.4    |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8          | 10                 | 10     | 10             | -      | -       |
| 합 계         | 31,616     | 32,062             | 32,062 | 50,145         | 18,083 | 56.4    |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

1. 총계 기준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은 6,446억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337억원(5.5%) 증가하였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6,385억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23억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38억원이다.

[2022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세출예산안]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20<br>결산 | 2021 <sup>1)</sup> |         | 2022<br>예산안(B) | 증감     |         |
|-------------|------------|--------------------|---------|----------------|--------|---------|
|             |            | 본예산                | 추경(A)   |                | B-A    | (B-A)/A |
| 일반회계        | 562,719    | 604,550            | 604,550 | 638,531        | 33,981 | 5.6     |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2,177      | 2,375              | 2,375   | 2,276          | △99    | △4.2    |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4,256      | 4,043              | 4,043   | 3,841          | △202   | △5.0    |
| 합 계         | 569,152    | 610,968            | 610,968 | 644,648        | 33,680 | 5.5     |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

1. 총계 기준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의 총수입·총지출은 세입·세출예산 총계와 같다.

2022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코로나19 백신 등 방역제품의 안정적 공급·지원을 위한 국가출하승인 전용 특수시험실(BL3) 구축,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를 통해 국산 백신 개발을 지원하는 바이오의약품 국제경쟁력 강화 예산이 증액되었고, 감염병 대응 혁신기술 지원 연구(R&D)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다.

둘째,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한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장비 보강, 수산물 도매시장 현장검사소 설치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현장 지도·지원 예산이 증액되었다.

셋째, 의료제품 안전관리를 위해 제약 스마트 공장 도입·확산을 위한 '의약품 설계기반 품질고도화 시스템(QbD)' 개발, 신기술 의료기기 품목 확대 및 사이버 보안 검증 예산이 증액되었다.

넷째, 미래 대비 선제적 안전관리 환경조성을 위해 인체 적용제품에 대한 종합적인 위해성 평가, 국가 생약 자원 보존과 연구지원을 위한 '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 운영 및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지원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다.

2022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분석 결과 향후 국회 심의 및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 사업은 향후 천재지변, 감염병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수입식품 안전관리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대면 원격점검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지 방문실사의 경우 대상국가의 자가격리 기간 등을 고려하여 인력 운용 상황 등을 점검하여 수입식품 현지실사 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 사업은 관계 부처 간 적극적인 협의를 통하여 생활화학제품 등 가정이나 사무실 등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등에 대해서는 공동 위해성평가를 추진하여 통합위해성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인체노출 종합안전기준 설정 등에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소비기한 표시제도 도입에 대비하여 식품의 냉장 유통·보관 환경 개선, 영업자에 대한 지도·점검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취약계층 등 소비자에 대한 홍보·교육 등을 강화하여 식품 변질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에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

## 3

##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식품의약품안전처의 2022년도 신규사업은 총 4개 사업, 186억원 규모이다.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 사업은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21. 7. 제정, 22. 1. 시행)에 따라 국민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체적용제품에 대한 종합적 위해관리 및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이다. 감염병 대응 혁신기술 지원연구(R&D)는 mRNA 등 새로운 플랫폼으로 개발되는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안전성·유효성과 품질 평가기술 등을 개발하는 사업이며, 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 운영 사업은 국내 생약자원 보존과 천연물의약품 개발 연구 지원을 위해 2022년 제주에 개관하는 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 구분           | 세부사업명                 | 예산안    |
|--------------|-----------------------|--------|
| 일반회계<br>(4개) |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         | 1,135  |
|              | 첨단 독성 평가기술 기반 구축(R&D) | 2,000  |
|              | 감염병 대응 혁신기술 지원연구(R&D) | 9,500  |
|              | 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 운영         | 5,933  |
| 합 계          |                       | 18,568 |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2022년도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식품등 표시제도 관리강화, 방사능 안전관리 강화, 임상시험 안전기준 강화, 의료기기 안전관리체계 구축, 생물학적제제 국가검정 등이 있다.

① 식품등 표시제도 관리강화 사업은 소비기한 표시제도 도입에 따른 권장소비기한 설정과 교육·홍보를 위한 예산이 신규로 반영되었고, ② 방사능 안전관리 강화 사업은 수입식품 등 방사능 검사장비 보강을 위한 예산이 반영되었으며, ③ 임상시험 안전기준 강화 사업은 코로나19 백신·치료제 등의 신속한 개발 지원과 임상시험 대상자 보호를 위해 국가 지정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 운영 예산이 증액되었다. ④ 의료기기

안전관리체계 구축 사업은 의료기기 품목 분류 확대와 사이버보안 점검을 위한 신규 내역사업이 반영되어 증액되었고, ⑤ 생물학적제제 국가검정 사업은 백신 등의 국가출하승인 전용 특수실험실(BL3) 신축 예산이 증액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주요 증액사업]

(단위: 백만원, %)

| 구분            | 세부사업                  | 2021 <sup>1)</sup> |       | 2022<br>예산안(B) | 증 감   |         |
|---------------|-----------------------|--------------------|-------|----------------|-------|---------|
|               |                       | 본예산                | 추경(A) |                | B-A   | (B-A)/A |
| 일반회계<br>(12개) | 식품등 표시제도 관리강화         | 669                | 669   | 3,497          | 2,828 | 422.7   |
|               | 방사능 안전관리 강화           | 1,747              | 1,747 | 3,262          | 1,515 | 86.7    |
|               | 임상시험 안전기준 강화          | 1,500              | 1,500 | 2,103          | 603   | 40.2    |
|               |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 700                | 700   | 1,521          | 821   | 117.3   |
|               | 의료기기 안전관리체계 구축        | 1,715              | 1,715 | 2,796          | 1,081 | 63.0    |
|               | 차세대 의료제품 평가기반 구축(R&D) | 5,132              | 5,132 | 7,450          | 2,318 | 45.2    |
|               | 규제과학 인재양성 사업(R&D)     | 3,100              | 3,100 | 5,000          | 1,900 | 61.3    |
|               | 스마트 식품안전관리(R&D)       | 1,860              | 1,860 | 5,800          | 3,940 | 211.8   |
|               | 생물학적제제 국가검정           | 6,125              | 6,125 | 13,611         | 7,486 | 122.2   |
|               | 식의약 송무지원              | 191                | 191   | 291            | 100   | 52.4    |
|               | 청사관리운영                | 432                | 432   | 682            | 250   | 57.9    |
|               | 국제개발협력(ODA)           | 3,401              | 3,401 | 5,112          | 1,711 | 50.3    |

주: 1. 총계 기준

2. 주요 증액사업은 2021년도 추경예산 대비 3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

1) 추경은 제2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하며, 기금은 각각 2021년 당초계획과 9월말 기준 수정계획(자체변경 포함)을 의미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 II

## 개별 사업 분석

### 1

### 수입식품 현지 안전관리 사업의 차질 없는 수행 필요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 사업<sup>1)</sup>은 수입식품 현지 안전관리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sup>2)</sup>에 따라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현지실사를 실시하여 안전한 식품의 수입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의 2022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1억 700만원이 증액된 9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2년도 수입식품 현지 안전관리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20<br>결산 | 2021 <sup>1)</sup> |       | 2022<br>예산안(B) | 증감  |         |
|--------------|------------|--------------------|-------|----------------|-----|---------|
|              |            | 본예산                | 추경(A) |                | B-A | (B-A)/A |
| 수입식품 현지 안전관리 | 689        | 1,287              | 1,287 | 1,541          | 254 | 19.7    |
|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  | 583        | 823                | 823   | 930            | 107 | 13.0    |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하며, 기금은 각각 2021년 당초계획과 9월말 기준 수정계획(자체변경 포함)을 의미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정선 예산분석관(moonrise@assembly.go.kr, 6788-4636)

1) 코드: 일반회계 1515-301의 내역사업

2)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6조(해외제조업소의 현지실사)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출국 정부 또는 해외제조업소와 사전에 협의를 거쳐 해외제조업소에 대하여 현지실사를 할 수 있다.

1. 수입식품등의 위해방지를 위하여 현지실사가 필요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국내외에서 수집된 수입식품등의 안전정보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현지실사(제9조의2에 따른 비대면 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정당한 사유 없이 응답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현지실사 결과 수입식품등에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수입중단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수입이 중단된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수출국 정부, 해외제조업소 또는 수입한 영업자가 원인을 규명하여 개선사항을 제시하거나 그 수입식품등에 위해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수입중단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선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다.

## 1-1. 비대면 현지실사 체계 구축 필요

### 가. 현황

코로나19의 확산 및 장기화로 수출국에 대한 현지실사가 제한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0년부터 해외제조업소가 제출한 서류, 사진 등을 통한 비대면 점검 방식으로 현지실사를 수행하고 있다.

[2020~2021년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 현황]

(단위: 개소, 건)

| 연도                         | 구분 | 제조업소 | 대상국가 | 대상 식품                                 | 조치 결과 |      |
|----------------------------|----|------|------|---------------------------------------|-------|------|
|                            |    |      |      |                                       | 검사강화  | 수입중단 |
| 2019<br>방문심사               | 소계 | 286  | 21   | -                                     | 31    | 29   |
|                            | 자체 | 104  | 13   | 기타 농산가공품류, 과자류·빵·떡류, 과일·채소류음료 등 28종   | 9     | 19   |
|                            | 위탁 | 182  | 18   | 면류, 과일·채소류음료, 김치류 등 22종               | 22    | 10   |
| 2020<br>서류심사               | 소계 | 289  | 23   | -                                     | 39    | 0    |
|                            | 자체 | 109  | 18   | 과자류·빵·떡류, 과·채가공품, 김치 등 28종            | 39    | 0    |
|                            | 위탁 | 180  | 22   | 과자류·빵·떡류, 과·채가공품, 땅콩 또는 견과류 가공품 등 23종 | 0     | 0    |
| 2021<br>서류심사 <sup>1)</sup> | 소계 | 288  | 29   | -                                     | -     | -    |
|                            | 자체 | 82   | 8    | 빵류, 과·채가공품, 과자 등 22종                  | -     | -    |
|                            | 위탁 | 206  | 27   | 김치, 빵류, 과자류, 면류 등 31종                 | -     | -    |

주: 1) 위탁사업 대상 제조업소 50개소에 대한 영상심사 포함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미국의 경우 해외식품시설의 위해도 특성에 따라 대상 업체를 선정하여 FDA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일시적 수입식품 안전관리 정책 변화로 2020년 4월 해외공급자검증프로그램(FSVP)을 통한 원격 수입업체 검사를 도입한바 있다.



## 나. 분석의견

**향후 천재지변, 감염병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수입식품 안전관리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대면 원격점검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지실사는 원칙적으로 해외제조업소의 위생관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코로나19 상황 등 불가피한 사유로 현지실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비대면 방식으로 현지실사를 수행하게 되는데, 서류심사의 경우 제조업소가 제출한 서류, 사진 등을 통해 점검 항목 등을 평가하여야 하므로 해외제조업소 현지 위생관리 측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1년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위탁사업 대상 중 50개 업소를 선정하여, 영상실사 대행 업체의 현지 에이전트를 통해 비대면 영상실사를 실시한바 있다.

### [해외제조업소 영상실사 사전 절차]

- 영상실사 대상 업소 현황 파악
  - 영상실사 대상 업소 수용 의사 및 활용 가능한 플랫폼, 장비 등 확인
  - 영상실사 일정 협의
- 영상실사 방법
  - [1안] 영상실사 대행 업체 현지 에이전트 활용
    - 해외제조업소 및 현지 에이전트 일정 조율
    - 현지 네트워크 환경 및 장비 활용 사전 점검
  - [2안] 모바일 장비 개별 활용
    - 모바일 장비(스마트글라스 등) 해외제조업소 발송
    - 해외제조업소 담당자 모바일 장비 사용법 안내
    - 현지 네트워크 환경 및 장비 활용 사전 점검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현재 식품 수입량의 규모는 매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sup>3)</sup>를 보이고 있다. 이에 수입 전 단계의 사전안전관리의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으므로, 향후 코로나19 상황이 종식된 이후에도 천재지변, 감염병 발생 등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수입식품 안전관리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 체계 구축, 운영·정보보호 등에 관한 사전 교육 등을 통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2021년 8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sup>4)</sup> 개정으로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에 대하여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점검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므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비대면 점검을 위한 운영·정보보안·교육 등 관련 법령·지침 등에 따라 원활한 비대면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비대면 원격점검 시스템을 구축하여 현지실사 등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 발생에 대응하고, 현지실사의 대체 또는 병행 등을 통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외 원격심사 활용 인프라 예시]

| 구분  | 사용 장비 등  |
|-----|--|
| 플랫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용플랫폼(온나라, 구루미, Skype, Zoom, MS Teams, Cisco WebEx, Go to Meetings, Whatsapp 등)</li> <li>• 자체 구축 플랫폼</li> </ul> |
| 장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웹캠, 카메라, 노트북, 태블릿, 휴대전화, 비디오카메라, 웨어러블 디바이스(스마트 글라스), 드론 등</li> </ul>  |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분야 비대면 점검제도 구축 연구'

3) 식품 수입량(천톤): ('14년) 5,276 → ('16년) 5,802 → ('18년) 6,190 → ('20년) 6,148

4)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9조의2(해외제조업소 등에 대한 비대면 조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의 사유로 제6조제1항·제7조제4항·제12조제2항에 따른 현지실사 또는 제18조제2항에 따른 현지 위생평가 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신속한 점검 등 효율적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에 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조사를 할 수 있다.

## 1-2. 수입식품 현지실사 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 필요

### 가. 현황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 사업은 부적합 빈발 업소, 다소비 품목 및 국내외 위해정보 등 위해발생 우려가 높은 제조업소를 대상으로 현지실사를 실시하고, 안전관리가 취약한 해외제조업소에 대해서는 수입중단, 시정조치 등 조치를 하여 위해식품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는 사업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김치의 위생관리에 대한 국민적인 우려를 고려하여 2022년도 예산안 증액 편성을 통해 해외 김치제조업소에 대한 현지실사를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2022년도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 사업 예산안 편성 내역]

(단위: 백만원)

| 수행 주체                             | 편성 내역  |
|-----------------------------------|--|
| 식품의약품안전처 자체 현지실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외여비<sup>2)</sup> 197: 해외제조업소 70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시아(중국, 태국, 베트남 등) 2명×17회×1.7 = 58</li> <li>- 미주(미국, 캐나다 등) 2명×9회×3.8 = 69</li> <li>- 유럽(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2명×9회×3.8 = 69</li> </ul> </li> <li>• 통역비<sup>3)</sup> 88: 해외제조업소 70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시아(중국, 태국, 베트남 등) 4일(2일/1개소)×17회 = 34</li> <li>- 미주(미국, 캐나다 등) 4일(2일/1개소)×9회 = 27</li> <li>- 유럽(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4일(2일/1개소)×9회 = 27</li> </ul> </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순증) 해외 김치제조업소 안전관리 강화 107</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외여비 79: 해외 김치제조업소 57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 2명×28회(2개소/1회)×1.41</li> </ul> </li> <li>• 통역비 28: 해외 김치제조업소 57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 4일(2일/1개소)×28회</li> </ul> </li> </ul> |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sup>1)</sup> 위탁 현지실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위탁사업비 536: 해외제조업소 130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외여비 346</li> <li>- 통역비 97</li> <li>- 인건비 82, 일반관리비 등 11</li> </ul> </li> </ul>  |

(단위: 백만원)

| 수행 주체     | 편성 내역  |
|-----------|--|
| 사전 업무수행경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지실사 사전회의 등 0.7</li> <li>- 사전회의 개최 등 2만원×35회</li> </ul>       |
| 장비 구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실사 장비구입 1.4</li> <li>- 제조업체 실사 물품(온도계, 조도계 등) 구입</li> </ul> |

주: 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위탁기관  
 2) 국외여비: 전년도 수입신고현황 중 상위 20개국 주요도시를 근거로 산정  
 3) 평균 통역비(1일/1개소): 아시아지역 50만원, 미주·유럽지역 75만원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 나. 분석의견

**2022년 현지실사 대상 업소가 증가함에 따라 인력 운용 상황 등을 점검하여 수입식품 현지실사 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할 필요가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1년 4월 안전한 김치 수입을 위하여 해외제조업소의 현지 위생 점검 및 확인, HACCP 인증을 위한 세부절차 추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수입김치 안전·안심 대책<sup>5)</sup>을 발표하였다.

### [수입김치 안전·안심 대책 추진 방향]

| 제조업소 관리   | 통관 검사   | 국민참여유통관리  | 소통·홍보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업소 현지실사</li> <li>▶ HACCP 본격추진</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사강화(정부)</li> <li>▶ 검사명령(영업자)</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가김치(5천원이하/10kg), 주재료 유통실태조사 및 검사</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지도 공장정보 제공</li> <li>▶ 수입김치 원클릭</li> <li>▶ 수입식품 검색렌즈</li> </ul> |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 5) 수입김치 안전·안심 대책 발표(2021.4.15.)

- ① 모든 해외 김치제조업소 현지실사 추진
- ② HACCP 적용을 위한 「수입식품법」 시행규칙 등 하위규정 신속 정비
- ③ 영업자 대상 수입김치 검사명령제 시행 강화
- ④ 소비자 참여 수입김치 안전관리 추진
- ⑤ 온라인 세계지도 기반 수입김치 공장 정보 제공 등

이에 따라 최근 5년간 수입 실적이 있는 해외 김치제조업소 109개소에 대한 현지실사를 2022년까지 모두 수행할 계획인데, 2021년에 총 26개소<sup>6)</sup>에 대한 현지실사를 실시하고, 2022년에 남은 83개소에 대한 현지실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치는 대표적인 다소비 수입식품으로 중국산 김치가 국내 유통시장의 약 40%<sup>7)</sup>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비위생 절임배추 동영상 사건 등 제조공정의 비위생성 등에 대한 논란<sup>8)</sup>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김치는 제조과정 상 가열공정이 없어 식중독균 등에 오염될 가능성이 높은 식품이므로 소비자의 우려와 불안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해외 김치 제조업소에 대한 현지실사를 조속히 추진하여 중국산 수입김치에 대한 사전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수입김치에 대한 소비자 인식 조사 현황]

- 배경: 2020년 수입김치 유통관리 강화 사업을 통해 수입김치 소비자 인식도 조사 실시
  - 대상 및 방법: 한 달에 1회 이상 김치 섭취자 약 1,000명, 웹 설문조사
- 조사결과: 수입김치 이미지 부정적 응답 72.2%
  - ① 소비자 인식: 국산김치 긍정적(96.6%), 수입김치 부정적(72.2%)
  - ② 수입김치 부정적 답변 사유: 위생관리 및 안전성 우려
    - 중국 현지공장 위생상태 불신(40.9%), 수출국 김치재료 위생관리(35.3%), 김치 주재료 원산지(9.1%), 국내 유통상태(7.8%) 등
- 안전성 확보를 위한 개선사항: 제조과정에서의 위생관리(58.5%), 현지 김치 주재료 위생관리(24.8%), 김치 주재료 원산지 확보(10.6%) 등
- 수입김치의 HACCP 의무화 필요성: 필요하다고 응답(약 94%)

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식품의약품안전처 공동 조사, 2020.4.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그런데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현지실사는 대상 품목에 따라 수행 주체가 분류되는데, 위해 우려가 높은 품목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자체적으로 현지실사를 수행

6) 신규 제조업소 22개소 및 전년도 통관단계 부적합 제품 및 서류 미제출 제조업소 4개소

7) (2018) 29만톤(72개소) → (2019) 31만톤(71개소) → (2020) 28만톤(76개소)

8) 중국산 김치 납·기생충 알 검출(2005), 방부제 김치...불안한 중국식품(2017), 수입김치 더러워서 못먹어(2019), 쥐똥 나온 공장서 만든 중국산 김치(2019), 비위생 절임배추 동영상(2021)

하고, 그 밖의 품목 등에 대해서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sup>9)</sup> 위탁사업으로 현지실사를 수행<sup>10)</sup>하고 있다.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 구분 기준]

| 구분 | 수행기관          | 대상업소  |
|----|---------------|---|
| 자체 | 식품의약품 안전처     | -위해도 <sup>1)</sup> 가 높은 부적합 항목(곰팡이독소, 식중독균 등) 발생 제조업소                                   |
| 위탁 | 한국식품 안전관리 인증원 | -위해도가 낮은 부적합 항목(금속성 이물, 보존료 기준 위반 등) 발생 제조업소<br>-우수수입업소 신청 제품의 제조업소<br>-수입식품 상위식품의 제조업소 |

주: 1) 위해도는 「위해식품 회수지침」에서 정한 회수등급(1~3등급) 준용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2년 해외 김치제조업소 현지실사를 자체 수행할 계획으로, 원칙적으로 방문 실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sup>11)</sup>. 따라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자체 현지실사 대상 업소는 2021년도 자체 실사 대상인 82개소에 비해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방문 실사를 실시하게 되는 경우, 수출국 상황에 따라 현지실사 점검관<sup>12)</sup>의 자가격리<sup>13)</sup> 기간 등이 소요될 수 있는데, 자격을 갖춘 점검관 인력은 한정되어 있고, 현지실사 대상 업소는 증가한 상황이므로, 인력 운용 상황 등을 점검하여 전체 수입식품 현지실사 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할 필요가 있다.

9)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9조(현지실사 등 위탁)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현지실사(제9조의2에 따른 비대면 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할 수 있다.

10) 위탁사업의 경우 실사대상의 선정과 결과에 대한 조치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행하고, 그 밖의 절차는 자체사업과 동일함

11) 2021년 해외 김치제조업소 26개소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위탁사업 대상에 포함

12) 현지실사 점검관 자격요건, 「해외제조업소 및 해외작업장 현지실사 방법 및 기준」(식약처 고시)

둘째,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비대면 방식으로 실사를 하는 경우, 제조업소가 제출한 서류, 사진 등으로는 판정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1년 10월부터 수입량이 일정 규모 이상인 해외 김치제조업소부터 단계적<sup>14)</sup>으로 HACCP 기준을 의무 적용<sup>15)</sup>할 계획이나 비대면 방식으로 심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HACCP 기준 적용 업소 등 주요 업소에 대해서는 현장 상황에 따라 비디오카메라, 웨어러블 디바이스(스마트 글라스) 등 장비를 활용하는 영상심사를 병행하고, 인증 이후에도 HACCP 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원활한 조사·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속적으로 영상심사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1. 식품기술사, 축산기술사, 수의사
2. 식품·축산관련학과에서 석사학위 이상 취득한 자 중 식품위생행정(축산물 포함) 3년 이상 근무
3. 식품·축산관련학과에서 학사 또는 식품 또는 축산산업기사 이상 자격을 취득한자 중 식품위생행정(축산물 포함)에 5년 이상 근무
4. 식품위생행정 8년 이상 근무자

- 13)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 따르면 중국 격리기간(관찰 포함)은 28일  
- 시설격리(14일), 자가격리(7일, 지정호텔 2~3일 포함), 건강관찰(7일, 공공장소 출입금지)
- 14) 2021년 수입량 1만 톤 이상 → 2022년 5천 톤 이상 → 2023년 1천 톤 이상 → 2024년 모든 수입배추 김치 대상
- 15)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6조의2(해외제조업소 식품안전관리인증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위생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이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이라 한다)을 지키는 해외제조업소를 수입식품등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해외제조업소(이하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라 한다)로 인증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출국 정부와 협의하여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국가의 해외제조업소에 적용되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볼 수 있다.  
②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설치·운영자가 그 인증을 받은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변경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며, 제2항에 따른 변경 인증의 유효기간은 당초 인증 유효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인증 또는 변경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원료관리 및 생산 등의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섞이거나 오염될 우려가 큰 식품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수입식품등은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서 생산·제조·가공·처리·포장·보관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정하여 수입할 수 있다.  
⑤ ~ ⑧ (생략)

[한·중 수입 배추김치 HACCP 인증 MOU 체결 현황]

□ 수입 배추김치에 HACCP 적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중국정부와 구체적인 HACCP 적용의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기 위하여 MOU 마련(2021.9.27)

- 주요내용

- ▶ 인증과 조사·평가 업무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총괄 수행, 인증기준은 우리나라 HACCP 기준 적용
- ▶ 연 1회 이상 조사·평가를 실시하여 적합한 경우만 인증유지
- ▶ 현장심사는 인증원이 선정·교육한 중국 내 공인인증기관과 협력

□ 2019년 기준 1만톤 이상 배추김치 해외제조업소 5개소가 HACCP 신청서를 신청하였으며, 신청업소에 대해 인증심사가 진행 중에 있음

- 2021년 10월 시행 대상은 7개소이나 2개소 폐업 등의 사유로 미신청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 관계 부처 간 적극적인 협의를 통하여 통합위해성평가의 실효성 제고 필요

### 가. 현 황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 사업<sup>1)</sup>은 2022년 1월 시행되는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sup>2)</sup>에 따라 다양한 제품에 포함되어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물질에 대한 종합적인 위해성평가 정책을 수립하고 통합위해성평가 등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22년도 신규 사업으로, 예산안은 11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2년도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20<br>결산 | 2021 <sup>1)</sup> |       | 2022<br>예산안(B) | 증감    |         |
|---------------|------------|--------------------|-------|----------------|-------|---------|
|               |            | 본예산                | 추경(A) |                | B-A   | (B-A)/A |
|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 | -          | -                  | -     | 1,135          | 1,135 | 순증      |
| 위해성평가 기본계획 수립 | -          | -                  | -     | 100            | 100   | 순증      |
| 위해성평가 위원회 운영  | -          | -                  | -     | 60             | 60    | 순증      |
| 유해물질 함량 실태 조사 | -          | -                  | -     | 975            | 975   | 순증      |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하며, 기금은 각각 2021년 당초계획과 9월말 기준 수정계획(자체변경 포함)을 의미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현재 식품, 화장품 등 단일제품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소관 법률<sup>3)</sup>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통해 위해성을 평가·관리하고 있으나, 다양한 제품에 포함되어 있는 동일한

김정선 예산분석관(moonrise@assembly.go.kr, 6788-4636)

1) 코드: 일반회계 1131-303

2) 법률 제18365호,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시행 2022.1.28., 제정 2021.7.27.)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위해성평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국민과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환경부 소관의 「식품위생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보전법」 등

유해물질이 인체에 전체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어렵고, 동일한 유해물질로 인한 위해성 문제가 반복적<sup>4)</sup>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다양한 인체적용제품을 통해 단일 또는 다양한 매체와 경로로 인체에 들어오는 유해물질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통합위해성평가의 근거가 마련되면서, 향후 다양한 제품에 포함되어 있는 유해물질을 총량으로 평가·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EU, 독일, 프랑스 등<sup>5)</sup>에서는 위해성평가 전문기관을 통해 다양한 제품의 섭취 경로 및 노출 경로를 고려한 통합위해성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 나. 분석의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계 부처 간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통합위해성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인체노출 종합안전기준 설정 등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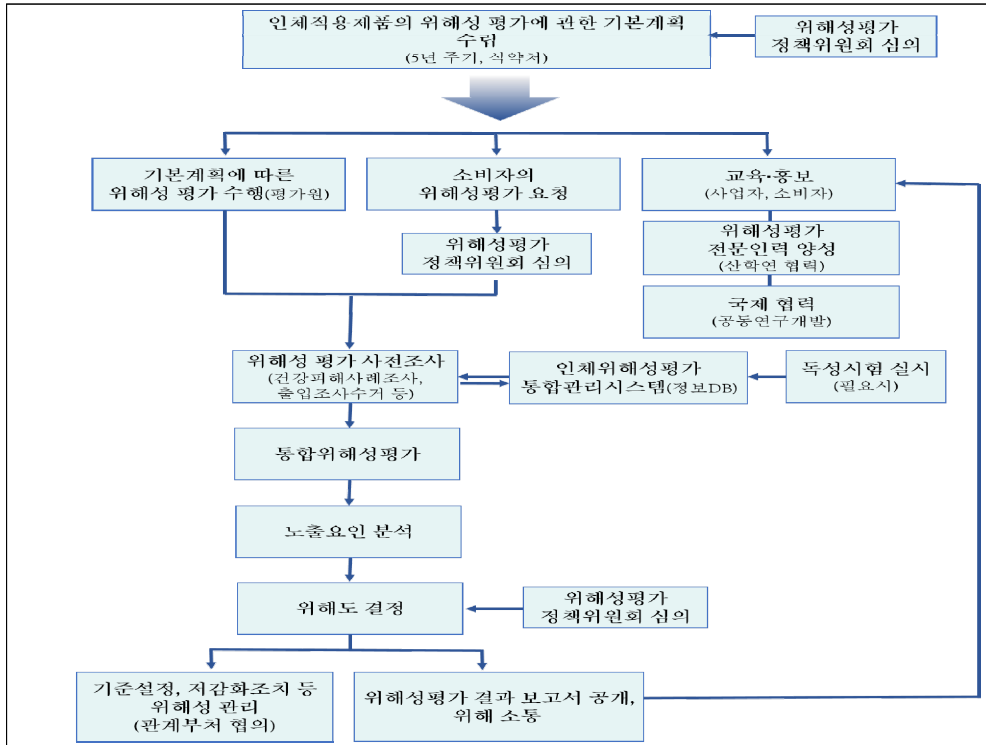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 사업을 통해 다양한 인체적용제품에 대한 종합적·체계적인 위해성평가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유해물질 총량 관리기준인 ‘인체노출 종합안전기준’을 설정하여 통합위해성평가 등으로 인체에 축적되는 유해물질의 총량이 한도를 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

4) · 벤조피렌: 2008년 숙지황, 2009년 참기름·한약제제, 2010년 다류, 2011년 라면스프·생약제 등  
· NDMA(니트로소디메틸아민): 2018년 혈압약 발사르탄, 2019년 위장약 라니티딘

5) · 유럽식품안전청(EFSA): 비스페놀A에 대한 식이, 음용수, 화장품, 감열지, 호흡 노출을 통한 통합위해성평가를 통해 식이로만 평가했을 때와 다른 노출위험군 및 건강위험 확인(2015)  
· 독일 연방위해평가원(BfR):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에 대한 통합위해성평가를 통해 카펫 먼지, 장난감 등 주요 노출 경로 확인 및 노출 수준이 높은 어린이를 위한 노출저감방안 제시(2013)  
· 프랑스 식품환경위생노동청(ANSES): 비스페놀A에 대한 식품 섭취, 호흡, 피부 노출을 통한 통합위해성평가를 통해 주요 노출경로로 식품포장재 확인 및 판매중단 등 입법조치 근거 제공(2013)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 사업 수행 체계]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2022년 동 사업 예산안은 위해성평가 기본계획 수립, 위해성평가 위원회 운영, 유해물질 함량 실태 조사 등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다.

[2022년도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 사업 예산안 편성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 편성내역  |
|---------------|---|
| 위해성평가 기본계획 수립 | 100<br>· 위해성평가 기본계획 수립: 100   |
| 위해성평가 위원회 운영  | 60<br>· 수당: 44(150천원×14명×7개 분야×3회)<br>· 국내여비: 14(75,800원×9명×7개 분야×3회)<br>· 인쇄 및 소모품 구입 등: 2 |
| 유해물질 함량 실태조사  | 975<br>· 검체수거 및 분석비: 975(25종×300개×130천원)  |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0년에 통합위해성평가 후보물질 조사 등에 대한 연구<sup>6)</sup>를 수행하여 위해우려 물질의 위해 정도, 노출빈도, 노출원의 종류 등에 따라 시급성 및 중요도를 평가하여 125종의 위해성평가 필요물질을 우선 선정하였고, 통합위해성평가 수행을 위해 2022년부터 연 25종씩 5년간 유해물질 함량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그런데 통합위해성평가 대상인 위해성평가 필요물질 등 유해물질은 식품·의약품·화장품·위생용품 등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인체적용제품<sup>7)</sup> 외에도 방향제, 캔들 등 생활화학제품이나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살생물제 등<sup>8)</sup>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

6) 기획연구 개요

- 과제명: 식의약품 등의 통합위해성평가 후보물질 조사 및 증장기 전략 마련
- 연구기관: 식품안전정보원(2020.3.1.~10.31.)
- 소요예산: 7,000만원

7)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체적용제품"이란 사람이 섭취·투여·접촉·흡입 등을 함으로써 인체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 가.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
  - 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가공품
  - 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축산물
  - 라. 「주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류
  - 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 바. 「약사법」 제2조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의약품, 한약, 한약제제 및 의약외품(「약사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의약외품은 제외한다)
  - 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 아.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
  - 자.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 차.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위생용품
  - 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관리하는 제품

8)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학물질"이란 원소·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은 물질과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화학적으로 변형시키거나 추출 또는 정제한 것을 말한다.
2. "위해성"이란 화학물질 또는 살생물물질이 노출될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3. "생활화학제품"이란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으로서 사람이나 환경에 화학물질의 노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4.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란 환경부장관이 제8조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한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지정·고시한 생활화학제품을 말한다.
5. "유해생물"이란 사람이나 동물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해로운 영향을 주는 생물을 말한다.
6. "살생물제"(살생물제)란 살생물물질, 살생물제품 및 살생물처리제품을 말한다.
7. "살생물물질"이란 유해생물을 제거, 무해화(무해화) 또는 억제(이하 "제거등"이라 한다)하는 기능으로 사용하는 화학물질, 천연물질 또는 미생물을 말한다.

하는 화학제품, 아동용품, 의류, 가구 등의 생활용품, 대기·토양 등의 환경을 통하여 인체에 축적될 수 있다.

[통합위해성평가 대상 주요 유해물질 예시]

| 물질군        | 물 질                | 노출 관련 제품군  |
|------------|--------------------|--|
| 페놀화합물      | 비스페놀류              | 식품(캔식품 등), 식품포장, 먼지, 치과재료, 의료장비, 감열지, 어린이·유아용완구 및 용품       |
|            | 파라벤류               | 식품, 화장품, 치약, 샴푸 등 생활용품, 의약품                                |
|            | 노닐페놀류              | 식품, 기구·용기, 물, 화장품, 환경, 생활화학제품                              |
| 플라스틱 가소제   | DEHP 등 프탈레이트류      | 식품, 식품포장, 물, 대기, 화장품, 플라스틱제품(샤워커튼, 카펫, 어린이장난감, 자동차 실내장식 등) |
| 중금속        | 납, 카드뮴, 수은, 비소, 크롬 | 식품, 기구·용기, 먼지, 물, 실내의 공기, 생활화학제품, 공산품등                     |
| 코팅제        | PFOA, PFOS 등 과불화합물 | 식품, 기구·용기, 먼지, 물, 실내의 공기, 공산품 (의류, 카펫 등)                   |
| 환경잔류성 유해물질 | 4-TCDD 등 다이옥신류     | 대기 등 환경, 식품, 담배연기 등  |
|            | 벤조피렌 등 다환방향족 탄화수소류 | 식품, 실내공기(조리 등), 환경, 음용수, 담배 등                              |
| 난연제        | 브롬화화합물             | 식품, 대기, 물 등 환경, 벽지, 섬유, 전선 등                               |
| 휘발성물질      | 포름알데하이드            | 식품, 공기, 담배, 종이제품, 건축물, 의류, 카펫 등                            |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8. “살생물제품”이란 유해생물의 제거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 가. 한 가지 이상의 살생물물질로 구성되거나 살생물물질과 살생물물질이 아닌 화학물질·천연물질 또는 미생물이 혼합된 제품
  - 나.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천연물질 또는 미생물의 혼합물로부터 살생물물질을 생성하는 제품
9. “살생물처리제품”이란 제품의 주된 목적 외에 유해생물 제거등의 부수적인 목적을 위하여 살생물 제품을 사용한 제품을 말한다.

따라서 동 사업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제품에 대해서만 수행하게 되면, 인체에 축적되는 유해물질의 총량이 한도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의 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sup>9)</sup>은 위해성평가 수행을 위한 관계 부처 간 협의 및 공동 위해성평가에 대한 근거를 두고 있다. 따라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계 부처 간 적극적인 협의<sup>10)</sup>를 통하여 생활화학제품<sup>11)</sup> 등 가정이나 사무실 등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등에 대해서는 공동 위해성평가를 추진하여 통합위해성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인체노출 종합안전기준 설정 등에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9)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위해성평가의 수행)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9조에 따라 선정된 인체적용제품에 대하여 위해성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해성평가를 수행하기로 합의하거나 공동으로 위해성평가를 수행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0)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는 2018년 이후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해양수산부(국립수산과학원),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 및 한국제품안전관리원, 농진청 국립농업과학원과 지속적으로 통합위해성평가 관계부처 협의회를 개최하고 있고, 2021년 6월 국가기술표준원과 위해우려제품 위해성평가 및 공동관리 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함

1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위해성평가 등) ① 환경부장관은 생활화학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생활화학제품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해성평가를 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한 결과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이 우려되는 경우
2. 생활화학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의 위해성이 크다는 우려가 국내외에서 제기되는 경우

## 가. 현 황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및 운영 사업<sup>1)</sup>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sup>2)</sup> 개정에 따라 식품에 표시된 일자까지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소비기한 표시제도’를 도입하고, 교육·홍보 등을 통하여 제도의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식품등 표시제도 관리강화 사업의 내역사업이다.

이 사업은 2022년 신규 내역사업으로, 예산안은 29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2년도 식품등 표시제도 관리강화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20<br>결산 | 2021 <sup>1)</sup> |       | 2022<br>예산안(B) | 증감    |         |
|------------------|------------|--------------------|-------|----------------|-------|---------|
|                  |            | 본예산                | 추경(A) |                | B-A   | (B-A)/A |
| 식품등 표시제도 관리강화    | 524        | 669                | 669   | 3,497          | 2,828 | 422.7   |
|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및 운영 | -          | -                  | -     | 2,950          | 2,950 | 순증      |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하며, 기금은 각각 2021년 당초계획과 9월말 기준 수정계획(자체변경 포함)을 의미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기한<sup>3)</sup>은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하는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말한다. 현재 EU, 미국<sup>4)</sup>, 일본, 호주, 캐나다 등 다수의 국가<sup>5)</sup>는

김정선 예산분석관(moonrise@assembly.go.kr, 6788-4636)

1) 코드: 일반회계 1032-308의 내역사업

2)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시행 2023.1.1., 개정 2021.8.17.)

제4조(표시의 기준) ① 식품등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만을 표시할 수 있다.

1.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축산물
  - 라. 제조연월일,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3. 건강기능식품
  - 다. 소비기한 및 보관방법

3)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소비기한”이란 식품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말한다.

소비기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는 유통기한이 식품의 폐기시점으로 오인될 수 있는 점을 우려하여 2018년 유통기한 개념을 국제기준에서 삭제한바 있다.

## 나. 분석의견

**식품의 냉장 유통·보관 환경 개선, 영업자에 대한 지도·점검 및 취약계층 등 소비자에 대한 홍보·교육 등 강화를 통하여 식품 변질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에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

2021년 8월 개정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sup>6)</sup>에 따라 2023년부터 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등에는 의무적으로 소비기한을 표시하여야 한다.

유통기한 및 소비기한 제도는 제조업자가 제품의 특성, 유통과정 등을 고려하여 제품 유통 중 안전성과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기간<sup>7)</sup>을 설정하도록 하는 것인데, 유통기한은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으로 그 기간이 지나도 섭취가 가능하지만, 소비기한은 소비의 최종기한으로 그 기간 내에 식품을 섭취하여야 안전한 것으로 판단되는 기간을 설정한다.

식품의 품질 변화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일반적으로 유통기한은 60~70% 수준으로 설정하고, 소비기한은 80~90% 수준에서 설정하게 되므로 유통기한보다 소비기한의 기간이 길게 된다.

소비기한 제도의 도입은 국제적 추세에 따른 것으로, 향후 소비자에게 식품 섭취

4) 미국은 유통기한, 소비기한, 품질유지기한 사용이 가능하나, 소비자 혼란방지 및 식량낭비 감소를 위해 2019년 소비기한 표시 권고

5) 영국, 중국, 홍콩, 필리핀, 멕시코, 칠레, 콜롬비아, 이스라엘, 케냐 등

6)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시행 2023.1.1., 개정 2021.8.17.)

제4조(표시의 기준) ① 식품등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만을 표시할 수 있다.

1.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축산물
- 라. 제조연월일,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3. 건강기능식품
- 다. 소비기한 및 보관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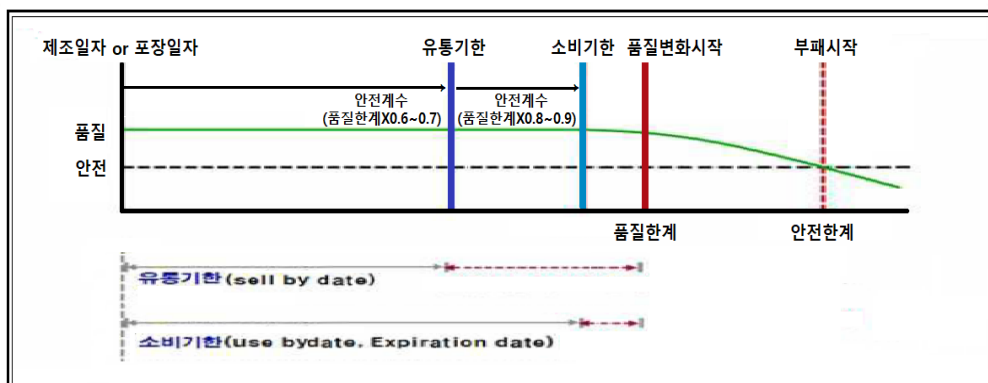
7) 관능검사(제품 외관, 맛, 색깔, 냄새 등을 전문 요원이 오감을 통해 검사), 미생물·이화학·물리적 지표 측정 실험(대장균·식중독균 등의 미생물 검사, 수분·산도·보존료 등 화학성분 검사, 경도·비중·탁도 등 물리적 검사) 등 활용



기간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유통기한 경과로 인해 폐기되는 식품량을 감소시키는 등 바람직한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통기한·소비기한 제도 비교]

| 구분    | 유통기한<br>(Sell by date)   | 소비기한<br>(Use by date) |
|-------|--------------------------|-----------------------|
| 정의    | 적정 보관시 식품의 유통·판매가 가능한 기간 | 적정 보관시 식품의 섭취가 가능한 기간 |
| 운영 방식 | 업체 자율설정 운영               | 업체 자율설정 운영            |
| 연계 제도 | 권장 유통기한<br>(31개 유형)      | 권장 소비기한<br>(200개 유형)  |
|       | 유통기한 설정 가이드라인            | 소비기한 설정 가이드라인         |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 사업을 통해 식품유형별 권장 소비기한 설정<sup>8)</sup>, 우유 등 일부 품목에 대한 냉장 유통·보관 단계 표준관리모델 마련, 소비자 인식개선 등을 위한 교육·홍보 등을 수행하여 영업자의 부담을 덜고 소비자의 혼란 등에 대비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8) 200개 식품유형별 권장 소비기한 설정 추진(연구용역사업, 2022.~2025.)

[2022년도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및 운영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 세부계획  |
|--------|---|
| 영업자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업자 지원을 위한 권장소비기한 설정: 2,5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품별 권장소비기한 설정: 50×50개 유형</li> </ul> </li> <li>• 소비기한 설정 가이드라인 마련: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외국 관련 소비기한 가이드라인 등 사례 조사 5</li> <li>- 대표 품목 선정 및 선정품목에 대한 소비기한 설정시험 디자인 및 수행 85</li> <li>- 실험방법에 대한 신뢰도 평가 10</li> </ul> </li> <li>• 유통단계 표준관리 모델 마련 및 영업자 기술지원: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냉장식품 등 유통단계 표준관리모델 마련 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외국 관련 관리모델 등 조사 10</li> <li>대표품목 선정에 따른 냉장 유통단계별 실태조사 40</li> <li>유통단계 온도관리(설비) 방법식품 운송배송 등 취급방법, 가형내 보관방법 등 지침 마련 20</li> </ul> </li> <li>- 영업자 자료 배포(표준관리모델 책자 인쇄비)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천원×6천부</li> </ul> </li> </ul> </li> </ul> |
| 소비자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비기한 표시제도 홍보·교육: 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비자단체연계교육: 15</li> <li>- 영상제작: 60</li> <li>- TV 송출: 100(50×2회)</li> <li>- 주요 역사·마트 등 광고 송출: 75(25×3회)</li> </ul> </li> </ul>  |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그런데 유통기한 표시제도는 1985년 도입된 이후 장기간 동안 유지되어온 제도로,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소비자가 유통기한 및 소비기한의 개념을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거나, 냉장 유통·보관 등을 위한 시설·설비 등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하는 경우에는 식중독 등 식품의 안전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기한 제도의 안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사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첫째, 개정법 부칙<sup>10)</sup>은 식품등의 위생적 관리와 품질 유지를 위하여 냉장 보관

9) 권장유통기한(1985년) → 유통기한(2000년) → 품질유지기한(2007년, 장류·통조림 등)

10)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및 제27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

기준의 개선이 필요한 품목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시행일로부터 8년의 범위에서 유예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적용특례를 두고 있다. 이에 우유 등 유통과정에서 변질 우려가 있는 일부 품목에 대하여 별도의 유예기간을 둘 것으로 예측되는바 관련 부처, 산업계,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당하는 품목을 선정하고 적절한 유예기한을 설정하여, 유예기간 내에 냉장 유통·보관 환경 등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 등을 차질 없이 수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식품의 유통·보관 등 정보에 취약한 노인, 어린이 및 식품불안정<sup>11)</sup> 비율이 높은 저소득가구 등 취약계층의 경우 식품 변질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으므로, 취약계층 등에 대한 홍보·교육 등을 강화하고, 식품으로 인한 안전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

---

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비기한의 표시에 관한 적용례 및 적용특례) ①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조·가공하거나 수입을 위하여 선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식품등의 위생적 관리와 품질 유지를 위하여 냉장 보관기준의 개선이 필요한 품목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8년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날 이후 제조·가공하거나 수입을 위하여 선적하는 경우부터 적용할 수 있다.

11) food insecurity, 개인의 정상적인 성장 및 발전과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위해 필요한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식품에 접근할 수 없는 상태

## 방사능 검사장비 도입 및 삼중수소 검사법 개발 절차의 차질 없는 수행 필요

### 가. 현황

방사능 검사장비 및 실험실 확충 사업<sup>1)</sup>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sup>2)</sup>에 따라 수입식품 등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방사능 검사를 수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방사능 안전관리 강화 사업의 내역사업이다.

이 사업의 2022년 예산안은 15억원이 편성되었다.

[2022년도 방사능 안전관리 강화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20<br>결산 | 2021 <sup>1)</sup> |       | 2022<br>예산안(B) | 증감    |         |
|----------------------|------------|--------------------|-------|----------------|-------|---------|
|                      |            | 본예산                | 추경(A) |                | B-A   | (B-A)/A |
| 방사능 안전관리 강화          | 5,808      | 1,747              | 1,747 | 3,262          | 1,515 | 86.7    |
| 방사능 검사장비<br>및 실험실 확충 | 4,095      | -                  | -     | 1,500          | 1,500 | 순증      |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하며, 기금은 각각 2021년 당초계획과 9월말 기준 수정계획(자체변경 포함)을 의미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0년도 예산에 41억 3,700만원을 편성하여 방사능 검사장비 11대 및 자동시료 주입장치 5대를 구입·배치<sup>3)</sup>하였고, 2022년도 예산안은 분석정밀도 향상을 위한 신형 분석장비, 24시간 검사체계 운영을 위한 자동시료주입장치

김정선 예산분석관(moonrise@assembly.go.kr, 6788-4636)

1) 코드: 일반회계 1515-303의 내역사업

2) 2021.4.13.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에 이어 2021.8.25.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실시계획안 발표

3) · 방사능 검사장비 배치현황

| 기관명 | 장비 배치 | 수입일     |
|-----|-------|---------|
| 계   | 11    |         |
| 서울청 | 1     | 2020.07 |
| 부산청 | 4     | 2020.07 |
| 경인청 | 6     | 2020.07 |

· 활용 실적: 장비 배치 이후 두 차례(2020. 8.~9., 11.~12..) 검사능력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2021. 1.부터 방사능 검사 강화(측정시간 30분→2시간 47분)

및 삼중수소 전처리 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다.

[2022년 방사능 검사장비 및 실험실 확충 사업 예산안 편성내역]

(단위: 백만원)

| 예산    | 산출내역  |
|-------|---|
| 1,500 | 검사장비 보강 등 검사체계 구축<br>· 자동시료주입장치: 2대×100=200<br>· 정밀도 향상 신행장비: 3대×300=900<br>· 삼중수소 전처리 장비: 2대×200=400 |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 나. 분석의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삼중수소 전처리 장비 등 방사능 검사장비의 도입 및 식품 등에 포함된 삼중수소 검사법 개발 절차를 차질 없이 수행하여 시험법을 조속히 확립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2023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을 결정하고, 삼중수소 외 62개 핵종은 배출기준 미만으로 정화처리<sup>4)</sup>를 한 후 배출하고 정화가 어려운 삼중수소는 배출기준<sup>5)</sup>의 40분의 1 이하로 농도를 낮추어 다년간에 걸쳐 방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8년 10월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방출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정부는 우리나라 연·근해해역 방사능 조사를 54개 정점<sup>6)</sup>에서 71개 정점으로 확대<sup>7)</sup> 수행하고, 주요 해수유입 6개 지점에 대한 삼중수소 조사 빈도를 연 4회로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수산물 등 식품에 포함된 삼중수소의 경우 현재까지 검사법이 미비한 상

4) 세슘, 스트론튬 흡착제거설비 → 담수화 장치(역삼투압) → 다핵종제거설비(ALPS)

※ALPS(Advanced Liquid Processing System):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는 설비로 정화 가능한 핵종은 세슘 134, 세슘137, 코발트60, 스트론튬90 등 62종으로 삼중수소와 탄소14는 제외

5) 삼중수소 배출기준: 6만Bq(벵크렐)/L

6) 정점 선정 기준: 국가해양환경측정망의 최외각 정점 및 배타적 경제수역 내 등을 대상으로 수질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점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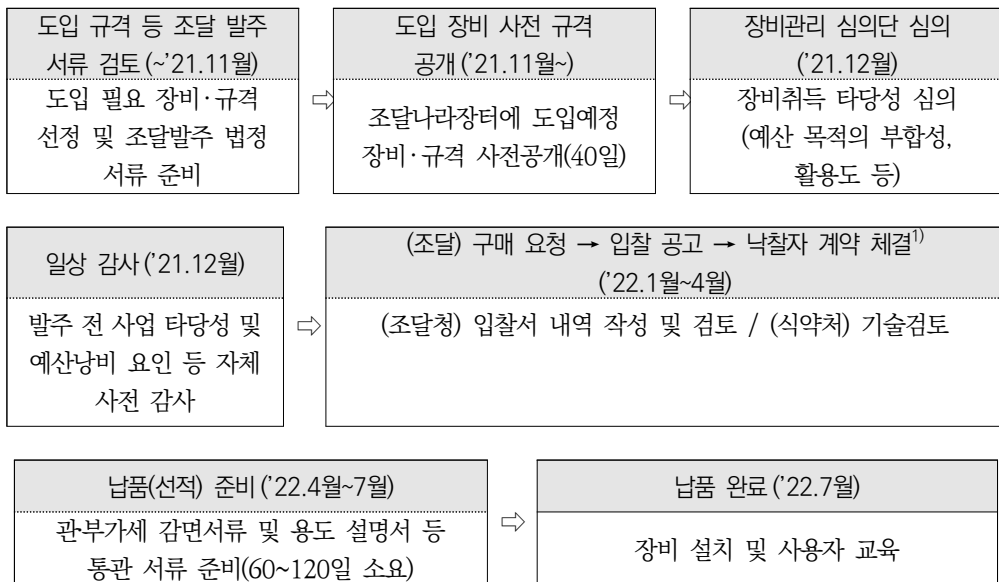
7) 사고이전: 국내 연·근해 22개 정점(원안위)

사고이후, 2020년 기준: 국내 연·근해 32개 정점(원안위) + 연안해역 39개 정점(해수부)

향으로 삼중수소 검사법의 조속한 확립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sup>8)</sup>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수입수산물 및 유통단계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소관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2년 동 사업을 통해 삼중수소 시험법 개발을 위한 전처리 장비<sup>9)</sup> 2대를 구입하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및 부산청에 배치<sup>10)</sup>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식품에 포함되어 있는 삼중수소 시험법 개발에 활용할 계획으로, 구매·납품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면 실제 장비를 설치하는 시기는 2022년 7월경으로 예상하고 있다.

[삼중수소 전처리 장비 등 방사능 검사장비 도입 계획(안)]



주: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등 참조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8) · 식품 중 유해물질(삼중수소) 시험법 확립 건의(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2021.5.6.)  
 ·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오염수 해양방류 대응 건의(부산·울산·경남·전남·제주 5개 시·도 연대, 2021.5.10.)

9) 삼중수소 검사 주요장비: 연소장치(Pyrolyser), 액체섬광계수기(기 보유)

10) 감마핵종 측정 장비 배치계획

| 기관명 | 장비 배치 |
|-----|-------|
| 계   | 3     |
| 서울청 | 1     |
| 부산청 | 1     |
| 경인청 | 1     |

2023년 이후 실제로 오염수가 방출되어 국내 해역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에는 수산물 등 오염에 대한 국민적인 우려가 고조될 뿐 아니라, 삼중수소 검사법에 대한 요구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삼중수소 시험법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시험법 개발 이후 시험법·절차 등에 대한 신뢰성·적합성 평가를 위한 시험법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 따라서 전처리 장비 구축 이후에도 실질적인 시험법 확립을 위해서는 장기간<sup>11)</sup>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방사능 검사기기 등의 수입·배치 및 활용 등을 통한 검사법 개발 절차를 차질 없이 수행하여 시험법을 조속히 확립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

11) 삼중수소 시험법 확립 및 검증 절차

- 시험법 개발: 식품 중 삼중수소(3H) 시험법 개발 연구용역 추진 중
  - 식품 중 방사성 핵종 시험법 확립 및 오염실태 조사(평가원, '21.7월~'22.5월)
- 시험법 검증: 시험법 개발 후 시험법 또는 절차에 대해 과학적 원칙을 기반으로 신뢰성과 적합성 평가를 위한 시험법 검증(실험실 간 교차 검증 등)
  - 검증요소: 선택성, 정확도, 정밀도, 최소검출하한치(MDA) 등 평가







## 질병관리청



# I 예산안 개요

## 1 현 황

### 가. 총수입·총지출

질병관리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하 “예산안”)은 일반회계, 1개 특별회계(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및 2개 기금(국민건강증진기금, 응급의료기금)으로 구성된다.

질병관리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하 “예산안”)의 총수입은 일반회계, 1개 특별회계(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로 구성되며, 총지출은 일반회계, 1개 특별회계(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및 2개 기금(국민건강증진기금, 응급의료기금)으로 구성된다.

질병관리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총수입은 142억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37억원(35.2%) 증가하였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56억원,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86억원이다.

[2022년도 예산안 질병관리청 소관 총수입]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20<br>결산 <sup>2)</sup> | 2021 <sup>1)</sup> |        | 2022<br>예산안(B) | 증감    |         |
|--------------|--------------------------|--------------------|--------|----------------|-------|---------|
|              |                          | 본예산                | 추경(A)  |                | B-A   | (B-A)/A |
| 예 산          | 3,626                    | 10,469             | 10,469 | 14,154         | 3,685 | 35.2    |
| - 일반회계       | 585                      | 2,568              | 2,568  | 5,579          | 3,011 | 117.3   |
| -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 3,041                    | 7,901              | 7,901  | 8,575          | 674   | 8.5     |
| 합 계          | 3,626                    | 10,469             | 10,469 | 14,154         | 3,685 | 35.2    |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하며, 기금은 각각 2021년 당초계획과 9월말 기준 수정계획(자체변경 포함)을 의미

2) 질병관리청 조직개편(20년 9월) 후 소관 결산 금액

자료: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총지출은 5조 1,362억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1조 8,129억원(△26.1%) 감소하였다. 회계·기금별로는 일반회계 4조 4,692억원,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321억원, 국민건강증진기금 6,233억원, 응급의료기금 116억원이다.

[2022년도 예산안 질병관리청 소관 총지출]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20<br>결산 <sup>2)</sup> | 2021 <sup>1)</sup> |          | 2022<br>예산안(B) | 증감       |         |
|-------------------|--------------------------|--------------------|----------|----------------|----------|---------|
|                   |                          | 본예산                | 추경(A)    |                | B-A      | (B-A)/A |
| 예 산               | 644,220                  | 393,237            | 634,618  | 450,287        | △183,331 | △29.1   |
| - 일반회계            | 633,574                  | 361,389            | 6317,770 | 4469,207       | △18453   | △29.3   |
| -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 10,646                   | 31,848             | 31,848   | 32,080         | 232      | 0.7     |
| 기 금 <sup>3)</sup> | 650,183                  | 598,487            | 599,487  | 634,921        | 29,274   | 0.5     |
| - 국민건강증진기금        | 645,856                  | 593,021            | 594,021  | 623,295        | 6,160    | 11.3    |
| - 응급의료기금          | 4,328                    | 5,466              | 5,466    | 11,626         | 35,434   | 0.6     |
| 합 계               | 1,294,403                | 991,724            | 694,105  | 5,136,208      | △181,297 | △26.1   |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하며, 기금은 각각 2021년 당초계획과 9월말 기준 수정계획(자체변경 포함)을 의미

2) 질병관리청 조직개편(20년 9월) 후 소관 결산 금액

3) 기금의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및 「응급의료법」에 따라 소관인 보건복지부에서 배정받아 사용 중

자료: 질병관리청

#### 나. 세입·세출예산안

질병관리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및 1개 특별회계(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로 구성된다.

질병관리청 소관 2022년도 세입예산안은 393억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32억원(9.0%) 증가하였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56억원,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338억원이다.

[2022년도 질병관리청 소관 세입예산안]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20<br>결산 <sup>2)</sup> | 2021 <sup>1)</sup> |        | 2022<br>예산안(B) | 증감    |         |
|------------|--------------------------|--------------------|--------|----------------|-------|---------|
|            |                          | 본예산                | 추경(A)  |                | B-A   | (B-A)/A |
| 일반회계       | 585                      | 2,568              | 2,568  | 5,579          | 3,011 | 117.3   |
|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 14,551                   | 33,528             | 33,528 | 33,752         | 224   | 0.7     |
| 합 계        | 15,136                   | 36,096             | 36,096 | 39,331         | 3,235 | 9.0     |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

2) 질병관리청 조직개편(20년 9월) 후 소관 결산 금액

1. 총계 기준

자료: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은 4조 5,242억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1조 8,446억원(△29.0%) 감소하였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4조 4,904원,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338억원이다.

[2022년도 질병관리청 소관 세출예산안]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20<br>결산 <sup>2)</sup> | 2021 <sup>1)</sup> |           | 2022<br>예산안(B) | 증감         |         |
|------------|--------------------------|--------------------|-----------|----------------|------------|---------|
|            |                          | 본예산                | 추경(A)     |                | B-A        | (B-A)/A |
| 일반회계       | 633,574                  | 378,868            | 6,335,249 | 4,490,412      | △1,844,837 | △29.1   |
|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 10,922                   | 33,528             | 33,528    | 33,752         | 224        | 0.7     |
| 합 계        | 644,496                  | 412,396            | 6,368,777 | 4,524,164      | △1,844,613 | △29.0   |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

2) 질병관리청 조직개편(20년 9월) 후 소관 결산 금액

1. 총계 기준

자료: 질병관리청

#### 다. 기금운용계획안

질병관리청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국민건강증진기금, 응급의료기금으로 구성된다.

질병관리청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6,349억원으로 전년 수정계획안 대비 354억원(5.9%) 증가하였다. 기금별로는 국민건강증진기금 6,233억원, 응급의료기금 116억원이다.

[2022년도 질병관리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20<br>결산 <sup>2)</sup> | 2021 <sup>1)</sup> |         | 2022<br>계획안(B) | 증감     |         |
|----------|--------------------------|--------------------|---------|----------------|--------|---------|
|          |                          | 당초                 | 수정(A)   |                | B-A    | (B-A)/A |
| 국민건강증진기금 | 645,856                  | 593,021            | 594,021 | 623,295        | 29,274 | 4.9     |
| 응급의료기금   | 4,328                    | 5,466              | 5,466   | 11,626         | 6,160  | 112.7   |
| 합 계      | 650,183                  | 598,487            | 599,487 | 634,921        | 35,434 | 5.9     |

주: 1) 각각 2021년 당초계획과 9월말 기준 수정계획(자체변경 포함)을 의미

2) 보건복지부 소관 연간 결산 금액

1. 총계 기준

2. 기금의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및 「응급의료법」에 따라 소관인 보건복지부에서 배정받아 사용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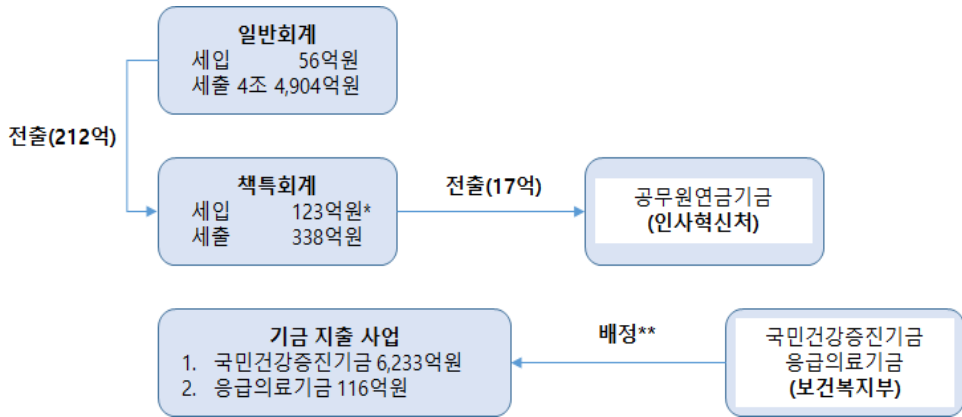
자료: 질병관리청

## 라. 재정구조

2022년도 예산안의 질병관리청 소관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은 다음과 같다.

일반회계의 경우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로 212억원이 전출된다.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경우 공무원연금기금으로 17억원이 전출된다. 국민건강증진기금과 응급의료기금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응급의료법」에 따라 기금관리 주체인 보건복지부로부터 배정받아 사용한다.

[2022년도 질병관리청 소관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



주: 1. 총계 기준

\* 책특회계 수입 총계는 338억원으로, 자체수입(총수입) 86억원 + 일반회계 전입금 212억원 + 세계잉여금 40억원으로 구성

\*\* 질병청 소관 기금지출 사업은 국민건강증진기금·응급의료기금(기금관리주체: 보건복지부)에서 배정 받아 사용

자료: 질병관리청

2022년도 질병관리청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① 코로나19 백신의 안정적 공급과 원활한 예방접종 지속 실시, ②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대응, ③ 상시 감염병 예방·관리 및 만성질환 관리체계 강화, ④ 보건의료 R&D 확대 등에 중점을 두고 관련 예산이 편성되었다.

2022년도 질병관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분석 결과 향후 국회 심의 및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질병관리청은 1억 9,534.9만회분, 1억 138.3만명분 규모의 코로나19 백신 기계약분에 더하여 해외백신 8,000만회분, 국산백신 1,000만회분의 추가 계약을 계획하고 있는 바, 향후 접종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추가 접종(부스터 샷)에 대한 충분한 안전성 검증을 통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토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질병관리청은 2021년 한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한 이상반응에 대한 진료비 및 간병비 등의 지원이 향후에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현행 생활지원비 지급 기준은 수급자 간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므로 지급 기준의 개선이 필요하며, 지급 취지 및 목적과 부합할 수 있도록 생활지원비 지원시 소득 감소 여부를 충분히 고려하는 방향으로의 지급 기준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진다.

넷째,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구축 사업은 2021년 추진 경과와 예산 집행 현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2022년 예산을 연내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편성해야 할 것이다.

질병관리청의 2022년도 신규사업은 총 12개 사업, 3조 6,225억원 규모이다.

신규사업 전부 일반회계이며, 이 중 ‘정책연구개발(R&D)’ 사업은 질병관리청 승격 이후 독자적 기관 역량 제고를 위한 정책 연구 및 코로나19 등 긴급 감염병 연구 추진을 위한 사업이고, ‘건강위해 관리체계 및 기반구축’ 사업은 흡연, 중독, 손상 등 생활 속 건강위해요인 예방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원인불명의 질병발생 시 신속하게 분석·대응하고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 시 효과적으로 대응·지원하기 위한 예산이다.

또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사업은 코로나19 백신의 안정적 도입(해외백신 8천만회분, 국내백신 1천만회분)을 위한 예산과 위탁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예방접종에 대한 시행비를 지원하는 예산, 국내외 공장에서 백신이 접종기관까지 배송될 수 있도록 백신별 보관·유통 조건에 맞는 체계 마련·지원하기 위한 예산 등이 편성된 사업이다.

주요 신규 R&D 사업 중 ‘신기술 기반 백신플랫폼 개발 지원(R&D)’은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등 신변종 감염병 대응 신속 개발을 위한 mRNA 백신 플랫폼 기술 도입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이다. 그리고 mRNA백신 실용화 연구지원을 위한 국내 제약사 기반의 비임상 연구를 지원하는 ‘신변종 감염병 대응 mRNA백신 임상지원(R&D)’ 사업과 생물테러 등 국가안보 대응 및 유행하지 않는 미래대응 백신 등 민간에서 개발을 기피하는 백신을 공공개발 연구하고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를 관리하고 운영·지원하는 ‘공공백신개발지원사업(R&D)’ 등을 신규 편성하였다.



[질병관리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 구 분           | 세부사업명                          | 예산안       |
|---------------|--------------------------------|-----------|
| 일반회계<br>(12개) | 정책연구개발(R&D)                    | 425       |
|               | 질병대응센터 역량강화 지원                 | 1,416     |
|               | 건강위해 관리체계 및 기반구축               | 730       |
|               | 재생의료안전관리 운영                    | 662       |
|               | 글로벌 공중보건 위기대응(ODA)             | 1,800     |
|               | 감염병연구 국제협력 기반구축(R&D)           | 450       |
|               | 신기술 기반 백신플랫폼 개발 지원사업(R&D)      | 12,258    |
|               | 신변종 감염병 대응 mRNA백신 임상지원(R&D)    | 6,700     |
|               | 국가위기초래 바이러스 감염병 극복 기술개발(R&D)   | 14,052    |
|               | 헬스케어 이종데이터 활용체계 및 인공지능 개발(R&D) | 3,000     |
|               | 공공백신개발지원사업(R&D)                | 5,000     |
|               |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 3,575,967 |
| 합 계           |                                | 3,622,460 |

자료: 질병관리청

2022년도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감염병예방 및 관리 종합정보지원시스템 구축운영(정보화), 역학조사 역량 강화 및 연구기반 조성, 기관 기본경비, 국가예방접종실시, 신종감염병 국가격리시설 운영 등이 있다.

① ‘감염병예방 및 관리 종합정보지원시스템 구축운영(정보화)’ 사업은 기존 ‘원헬스 감염병 위해정보시스템 구축(정보화)’ 사업과 통폐합 및 방역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이 신규로 반영되어 증액되었고, ② ‘역학조사 역량 강화 및 연구기반 조성’ 사업은 지자체의 역학조사 능력 배양을 위한 역학조사 체계 고도화 및 감염병 예측 모델 개발 등을 위한 예산이 증액되었다. ③ ‘국가예방접종실시’ 사업은 자궁경부암 예방을 위한 HPV 백신 접종 대상 연령을 확대하여 예산이 증액되었다. ④ ‘신종감염병 국가격리시설 운영’ 사업은 코로나19 대응으로 해외 입국 유증상자 등에 대한 격리시설에서의 진단검사 및 격리의 안정적 수행 지원을 위한 예산이 반영되어 증액되었다.

[질병관리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주요 증액사업]

(단위: 백만원, %)

| 구분                   | 세부사업                                   | 2021 <sup>1)</sup> |         | 2022<br>예산안(B) | 증 감    |         |
|----------------------|--|--------------------|---------|----------------|--------|---------|
|                      |  | 본예산                | 추경(A)   |                | B-A    | (B-A)/A |
| 일반회계<br>(5개)         | 감염병예방 및 관리 종합<br>정보지원시스템 구축운영<br>(정보화) | 1,530              | 1,530   | 6,703          | 5,173  | 338.1   |
|                      | 역학조사 역량 강화 및<br>연구기반 조성                | 300                | 300     | 931            | 631    | 210.3   |
|                      | 국립보건연구원 기본경비<br>(총액)                   | 333                | 333     | 497            | 164    | 49.2    |
|                      | 국립보건연구원 기본경비<br>(비총액)                  | 709                | 709     | 930            | 221    | 31.2    |
|                      | 권역별 질병대응센터<br>기본경비(총액)                 | 251                | 251     | 442            | 191    | 76.1    |
|                      | 권역별 질병대응센터<br>기본경비(비총액)                | 2,207              | 2,207   | 2,930          | 723    | 32.8    |
|                      | 질병관리청 정보화<br>기반운영(정보화)                 | 1,911              | 1,911   | 2,935          | 1,024  | 53.6    |
| 국민건강<br>증진기금<br>(5개) | 국가예방접종실시                               | 347,789            | 347,790 | 374,930        | 27,140 | 7.8     |
|                      | 만성병 관리기술 개발연구<br>(R&D)                 | 15,847             | 15,847  | 20,951         | 5,104  | 32.2    |
| 응급의료<br>기금<br>(1개)   | 신종감염병 국가격리시설 운영                        | 527                | 527     | 6,353          | 5,826  | 1,105.5 |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하며, 기금은 각각 2021년 당초계획과 9월말 기준 수정계획(자체변경 포함)을 의미

1. 총계 기준

자료: 질병관리청

1

코로나19 백신 접종계획의 철저한 수립 및 추가 접종에 대한 충분한 안전성 검증 등 필요

가. 현 황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사업<sup>1)</sup>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 코로나19 백신 도입, 예방접종 시행비 지원, 백신유통관리, 이상반응 관리, 예방접종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을 수행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의 2022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1조 2,449억 2,500만원(28.3%)이 감액된 3조 1,530억 100만원이 편성되었다.

코로나19 백신 도입 사업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치사율 감소 및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코로나19 해외백신 및 국산백신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의 2022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1조 2,718억 1,400만원(32.8%)이 감액된 2조 6,002억 3,600만원이 편성되었다.

참고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사업은 2022년도 신규로 편성된 사업이나, 동 사업에 포함된 내역사업들은 2020년과 2021년에는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 내 내역사업으로 편성, 집행되고 있다.

[2022년도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20<br>결산 | 2021 <sup>1)</sup> |           | 2022<br>예산안(B) | 증감         |         |
|---------------|------------|--------------------|-----------|----------------|------------|---------|
|               |            | 본예산                | 추경(A)     |                | B-A        | (B-A)/A |
|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 222,350    | -                  | 4,397,926 | 3,153,001      | △1,244,925 | △28.3   |
| 코로나19 백신 도입   | 222,350    | -                  | 3,872,050 | 2,600,236      | △1,271,814 | △32.8   |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함

자료: 질병관리청

최경덕 예산분석관(choi8807@assembly.go.kr, 6788-3728)

1) 코드: 일반회계 6434-300

동 사업의 2022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총 2조 6,002억 3,600만원 중 ① 2조 4,079억원은 코로나19 해외백신(mRNA) 8,000만회분에 대한 잔금, ② 1,920억원은 코로나19 국산백신 1,000만회분에 대한 잔금을 위한 것이며, 나머지 ③ 3억 3,600만원은 관련 운영비(일반수용비)로 집행될 계획이다.

[코로나19 백신 도입 사업의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내역]

|                                   |
|-----------------------------------|
| ○ 코로나19 백신 도입 = 2조 6,002억 3,600만원 |
| - (해외백신) = 2조 4,079억원             |
| 해외백신(mRNA) 8,000만회분에 대한 잔금        |
| - (국산백신) = 1,920억원                |
| 국산백신 1,000만회분에 대한 잔금              |
| - (운영비) = 3억 3,600만원              |

자료: 질병관리청

참고로, 질병관리청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1) 2021년 4월 24일 추가로 계약한 화이자 백신 4,000만회분(2,000만명분)에 대한 잔금, 2) 변이바이러스 대응 및 부스터샷 접종을 위해 2022년에 접종할 해외백신 5,000만회분 계약에 필요한 선급금, 3) 국내백신 1,500만회분 선급금을 위해 1조 5,236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한 바 있다.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하여 금번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금번 2022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해외백신 구매를 위한 예산 2조 4,079억원 중 5,000만회분에 대한 잔금은 2021년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5,000만회분 선급금에 대한 잔금을 의미하며, 3,000만회분 잔금은 기존 2021년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적이 없는 것으로<sup>2)</sup>, 질병관리청은 2021년 제2회 추경예산과 금번 2022년 예산안을 통해 총 8,000만회분(5,000만회분 + 3,000만회분) 추가 계약을 계획하고 있다. 이 외에, 2021년 제2회 추경예산에 국산백신 1,500만회분에 대한 선급금이 반영되었으나, 금번 2022년도 예산안에는 1,000만회분에 대한 잔금만 편성되었는데, 이는 국산백신 개발 성공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1,000만회분에 대한 잔금만 편성한 것이다.

[코로나19 백신 구매 관련 예산(2021년 제2회 추경예산, 2022년 본예산(안))]

2) 질병관리청은 추가 계약할 mRNA 3,000만회분에 대한 선급금은 향후 추가적 확보가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2021년 제2회 추경예산 |              | 2022년 본예산(안) |                   |
|------|----------------|--------------|--------------|-------------------|
|      | 금액             | 내용           | 금액           | 내용                |
| 해외백신 | 1,451,650      | 5,000만회분 선금금 | 2,407,900    | 8,000만회분(mRNA) 잔금 |
| 국산백신 | 72,000         | 1,500만회분 선금금 | 192,000      | 1,000만회분 잔금       |

자료: 질병관리청

## 나. 분석의견

질병관리청은 1억 9,534만회분, 1억 137만명분 규모의 코로나19 백신 기계약분에 더하여 해외백신 8,000만회분, 국산백신 1,000만회분의 추가 계약을 계획하고 있는 바, 향후 접종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추가 접종(부스터 샷)에 대한 충분한 안전성 검증을 통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토록 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2020년 6월부터 범정부 협력체계(보건복지부, 외교부, 질병관리청 등 관계부처 및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백신도입 TF 운영)를 가동하여 2020년 7월부터 제약사와의 협상을 진행하기 시작하였다.

질병관리청은 개별 제약사와의 계약에 앞서, 코백스(COVAX facility)<sup>3)</sup>와의 코로나19 백신 2,000만회분(1,000만명분)에 대한 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하였다. 이후 아스트라제네카(2,000만회분, 1,000만명분), 화이자(6,600만회분, 3,300만명분), 안센(600만회분, 600만명분), 모더나(4,000만회분, 2,000만명분), 노바백스(4,000만회분, 2,000만명분), 루마니아와의 화이자(149만회분, 74.5만명분) 계약 및 미국과 루마니아로부터의 안센(140만회분, 140만명분), 모더나(45만회분, 22.5만명분) 무상지원을 통해 2021년 9월 18일 기준으로 총 1억 9,534만회분, 1억 137만명분에 대한 계약 체결(무상지원 포함)을 완료하였다.

### [코로나19 해외백신 계약 및 무상지원 현황]

3) 코백스(COVAX facility)는 2021년말까지 전 세계 인구의 20%까지 코로나19 백신을 균등하게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세계보건기구(WHO), 감염병혁신연합(CEPI), 세계백신면역연합(GAVI)이 중심이 되어 운영하는 다국가 연합체이다. 코백스와의 계약을 통한 코로나19 백신은 세계백신면역연합(GAVI)이 백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참여국에게 백신 후보군에 대한 선택 여부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제공된다.

(단위: 만 회, 만 명)

| 방식  |       | 계약       |           |                                     |           |           |          |                       | 무상지원       |      | 계      |
|-----|-------|----------|-----------|-------------------------------------|-----------|-----------|----------|-----------------------|------------|------|--------|
| 구분  | 공동 구매 | 개별 제약사   |           |                                     |           |           | 루마니아     | 안센 (미국)               | 모더나 (루마니아) |      |        |
|     | 코백스   | 아스트라 제네카 | 화이자       | 안센                                  | 모더나       | 노바 백신     | 화이자      |                       |            |      |        |
| 물량  | 회     | 2,000    | 2,000     | 2,000/<br>600/<br>4,000             | 600       | 4,000     | 4,000    | 105/<br>44            | 140        | 45   | 19,534 |
|     | 명     | 1,000    | 1,000     | 1,000/<br>300/<br>2,000             | 600       | 2,000     | 2,000    | 52.5/<br>22           | 140        | 22.5 | 10,137 |
| 계약일 |       | '20.10.9 | '20.11.27 | '20.12.23/<br>'21.2.15/<br>'21.4.24 | '20.12.23 | '20.12.31 | '21.2.16 | '21.8.31/<br>'21.10.1 | -          | -    | -      |

주: 1. 동 표의 수치는 각 계약 및 무상지원 등에 따른 백신 확보현황을 의미하며, 실제 공급받은 백신 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2. 2021년 10월 12일 0시 기준

자료: 질병관리청

그런데, 계약이 완료된 물량에 비하여 실제 우리나라로 도입된 코로나19 백신 물량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보인다. 2021년 10월 12일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기 도입된 코로나19 백신은 코백스 251.6만회분(아스트라제네카 210.2만회분, 화이자 41.4만회분), 아스트라제네카 2,000만회분, 화이자 3,845.8만회분, 모더나 1,787.8만회분, 안센 151.4만회분 등 총 8,036.6만회분이며, 이는 계약되어 있는 총 1억 9,534만회분의 41.1% 수준이다.

이 외에, 질병관리청은 2021년 4분기에는 약 1억 2,000만회분 추가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질병관리청은 이 이상의 구체적인 도입 일정은 제약사와의 비밀유지협약에 따라 현시점에서 공개가 어렵다고 설명하였다.

[코로나19 백신 기도입 물량 및 2021년 도입 목표 물량]

(단위: 만 회)

| 구분<br>(도입완료 물량) |                    | 도입 완료             |                    |                           |                                |                              |                           |   |   |                      |
|-----------------|--------------------|-------------------|--------------------|---------------------------|--------------------------------|------------------------------|---------------------------|---|---|----------------------|
|                 |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 코<br>백<br>스     | 아스트라제네카<br>(210.2) | -                 | -                  | 43.2<br>(3일)              | 83.5<br>(13일)                  | -                            | -                         | 83.5<br>(13일)                               | -   | -                    |
|                 | 화이자<br>(41.4)      | 11.7<br>(26일)     | -                  | -                         | -                              | 29.7<br>(21일)                | -                         | -   | -   | -                    |
|                 | 아스트라제네카<br>(2,000) | 157.4<br>(24~27일) | -                  | -                         | 463.0<br>(14, 17, 25, 27, 28일) | 261.0<br>(1, 3, 4일)          | 118.8<br>(18일)            | 999.8<br>(6, 4, 5, 13, 17, 18, 19, 27, 31일) | -   | -                    |
|                 | 화이자<br>(3,845.8)   | -                 | 100.2<br>(24, 31일) | 100.0<br>(4, 14, 21, 28일) | 175.0<br>(5, 12, 19, 23일)      | 325.0<br>(2, 9, 16, 23, 30일) | 675.3<br>(7, 14, 21, 28일) | 733<br>(4, 11, 18, 25일)                     | 1593.3<br>(1, 2, 8, 15, 20, 22일)          | 144<br>(2, 6, 7, 8일) |
|                 | 모더나<br>(1,787.8)   |                   |                    | -                         |                                | 11.2<br>(1, 24일)             | 104<br>(8, 11, 22일)       | 232.1<br>(7, 23일)                           | 1,040.1<br>(2, 3, 5, 6, 7, 8, 9, 17, 25일) | 400.4<br>(2, 7일)     |
|                 | 얀센<br>(151.4)      |                   |                    | -                         |                                | 101.3<br>(5일)                | 10.1<br>(29일)             | 40<br>(15일)                                 | -   |                      |

주: 1. 2021년 10월 12일 0시 기준

2.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1년 4분기에는 약 1억 2,000만회분 추가 도입 예정임

3. 계약사명 하단 괄호안의 숫자는 월별 기도입된 물량의 합계를 의미함

자료: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은 상술한 기완료 계약분(1억 9,534만회분, 1억 137만명분) 외에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과 금번 2022년 예산안에 편성된 예산을 활용하여 해외 백신 8,000만회분(화이자, 모더나), 국산백신 1,000만회분 등 총 9,000만회분에 대한 계약을 추가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해당 계약이 실제로 이루어지면, 총 2억 8,534만회분(기완료 1억 9,534만회분 + 추가 예정 9,000만회분)에 대한 계약이 체결 되는 것이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에 따르면 2021년 8월 기준 우리나라 전체 인구는 5,166만 9,716명(A)이다. 이를 고려하면, 질병관리청이 목표로 하는 계약 물량 총 2억 8,534만회분(B)은 우리나라 전 국민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자라고 가정 하여도 1인당 5.5회씩(B/A) 접종이 가능한 물량이며, 현재 0~11세가 접종 제외자임을 감안하면 사실상 1인당 6회씩 접종이 가능한 물량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질병관리청은 변이 바이러스 출현, 백신 공급 불안정, 항체 유지기간 불안정성 등에 대비한 충분한 물량확보를 위하여 코로나19 백신의 적극적·선제

적 확보가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다만, 1억 9,534만회분, 1억 137만명분 규모의 코로나19 백신 기계약분에 더하여 해외백신 8,000만회분, 국산백신 1,000만회분의 추가 계약을 계획하고 있는 점, 아직까지는 3~4회에 이르는 부스터 샷에 대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질병관리청은 향후 접종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추가 접종(부스터 샷)에 대한 충분한 안전성 검증을 통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토록 해야 할 것이다.



### 가. 현황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사업<sup>1)</sup>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 코로나19 백신 도입, 예방접종 시행비 지원, 백신유통관리, 이상반응 관리, 예방접종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을 수행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의 2022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1조 2,449억 2,500만원(28.3%)이 감액된 3조 1,530억 100만원이 편성되었다.

이상반응 관리 사업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하는 이상반응에 대해 국가가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고 이상반응 대응 콜센터 운영 지원 등을 수행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의 2022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61억원(33.8%)이 감소한 119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다.

참고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사업은 2022년도 신규로 편성된 사업이나, 동 사업에 포함된 내역사업들은 2020년과 2021년에는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 내 내역사업으로 편성, 집행되고 있다.

[2022년도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20<br>결산 | 2021 <sup>1)</sup> |           | 2022<br>예산안(B) | 증감         |         |
|---------------------|------------|--------------------|-----------|----------------|------------|---------|
|                     |            | 본예산                | 추경(A)     |                | B-A        | (B-A)/A |
|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 222,350    | -                  | 4,397,926 | 3,153,001      | △1,244,925 | △28.3   |
| 이상반응 관리             | -          | -                  | 18,050    | 11,950         | △6,100     | △33.8   |
| 피해보상금               | -          | -                  | 16,050    | 8,113          | △7,937     | △49.5   |
| 인과성 근거 불충분<br>환자 지원 | -          | -                  | 2,000     | -              | △2,000     | 순감      |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함

자료: 질병관리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2)에 따라 국가는 인플루엔자, A형 간염, 수두 등에 대한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그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인이 되거나 사망하는 경우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피해보상금 사업(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사업의 내내역사업)의 2022년도 예산안에 81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다.

[피해보상금 사업의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내역]

|   |
|---|
| ○ 피해보상금 = 8,113백만원  |
| - 사망 피해보상금 = 1,920백만원   |
| [5,000만명 <sup>1)</sup> × 코로나19 백신 관련 사망 발생현황(0.0022%) × 최근 10년간 보상신청 비율(13.5%) × 최근 10년간 보상신청 대비 보상비율(4.8%) × 접종횟수 감소를 고려(60%)] × 437백만원 <sup>2)</sup>  |
| - 장애 피해보상금 = 2,737백만원   |
| [5,000만명 <sup>1)</sup> × 코로나19 백신 관련 장애 발생현황(0.0010%) × 최근 10년간 보상신청 비율(13.5%) × 최근 10년간 보상신청 대비 보상비율(27.3%) × 접종횟수 감소를 고려(60%)] × 241백만원 <sup>3)</sup> |
| - 진료비 및 간병비 = 3,456백만원  |
| [5,000만명 <sup>1)</sup> × 코로나19 백신 관련 소액 발생현황(0.2981%) × 최근 10년간 보상신청 비율(20.0%) × 최근 10년간 보상신청 대비 보상비율(64.4%) × 접종횟수 감소를 고려(60%)] × 0.3백만원               |

- 주: 1) 우리나라 2022년 코로나19 백신 접종 목표 인원 수  
 2) 사망당시 최저임금법상 월 최저임금액(1,822,480원, 2021년 기준)의 240배  
 3) 사망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55% 수준  
 자료: 질병관리청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국가보상)

① 국가는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또는 제40조제2항에 따라 생산된 예방·치료 의약품을 투여받은 사람이 그 예방접종 또는 예방·치료 의약품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인이 되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상을 하여야 한다.

1. 질병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 진료비 전액 및 정액 간병비
2. 장애인이 된 사람: 일시보상금
3. 사망한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에 대한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 나. 분석의견

질병관리청은 2021년 한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한 이상반응에 대한 진료비 및 간병비 등의 지원이 향후에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피해보상이 이루어지기 위하여는 백신 접종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 이상반응 관리지침에 따르면, 인과성에 관하여 ① 인과성이 명백한 경우, ② 인과성에 개연성이 있는 경우, ③ 인과성에 가능성이 있는 경우, ④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⑤ 명확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로 구분된다. 이 중 ① 인과성이 명백한 경우, ② 인과성에 개연성이 있는 경우, ③ 인과성에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인과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피해보상이 이루어진다.

[예방접종 이상반응 관리지침]

| 구분                 | 심의 기준   | 보상여부 |
|--------------------|---|------|
| ① 인과성이 명백한 경우      | 백신을 접종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였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있으며, 어떤 다른 이유보다도 백신 접종에 의한 인과성이 인정되고, 이미 알려진 백신 이상반응으로 인정되는 경우 | 피해보상 |
| ② 인과성에 개연성이 있는 경우  | 백신을 접종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였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있으며, 어떤 다른 이유보다도 백신에 의한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      |
| ③ 인과성에 가능성이 있는 경우  | 백신을 접종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였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있으며, 이상반응이 다른 이유보다는 예방접종으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동일하거나 더 높은 경우          |      |
| ④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있으나,<br>1) 백신과 이상반응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거나<br>2)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가능성이 더 높은 경우               | 보상제외 |
| ⑤ 명확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   | 1) 백신을 접종한 확실한 증거가 없는 경우나,<br>2)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없는 경우나,<br>3) 다른 명백한 원인이 발생한 경우                      |      |

주: 1. 동 표에서의 피해보상은 인과성이 인정되어 이루어지는 피해보상을 의미함

자료: 질병관리청

위와 같은 인과성에 대한 판단은 지자체의 기초조사, 피해조사반의 조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sup>3)</sup> 심의·의결을 통해 이루어진다. 인과성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근거를 두고 운영되고 있으며, 임상 의사, 법의학자, 감염병·면역학·미생물학 전문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sup>4)</sup>에 따라 아래의 표와 같이 진료비, 간병비,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인보상금, 장제비 등이 지원된다.

[예방접종 이상반응 피해보상 개요]

| 구 분  | 내 용  |
|------|--|
|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
| 보상종류 | -진료비: 한도 없음<br>-간병비: 1일 5만원<br>-사망일시보상금: 약 4억 3,700만원<br>-장애인보상금: (중증) 사망일시보상금의 100%,<br>(경증) 사망일시보상금의 55%<br>-장제비: 30만원 |
| 보상절차 | 접종 받은 자(또는 보호자)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상신청, 지자체 기초조사, 피해조사반의 조사 및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  |
| 신청기한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
| 심의기한 | 보상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120일 이내  |

자료: 질병관리청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 기준)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보상하는 보상금의 지급 기준 및 신청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진료비

가. 지급 기준: 예방접종피해로 발생한 질병의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거나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금이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다만, 제3호에 따른 일시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나. 신청기한: 해당 예방접종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

2. 간병비: 입원진료의 경우에 한정하여 1일당 5만원

3. 장애인이 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

가. 지급 기준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100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55

3) 1) 및 2) 외의 장애인으로서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률에서 정한 장애 등급이나 장해 등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해당 장애 등급이나 장해 등급의 기준별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나. 신청기한: 장애진단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

4.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

가. 지급 기준: 사망 당시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월 최저임금액에 240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나. 신청기한: 사망한 날부터 5년 이내

5. 장제비: 30만원

2021년 9월 16일 기준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총 누적 사례 2,263건(사망 632건, 중증 852건, 아나필락시스 779건) 중 12.2%에 해당하는 276건의 이상반응이 코로나19 백신 접종과의 인과성이 있다고 인정되었으며, 이 중 사망이 2건, 중증이 5건, 아나필락시스가 269건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의 이상반응 사례 평가결과]

| 구분     | 누적사례  | 인과성 평가 결과 |         |             |         |
|--------|-------|-----------|---------|-------------|---------|
|        |       | 인정        | 불충분     | 불인정         | 보류      |
| 합계     | 2,263 | 276(12.2) | 36(1.6) | 1,939(85.7) | 12(0.5) |
| 사망     | 632   | 2         | 3       | 618         | 9       |
| 중증     | 852   | 5         | 33      | 811         | 3       |
| 아나필락시스 | 779   | 269       | 0       | 510         | 0       |

주: 1. 2021년 9월 16일 기준  
 2. 아나필락시스 심의 사례 중 중증인 경우는 14건으로, 대부분은 경증 이상반응으로 구분됨  
 3. 괄호안은 누적사례 대비 해당 평가 결과의 비율을 의미함  
 자료: 질병관리청

한편, 질병관리청은 기존 인과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의해 피해보상금을 받을 수 없던 경우들에 대하여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2021년에 한해 한시적으로 5월 17일부터 지원을 하고 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은 있으나 백신 과 이상반응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예방접종 이상반응 관리지침 ④-1)에 해당)에 한하여, 2021년 5월 17일부터는 중증환자(사망, 중환자실 치료 또는 이에 준하는 치료, 장애 등이 발생)에 대하여 1,000만원 이내에서 진료비 지원을 시작하였다. 이후, 6월 23일부터는 1일 5만원 범위에서 간병비를 추가적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9월 9일부터는 기존 중증환자에서 중증 또는 특별이상반응(WHO가 적극적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이상반응으로, 심근염·심낭염, 길랑-바레증후군, 다형홍반 등 포함) 환자로 대상자를 확대하였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인과성 불충분건에 대한 지원 개요]

| 일 자           | 내 용  |
|---------------|--|
| 2021년 5월 17일~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이 발생하였으나, 피해조사반 및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검토 결과 인과성 인정을 위한 근거자료가 불충분하여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예방접종 이상반응 관리지침 ④-1)에 해당)에 한하여 1,000만원 이내에서 진료비 지원 |
| 2021년 6월 23일~ | 기존 지원 + 1일 5만원 범위에서 간병비 지원   |
| 2021년 9월 9일~  | 기존 중증환자에서 중증 또는 특별이상반응 환자로 지원대상 확대   |

주: 동 표의 지원 내용은 적용일 이전 건들에 대하여 모두 소급 적용  
 자료: 질병관리청

그런데, 상술한 바와 같이 인과성 불충분건에 대한 지원은 2021년 한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2022년 예산안에도 이를 위한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 않다. 이에 대하여 질병관리청은 인과성 불충분건에 대한 지원이 2022년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지 아직 결정된 바가 없으며,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므로 2022년 예산안에 이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고 설명하였다.<sup>5)</sup>

관련하여,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학적·과학적 판단은 충분히 존중받아야 하겠으나,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수 시간 내에 사망한 경우에 대하여도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아 유족들이 이의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였다.

따라서 질병관리청은 2021년 한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한 이상반응에 대한 진료비 및 간병비, 위로금 등의 지속적 지원 여부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2021년 10월 12일 기준으로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률이 77.9%, 접종 완료율이 59.6%로 나타나고 있으나, 기접종대상자였으나 접종하지 않은 약 576만명에게 재차 예약 신청을 받았음에도 그 중 약 30만명만이 예약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신 접종을 원하지 않는 경우의 일정 부분은 백신에 대한 두려움이나 거부감에 기인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근거 불충분 이상반응에 대한 적절한 지원은 접종률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5) 법적 근거와 관련하여는, 2021년 8월 30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2291)이 발의되었다. 이는 동법 제71조의2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예방접종에 따라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인이 된 경우 그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이 없는 경우에도 예산의 범위에서 진료비 또는 간병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 III

## 개별 사업 분석

1

###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지원 사업의 생활지원비 지급 기준 개선 필요

#### 가. 현황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사업<sup>1)</sup>은 신종감염병 대응 역량강화를 통해 감염병 위기상황을 조기에 인지하여 이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의 2022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5,951억 300만원(41.4%)이 감액된 9,161억 9,700만원이 편성되었다.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지원 사업은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격리·입원된 자들의 이탈 예방 등을 위하여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용을 제공함으로써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전파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동 사업의 2022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942억 9,800만원(28.2%)이 감액된 2,406억 2,0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22년도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20<br>결산 | 2021 <sup>1)</sup> |           | 2022<br>예산안(B) | 증감       |         |
|--------------------|------------|--------------------|-----------|----------------|----------|---------|
|                    |            | 본예산                | 추경(A)     |                | B-A      | (B-A)/A |
| 신종감염병 위기상황<br>종합관리 | 718,845    | 19,919             | 1,511,300 | 916,197        | △595,103 | △39.4   |
|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지원     | 140,752    | -                  | 334,918   | 240,620        | △94,298  | △28.2   |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함  
자료: 보건복지부

생활지원비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의(4)<sup>2)</sup>에 따라 지급되는

최경덕 예산분석관(choi8807@assembly.go.kr, 6788-3728)

1) 코드: 일반회계 6232-330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의(4)(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생활지원)

것이며, 지원 대상은 동법 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지 않는 자이다. 2021년 기준으로 1인가구 474,600원, 2인가구 802,000원 등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sup>3)</sup>에서 정하는 생계지원 금액을 준용하여 지급되고 있다. 국가, 공공기관 및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사업주, 방역수칙 또는 격리조치를 위반한 경우는 지원 제외 대상이다.

유급휴가비용은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직원에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sup>4)</sup>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게 제공된다. 개인별 임금 일급<sup>5)</sup>을 기준으로 1일 최대 13만원까지 지급되며, 지급총액의 한도는 없다. 생활지원비와 마찬가지로 국가, 공공기관 및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사업주, 방역수칙 또는 격리조치를 위반한 경우는 지원 제외 대상이다.

참고로, 유급휴가비용과 생활지원비의 지급에 대하여는 질병관리청고시 제 2020-16호에도 명시되어 있다.<sup>6)</sup>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 생활지원 및 그 밖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3)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단위: 원/월)

| 가구 구성원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이상     |
|--------|---------|---------|-----------|-----------|-----------|
| 지급액    | 474,600 | 802,000 | 1,035,000 | 1,266,900 | 1,496,700 |

자료: 질병관리청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급휴가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범위 및 신청·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격리·입원치료 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과세대상급여액

6) 「신종감염병중후군 및 중증호흡기중후군 발생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 지원금액」

제1조(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 지원금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타목에 따른 신종감염병중후군 및 제2조제2호하목에 따른 중증호흡기중후군(MERS) 발생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및 제70조의4에 따른 생활지원비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급휴가비용 지원금액 :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 1일 상한액 13만원 적용
2. 생활지원비 금액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에서 정하는



[생활지원비 · 유급휴가비용 개요]

| 구분   | 생활지원비  | 유급휴가비용  |
|------|--|---|
| 신청자격 | 입원 · 격리자 가운데 감염병예방법의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자   | 입원 · 격리된 자에게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
| 지원금액 | 1인가구: 474,600원, 2인가구: 802,000원<br>3인가구: 1,035,000원 4인가구: 1,266,900원<br>5인가구 이상: 1,496,700원 / 월 |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br>(1일 상한 13만원)  |
| 지원제외 | ①국가, 공공기관 및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근로자<br>②방역수칙 또는 격리조치를 위반한 경우                        | ①국가, 공공기관 및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사업주<br>②방역수칙 또는 격리조치를 위반한 경우 |
| 신청기관 | 주소지 관할 읍 · 면 · 동   | 국민연금공단  |

자료: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은 2020년 2월 17일부터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 지원 신청을 받아 지원제외 대상 여부를 판단하여, 신청자에게 상기 언급한 기준에 따라 해당 금액을 지급해오고 있다.

2021년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신청 및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1~8월 동안 생활지원비 582,525건, 유급휴가비용 79,962건 등 총 662,487건의 신청이 접수되었다. 이 중 생활지원비 409,118건에 대하여 3,465억 2,200만원, 유급휴가비용 70,612건에 대하여 823억 8,600만원 등 총 479,730건에 대하여 4,289억 800만원이 지급되었다.

생계지원 금액 준용

[2021년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급 현황(1~8월)]

(단위: 건, 백만원)

| 구분 |    | 신청     |        |        | 지급 |    |         |         |         |
|----|----|--------|--------|--------|----|----|---------|---------|---------|
|    |    | 건      | 건      | 금액     | 건  | 건  | 금액      |         |         |
| 1월 | 소계 | 70,513 | 36,107 | 31,300 | 6월 | 소계 | 75,774  | 58,789  | 54,465  |
|    | 생활 | 62,580 | 30,380 | 24,863 |    | 생활 | 64,257  | 48,848  | 42,842  |
|    | 유급 | 7,933  | 5,727  | 6,437  |    | 유급 | 11,517  | 9,941   | 11,623  |
| 2월 | 소계 | 53,222 | 56,096 | 48,887 | 7월 | 소계 | 113,637 | 75,581  | 66,785  |
|    | 생활 | 43,692 | 46,963 | 38,245 |    | 생활 | 104,020 | 67,169  | 58,198  |
|    | 유급 | 9,530  | 9,133  | 10,642 |    | 유급 | 9,617   | 8,412   | 8,587   |
| 3월 | 소계 | 60,307 | 49,240 | 43,535 | 8월 | 소계 | 124,856 | 70,409  | 65,710  |
|    | 생활 | 50,015 | 40,076 | 32,911 |    | 생활 | 112,796 | 60,419  | 52,733  |
|    | 유급 | 10,292 | 9,164  | 10,624 |    | 유급 | 12,060  | 9,990   | 12,977  |
| 4월 | 소계 | 79,701 | 63,790 | 56,656 |    |    |         |         |         |
|    | 생활 | 69,986 | 53,502 | 44,302 |    |    |         |         |         |
|    | 유급 | 9,715  | 10,288 | 12,354 |    |    |         |         |         |
| 5월 | 소계 | 84,477 | 69,718 | 61,570 | 계  | 소계 | 662,487 | 479,730 | 428,908 |
|    | 생활 | 75,179 | 61,761 | 52,428 |    | 생활 | 582,525 | 409,118 | 346,522 |
|    | 유급 | 9,298  | 7,957  | 9,142  |    | 유급 | 79,962  | 70,612  | 82,386  |

자료: 질병관리청

#### 나. 분석의견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지원 사업에 대하여는 생활지원비 지급 기준의 개선점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현행 생활지원비 지급 기준은 수급자 간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므로 지급기준의 개선이 필요하다.**

긴급복지 생계지원이란 갑작스럽게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자를 신속하게 지원,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을 의미하며,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에 따른 생계지원 금액은 갑작스런 생계의 위기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1개월 동안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금액을 산정한 것이다.

생활지원비는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에 명시된 생계지원 금액을 준용하되, 입원 또는 격리기간이 14일 이상 1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1개월분을 전액지급하며, 14일 미만인 경우에는 14일로 일할 계산하여 해당 일수에 대하여 지급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입원·격리 기간 1번째 날부터 13번째 날까지는 생계지원 기준 금액을 14일로 일할 계산하여 해당 일수에 대하여 지급된다. 즉, 4인가구를 기준으로 1일간 입원·격리된 자는 90,493원(1,266,900원 × 1/14), 2일간 입원·격리된 자는 180,986원(1,266,900원 × 2/14)을 지급받는 등 13번째 날까지는 입원·격리 일수에 비례하여 수급 총액이 증가하며, 해당 기간 동안의 일평균 수급액은 90,493원으로 일정하다.

반면 14번째 날부터 30번째 날까지는 입원·격리 일수와 무관히 생계지원 기준 금액이 전액 지급되어, 해당 기간 동안 수급총액은 일수와 무관히 1,266,900원이다. 이에, 입원·격리 일수가 증가할수록 일평균 수급액은 감소하여, 15일 입원·격리되는 경우의 일평균 수급액은 84,460원이나, 30일 입원·격리되는 경우의 일평균 수급액은 42,230원까지 하락한다.

[입원·격리 일수에 따른 생활지원비 수급총액 및 일평균 수급액]

(단위: 원)

| 입원·격리<br>일수(A) | 수급총액<br>(B) | 일평균 수급액<br>(B/A) | 입원·격리<br>일수(A) | 수급총액<br>(B) | 일평균 수급액<br>(B/A) |
|----------------|-------------|------------------|----------------|-------------|------------------|
| 1              | 90,493      | 90,493           | 14             | 1,266,900   | 90,493           |
| 2              | 180,986     | 90,493           | 15             |             | 84,460           |
| 3              | 271,479     | 90,493           | 16             |             | 79,181           |
| 4              | 361,972     | 90,493           | 17             |             | 74,524           |
| 5              | 452,465     | 90,493           | 18             |             | 70,383           |
| 6              | 542,958     | 90,493           | 19             |             | 66,679           |
| 7              | 633,451     | 90,493           | 20             |             | 63,345           |
| 8              | 723,944     | 90,493           | 21             |             | 60,329           |
| 9              | 814,437     | 90,493           | 22             |             | 57,586           |
| 10             | 904,930     | 90,493           | 23             |             | 55,083           |
| 11             | 995,423     | 90,493           | 24             |             | 52,788           |
| 12             | 1,085,916   | 90,493           | 25             |             | 50,676           |
| 13             | 1,176,409   | 90,493           | 26             |             | 48,727           |
|                |             |                  | 27             | 46,922      |                  |
|                |             |                  | 28             | 45,246      |                  |
|                |             |                  | 29             | 43,686      |                  |
|                |             |                  | 30             | 42,230      |                  |

- 주: 1. 2021년 4인가구 기준  
 2. 지급액 산정시 해당 달의 일수(30일 또는 31일)와 무관히 30일을 기준으로 함  
 3. 모든 값(수급총액, 일평균 수급액)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였음  
 자료: 질병관리청

이와 같은 지급 방식은 수급자 간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 입원·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일 경우에는 일할 계산된 금액이 지원되므로, 실제 입원·격리 기간만큼 지원이 되고 있으나, 입원·격리기간이 14일 이상 1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1개월분이 지급된다. 이에, ① 입원·격리기간이 14일 이상 1개월 이하인 자들과 14일 미만인 자들 사이7), ② 입원·격리기간이 14일 이상 1개월 이하인 자들 사이8)에서 모두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입원·격리기간이 14일 이상 1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1개월분이 지급되고 있으므로, 입원·격리기간이 14일 이상 1개월 이하인 자들은 최초 14일까지만 생활지원비가 지급되고, 14일 초과 1개월 이하 기간에 대하여는 생활지원비를 추가적으로 지급받지 못하는 구조이다. 실제로, 입원·격리기간에 따른 생활지원비 지급 건수를 살펴보면, 15일 이상~30일 미만에 지급된 건수는 총 100,388건(12.9%)을 차지한다.

[입원·격리일자별 생활지원비 지급 현황]

(단위: 건, %)

| 구분    | 14일 이내  | 15일 이상~<br>30일 미만 | 30일 이상~<br>60일 미만 | 60일 이상 | 전체      |
|-------|---------|-------------------|-------------------|--------|---------|
| 지급 건수 | 668,404 | 100,388           | 6,458             | 479    | 775,729 |
| 비율    | 86.2    | 12.9              | 0.8               | 0.1    | 100     |

주: 2021년 1~8월 기준

자료: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생활지원비 지급 기준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둘째, 생활지원비의 지원 취지 및 목적과 부합할 수 있도록 생활지원비 지원 시 소득 감소 여부를 충분히 고려하는 방향으로의 지급 기준의 개선이 필요하다.**

생활지원비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의4에 따라 코로나 19 등 감염병으로 인하여 입원·격리된 사람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7) 14일 이상~1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일평균 수급액이 감소하나, 14일 미만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8) 14일 이상~1개월 이하인 경우 일평균 수급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한다.

범위에서 지급하는 재정적 지원의 일종이나, 정확한 정의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5<sup>9)</sup>는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근로소득과의 연계성을 고려하고 있다.

생활지원비는 제도의 명칭을 고려할 때 입원·격리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는 사람들의 ‘생활’이 유지되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이해되므로, 소득 보전 목적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행 생활지원비 지급 기준은 다소 불합리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다음과 같은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먼저, 현행 생활지원비는 다(多)인가구 구성원 중 1인만 입원·격리되어도 해당 신청자에게 가구원수 전원 기준의 생계지원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지급 방식은 소득원이 1인인 가구에서 유일한 소득원이 입원·격리된 경우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우 합리적인 기준이 될 수 있으나, 입원·격리자가 주 소득원이 아니거나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지급되는 경우에는 불공평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예를 들어, 소득활동을 하는 아버지와 전업주부인 어머니를 둔 3인 가구에서 소득이 없는 자녀가 혼자 입원·격리되는 경우 해당 가구에선 소득 감소가 발생하지 않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가구원수 3인을 기준으로 산출된 생활지원비가 지급되고 있다.

관련하여 생활지원비를 지급한 입원·격리자의 소득 여부는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우나, 0~9세, 10~19세, 70세 이상 등 소득이 없을 것으로 추정되는 입원·격리자의 생활지원금 지급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데, 2021년 1~8월 동안 생활지원비 신청 건수 총 582,525건 중 0~9세가 3,735건(0.6%), 10~19세가 22,034건(3.8%), 20~29세가 92,227건(15.8%), 70세 이상이 37,721건(6.5%)으로 나타났으며<sup>10)</sup>, 이 경우에도 가구원수 전원 기준으로 산출된 생계지원금이 지급되었다.

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5(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생활지원 등)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70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라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1. 치료비 및 입원비: 본인이 부담하는 치료비 및 입원비.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 등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2. 생활지원비: 질병관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

10) 참고로, 생활지원비 신청시 대리인이 관련 서류를 작성·제출할 수 있는데, 이를 고려하면 미성년자 등의 입원·격리로 인해 지급되는 생활지원비는 해당 통계표에서보다 실제 더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

[연령별 생활지원비 신청 현황]

(단위: 건, %)

| 구분    | 합 계     | 0~9세  | 10~19세 | 20~29세 | 30~39세 | 40~49세  | 50~59세  | 60~69세 | 70세~   |
|-------|---------|-------|--------|--------|--------|---------|---------|--------|--------|
| 신청 건수 | 582,525 | 3,735 | 22,034 | 92,227 | 91,369 | 149,311 | 109,019 | 77,096 | 37,721 |
| 비율    | 100.0   | 0.6   | 3.8    | 15.8   | 15.7   | 25.7    | 18.7    | 13.2   | 6.5    |

주: 동 표는 신청인의 연령 기준으로 작성되었음  
 자료: 질병관리청

또한, 맞벌이 부부 중 1인만 입원·격리되고, 다른 1인은 정상적으로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 이에 따른 소득 감소가 해당 1인에게서만 발생하게 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1인 기준 또는 가구원수 절반에 해당되는 생계지원 금액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나, 질병관리청은 이와 같은 경우에도 가족규모 전원을 기준으로 산출된 생계지원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생활지원비는 입원·격리자가 재택근무를 하면서 기존의 소득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지급되고 있다

한편, 생활지원비가 입원·격리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격리이탈 방지, 격리에 대한 위로 및 부대비용에 대한 보전의 측면에서 지급되는 것으로도 이해될 수도 있다<sup>11)</sup>. 다만, 이러한 관점에서는 현행 생활지원금 지급액이 일반 가구의 소득감소를 충분히 보전하지 못하는 수준(4인 가구 기준 14일~30일 입원·격리시 127만원 지급)으로, 예산의 희소성을 고려할 때 생활지원비 수급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대상에 대하여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가구의 주소득원이 입원·격리되는 경우에 대하여 보호가 어려워지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정리하면, 생활지원금이 코로나19로 인한 입원·격리로 인해 야기된 소득감소에 대한 보전을 주된 목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현행 생활지원비 지급 기준은 형평성과 효율성에 있어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근본적으로 생활지원금 지급액이 긴급지원 생계지원 금액을 준용하고 있으며, 생활지원금의 지급 목적과 기준을 명확히 정의하고 있지 않음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보다 효과적이고 형평성 있는 생활지원금 지급을 위해 지급기준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1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생활지원금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예산 편성에 비교적 넓은 재량이 주어질 것으로 이해된다.

## 선별진료소 장비 및 운영 지원 사업 예산의 적기 집행을 통한 원활한 코로나19 검사 수행 필요

### 가. 현황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사업<sup>1)</sup>은 신종감염병 대응 역량강화를 통해 감염병 위기상황을 조기에 인지하여 이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의 2022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5,951억 300만원(41.4%)이 감액된 9,161억 9,700만원이 편성되었다.

선별진료소 장비 및 운영 지원 사업은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는 보건소 및 의료기관에 대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설·장비 구입 및 설치비, 소모품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대한병원협회를 보조사업자로 하는 국고보조율 100%인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2022년도 예산안은 390억 8,4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22년도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20<br>결산 | 2021 <sup>1)</sup> |           | 2022<br>예산안(B) | 증감       |         |
|------------------|------------|--------------------|-----------|----------------|----------|---------|
|                  |            | 본예산                | 추경(A)     |                | B-A      | (B-A)/A |
|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 718,845    | 19,919             | 1,511,300 | 916,197        | △595,103 | △39.4   |
| 선별진료소 장비 및 운영 지원 | 64,362     | -                  | -         | 39,084         | 39,084   | 순증      |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함

자료: 질병관리청

선별진료소는 코로나19가 의심되거나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사람에게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는 곳을 의미하며, 의료기관 및 보건소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선별진료소는 2021년 9월 19일 기준으로 서울 71개소, 부산 46개소, 대구 20개소, 인천 32개소 등 전국 총 628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최경덕 예산분석관(choi8807@assembly.go.kr, 6788-3728)

1) 코드: 일반회계 6232-330

[전국 선별진료소 현황]

| 지역 | 개소  | 지역 | 개소  |
|----|-----|----|-----|
| 서울 | 71  | 충북 | 31  |
| 부산 | 46  | 충남 | 33  |
| 대구 | 20  | 세종 | 2   |
| 인천 | 32  | 전북 | 27  |
| 광주 | 12  | 전남 | 57  |
| 대전 | 14  | 경북 | 51  |
| 울산 | 13  | 경남 | 56  |
| 경기 | 111 | 제주 | 13  |
| 강원 | 39  | 계  | 628 |

주: 2021년 9월 16일 기준  
 자료: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은 동 사업을 통해 전체 선별진료소 중 보건소를 제외한 의료기관이 설치·운영중인 선별진료소 약 360개소에 대하여 장비 및 운영을 지원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2)에 근거하여 2022년도 예산안에 390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다. 이 중 40억 3,200만원은 시설·장비비, 350억 5,200만원은 소모품비 지원을 위한 것이다.

[선별진료소 장비 및 운영 지원 사업의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내역]

|                                      |
|--------------------------------------|
| ○ 선별진료소 장비 및 운영 지원 = 39,084백만원       |
| - (시설·장비비) 336백만원 × 12개월 = 4,032백만원  |
| - (소모품비) 2,921백만원 × 12개월 = 35,052백만원 |

자료: 질병관리청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감염병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의 설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거나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만으로 감염병환자들을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을 일정 기간 동안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
2. 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의 설치·운영
-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을 감염병관리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



## 나. 분석의견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검사를 수행하고 있는 선별진료소가 지속적으로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동 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할 필요성이 있다.

질병관리청은 동 사업을 통해 선별진료소 운영에 필요한 시설·장비비와 소모품비에 대해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으며, 컨테이너, 텐트, 천막, 글로브 월, 냉·난방기 등 시설·장비비에 대한 지원기준과 발열감시물품, 진료물품, 손세정제 등 소모품비에 대한 지원기준은 각각 아래와 같다.

[선별진료소 장비 및 운영 지원 사업의 시설·장비비 지원기준]

| 구 분                 | 지원기준                  |
|---------------------|-----------------------|
| 컨테이너                | 1대당 단가 상한 4,500,000원  |
| 텐트, 천막              | 증빙된 구입가의 100%         |
| 글로브 월 <sup>1)</sup> | 1대당 단가 상한 13,000,000원 |
| 냉·난방기               | 증빙된 구입가의 70%          |
| 소독장비                | 증빙된 구입가의 70%          |
| 시설·장비 설치공사비         | 증빙된 구입가의 100%         |
| 시설개보수, 철거비용         | 증빙된 구입가의 100%         |
| 전산용품, 가구용품          | 증빙된 구입가의 70%          |

주: 1) 코로나19 검체 채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의 장비로, 의료진과 검사 대상자 사이에 의료용 장갑이 달린 아크릴 벽을 의미함

자료: 질병관리청

[선별진료소 장비 및 운영 지원 사업의 소모품비 지원기준]

| 구 분  | 지원기준          |
|--|---------------|
| 발열감시물품(비접촉식체온계, 설압자)                       | 증빙된 구입가의 100% |
| 진료물품(산소포화도측정기, 마이크, 스피커, 무전기, 청진기, 알콜스왑 등) |               |
| 손세정제                                       |               |
| 환경소독물품(소독액, 분무기, 청소용품)                     |               |
| 안내물(현수막, 배너, 포스터 등)                        |               |
| 격리의료폐기물 전용용기                               |               |
| 선별진료소 안내물품(스탠드, 차단봉)                       |               |
| 냉·난방 운영(석유 및 가스, 핫팩, 전기담요 등)               |               |
| 용역비(방역소독)                                  |               |
| 용역비(폐기물처리)                                 |               |

자료: 질병관리청

각 의료기관은 자비로 선별진료소 운영에 필요한 시설·장비비, 소모품비를 구입한 후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되며, 상술한 시설·장비비, 소모품비에 대한 지원 기준을 바탕으로 각 의료기관에 정산이 이루어지게 된다.

한편, 동 사업 수행을 위한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된 것은 금번 2022년도 예산안이 처음이나, 질병관리청은 선별진료소에 시설·장비비와 소모품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2020년과 2021년에 예비비 및 이전용을 통해 예산을 확보해오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0년에는 의료기관이 설치·운영하는 선별진료소에 대한 지원과 보건소에 이동형 엑스레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비비 295억 5,900만원과 이전용 348억 300만원 등 총 643억 6,200만원을 확보하여 637억 1,500만원을 집행하였다. 2021년에는 의료기관이 설치·운영하는 선별진료소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예비비로 612억 7,800만원을 확보하여 8월 30일을 기준으로 393억 8,900만원을 집행하였다.

[선별진료소 장비 및 운영지원 사업의 2020~2021년 집행 현황]

| 구분   | 예비비(A) | 이전용(B) | 예산현액(A+B) | 집행액    | 실집행액   |
|------|--------|--------|-----------|--------|--------|
| 2020 | 29,559 | 34,803 | 64,362    | 64,362 | 63,715 |
| 2021 | 61,278 | -      | 61,278    | 61,278 | 39,389 |

주: 1. 2020년은 12월말 결산 기준, 2021년은 8월 30일 기준

2. 2020년 예산현액 643억 6,200만원 중 195억 7,700만원은 보건소에 이동형 엑스레이를 지원하고자 차치단체자본보조 목으로 편성, 집행된 금액임

자료: 질병관리청

동 사업의 2022년도 예산안에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지급하기 위해 편성된 390억 8,400만원은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선별진료소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한 필수적인 예산이며, 금번 2022년 본예산(안) 편성은 코로나19가 지속됨에 따라 향후에도 의료기관들의 지속적·적극적 협조를 바탕으로 선별진료소의 원활한 운영을 뒷받침할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질병관리청은 동 사업을 통한 선별진료소에서의 코로나19 검사가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향후 코로나19의 유행 정도와 이에 대한 국가의 대응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동 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유연하게 편성·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구축 사업의 연내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적정 수준의 예산 편성 필요

### 가. 현황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구축 사업<sup>1)</sup>은 대규모 신종감염병 위기 상황에 대비하여 국가 감염병관리 인프라로서 권역별로 감염병전문병원을 지정하고 감염병동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의 2022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192억 5,400만원(42.0%)이 감액된 266억 4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22년도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구축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20<br>결산 | 2021 <sup>1)</sup> |        | 2022<br>예산안(B) | 증감      |         |
|-------------------------------|------------|--------------------|--------|----------------|---------|---------|
|                               |            | 본예산                | 추경(A)  |                | B-A     | (B-A)/A |
|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구축                 | 8,460      | 45,858             | 45,858 | 26,604         | △19,254 | △42.0   |
|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br>감염병동 구축        | 3,860      | 8,430              | 8,430  | 5,036          | △3,394  | △40.3   |
| 충청권 감염병전문병원<br>감염병동 구축        | 2,268      | 17,580             | 17,580 | 5,790          | △11,790 | △67.1   |
| 경남권 감염병전문병원<br>감염병동 구축        | 2,268      | 17,580             | 17,580 | 5,790          | △11,790 | △67.1   |
| 경북권 감염병전문병원<br>감염병동 구축        | -          | 2,268              | 2,268  | 7,720          | 5,452   | 240.4   |
| 2022년 신규권역 감염병전문병원<br>감염병동 구축 | -          | -                  | -      | 2,268          | 2,268   | 순증      |
| 정책연구용역                        | 64         | -                  | -      | -              | -       | -       |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함  
자료: 질병관리청

동 사업은 2015년 메르스 사태에 대한 후속 조치로 같은 해 9월 발표된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한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sup>2)</sup>에 따라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sup>3)</sup>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4<sup>4)</sup>에 근거하여 수행되고 있다.

최경덕 예산분석관(choi8807@assembly.go.kr, 6788-3728)

1) 코드: 일반회계 6232-330

2) 「신종감염병 대응 24시간 긴급상황실 설치 등 국가방역체계 개편」(2015.9.1.)

당초 질병관리청은 정책연구용역<sup>5)</sup>의 결과에 따라 권역 감염병전문병원을 5개 권역(중부, 영남, 호남, 인천, 제주)에 각 1개소씩 총 5개소를 설치·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의 유행에 따라 메르스에 비해 감염력이 높은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의 특징을 고려할 경우 권역 감염병전문병원을 기존 5개소에서 7개소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sup>6)</sup> 이에 질병관리청은 2020년 11월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구축에 필요한 권역 및 기관수를 재산정, 기존 5개 권역 5개소에서 6개 권역 7개소(수도권 2개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제주권 각 1개소)로 확대 설치·운영하기로 결정하였다.

동 사업의 추진 경과를 살펴보면, 호남권에서는 조선대학교병원이 2017년 8월 지정되었으며, 충청권에서는 순천향대학교부속천안병원, 경남권에서는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이 2020년 7월 지정되었으며, 경북권에서는 칠곡경북대학교병원이 2021년 7월 지정되었다.<sup>7)</sup> 이후 해당 4개소 모두 설계용역 준비, 설계용역 공모를 거쳐 현재는 설계용역이 진행되고 있다. 설계 완료 이후 공사를 거쳐 호남권 조선대학교병원은 2023년 12월, 충청권 순천향대학교부속천안병원, 경남권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경북권 칠곡경북대학교병원은 2024년 12월에 운영을 시작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8조의2(감염병병원)

- ① 국가는 감염병의 연구·예방, 전문가 양성 및 교육, 환자의 진료 및 치료 등을 위한 시설, 인력 및 연구능력을 갖춘 감염병전문병원 또는 감염병연구병원을 설립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한다.
- ② 국가는 감염병환자의 진료 및 치료 등을 위하여 권역별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병상(음압병상 및 격리병상을 포함한다)을 갖춘 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한다.
- ③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염병전문병원 또는 감염병연구병원을 설립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염병전문병원 또는 감염병연구병원을 설립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절차, 방법, 지원내용 등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의4(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의 지정)

- ①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이하 “권역별 감염병병원”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3조의3 또는 제3조의4에 따른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으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기관으로 한다.

5)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방안 연구개발(2016.4.16., 질병관리청,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

6) 코로나19 장기화 및 확산대비 방역·보건의료 혁신방안(2020.8.,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7) 권역 감염병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4에 따라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 중에서 지정기준을 만족하는 의료기관이다.

이 중 호남권 조선대학교병원은 2017년 8월 지정되었으나 설계용역 계약까지 약 3년이 소요되는 등 사업 추진이 다소 지연되었는데, 이는 조선대학교병원 감염병 동 부지사용을 위한 교육부와의 협의, 설계비 부족으로 인해 기획재정부와의 총사업비 조정 협의가 있었기 때문이다.<sup>8)</sup>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구축 사업 권역별 추진 현황]

| 구분             | 호남권<br>(조선대학교병원) | 충청권, 경남권<br>(순천향대학교부속천안병원,<br>양산부산대학교병원) | 경북권<br>(칠곡경북대학교병원) |
|----------------|------------------|--|--------------------|
| 지정고시           | 2017.8.          | 2020.7.                                  | 2021.7.            |
| 설계용역 준비        | 2018.9.          | 2020.8.~10.                              | 2021.8.~10.        |
| 설계용역 공모 및 계약   | 2020.5.~8.       | 2020.11.~2021.2.                         | 2021.11.~12.       |
| 설계용역 추진        | 2020.9.~2021.10. | 2021.2.~2022.2.                          | 2021.12.~2022.9.   |
| 공사 공모 및 계약, 착공 | 2021.11.~2022.2. | 2022.3.~8.                               | 2022.9.~12.        |
| 공사실시           | 2022.3.~2023.12  | 2022.8.~2024.10.                         | 2022.12.~2024.12.  |
| 점검 및 운영        | 2023.12.         | 2024.12.                                 | 2024.12.           |

자료: 질병관리청

## 나. 분석의견

**질병관리청은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구축을 위한 동 사업의 2021년 추진 경과와 예산 집행 현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예산을 연내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편성해야 할 것이다.**

동 사업의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 감염병동 구축을 위해 50억 3,600만원(공사비 47억 900만원, 감리비 3억 1,500만원, 시설부대비 1,200만원), 충청권과 경남권에 각각 57억 9,000만원(공사비 54억 3,400만원, 감리비 3억 4,300만원, 시설부대비 1,300만원), 경북권에 77억 2,000만원(공사비 72억 4,500만원, 감리비 4억 5,800만원, 시설부대비 1,700만원)이 편성되었다.

8) 2017년 당시 감염병전문병원 설립을 위한 부지가 조선대학교 소유였으며, 감염병전문병원 구축을 위해서는 토지매입을 통한 보상(보상금액 42억원)이 필요하였으며, 조선대학교병원이 조선대학교로부터 감염병전문병원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협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KDI 사업계획적정성 검토 시 국고 미지원 시설(중앙공급부, 약제부, 급식부, 중앙창고 등) 구축비용 제외로 인해 해당 설계비가 산정되지 않았다.

이 외에 2022년 신규권역 감염병전문병원 감염병동 구축을 위한 설계비 22억 6,800만원도 편성되어 있다.

호남권은 총사업비 중 공사비, 감리비, 시설부대비의 13% 수준을, 충청권과 경남권은 총사업비 중 공사비, 감리비, 시설부대비의 15% 수준을 반영한 것인데, 이는 3개 권역 모두 2021년도 이전에 편성되어 이월된 예산을 고려할 경우 누적 60% 수준이다. 경북권의 경우는 설계비 이외의 예산이 처음으로 2022년도 예산안에 편성되었으며, 총사업비 중 공사비, 감리비, 시설부대비의 20% 수준이다.

참고로,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 구축을 위한 총사업비는 445억 9,300만원, 충청권, 경남권, 경북권의 총사업비는 각각 449억 5,300만원이다.9)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구축 사업의 2022년도 예산안 편성 근거]

|  |
|--|
| ○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구축 = 26,604백만원  |
|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 감염병동 구축 = 5,036백만원(총 공사비의 13%, 누적 60%)<br>공사비 4,709백만원, 감리비 315백만원, 시설부대비 12백만원 |
| -충청권 감염병전문병원 감염병동 구축 = 5,790백만원(총 공사비의 15%, 누적 60%)<br>공사비 5,434백만원, 감리비 343백만원, 시설부대비 13백만원 |
| -경남권 감염병전문병원 감염병동 구축 = 5,790백만원(총 공사비의 15%, 누적 60%)<br>공사비 5,434백만원, 감리비 343백만원, 시설부대비 13백만원 |
| -경북권 감염병전문병원 감염병동 구축 = 7,720백만원(총 공사비의 20%, 누적 20%)<br>공사비 7,245백만원, 감리비 458백만원, 시설부대비 17백만원 |
| -2022년 신규권역 감염병전문병원 감염병동 구축 = 2,268백만원(설계비)  |

자료: 질병관리청

9)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총사업비 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 총사업비   |
|-----------------------|--|
| 호남권<br>(조선대학교병원)      | 총사업비(44,593) =<br>설계비(2,609) + 공사비(39,469*) + 감리비(2,424) + 시설부대비(91)<br><br>*단, 이 중 공사비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36,225백만원으로,<br>조선대학교병원 자부담이 3,244백만원 포함되어 있음 |
| 충청권<br>(순천향대학교부속천안병원) | 총사업비(44,953) =<br>설계비(2,268) + 공사비(36,225) + 감리비(2,290) +<br>시설부대비(84) + 예비비(4,086)  |
| 경남권<br>(양산부산대학교병원)    |  |
| 경북권<br>(칠곡경북대학교병원)    |  |

자료: 질병관리청

동 사업의 2021년도 예산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편성된 458억 5,800만원 중 8월 26일 기준으로 435억 9,000만원이 교부(집행)되긴 하였으나 32억 500만원이 실집행(실집행률 7.0%)되는데 그치고 있다.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구축 사업의 2021년도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 구분  | 질병관리청     |        | 보조사업자(광주광역시, 충청남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            |             |             |                     |                     |
|-----|-----------|--------|--------------------------------|------------|-------------|-------------|---------------------|---------------------|
|     | 예산<br>(A) | 집행액    | 교부액                            | 전년도<br>이월액 | 예산현액<br>(B) | 실집행액<br>(C) | 실집행률                |                     |
|     |           |        |                                |            |             |             | (C/A) <sup>1)</sup> | (C/B) <sup>1)</sup> |
| 계   | 45,858    | 43,590 | 43,590                         | 15,649     | 59,239      | 3,205       | 7.0                 | 5.4                 |
| 호남권 | 8,430     | 8,430  | 8,430                          | 11,113     | 19,543      | 856         | 10.2                | 4.4                 |
| 충청권 | 17,580    | 17,580 | 17,580                         | 2,268      | 19,848      | 909         | 5.2                 | 4.6                 |
| 경남권 | 17,580    | 17,580 | 17,580                         | 2,268      | 19,848      | 1,440       | 7.8                 | 7.3                 |
| 경북권 | 2,268     | -      | -                              | -          | -           | -           | -                   | -                   |

주: 1) C/A는 당해연도 예산 대비 실집행액의 비율, C/B는 예산현액 대비 실집행액의 비율을 의미

1. 2021년 8월 26일 기준

자료: 질병관리청

이는 질병관리청이 동 사업의 2021년 예산에 설계비 뿐 아니라 공사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을 함께 편성하였는데 현재까지 모든 개소에서 설계용역 진행중으로, 실제 공사에 착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구축 사업의 2021년 개소별(권역별) 예산 편성 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 호남권   | 충청권    | 경남권    | 경북권   |
|-------|-------|--------|--------|-------|
| 계     | 8,430 | 17,580 | 17,580 | 2,268 |
| 설계비   | -     | -      | -      | 2,268 |
| 공사비   | 7,883 | 16,499 | 16,499 | -     |
| 감리비   | 527   | 1,043  | 1,043  | -     |
| 시설부대비 | 20    | 38     | 38     | -     |

자료: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은 호남권 조선대학교병원의 착공을 2022년 2월, 충청권 순천향대학교부속천안병원, 경남권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의 착공을 2022년 8월로 계획하고 있는 바, 2021년에 편성된 공사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는 전액 2022년으로 이월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질병관리청은 2022년도 예산안에 호남권 조선대학교병원, 충청권 순천향대학교부속천안병원, 경남권 양산부산대학교병원에 대하여 누적 공정률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북권 칠곡경북대학교병원에 대하여는 누적 공정률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편성하였다.

이에 대하여 개소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충청권 순천향대학교부속천안병원, 경남권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은 2022년 8월에 착공을 계획하고 있는 바, 2022년도 예산안에 편성한 누적 공정률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도내에 실제로 집행하기 위하여는 총 공사기간이 8.3개월(5개월 × 10/6)에 불과하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다음으로, 경북권 칠곡경북대학교병원은 누적 공정률 20%에 해당하는 금액이 편성되어 있으나, 2022년 12월 중 착공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호남권 조선대학교병원에 대하여도 현재까지 공사비, 감리비, 시설부대비가 집행된 바 없이 2019년부터 연례적으로 이월되고 있으나, 질병관리청은 이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2022년도 예산안에 누적 공정률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편성하였다.

질병관리청의 이러한 예산안 편성은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서도 전년도 집행실적, 지자체 내 전년도 이월액, 사업 추진 단계, 단계별 소요기간 등을 감안하여, 자치단체가 당해연도내 집행 가능한 범위내에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것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질병관리청은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구축을 위한 동 사업의 2021년 추진 경과와 예산 집행 현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예산을 연내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편성해야 할 것이다.



##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통한 위탁의료기관 시행비 적기 지급 필요

### 가. 현황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사업<sup>1)</sup>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 코로나19 백신 도입, 예방접종 시행비 지원, 백신유통관리, 이상반응 관리, 예방접종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을 수행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의 2022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1조 2,449억 2,500만원(28.3%)이 감액된 3조 1,530억 100만원이 편성되었다.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사업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위탁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한 시행비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의 2022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1,100억 1,300만원(37.2%)이 증액된 4,056억 9,300만원이 편성되었다. 동 사업은 자치단체경상보조 사업으로, 국고보조율은 서울 30%, 기타 50%이다.

참고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사업은 2022년도 신규로 편성된 사업이나, 동 사업에 포함된 내역사업들은 2020년과 2021년에는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 내 내역사업으로 편성, 집행되고 있다.

[2022년도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20<br>결산 | 2021 <sup>1)</sup> |           | 2022<br>예산안(B) | 증감         |         |
|--------------------|------------|--------------------|-----------|----------------|------------|---------|
|                    |            | 본예산                | 추경(A)     |                | B-A        | (B-A)/A |
|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 222,350    | -                  | 4,397,926 | 3,153,001      | △1,244,925 | △28.3   |
| 위탁의료기관<br>예방접종 시행비 | -          | -                  | 295,680   | 405,693        | 110,013    | 37.2    |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함  
자료: 질병관리청

동 사업은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민간위탁사업의 형태로 수행되고 있다. 위탁의료기관이 예방접종시스템에 코로나19 백신 접종 내역을

최경덕 예산분석관(choi8807@assembly.go.kr, 6788-3728)

1) 코드: 일반회계 6434-300

등록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비 지급기준에 해당하는지 등 자격여부를 검토한 후 위탁의료기관에 시행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질병관리청이 동 사업의 예산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교부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해당 예산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을 합산하여 위탁의료기관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는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질병관리청이 국가재난상황 등을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을 매칭하여 민간위탁의료기관에서의 접종에 따른 시행비 중 30%는 국고로, 나머지 70%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으로 지원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22년부터는 통상의 국가예방접종 사업들과 마찬가지로 자치단체경상보조 방식으로 수행될 예정이다.

현재 코로나19 백신접종은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센터, 보건소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2022년부터는 예방접종센터의 운영을 중지하고 위탁의료기관과 보건소 등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는 mRNA백신인 화이자가 초저온냉동 보관이 요구되어 이를 위한 냉동고 설치 필요 등 위탁의료기관에서는 접종이 어려워 예방접종센터를 설치·운영하였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화이자 백신 보관조건 허가 변경<sup>2)</sup>으로 인해 현재 우리나라에서 접종되는 모든 코로나19 백신의 접종이 위탁의료기관에서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또한, 질병관리청은 2022년 총 5,000만명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 중 4,515만명(90.3%)에 대하여는 위탁의료기관, 485만명(9.7%)에 대하여는 보건소 등<sup>3)</sup>에서 접종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위탁의료기관과 보건소 등에서의 접종 비율 90.3%과 9.7%는 2019년 인플루엔자 접종 대상자들의 기관별 접종비율(위탁의료기관 90.4%, 보건소 9.6%)을 준용한 것이다.

위탁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질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한 시행비를 지원하기 위한 동 사업의 2022년도 예산안에는 총 4,056억 9,3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서울 844만명, 그 외 지역 3,671만명 등 총 4,515만명에 대하여 접종 1건당 시행비 19,420원, 국고보조를 서울 30%, 기타 50%를 고려하여 산출하였다.

2) 기존 냉동 후 해동한 미개봉 백신은 2~8℃에서 최대 5일간 보관 가능하였으나, 변경 후에는 최대 31일까지 보관이 가능해졌다.

3) 보건소 등은 접종 시행비가 발생하지 않는 접종기관에서의 접종을 의미하며, 보건소 내소접종 및 시설(요양 시설 등) 방문접종 등을 포함한다.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 시행비 사업의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내역]

○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 405,693백만원  
 $-(844만명^1) \times 19,420원 \times 30\%^2) + (3,671만명^1) \times 19,420원 \times 50\%^2)$

주: 1) 서울에서의 예상 접종 인원(844만명), 그 외 지역에서의 예상 접종 인원(3,671만명)을 의미함

2) 국고보조율(서울 30%, 기타 50%)을 의미함

자료: 질병관리청

나. 분석의견

질병관리청은 위탁의료기관에서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한 시행비 지급 지연이 반복되지 않도록 향후 동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통하여 위탁의료기관 시행비 지급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2021년 8월 26일 기준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한 위탁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위탁의료기관은 서울 3,170개소, 부산 1,211개소, 대구 812개소 등 전국 총 16,279개소이다. 이는 당초 질병관리청이 목표했던 10,000개소를 상회하는 것으로, 향후 보건소의 위탁의료기관 관리(현장점검 등) 및 백신 유통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은 신규 위탁계약 체결을 6월 30일 마감하였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위탁의료기관 현황]

| 구분 | 개소    | 구분 | 개소     |
|----|-------|----|--------|
| 서울 | 3,170 | 강원 | 428    |
| 부산 | 1,211 | 충북 | 488    |
| 대구 | 812   | 충남 | 679    |
| 인천 | 863   | 전북 | 651    |
| 광주 | 525   | 전남 | 640    |
| 대전 | 396   | 경북 | 798    |
| 울산 | 294   | 경남 | 1,035  |
| 세종 | 105   | 제주 | 205    |
| 경기 | 3,979 | 계  | 16,279 |

자료: 질병관리청

동 사업은 2021년 본예산에 편성된 금액은 없으며, 예비비 865억 3,200만원, 제2회 추경예산 2,956억 8,000만원 등 총 3,822억 1,2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2021년 8월 23일 기준으로 전액 집행되었다.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 시행비 사업의 2021년도 집행 현황]

| 예비비      | 2회 추경예산   | 예산현액      | 집행액       |
|----------|-----------|-----------|-----------|
| 86,532   | 295,680   | 382,212   | 382,212   |
| (86,434) | (295,680) | (382,114) | (382,114) |

주: 1. 2021년 8월 23일 기준  
 2. 팔호안의 수치는 건보공단에 지급되는 민간위탁사업비를 제외한 위탁의료기관에 시행비로 지급하기 위한 기타보전금을 의미함

자료: 질병관리청

그런데, 실제 위탁의료기관으로의 시행비 지급은 다소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1분기 접종대상자의 1차 접종에 대한 시행비는 6월 14~16일 일괄 지급되었으며, 2분기 접종대상자의 1차 접종에 대한 시행비는 6월 30일~7월 2번째 주 일괄 지급되어 접종 시점과 시행비 지급 시점간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이에 대하여 질병관리청은 시행비 지급기준을 마련하는데 시일이 소요되어, 지급이 지연된 바 있다고 설명하였다.

3분기 일부(7월~8월 중순) 접종에 대한 시행비도 다소 지연되어 9월 3~9일에 일괄 지급되었는데, 질병관리청은 이에 대하여 하반기 위탁의료기관 접종백신 종류가 mRNA백신으로 확대됨에 따라 관련 지급기준을 추가적으로 마련하고, 시행비 재정을 공동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변경된 접종계획에 대해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일이 소요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더불어, 앞으로는(올해 9~12월) 건보공단의 급여지급시스템의 최대 역량을 고려하여 매주 코로나19 백신 접종 약 600만회분에 대한 시행비 지급을 정기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하였다.

[위탁의료기관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행비 지급 현황]

| 구 분                         | 지급 일정                              | 지급 금액   |
|-----------------------------|------------------------------------|---------|
| 1분기 접종대상자의 1차 접종에 대한 시행비    | 6월 14~16일 일괄 지급(완료)                | 1,022억원 |
| 2분기 접종대상자의 1차 접종에 대한 시행비    | 6월 30일~7월 9일 일괄 지급(완료)             |         |
| 3분기 일부(7월~8월 중순) 접종에 대한 시행비 | 9월 3~9일 일괄 지급(완료)                  |         |
| 이후                          | 매주 접종 약 400만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지급 요청(예정) | -       |

자료: 질병관리청

동 사업의 2022년도 예산안에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한 시행비를 위탁의료기관에 지급하기 위해 편성된 4,056억 9,300만원은 국가가 국민들에게 코로나19 백신 무료 접종을 제공하기 위한 필수적인 예산이다. 질병관리청은 2022년 총 5,000만명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계획하고 있는데, 해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는 위탁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백신 접종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질병관리청은 위탁의료기관에서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한 시행비 지급 지연이 반복되지 않도록 향후 동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통하여 위탁의료기관 시행비 지급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더불어, 올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소요되는 시행비 중 30%는 국고, 70%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으로 지원되고 있으나 2022년에는 자치단체경상보조 사업으로 수행될 예정으로, 지방비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므로 질병관리청은 지방비 확보에도 유의할 필요성이 있다.<sup>4)</sup>

4) 시행비 지급을 위해 필요한 지방비는 약 4,712억원이다.

## HPV 접종대상자 확대 첫 해 국가예방접종실시 사업의 원활한 수행 필요

### 가. 현황

국가예방접종실시 사업<sup>1)</sup>은 국가가 예방접종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 가계부담을 경감하고, 예방접종률 향상을 통해 예방접종대상 감염병 퇴치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의 2022년도 계획안은 전년대비 271억 4,000만원(7.8%)이 증액된 3,749억 3,000만원이 편성되었다.

HPV 1차 접종완료자 예방접종 사업과 HPV 미접종자 예방접종 사업은 국가예방접종실시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기존 만 12세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던 HPV 예방접종 대상자를 2022년부터 확대하기 위한 신규 사업이다. 두 사업의 2022년도 계획안에는 신규로 각각 32억 3,100만원, 182억 9,300만원이 편성되었다. 동 사업은 국고보조율이 서울 30%, 그 외 지역 50%인 지자체경상보조사업이다.

[2022년도 국가예방접종실시 사업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20<br>결산 | 2021 <sup>1)</sup> |         | 2022<br>계획안(B) | 증감     |         |
|-------------------|------------|--------------------|---------|----------------|--------|---------|
|                   |            | 당초                 | 수정(A)   |                | B-A    | (B-A)/A |
| 국가예방접종실시          | 387,054    | 347,789            | 347,790 | 374,930        | 27,140 | 7.8     |
| HPV 1차 접종완료자 예방접종 | -          | -                  | -       | 3,231          | 3,231  | 순증      |
| HPV 미접종자 예방접종     | -          | -                  | -       | 18,293         | 18,293 | 순증      |

주: 1) 기금은 각각 2021년 당초계획과 9월말 기준 수정계획(자체변경 포함)을 의미  
자료: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은 국가예방접종실시 사업에서 예방접종을 통해 예방 및 관리가 가능한 인플루엔자, 결핵, 폐렴구균, 장티푸스, HPV와 같은 감염병에 대하여 영유아, 어린이, 어르신, 임산부 등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최경덕 예산분석관(choi8807@assembly.go.kr, 6788-3728)

1) 코드: 국민건강증진기금 6431-303

이 중 HPV(Human Papilloma Virus, 사람유두종바이러스)는 자궁경부암의 중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파필로마바이러스과에 속하는 이중 나선상 DNA 바이러스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100여 종의 HPV 중 40여종이 생식 기관에서 발견되며, 특히 고위험군 발암성 HPV 중 16번, 18번은 전 세계적으로 70% 이상의 자궁경부암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질병관리청은 2016년부터 매해 만 12세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HPV 예방접종을 2회까지 지원해오고 있다. 예방접종은 보건소와 민간의료기관에서 모두 시행되며, 질병관리청은 보건소 접종에 대하여는 백신비를, 민간의료기관 접종에 대하여는 백신비와 시행비를 지원하여 피접종자는 본인부담금 없이 무료로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2022년부터는 HPV 예방접종 대상자를 기존 만 12세 여성 청소년에서 13세 이상(1차 접종완료자 및 미접종자)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이를 위한 2022년도 계획안에 편성된 215억 2,400만원(1차 접종완료자 32억 3,100만원 + 미접종자 182억 9,300만원)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HPV 1차 접종완료자 및 미접종자 예방접종 사업의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내역]

|   |
|---|
| ○ HPV 1차 접종완료자 예방접종: 3,231백만원   |
| - (보건소) 157백만원  |
| 126천명 × 접종률 67.45% × 이용률 6.54% × 백신단가 60,200원 × 국고보조율 46.8%                       |
| - (민간의료기관) 3,075백만원   |
| 126천명 × 접종률 67.45% × 이용률 93.46% × (백신단가 63,290원 + 시행비 19,420원) × 국고보조율 46.8%      |
| ○ HPV 미접종자 예방접종: 18,293백만원  |
| - (보건소) 887백만원  |
| (과거 미접종자) 603백만원  |
| 162천명 × 3회 × 접종률 67.45% × 이용률 6.54% × 백신단가 60,200원 × 국고보조율 46.8%                  |
| (저소득층) 284백만원   |
| 103천명 × 3회 × 접종률 50% × 이용률 6.54% × 백신단가 60,200원 × 국고보조율 46.8%                     |
| - (민간의료기관) 17,407백만원  |
| (과거 미접종자) 11,841백만원   |
| 162천명 × 3회 × 접종률 67.45% × 이용률 93.46% × (백신단가 63,290원 + 시행비 19,420원) × 국고보조율 46.8% |
| (저소득층) 5,566백만원   |
| 103천명 × 3회 × 접종률 50% × 이용률 93.46% × (백신단가 63,290원 + 시행비 19,420원) × 국고보조율 46.8%    |

자료: 질병관리청

## 나. 분석의견

질병관리청은 국가예방접종실시 사업의 HPV 무료접종 대상자를 기존 만 12세 여성 청소년에서 2022년부터 만 13~17세 중 1차 접종완료자, 미접종자 및 만 18~26세 중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인 바, 신규 대상자들의 접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필요성이 있다.

질병관리청은 HPV 예방접종을 통해 HPV 감염으로 인한 자궁경부암 등의 질병을 예방하고자 2016년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사업」을 시작하였다. 지원 대상은 매 해 만 12세<sup>2)</sup> 여성 청소년(2021년 기준, 2008~2009년 출생)이며, 이들에 대해 HPV 예방접종 2회에 대한 비용을 지원해주되, 1차 접종일로부터 24개월 하루 전까지 2차 접종을 한 경우에 한하여 2차 접종비용을 지원해준다. 이를 위한 예산은 국가예방접종실시 사업의 내역사업인 어린이 17종 국가예방접종실시<sup>3)</sup> 사업에 편성되어오고 있으며, 2016년 158억 6,700만원, 2017년 229억 8,500만원 등이 편성된 바 있다.<sup>4)</sup>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사업〕(HPV 예방접종) 개요

| 구 분           | 내 용   |
|---------------|---|
| 대상            | 만 12세 여성 청소년(2021년 기준, 2008~2009년 출생)   |
| 지원내용          | HPV 예방접종 2회에 대한 비용지원  |
| 지원기간          | 1차 접종일로부터 24개월 하루 전까지 2차 접종비용 지원  |
| 관련 예산<br>(편성) | 2016년 158억 6,700만원 / 2017년 229억 8,500만원<br>2018년 158억 7,900만원 / 2019년 159억 6,400만원<br>2020년 163억 5,700만원 / 2021년 163억 5,100만원 |

자료: 질병관리청

- 2) 회계연도 시작 당시 만 12세인 여성 청소년과, 회계연도 중 만 12세가 될 여성 청소년을 모두 포함한다.
- 3) 어린이 17종 국가예방접종실시 사업의 대상자는 만 12세 이하 어린이이며, ①결핵(BCG, 피내용), ②B형간염(HepB), ③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DTaP), ④파상풍/디프테리아(Td), ⑤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Tdap), ⑥폴리오(IPV), ⑦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DTaP-IPV), ⑧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b형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DTaP-IPV/Hib), ⑨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Hib), ⑩폐렴구균, ⑪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MMR), ⑫수두(VAR), ⑬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IJEV), ⑭일본뇌염 약독화 생백신(LJEV), ⑮A형간염(HepA), ⑯사람유두종 바이러스(HPV), ⑰인플루엔자(IV)에 대한 백신을 포함한다.
- 4) 어린이 17종 국가예방접종실시 사업의 예산 편성 및 집행과 관련하여, 질병관리청은 예산 편성 현황은 17종 백신별로 구분이 가능하나, 집행 현황은 17종 백신별로 구분이 어렵다고 설명하였다.



동 사업을 통한 2016~2021년 HPV 예방접종 현황을 살펴보면, 첫 해인 2016년에는 목표인원 237,094명 중 147,703명이 접종하여 목표 대비 접종률이 62.3%로 나타났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사업의 성과가 개선되어 2020년에는 대상자의 89.6%가 접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1년은 9월 28일 기준으로 76.5%가 접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접종의 대부분(약 90%)은 매해 민간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보건소에서의 접종 비율은 약 10% 정도이다.

[2016~2021년 HPV 예방접종 현황]

| 구분   | 목표인원(A) | 실제 접종인원 |            |           | 목표 대비<br>접종률(B/A) |
|------|---------|---------|------------|-----------|-------------------|
|      |         | 보건소(b)  | 민간의료기관(b') | 계(B=b+b') |                   |
| 2016 | 237,094 | 12,963  | 134,746    | 147,709   | 62.3              |
| 2017 | 228,154 | 17,184  | 149,816    | 167,000   | 73.2              |
| 2018 | 210,172 | 26,004  | 158,159    | 184,163   | 87.6              |
| 2019 | 216,956 | 24,575  | 168,623    | 193,198   | 89.0              |
| 2020 | 240,579 | 20,571  | 195,060    | 215,631   | 89.6              |
| 2021 | 227,255 | 7,669   | 166,326    | 173,995   | 76.5              |

주: 1. 1개 연도 당 2개 출생연생이 대상자이므로, 연도별로 목표인원 등에 중복이 발생하여 동 표에서는 1개 연도 당 1개 출생연도로 한정하여 그 수치를 제시하였음

2. 2021년 9월 28일 기준
3. 1차 접종 기준

자료: 질병관리청

한편, 질병관리청은 2022년부터 ① 1차 접종완료자(내역사업명: HPV 1차 접종 완료자 예방접종), ② 미접종자(내역사업명: HPV 미접종자 예방접종)를 HPV 무료 접종 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2022년 확대되는 대상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1차 접종을 완료<sup>5)</sup>하였으나, 2차 접종은 하지 않은 만 13~17세인 1차 접종완료자 126,002명과, ② 기 접종대상자였으나 1차 접종을 하지 않은 만 13~17세 161,751명과 만 18~26세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대상자 및 차상위계층) 102,578명을 포함한다.

HPV 백신은 9세부터 접종이 가능하며, 최초 접종 시점이 만 9~13세의 경우에

5)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사업」에서 무료로 1차 접종을 받은 자, 자비로 1차 접종을 받은 자를 모두 포함한다.

는 2차 접종으로 충분한 항체가 형성되나, 그 이후 연령대에서는 3차 접종을 완료해야 충분한 항체가 형성된다고 알려져 있다. 이를 고려하여, 동 사업에서는 1차 접종 완료자는 만12세에(혹은 이전) 1차 접종을 시작하여 총 2회 접종으로 완료 가능한 대상이므로 이들에게는 1회 무료 접종을 지원하며, 미접종자에게는 3회 무료 접종을 지원한다.

[HPV 예방접종 2022년 대상자 확대 개요]

| 구 분   | 1차 접종완료자           | 미접종자   |
|-------|--------------------|--|
| 대상자   | 1차 접종 완료한 만 13~17세 | ① 기 접종대상자였으나 접종하지 않은 만 13~17세<br>② 만 18~26세 저소득층 |
| 대상자 수 | 126,002명           | 264,329명<br>(① 161,751명, ② 102,578명)             |
| 지원내용  | HPV 예방접종 1회 무료 지원  | HPV 예방접종 3회 무료 지원                                |

자료: 질병관리청

동 사업의 2022년도 예산안 편성시 질병관리청은 2022년 HPV 무료 예방접종 신규 대상자인 1차 접종완료자와 미접종자(① 기 접종대상자였으나 접종하지 않은 만 13~17세) 중 67.45%, 미접종자(② 만 18~26세 저소득층) 중 50.0%가 무료 예방접종을 받을 것으로 가정하였다. 질병관리청은 이에 대하여 2020년 13~15세의 인플루엔자 접종률 67.2%를 참고하여 1차 접종완료자와 미접종자(① 기 접종대상자였으나 접종하지 않은 만 13~17세)에 대하여 비슷한 수준인 67.45%를 가정하였으며, 미접종자(② 만 18~26세 저소득층)에 대하여는 기존에 비슷한 대상군을 가진 예방접종이 없어 접종률을 설정할 근거가 충분치 않아 임의로 50.0%로 가정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국가예방접종실시 사업에서는 HPV 뿐 아니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도 지원하고 있는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에서는 신규 대상자가 추가되는 해에 대상자들의 인지도 부족 등으로 인하여 당초 가정했던 접종률보다 실제 접종률이 낮았던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바 있다. 2018년 신규 대상자였던 60개월~12세 어린이들에 대하여 질병관리청은 당초 95.0%의 접종률을 가정하였으나,

실제 접종률은 67.0%로 나타났으며, 2019년 신규 대상자인 임신부의 실제 접종률은 당초 가정한 접종률 50.0%의 83.6% 수준인 41.8%로 나타났다. 또한, 2020년 한시적 대상이기는 하였으나, 2020년 신규 대상자인 14~18세 어린이, 62~64세 어르신에 대하여는 89.0%를 목표 접종률로 설정하였으나, 실제로 접종률은 56.8%, 56.1%로 나타났다.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 2018~2020년 신규 대상자 접종률 현황]

(단위: %, %p)

| 대상자          | 신규 적용 연도 | 접종률              |       | B/A  | A-B  |
|--------------|----------|------------------|-------|------|------|
|              |          | 목표<br>(예산 편성, A) | 달성(B) |      |      |
| 60개월~12세 어린이 | 2018     | 95.0             | 67.0  | 70.5 | 28.0 |
| 임신부          | 2019     | 50.0             | 41.8  | 83.6 | 8.2  |
| 14~18세 어린이   | 2020     | 89.0             | 56.8  | 63.8 | 32.2 |
| 62~64세 어르신   | 2020     | 89.0             | 56.1  | 63.0 | 32.9 |

자료: 질병관리청

따라서 질병관리청은 2022년도 HPV 무료접종 신규 대상자인 만 13~17세 중 1차 접종완료자, 미접종자 및 만 18~26세 중 저소득층에 대하여 접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sup>6)</sup> 등을 바탕으로 동 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할 필요성이 있다.


6) 이에 대하여 질병관리청은 접종대상자 사전안내문자 발송, 교육부와의 협조를 통한 중학교 입학여학생 대상 안내문 배포, 접종동력 보도참고자료 배포 등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하였다.



# 여성가족위원회







여성가족부





# I 예산안 개요

## 1 현 황

### 가. 총수입·총지출

여성가족부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하 “예산안”)은 일반회계, 1개 특별회계(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및 2개 기금(청소년육성기금, 양성평등기금)으로 구성된다.

여성가족부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총수입은 8,556억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1,568억원(22.4%) 증가하였다. 회계·기금별로는 일반회계 135억원, 청소년육성기금 1,739억원, 양성평등기금 6,682억원이다.

[2022년도 예산안 여성가족부 소관 총수입]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20<br>결산 | 2021 <sup>1)</sup> |         | 2022<br>예산안(B) | 증감      |         |
|------------|------------|--------------------|---------|----------------|---------|---------|
|            |            | 본예산                | 추경(A)   |                | B-A     | (B-A)/A |
| 예 산        | 34,838     | 10,717             | 10,717  | 13,492         | 2,775   | 25.9    |
| - 일반회계     | 31,873     | 10,717             | 10,717  | 13,492         | 2,775   | 25.9    |
| - 국가균형특별회계 | 2,965      | 0                  | 0       | 0              | 0       | -       |
| 기 금        | 593,293    | 688,030            | 688,030 | 842,058        | 154,028 | 22.4    |
| - 청소년육성기금  | 153,511    | 168,977            | 168,977 | 173,889        | 4,912   | 2.9     |
| - 양성평등기금   | 439,782    | 519,053            | 519,053 | 668,169        | 149,116 | 28.7    |
| 합 계        | 628,131    | 698,747            | 698,747 | 855,550        | 156,803 | 22.4    |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하며, 기금은 각각 2021년 당초계획과 9월말 기준 수정계획(자체변경 포함)을 의미

1. 총계기준

자료: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총지출은 1조 3,753억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1,681억원(13.9%) 증가하였다. 회계·기금별로는 일반회계 5,826억원, 국가균형특별회계 493억원, 청소년육성기금 1,478억원, 양성평등기금 5,956억원이다.

김정선 예산분석관(moonrise@assembly.go.kr, 6788-4636)

[2022년도 예산안 여성가족부 소관 총지출]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20<br>결산 | 2021 <sup>1)</sup> |           | 2022<br>예산안(B) | 증감      |         |
|--------------|------------|--------------------|-----------|----------------|---------|---------|
|              |            | 본예산                | 추경(A)     |                | B-A     | (B-A)/A |
| 예 산          | 550,892    | 592,916            | 600,047   | 631,930        | 31,883  | 5.3     |
| - 일반회계       | 513,858    | 547,738            | 554,869   | 582,627        | 27,758  | 5.0     |
|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37,034     | 45,178             | 45,178    | 49,303         | 4,125   | 9.1     |
| 기 금          | 540,455    | 607,192            | 607,192   | 743,416        | 136,224 | 22.4    |
| - 청소년육성기금    | 130,784    | 139,518            | 139,518   | 147,796        | 8,278   | 5.9     |
| - 양성평등기금     | 409,671    | 467,674            | 467,674   | 595,620        | 127,946 | 27.4    |
| 합 계          | 1,091,347  | 1,200,108          | 1,207,239 | 1,375,346      | 168,107 | 13.9    |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하며, 기금은 각각 2021년 당초계획과 9월말 기준 수정계획(자체변경 포함)을 의미

1. 총지출: 내부거래, 보전거래 제외

자료: 여성가족부

**나. 세입·세출예산안**

여성가족부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및 1개 특별회계(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구성된다.

여성가족부 소관 2022년도 세입예산안은 135억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28억원(25.9%) 증가하였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35억원이다.

[2022년도 여성가족부 소관 세입예산안]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20<br>결산 | 2021 <sup>1)</sup> |        | 2022<br>예산안(B) | 증감    |         |
|------------|------------|--------------------|--------|----------------|-------|---------|
|            |            | 본예산                | 추경(A)  |                | B-A   | (B-A)/A |
| 일반회계       | 31,873     | 10,717             | 10,717 | 13,492         | 2,775 | 25.9    |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2,965      | 0                  | 0      | 0              | 0     | -       |
| 합 계        | 34,838     | 10,717             | 10,717 | 13,492         | 2,775 | 25.9    |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

1. 총계 기준

자료: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은 6,319억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319억원(5.3%) 증가하였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5,826억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493억원이다.

[2022년도 여성가족부 소관 세출예산안]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20<br>결산 | 2021 <sup>1)</sup> |         | 2022<br>예산안(B) | 증감     |         |
|------------|------------|--------------------|---------|----------------|--------|---------|
|            |            | 본예산                | 추경(A)   |                | B-A    | (B-A)/A |
| 일반회계       | 513,858    | 547,738            | 554,869 | 582,627        | 27,758 | 5.0     |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37,034     | 45,178             | 45,178  | 49,303         | 4,125  | 9.1     |
| 합 계        | 550,892    | 592,916            | 600,047 | 631,930        | 31,883 | 5.3     |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

1. 총지출: 내부거래, 보전거래 제외

자료: 여성가족부

#### 다. 기금운용계획안

여성가족부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청소년육성기금, 양성평등기금으로 구성된다.

여성가족부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7,434억원으로 전년 수정계획안 대비 1,362억원(22.4%) 증가하였다. 기금별로는 청소년육성기금 1,478억원, 양성평등기금 5,956억원이다.

[2022년도 여성가족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20<br>결산 | 2021 <sup>1)</sup> |         | 2022<br>계획안(B) | 증감      |         |
|---------|------------|--------------------|---------|----------------|---------|---------|
|         |            | 당초                 | 수정(A)   |                | B-A     | (B-A)/A |
| 청소년육성기금 | 130,784    | 139,518            | 139,518 | 147,796        | 8,278   | 5.9     |
| 양성평등기금  | 409,671    | 467,674            | 467,674 | 595,620        | 127,946 | 27.4    |
| 합 계     | 540,455    | 607,192            | 607,192 | 743,416        | 136,224 | 22.4    |

주: 1) 각각 2021년 당초계획과 9월말 기준 수정계획(자체변경 포함)을 의미

1. 총지출: 내부거래, 보전거래 제외

자료: 여성가족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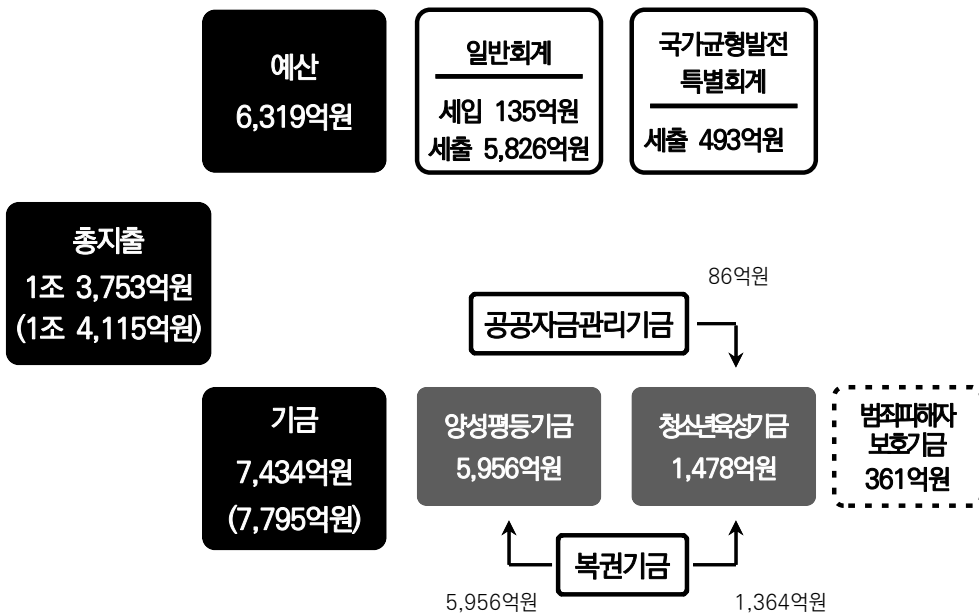
## 라. 재정구조

2022년도 예산안의 여성가족부 소관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은 다음과 같다.

청소년육성기금의 경우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1억원의 예수이자를 상환하며 복권기금으로 30억원을 반납한다. 또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86억원 원금을 예수 받는 한편, 복권기금으로부터 1,364억원을 전입 받는다.

양성평등기금의 경우 복권기금으로부터 5,956억원을 전입 받는 한편, 동 기금으로 112억원을 반납한다.

한편, 법무부 소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 편성된 사업 361억원을 여성가족부에서 집행하고 있다.



2022년도 여성가족부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①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 가족 대상 아동양육비를 인상하고, 근로·사업소득 30% 공제를 도입하여 생활이 어려운 한부모가정의 자녀양육 지원을 강화하였고, ②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지원 사업은 신규택지 개발대책(2020.8.4.)에 따른 청사 이전비용을 반영하고,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자를 확대하였다. ③ 여성가족부 정보화추진 사업은 돌봄 통합지원 플랫폼 신규 구축 및 각종 업무시스템 기능개선 비용 등을 반영하였고, ④ 양성평등문화 확산 사업은 양성평등 조직혁신 추진단 출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조직문화 진단 및 개선 지원 예산을 반영하였다.

2022년도 여성가족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분석 결과 향후 국회 심의 및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아이돌봄 지원 사업은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2022년부터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를 통해 아이돌보미 채용·복무관리, 수급 조정·관리 등 기능을 수행하여야 하므로, 돌봄서비스 수급·연계 등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와 사전 협의를 통하여 관련 기관 간 업무·인력 등의 이관 계획 및 향후 운영 등에 관한 세부지침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청소년 근로권의 보호 사업은 2022년부터 민간경상보조 사업에서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전환될 예정이므로, 청소년근로보호센터 설치·운영 등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청소년육성기금의 고유 재원인 경륜·경정 수익금의 출연이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하여 2024년까지 중단됨에 따라 청소년 육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금의 재정건정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3

##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여성가족부의 2022년도 신규사업은 총 1개 사업, 2억 5천만원 규모이다.

일반회계 1개 사업으로 ‘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지원’ 사업은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2021.4.) 및 시행(2023.1.)에 따른 인신매매 방지 및 피해자 조기 구조·지원을 위한 정책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여성가족부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 구 분          | 세부사업명          | 예산안 |
|--------------|----------------|-----|
| 일반회계<br>(1개) | 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지원 | 250 |
| 합 계          |                | 250 |

자료: 여성가족부

2022년도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여성가족부 정보화 추진’ 사업, ‘양성평등 문화 확산’ 사업, ‘여성사전시관’ 사업, ‘청소년 국제교류지원’ 사업,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지원’ 사업, ‘가족센터 건립(제주)’ 사업,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등 지원’ 사업 등이 있다.

①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족 대상 아동양육비를 인상(월 20만원)하고, 근로·사업소득 30% 공제 적용으로 생활이 어려운 한부모가정의 자녀양육 지원을 강화하였고(2021년 3,067억원 → 2022년 4,213억원), ②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지원 사업은 청사 이전비용을 반영하였고(2021년 201억원 → 2022년 279억원), ③ 여성가족부 정보화추진 사업은 돌봄 통합지원 플랫폼 신규 구축 등을 반영하였다(2021년 123억원 → 2022년 185억원). ④ 청소년 국제교류지원 사업과 여성사전시관 사업은 각각 2023 세계잼버리 개최를 위한 기반시설 설치비와 여성사전시관 실시설계비 등을 반영하여 27억원, 11억원을 증액하였고, ⑤ 양성평등문화확산 사업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양성평등 조직문화 진단 및 개선 지원을 위한 예산 4억원을 반영하였으며, ⑥ 가족센터 건립(제주) 사업은 2021년 생활SOC 복합화 사업 2년차 지원 예산을 반영하여 증액하였다(2021년 6억원 → 2022년 11억원).

[여성가족부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주요 증액사업]

(단위: 백만원, %)

| 구분                         | 세부사업                | 2021 <sup>1)</sup> |         | 2022<br>예산안(B) | 증 감     |         |
|----------------------------|---------------------|--------------------|---------|----------------|---------|---------|
|                            |                     | 본예산                | 추경(A)   |                | B-A     | (B-A)/A |
| 일반회계<br>(5개)               | 여성가족부 정보화추진         | 12,256             | 12,256  | 18,462         | 6,206   | 50.6    |
|                            | 양성평등문화확산            | 514                | 514     | 909            | 395     | 76.8    |
|                            | 여성사전시관              | 749                | 749     | 1,851          | 1,102   | 147.1   |
|                            | 청소년 국제교류지원          | 8,762              | 8,762   | 11,477         | 2,715   | 31.0    |
|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지원        | 20,113             | 20,113  | 27,855         | 7,742   | 38.5    |
| 국가균형<br>발전<br>특별회계<br>(1개) | 가족센터 건립(제주)         | 613                | 613     | 1,137          | 524     | 85.5    |
| 양성평등<br>기금<br>(1개)         |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br>지원 | 306,669            | 306,669 | 421,275        | 114,606 | 37.4    |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안을 의미하며, 기금은 각각 2021년 당초계획과 9월말 기준 수정계획(자체변경 포함)을 의미

1. 총계 기준

자료: 여성가족부

## II

## 개별 사업 분석

### 1

###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종합적·체계적인 추진 필요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기반 구축 사업<sup>1)</sup>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sup>2)</sup>에 따라 여성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여성폭력방지정책 수립, 실태조사,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등을 수행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2022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4억 7,600만원이 증액된 23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2년도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기반 구축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20<br>결산 | 2021 <sup>1)</sup> |       | 2022<br>예산안(B) | 증감  |         |
|------------------------|------------|--------------------|-------|----------------|-----|---------|
|                        |            | 본예산                | 추경(A) |                | B-A | (B-A)/A |
| 여성폭력방지정책<br>추진기반 구축    | 504        | 1,865              | 1,865 | 2,341          | 476 | 25.5    |
| 여성폭력통계 구축 및<br>운영      | 200        | 100                | 100   | 160            | 60  | 60.0    |
| 디지털 성범죄 방지<br>및 피해자 지원 | -          | 500                | 500   | 576            | 76  | 15.2    |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하며, 기금은 각각 2021년 당초계획과 9월말 기준 수정계획(자체변경 포함)을 의미

자료: 여성가족부

김정선 예산분석관(moonrise@assembly.go.kr, 6788-4636)

1) 코드: 일반회계 2136-316

2)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 1-1. 여성폭력통계 체계의 조속한 구축 필요

### 가. 현황

여성폭력통계 구축 및 운영<sup>3)</sup> 사업은 현재 산발적으로 수집하고 있는 여성폭력 발생 현황 등에 관한 통계를 「여성폭력방지기본법」<sup>4)</sup>에 따라 ‘여성폭력통계’로 체계적으로 구축·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기반 구축 사업의 내역사업이다.

이 사업은 2019년 12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에 따라 2020년도 예산에 신규 편성된 사업으로, 민간위탁을 통해 수행하고 있다.

[2020~2022년도 여성폭력통계 구축 및 운영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 2020  | 2021   | 2022(안)   |
|---------------------|---|--|---|
| 민간위탁사업비<br>(320-02) | 200   | 100  | 160   |
| 주요내용                | -여성폭력통계 체계적 관리 로드맵 마련<br>-유사 지표, 국제 기준, 외국 공표 통계 검토<br>-여성폭력통계 지표 개발<br>-여성폭력통계 공표 및 관리 방안 마련 | -여성폭력통계 관련 조사·연구, 자료 분석 및 신규 통계 개발<br>-여성폭력통계의 정기적 수집·산출·관리 및 공표를 위한 체계 구축<br>-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관련 통계 분석 등 현안 대응<br>-여성폭력 통계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발굴 및 관계기관 협의체 운영 등 | -기관별 통계 분석, 연구 등을 통해 여성폭력 통계 구축 및 운영 추진<br>-2022년 최초 공표 통계 보고서 발간 등 |

자료: 여성가족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3) 코드: 일반회계 2136-316의 내역사업

4)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정 2018.12.24., 시행 2019.12.25.)

제13조(여성폭력통계 구축)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폭력 발생 현황 등에 관한 통계(이하 “여성폭력통계”라 한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이를 정기적으로 수집·산출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이 여성폭력통계를 요구하는 경우 관련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여성폭력통계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여성폭력통계의 종류, 공표시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나. 분석의견

**관계 부처 등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하여 통계보고서 작성 및 공표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여성폭력 대응정책의 수립·추진 등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sup>5)</sup>에서 여성폭력 발생 현황, 피해 현황, 피해자 지원 현황 등에 관한 통계를 정기적으로 수집·산출·공표하도록 함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2022년 연내에 여성폭력 전반에 걸친 주요지표와 통계를 수록한 여성폭력 통계 보고서<sup>6)</sup>를 작성하여 발간할 계획이다.

현재 여성폭력 발생, 사건 처리, 피해 현황 등과 관련한 수사·사법 통계, 피해 조사 통계, 피해자 지원 통계 등은 서로 다른 부처, 기관 등에서 상이한 개념을 기반으로 산출하고 있다. 또한, 나라지표, 국가성평등지수, 보건복지통계 등 여성폭력 관련 통계를 포함하고 있는 국내 주요 지표 및 통계집<sup>7)</sup>의 경우 피해자·가해자의 성별에 따른 통계를 제공하지 않거나 범죄의 종류, 특성 등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디지털 성범죄 등을 구분할 수 없고, 일반 폭력 사건과 여성폭력 사건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어 여성폭력 대응정책 수립에 활용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여성폭력통계 체계에 따른 통계의 수집·관리·공표를 위해서는 여성폭력 통계 지표, 항목 및 향후 운용 방안 등에 관한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필요하다.

### 5)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제9조(여성폭력통계의 종류 및 공표시기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여성폭력통계(이하 "여성폭력통계"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폭력 발생 현황
2. 여성폭력 피해 현황(2차 피해를 포함한다)
3. 여성폭력 피해자(2차 피해를 입은 사람을 포함한다) 지원 현황
4. 그 밖에 여성폭력통계의 효율적 구축을 위해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폭력통계를 3년마다 여성가족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다만, 여성폭력통계의 내용, 특성, 수집방법 또는 산출경로 등을 고려해 일부 여성폭력 통계에 대해서는 그 공표 주기를 달리 정해 운영할 수 있다.

6) 여성폭력 지표별 통계정보, 최근 지표 동향 등을 다양한 도표·그래프, 알기 쉬운 설명을 포함한 이용자 중심의 정보 제공 예정

7) 여성폭력 관련 주요 지표 및 통계집: 나라지표, 국가성평등지수, 보건복지통계연보,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한국 여성의 건강통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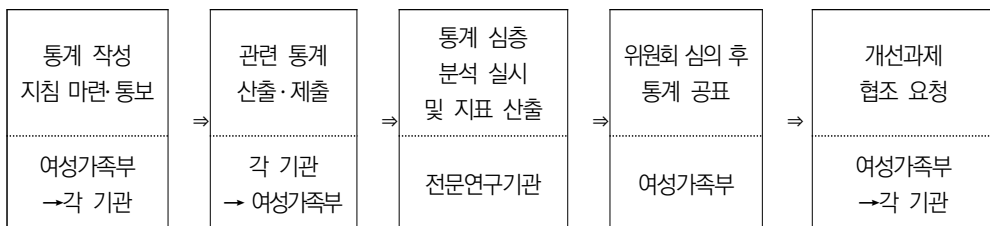
[여성폭력 발생 관련 주요 통계 및 생산기관 현황]

| 구 분                   | 관련 통계 및 기관   | 주기   |
|-----------------------|--|------|
| 여성폭력 범죄 발생 및 사건 처리 관련 | 범죄통계(경찰청), 범죄분석(대검찰청), 사법연감(법원행정처), 범죄예방정책통계(법무부), 교정통계(법무부) 등                                       | 1년   |
| 성희롱 진정 및 사건 처리 관련     | 성희롱 사건 처리 현황 관련 통계(국가인권위원회, 중앙·지방노동위원회, 지방고용노동청)   | 1년   |
| 여성폭력 피해 현황 통계 (조사통계)  | 가정폭력 실태조사, 성폭력안전 실태조사, 성매매 실태조사, 성희롱 실태조사,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여성가족부)<br>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성범죄)(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3년 |
|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통계        | 여성긴급전화1366, 다누리콜센터, 해바라기센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여성가족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법무부) 등                                | -    |
| 기타                    | 노인실태조사, 장애인실태조사(보건복지부)<br>폭력유형별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및 인용 건수(행정안전부)  | -    |

자료: 여성가족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여성가족부는 2021년 연내에 관계 부처 간 협의를 추진하여 여성폭력통계 지표 체계에 따른 통계 운용 등 관련 지침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여성폭력통계 구축 및 운영 사업 추진 절차]



자료: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는 법 시행 직후인 2020년도<sup>8)</sup>부터 동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각 부처·기관 별로 생산되는 여성폭력 관련 통계의 한계 및 여성폭력통계 지표 합의안 등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시되었다. 그런데, 2021년 9월 말 현재까지 부처·기관의 현 시스템으로 집계·가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대체 통계지표(범죄율, 검거 건수, 범죄자 특성 등) 제공<sup>9)</sup>에 대하여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2022년도 통계보고서 작성 및 공표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여성폭력 현실에 부합하는 여성폭력 대응정책의 수립·추진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등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법정부적 지표 구축, 부처 간 보유자료 연계·공유 등 여성폭력 통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조속히 확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8) 2020년도 여성폭력통계 구축 및 운영 사업 개요

- (목적) 여성폭력 발생 현황 등에 관한 통계를 정기적으로 수집·산출·공표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여성폭력방지 정책 수립 및 추진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
- (사업기간) 2020. 4. 9. ~ 2020. 12. 10.
- (운영방법) 한국여성정책연구원·한국형사정책연구원(컨소시엄) 위탁사업
- (예산액) 2억원

9) 여성폭력 통계 지표 협의를 위한 관계부처 회의(2021.4.27.)

- (안건) 현 시스템 하에서 집계 가능한 대체 통계 지표 협의, 발생통계원표 및 피의자통계원표 및 시스템 개선 방안 논의
- (관계부처) 법무부, 노동부, 행안부, 대검찰청, 경찰청, 인사처
- (회의결과) 여성폭력 유형별 범죄 재분류 후 관련 통계 제공 가능, 피해자 연령 구분 세분화 및 피해자와의 관계 분류 항목 개선 등 통계 원표 개선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논의 필요

## 1-2. '디지털 성범죄 특화프로그램 운영 사업' 및 '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의 통합 또는 사업 조정 등 검토 필요

### 가. 현 황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sup>10)</sup> 사업은 2021년 예산에 신규 내역사업으로 편성된 사업으로, 「여성폭력방지기본법」<sup>11)</sup>,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sup>12)</sup> 등에 따라 성폭력 피해상담소 등 기존 피해자 지원기관을 디지털 성범죄 특화상담소로 지정하여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책 개발 및 홍보 등을 수행하는 사업이다.

2022년도 예산안은 5억 7,600만원으로, ① 디지털 성범죄 특화프로그램 운영 4억 2,000만원, ② 디지털 성범죄 정책 기반 강화 5,000만원, ③ 디지털 성범죄 인식개선 홍보 1억 600만원으로 편성되었다.

10) 코드: 일반회계 2136-316의 내역사업

11)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5조(피해자 보호·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에 대한 상담, 의료 제공, 구조금 지급, 법률구조, 취업 관련 지원, 주거 지원, 취학 지원 및 그 밖에 피해자의 보호, 회복, 자립·자활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관계 법률에 따라 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피해자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보호·지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제20조(홍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홍보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폭력방지, 피해자의 치료와 재활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법」 제2조제3호의 방송사업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1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을 방지하고 성폭력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성폭력 신고체계의 구축·운영
2. 성폭력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 교육 및 홍보
3.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4. 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 직업훈련 및 법률구조 등 사회복귀 지원
5.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운영
6. 성폭력 예방을 위한 유해환경 개선
7.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시행 및 평가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따른 예산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22년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사업 예산안 편성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 편성내역   |
|----------------------|--|
| 디지털 성범죄<br>특화프로그램 운영 | 420<br>- 10개소×84(인건비, 운영비, 사업비)×국고보조율 50%            |
| 디지털 성범죄<br>정책 기반 강화  | 50<br>- 디지털 성범죄 법체계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디지털 성범죄 관련 정책 연구 등 |
| 디지털 성범죄<br>인식개선 홍보   | 106<br>- 콘텐츠 제작 및 송출                                 |

자료: 여성가족부

‘디지털 성범죄 특화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지자체 보조사업<sup>13)</sup>으로 광역 시·도에 디지털 성범죄 특화상담소<sup>14)</sup>를 지정하고 각각 전문 상담인력 2명을 배치하여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상담, 수사 동행,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sup>15)</sup> 연계를 통한 삭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3) 국비 보조율 서울 30%, 그 밖의 지역 50%

14) 디지털 성범죄 특화상담소 주요 업무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와 연계한 불법영상물 등 삭제지원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의료, 수사기관법원 동행, 무료 법률 연계 지원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치유 회복프로그램 제공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종합 사례 관리 및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15)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한국여성인권진흥원 지원 사업)

- 디지털 성범죄 피해영상물 삭제, 수사 지원, 법률 및 의료 지원 연계 등

[디지털 성범죄 특화상담소 피해자 지원 체계]



자료: 여성가족부

디지털 성범죄 특화프로그램 추진 체계는 여성가족부가 보조사업자인 지자체를 선정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고, 지자체에서 디지털 성범죄 특화상담소를 지정하여 운영하는 방식으로 수행된다.

[디지털 성범죄 특화프로그램 운영 사업 추진 체계]

|        |  |
|--------|--|
| 여성가족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조사업자(지자체) 심사·선정 및 보조금 교부</li> <li>• 사업운영 총괄 관리</li> <li>•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한 사업인력 역량 강화</li> </ul>  |
| ↑ ↓    |  |
| 지방자치단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디지털 성범죄 특화상담소 지정·운영 및 사업계획 승인</li> <li>• 사업 수행인력 현황 관리 및 현장 점검</li> <li>• 사업 추진 상황 및 기타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li> <li>• 사업 결과 및 사업비 정산 보고</li> </ul> |
| ↑ ↓    |  |
| 사업수행기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부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운영</li> <li>• 디지털 성범죄 전문 상담원 채용·관리</li> <li>• 사업 추진 상황, 추진 실적 등 보고</li> <li>• 사업결과 및 사업비 정산 보고</li> </ul>                        |

자료: 여성가족부

디지털 성범죄 특화상담소는 2021년 현재 경남, 경북, 대구, 부산, 전북, 제주, 충남 등 7개 지자체에서 지정·운영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2022년 예산안에 10개 지자체에 대한 특화상담소 지정·운영 예산을 편성하였고, 2024년까지 17개 광역 지자체로 확대할 계획<sup>16)</sup>이다.

## 나. 분석의견

‘디지털 성범죄 특화프로그램 운영 사업’이 여성폭력방지 기본계획 수립 등 정책 기반 마련을 위한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기반 구축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계상되어 있는 점은 사업의 목적 및 성격 등을 고려할 때 적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과 사업의 목적과 업무수행 기관 등 추진체계가 유사한 점과 온라인 및 오프라인 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간 연계성 확보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과의 통합 또는 사업 조정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 성범죄 특화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sup>17)</sup>’의 오프라인 피해 중심의 대응 기능과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지원 사업<sup>18)</sup>을 통해 운영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접근성 부족 등 기존 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이 갖고 있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마련된 사업이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기존 사업 현황]

| 구 분                                | 주요 업무  |
|------------------------------------|--|
| 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7개 광역 시·도에 성폭력 피해상담소, 피해자 보호시설,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등 설치·운영</li> <li>•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 의료지원, 수사기관·법원 동행 지원, 무료 법률 지원 등</li> </ul> |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지원 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디지털 성범죄 피해영상물 삭제, 수사 지원, 법률 및 의료 지원 연계 등 디지털맞춤형 서비스 제공</li> </ul>   |

자료: 여성가족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16) 디지털 성범죄 특화상담소 지정계획(안)  
: (2021) 7개 시도→(2022) 10개 시도→(2023) 13개 시도→ (2024) 17개 시도

17) 범죄피해자보호기금 1136-303

18) 일반회계 2136-318



동 사업은 ‘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을 통해 구축·운영하고 있는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성폭력피해 상담소,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여성긴급전화 1366 센터<sup>19)</sup> 등을 디지털 성범죄 특화상담소로 지정하여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인력을 2명씩 추가 배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동 사업과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여성가족부가 법무부 소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재원으로 실시하고 있는 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은 1994년부터 실시되어 온 계속사업으로, 성폭력 피해 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 지원,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운영지원,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및 서비스 지원,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성폭력 안전실태 조사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2022년 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 개요]

- 사업 근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 수행 주체: 지방자치단체 및 현장 수행기관
  - 성폭력 피해 상담소(104개소),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34개소),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해바라기센터)(39개소) 등
- 재원: 범죄피해자보호기금
- 내역사업 현황
  - (성폭력 피해 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 지원)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 의료, 법률, 보호 등 서비스 제공을 위해 상담소, 보호시설의 운영 지원
  -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 의료, 수사 등 통합 지원을 위해 통합지원센터(해바라기센터) 등의 운영 지원
  -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등 서비스 지원) 성폭력 피해자, 가족, 친지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원활히 회복되도록 의료비, 돌봄비, 치료동행 서비스, 치료회복 프로그램 등 제공
  -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성폭력 피해 사건의 법의학적 증거를 신속히 채취하기 위한 응급키트를 관련 의료기관 등에 배포

19)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양성평등기금 2159-432)의 내역사업인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운영 사업’으로 운영

[2022년도 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 예산     | 산출내역   |
|--------|--|
| 36,138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폭력 피해 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 지원 13,89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폭력 피해 상담소 104개소</li> <li>-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34개소</li> </ul> </li> </ul>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해바라기센터) 운영 지원 17,35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기지원형·통합형·아동형 해바라기센터 등 39개소</li> </ul> </li> </ul>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등 지원 4,04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해자 의료비·간병비·치료회복 프로그램 지원</li> <li>- 피해자 돌봄·치료동행 서비스 등 지원</li> </ul> </li> </ul>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지원 16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응급키트 제작비 4,000개</li> </ul> </li> </ul>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폭력 안전 실태조사 68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폭력 안전 실태조사(3년 주기 법정 실태조사)</li> </ul> </li> </ul>                                      |

자료: 여성가족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위와 같이 디지털 성범죄 특화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과 사업의 목적과 업무수행 기관 등 추진체계가 동일하며, 온라인 및 오프라인 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간 연계성이 확보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재원 및 세부 사업이 별도로 분리되어 추진되고 있는 점에서 사업의 연계성에 대한 한계가 우려되는 측면이 있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 특화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현재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른 여성폭력방지 기본계획 수립 등 정책기반 마련을 위한 ‘여성폭력방지 정책기반구축’<sup>20)</sup>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사업의 취지 및 성격 등을 고려할 때 다소 적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기반 구축 사업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 2100           | 2136       | 316              |
| 여성·아동인권보호및가족지원 | 아동여성안전정책지원 |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기반 구축 |

따라서, 동 사업의 예산 및 추진체계를 마련함에 있어 사업 취지, 업무수행 기관 및 기존 사업과의 연계 측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성폭력 피해 대응 관련 주요 사업에 해당하는 '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과의 통합 또는 동 사업과 연계한 사업 추진체계 개편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최근 디지털 성범죄의 증가 및 심각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디지털 성범죄 대응 정책기반 강화, 인식개선 홍보, 예방 교육,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등의 다양한 사업<sup>21)</sup>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이러한 다양한 사업들이 유기적인 연계성을 갖고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1) 여성가족부 디지털 성범죄 대응 사업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            | 내역사업               | 주요 사업내용  | 2021예산 | 2022예산안 |
|-----------------|--------------------|--|--------|---------|
| 여성폭력방지 정책기반구축   |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디지털성범죄 특화프로그램 운영</li> <li>• 디지털 성범죄 정책기반 강화</li> <li>• 디지털 성범죄 인식개선 홍보</li> </ul> | 500    | 576     |
| 아동·여성안전 교육문화사업  | 디지털성범죄 예방 교육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디지털 성범죄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는 예방교육 콘텐츠 제작</li> </ul>                                       | 996    | 996     |
| 한국여성평등 교육진흥원 지원 |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콘텐츠 보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플랫폼 신규 구축</li> </ul>   | 450    | 283     |
| 한국여성인권 진흥원 지원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강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디지털 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li> </ul>   | 2,145  | 2,145   |

## 가. 현황

광역지원센터 운영 사업<sup>1)</sup>은 아이돌봄 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개정된 「아이돌봄 지원법」<sup>2)</sup>에 따라 2022년부터 시·도지사가 지정·운영하여야 하는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의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2022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43억 1,700만여원이 증액된 48억 8,300만원으로, 광역지원센터 17개소의 인건비 42억 1,175만원 및 운영비 6억 7,150만원으로 편성되었다. 국비 보조율은 50%<sup>3)</sup>이다.

[2022년도 아이돌봄 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20<br>결산 | 2021 <sup>1)</sup> |         | 2022<br>예산안(B) | 증감    |         |
|-----------|------------|--------------------|---------|----------------|-------|---------|
|           |            | 본예산                | 추경(A)   |                | B-A   | (B-A)/A |
| 아이돌봄 지원   | 248,317    | 251,493            | 253,149 | 256,374        | 3,225 | 1.3     |
| 광역지원센터 운영 | -          | 566                | 566     | 4,883          | 4,317 | 762.7   |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하며, 기금은 각각 2021년 당초계획과 9월말 기준 수정계획(자체변경 포함)을 의미

자료: 여성가족부

김정선 예산분석관(moonrise@assembly.go.kr, 6788-4636)

1) 코드: 일반회계 2334-341의 내역사업

2) 법률 제17283호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2020.5.19. 개정, 2022.1.1. 시행)

제10조의4(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① 시·도지사는 원활하게 아이돌보미를 관리하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이하 “광역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② 광역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아이돌보미 채용, 근로계약 체결 및 복무관리

2.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중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아이돌보미와 아이에 대한 손해배상보험 가입 등 필요한 안전 조치

3. 지역 내 아이돌보미 수급계획 수립 및 수급 조정

4. 지역 내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현황 모니터링 실시

5. 지역 내 제11조에 따른 서비스제공기관의 서비스 운영 관리·지원 및 서비스 홍보

6. 그 밖에 원활한 아이돌봄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의 기준 및 지정 신청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④ 광역지원센터의 장은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밖의 변경 사항일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과 관련된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3) 광역지원센터 운영 사업 외 내역사업의 국비 보조율은 서울 30%, 그 외 지역 70%

개정된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광역지원센터의 주요 업무는 아이돌보미의 채용·복무관리, 아이돌봄 서비스 수급 조정·관리 등이다.

여성가족부는 2021년도 예산에 우선적으로 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시범사업 예산 5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노무 관련 업무부담, 지방비 재정 부담<sup>4)</sup> 등의 사유로 2021년 8월 현재까지 신청하는 지자체가 없어 사업을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 주요 업무]

| 구분        | 주요 업무 내용   |
|-----------|--|
| 채용        | · 아이돌보미 모집·등록 및 근로계약 체결, 복무관리<br>·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 등 관련 노조 단체교섭 대응 |
| 수급 조정     | · 시·도 수급 계획 수립<br>· 아이돌보미 수급 상황 관리 및 수급 조정                     |
| 표준 매뉴얼 적용 | · 사업 표준 매뉴얼 시·도 적용 및 안내  |
| 운영 지원     | · 서비스제공기관 운영 지원<br>· 모니터링단 운영, 홍보 등                            |

자료: 여성가족부

## 나. 분석의견

**지방자치단체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2022년도 신설되는 광역지원센터의 설치 및 업무·인력 등의 이관, 운영 등에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

개정된 「아이돌봄 지원법」은 중앙지원센터<sup>5)</sup>, 광역지원센터<sup>6)</sup> 및 서비스제공기

4) 국비 보조율 50%

5) 법률 제17283호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2020. 5. 19. 개정, 2022. 1. 1. 시행)

제10조의3(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이하 “중앙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② 중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아이돌봄 지원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발간
2. 아이돌봄서비스 운영 매뉴얼 개발 및 보급
3. 아이돌보미 교육 교재 개발 및 보급
4. 아이돌보미 교육기관 관리 등 양성·보수교육 관리·운영
5. 아이돌보미 자격·이력·채용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운영
6. 제11조에 따른 서비스제공기관 등 관련 기관과의 전국단위 네트워크 구축·운영
7. 제11조에 따른 서비스제공기관 종사자 교육훈련

관)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연계 체제를 구축하여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아이돌봄 서비스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한 것이다.

[아이돌봄 지원 사업 수행기관 주요 업무 현황]

| 구 분     | 주요 업무 내용   |
|---------|--|
| 중앙지원센터  | · 아이돌봄 사업운영 매뉴얼 개발·보급<br>· 아이돌보미 교육 총괄<br>· 정보시스템 운영 등 정책 업무               |
| 광역지원센터  | · 광역 단위 아이돌보미 채용 및 복무관리<br>· 아이돌봄서비스 수급 조정·관리 등<br>· 서비스제공기관 운영 지원, 모니터링 등 |
| 서비스제공기관 | · 이용가정 및 사례 관리<br>·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등   |

자료: 여성가족부

8. 그 밖에 아이돌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 6) 법률 제17283호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2020. 5. 19. 개정, 2022. 1. 1. 시행)  
제10조의4(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① 시·도지사는 원활하게 아이돌보미를 관리하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이하 “광역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② 광역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아이돌보미 채용, 근로계약 체결 및 복무관리  
2.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중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아이돌보미와 아이에 대한 손해 배상보험 가입 등 필요한 안전 조치  
3. 지역 내 아이돌보미 수급계획 수립 및 수급 조정  
4. 지역 내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현황 모니터링 실시  
5. 지역 내 제11조에 따른 서비스제공기관의 서비스 운영 관리·지원 및 서비스 홍보  
6. 그 밖에 원활한 아이돌봄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7) 법률 제17283호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2020. 5. 19. 개정, 2022. 1. 1. 시행)  
제13조(서비스기관의 임무 등) ① 서비스기관은 광역지원센터 소속 아이돌보미를 서비스기관 내에 배치하여야 한다.  
② 서비스기관은 보호자로부터 서비스의 제공을 요청받은 때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아이돌보미의 수급이 원활하지 아니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서비스기관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시 아이의 건강 및 위생 관리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삭제  
⑤ 서비스기관은 24개월 이하 영아가 있는 가정에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 자격증을 받은 자로 하여금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⑥ 서비스기관은 보호자와 협의하여 아이와 관련된 가사를 추가로 하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⑦ 서비스기관은 필요한 경우 아이돌보미에게 심리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광역지원센터의 소관 업무인 아이돌보미 채용 및 복무관리, 수급 조정·관리 등은 현행법상으로 서비스제공기관의 소관 업무이고,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현황 모니터링, 서비스제공기관 운영 관리·지원, 서비스 홍보 등은 현재 광역거점기관<sup>8)</sup>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이다.

여성가족부는 서비스제공기관의 해당 업무 및 노무전담인력 39명을 신설되는 광역지원센터에 이관하고, 광역거점기관의 인력과 업무는 원칙적으로 광역지원센터로 이관할 계획이다.

[신설 광역지원센터 업무 구성 현황]

| 구분   | 광역지원센터   | 현행 수행기관 |
|------|--|---------|
| 채용   | 아이돌보미 채용, 근로계약 체결, 복무관리  | 서비스제공기관 |
| 안전조치 |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중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아이돌보미와 아이에 대한 손해배상보험 가입 등 필요한 안전 조치 | 서비스제공기관 |
| 수급조정 | 지역 내 아이돌보미 수급계획 수립 및 수급 조정   | 서비스제공기관 |
| 운영지원 | 지역 내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현황 모니터링  | 광역거점기관  |
|      | 지역 내 서비스제공기관의 서비스 운영 관리·지원 및 서비스 홍보                                      | 광역거점기관  |
|      | 그 밖에 원활한 아이돌봄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

자료: 여성가족부

따라서 사업 주체 변경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수급·연계 등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와 사전 협의를 통하여 관련 기관 간 업무·인력 등의 이관 계획을 명확히 하고, 광역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일정, 절차, 방법, 향후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지침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여성가족부는 2021년 9월 말 현재, 동 사업 관련 지침 및 기관 간 업무·인력

8) 2021년 현재 아이돌봄 지원 사업의 시행기관 관리 및 업무지원, 사업홍보, 사업실적 관리를 위한 광역거점기관이 17개 시·도에 설치되어 있다.

이관 계획, 일정·절차 등에 대해 각 지자체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개별 지자체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광역거점기관·서비스제공기관 운영 및 인력 현황, 신설되는 광역지원센터 규모 등 여건이 상이하여 인력, 업무 등의 이관·연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협의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

[2022년도 신설 광역지원센터 규모 및 구성안]

(단위: 명, 개소)

| 구분       |     | 광역지원센터 규모 및 구성       |                                  |             |       |
|----------|-----|----------------------|----------------------------------|-------------|-------|
| 정원       |     | 8명                   | 11명                              | -           | 18명   |
| 돌보미 수    |     | 1,000 미만             | 1,000~2,000                      | 2,000~3,000 | 3,000 |
| 광역기관 수   |     | 6                    | 9                                | -           | 2     |
| 대상 지자체   |     | 제주·충북·세종<br>울산·대전·광주 | 부산·대구·강원<br>경북·경남·충남<br>전북·전남·인천 | -           | 서울·경기 |
| 인력<br>구성 | 센터장 | 1                    | 1                                | -           | 1     |
|          | 부장  | 1                    | 1                                | -           | 2     |
|          | 팀장  | 2                    | 2                                | -           | 3     |
|          | 팀원  | 4                    | 7                                | -           | 12    |

자료: 여성가족부

또한 2021년 광역지원센터 운영 시범사업의 경우 신청하는 지자체가 없어 사업 수행이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할 때, 지자체와의 사전 협의를 통하여 광역지원센터 설치, 업무·인력 등의 이관, 운영 등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가. 현 황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sup>1)</sup>은 「청소년복지 지원법」<sup>2)</sup>에 따라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리용품을 지원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이다.

이 사업의 2022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8억 7,400만원이 증액된 76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다. 국비 보조율은 서울은 30%, 그 외 지역은 50%이다.

(2022년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20<br>결산 | 2021 <sup>1)</sup> |       | 2022<br>예산안(B) | 증감  |         |
|---------------|------------|--------------------|-------|----------------|-----|---------|
|               |            | 본예산                | 추경(A) |                | B-A | (B-A)/A |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 6,497      | 7,182              | 7,182 | 8,056          | 874 | 12.2    |
| 생리용품 지원       | 6,111      | 6,796              | 6,796 | 7,670          | 874 | 12.9    |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하며, 기금은 각각 2021년 당초계획과 9월말 기준 수정계획(자체변경 포함)을 의미

자료: 여성가족부

김정선 예산분석관(moonrise@assembly.go.kr, 6788-4636)

1) 코드: 일반회계 2231-312

2)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건강한 성장지원)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시책의 마련, 제2항에 따른 건강·체력 기준의 설정·보급 및 제3항에 따른 물품 지원의 기준·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18101호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2021.4.20. 개정, 2022.4.21. 시행)

제5조(건강한 성장지원)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여성청소년이 생리용품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지원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시책의 마련, 제2항에 따른 건강·체력 기준의 설정·보급 및 제3항에 따른 생리용품 지원의 기준·범위, 방법, 신청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6년 언론을 통해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생리대를 구입하지 못하여 비위생적인 물품을 사용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 조명된 이후, 2017년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동 사업은 2016년 추경예산 및 2017년 예산에는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으로 편성되었다가 2018년부터 여성가족부로 소관을 이관하였고, 주민센터, 보건소 등에서 대상자에게 현물을 지급하는 방식에 대하여 상품 선택권 제한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2019년 1월부터 바우처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 나. 분석의견

**지원 대상 확대, 지자체 자체 사업 증가에도 불구하고 낙인 효과 발생, 지원에서 소외되는 사례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sup>3)</sup>에 따라 2022년 4월부터 신청하는 모든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2022년부터 생리용품 지원 연령 하한 기준을 만 11세에서 만 9세로 하향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2022년 동 사업 지원 대상은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가구 등<sup>4)</sup> 저소득가구의 만 9세에서 만 18세에 해당하는 여성청소년 13만 8,000명으로, 2021년 지원 대상 11만 4,000명에 비하여 24,000명이 증가하였다.

3) 법률 제18101호, 2021.4.20. 개정, 2022.4.21. 시행

4)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3조의2(보건위생물품 지원의 대상과 방법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사람의 가구원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연령에 해당하는 여성청소년(이하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이하 "보건위생물품"이라 한다)을 지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또는 교육급여의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4.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보건위생물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021·2022년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대상 산출내역 비교]

(단위: 백만원)

| 구분       | 2021   | 2022(안)  |
|----------|--|--|
| 예산       | 6,796  | 7,670  |
| 지원<br>내역 | 6,796  | 7,278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저소득 만 11~18세 114,000명</li> <li>산출내역<br/>지원대상×90%(예상신청률)<br/>×138,000원(지원액)<br/>×48%(평균보조율)</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저소득 만 11~18세 117,000명</li> <li>산출내역<br/>지원대상×90%(예상신청률)<br/>×144,000원(지원액)<br/>×48%(평균보조율)</li> </ul> |
|          |  | 392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저소득 만 9~10세 21,000명</li> <li>산출내역<br/>지원대상×30%(초경비율)×90%(예상신청률)×144,000원(지원액)×48%(평균보조율)</li> </ul>   |

자료: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가 생리용품 지원 연령 기준을 하향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한 것은 개  
정법률의 취지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권·인권 및 모성보호 지원을 강화하되, 예  
산 확보 상황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서울시, 경기도 등을 비롯한 지자체에서 조례 제·개정 등을 통해 모  
든 여성청소년<sup>5)</sup>에게 지역화폐, 이용권 또는 현물로 생리용품을 무상 지급하거나, 자  
판기 설치 등으로 지원하고 있어 여성청소년에 대한 생리용품 보편 지원에 대한 사회  
적인 공감대<sup>6)</sup>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 지원 사업과 별도로 지자체에서 생리용품 지원 사업을 자체적으로 수

5)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사유로 지원 정책을 시행하는 경우 중복 지원 금지

6) 스코틀랜드 자치정부는 세계 최초로 2018년 8월부터 매달 모든 여학생에게 무상으로 생리용품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0년 11월 모든 여성에게 생리용품을 무상 제공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최윤정, “스코틀랜  
드, 여성 생리용품 전면 무상공급...세계 최초”, 연합뉴스, 2020.11.25., <https://www.yna.co.kr/view/AKR20201125064700009>)

행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동 사업을 통한 생리용품 바우처 수혜자는 지자체 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등 저소득 가구 여성청소년에 대한 동 사업 지원방식과 비저소득가구 여성청소년에 대한 지자체 자체사업 지원방식이 상이하여 낙인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향후 비저소득가구 여성청소년 등에 대한 생리용품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가 증가할 수 있으므로, 여성가족부는 낙인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 협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둘째, 생리용품을 구매하기 어려운 환경이지만 지원 제도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거나 신청을 도와줄 보호자가 없는 여성청소년은 여전히 지원 제도의 사각지대에 처하게 된다. 특히 지원 연령이 만 9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이러한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정책의 사각지대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방식]

| 구분    | 지원 방식  |
|-------|--|
| 신청 단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li> <li>- 청소년 대상자 본인 또는 부모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부모의 사정으로 지원신청이 어렵거나 주양육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 청소년의 양육을 주로 담당하는 자<sup>1)</sup>가 신청할 수 있음</li> </ul> |
| 선정 단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군·구는 행복e음을 통해 지원 결정 사실 통보</li> </ul>  |
| 발급 단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행복e음을 통해 시·군·구 대상자 정보를 전자바우처시스템에 연계하여 바우처 생성</li> <li>국민행복카드 신청 및 발급</li> </ul>   |
| 사용 단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민행복카드사별 구매가능 가맹점에서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하여 생리용품 구매</li> <li>결제 가능한 유통점</li> </ul>   |

7) 생리용품 지원 관련 조례 제·개정 시 중복지원 금지 조항 마련(여성청소년 생리대(보건위생물품) 바우처 지원 사업 지침, 여성가족부)

| 구분 | 지원 방식          |   |  |
|----|----------------|---|--|
|    | 카드사            | 온라인   | 오프라인   |
|    | BC<br>카드       | 지마켓, 옥션, 먼슬리씽(앱)  | 홈플러스(익스프레스 포함),<br>이마트, 이마트트레이더스,<br>농협하나로마트, CU편의점, GS25<br>편의점, 노브랜드, PK마켓 |
|    | 삼성<br>카드       | 삼성카드 쇼핑몰<br>( <a href="https://shopping.samsungcard.com">https://shopping.samsungcard.com</a> ) | 홈플러스(익스프레스 포함),<br>이마트, 이마트트레이더스,<br>농협하나로마트, CU편의점, GS25<br>편의점, 노브랜드, PK마켓 |
|    | 롯데<br>카드       | 올마이쇼핑몰<br>( <a href="https://shop.lottecard.co.kr">https://shop.lottecard.co.kr</a> )           | 홈플러스(익스프레스 포함),<br>농협하나로마트, CU편의점, GS25<br>편의점, 롯데마트, VIC마켓                  |
|    | 신한<br>카드       | 국민행복몰<br>( <a href="https://www.vouchermall.co.kr">https://www.vouchermall.co.kr</a> )          | GS25편의점  |
|    | KB<br>국민<br>카드 | 국민행복몰<br>( <a href="https://www.vouchermall.co.kr">https://www.vouchermall.co.kr</a> )          | GS25편의점  |

주: 1)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한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후견인, 법정대리인  
 ※부모, 가족, 친족, 법정대리인, 후견인이 없는 경우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자(사회복지시설장, 청소년복지시설장, 위탁가정의 위탁모 등)  
 자료: 여성가족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 가. 현 황

가족서비스 기반구축 사업<sup>1)</sup>은 새로운 가족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평등한 가족문화를 조성하고, 다양한 가족을 포용할 수 있는 사회적 인식 및 환경을 확산하며, 가족서비스 인지도 제고를 위한 정보 제공 및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 등을 수행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2022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2억 2,900만원이 증액된 44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2년도 가족서비스 기반구축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20<br>결산 | 2021 <sup>1)</sup> |       | 2022<br>예산안(B) | 증감   |         |
|----------------------------------|------------|--------------------|-------|----------------|------|---------|
|                                  |            | 본예산                | 추경(A) |                | B-A  | (B-A)/A |
| 가족서비스 기반구축                       | 5,719      | 4,247              | 4,247 | 4,476          | 229  | 5.4     |
| 평등한 가족문화 조성                      | 290        | 290                | 290   | 290            | 0    | 0       |
| 가족정책전략 지원 사업                     | 160        | 160                | 160   | 160            | 0    | 0       |
| 가정의달 기념행사 및 홍보 등                 | 98         | 98                 | 98    | 98             | 0    | 0       |
| 다양한 가족 인식확산 및<br>가족서비스 정보제공      | 1,900      | 1,900              | 1,900 | 1,900          | 0    | 0       |
| 가족 소통·참여 사업                      | 600        | 340                | 340   | 340            | 0    | 0       |
| 일가정양립 사회환경 조성                    | 1,283      | 1,285              | 1,285 | 1,538          | 253  | 19.7    |
|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실태<br>조사, 가족친화 수준조사 | -          | 174                | 174   | 0              | △174 | 순감      |
| 제4차 가족실태조사                       | 1,388      | -                  | -     | -              | -    | -       |
| 제5차 가족실태조사<br>(2023년)예비조사        | -          | -                  | -     | 150            | 150  | 순증      |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안을 의미하며, 기금은 각각 2021년 당초계획과 9월말 기준 수정계획(자체변경 포함)을 의미

자료: 여성가족부

김정선 예산분석관(moonrise@assembly.go.kr, 6788-4636)

1) 코드: 일반회계 2332-331

## 나. 분석의견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를 파악할 수 있는 성과평가를 통해 각 내역사업에 투입된 예산이 사업 목적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되었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그 결과를 예산안 편성 과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여성가족부는 홍보 콘텐츠 제작 및 확산, 유튜브·SNS 등 매체를 활용한 온·오프라인 행사 기획·수행, 가족정책 개발, 기념행사 및 유공자 포상, 민간단체의 교육, 행사, 캠페인 등 관련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내역사업을 편성하여 동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가족서비스 기반구축 사업 내역사업 현황]

| 내역사업                       | 추진 방식   | 시행방법          |
|----------------------------|---|---------------|
| 평등한 가족문화 조성                | 홍보 콘텐츠 개발, 유튜브·SNS 등 확장성 높은 매체를 활용한 온·오프라인 행사 기획·수행 등         | 민간위탁사업 (공개경쟁) |
| 가족정책전략 지원 사업               |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가족정책의 중장기 전략 수립                                   | 민간위탁사업 (공개경쟁) |
| 가정의달 기념행사 및 홍보 등           | 「건강가정기본법」 제12조에 따른 5월 가정의 달·가정의 날 기념행사 및 유공자 포상 등             | 보조사업자 공모      |
| 다양한 가족 인식 확산 및 가족서비스 정보 제공 | 온·오프라인 국민참여형 가족행사, 가족다양성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및 인식 개선 콘텐츠 제작·대중매체 홍보 등 | 용역계약 (공개경쟁)   |
| 가족 소통·참여                   | 가족관계 개선 및 소통강화, 가족다양성 인식 및 평등한 가족문화 확산                        | 보조사업자 공모      |
| 일·가정 양립 사회환경 조성            |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기관 등의 가족친화인증 신청 촉진·지원 및 우수기업 평가·인증      | 보조사업자 공모      |
| 가족실태조사                     | 개인과 가족의 생활실태 조사를 통해 건강가정 구현 및 가정문제 예방 등을 위한 사회서비스 욕구와 수요 파악   | 용역계약 (공개경쟁)   |

자료: 여성가족부

동 사업은 내역사업에 따라 사업의 성격, 추진 방식, 시행 주체 등이 상이하므로, 개별 내역사업의 실질적인 성과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예산이 사업 목적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되었는지 면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여성가족부는 동 사업의 성과지표를 ‘가족친화인증기업(기관) 수’ 단일지표로 설정하고 있어 개별 내역사업이 ‘가족환경에 변화에 따른 평등한 가족 문화 조성·확산’, ‘다양한 가족을 포용할 수 있는 사회적 인식 개선’ 등 사업의 기본 취지 달성에 기여한 정도를 측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특히 ‘다양한 가족 인식 확산 및 가족서비스 정보제공 사업’은 2020년도에 신규 내역사업으로 편성된 것으로, 온·오프라인 국민참여형 가족행사, 가족다양성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및 인식 개선 콘텐츠 제작·대중매체 홍보 등을 수행하는 사업이다. 동 내역사업의 2022년도 예산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19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사업 전체 예산안의 42.4%에 해당하고, 여성가족부의 주요 정책 전반에 대한 홍보 사업인 ‘여성·가족정책 의식 확산 사업2)’의 2022년도 예산안 19억 3,000만원의 98.4%에 이르는 등 예산액의 규모가 큰 사업이다.

따라서 동 사업이 다양한 가족에 대한 국민 포용 정도 및 인식 변화에 미치는 영향 등 실질적인 성과를 파악하여 예산 투입의 효과를 점검하고, 향후 사업 추진 계획 및 예산안 편성에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여성가족부는 동 사업을 통해 연 1회 ‘가족 다양성에 대한 국민인식조사’3)를 실시하고 있는데, 조사 결과의 시계열 분석 등을 통하여 다양한 가족에 대한 국민 인식이 변화하는 정도 및 추이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2) 여성·가족정책 의식 확산 사업 예산 현황(일반회계 1137-371)

(단위: 백만원)

| 구 분  |                     | 2020  | 2021  | 2022(안) |
|------|---------------------|-------|-------|---------|
| 예산액  |                     | 1,846 | 1,966 | 1,930   |
| 내역사업 | 주요 정책과제 기획 홍보 및 캠페인 | 930   | 1,000 | 965     |
|      | 주요정책 매체활용 홍보        | 286   | 336   | 336     |
|      | 온라인 홍보              | 578   | 578   | 578     |
|      | 홍보운영                | 52    | 52    | 51      |

자료: 여성가족부

3) 가족 다양성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 2019~2021(3년) 동안 국민 인식변화 측정
- 조사 내용: 가족의 의미에 대한 인식,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 및 개인적 수용도, 가족 다양성 관련 정책 지원 필요성, 포용 제도에 대한 인식 등



[다양한 가족 인식확산 및 가족서비스 정보제공 사업 개요]

- 추진 배경: 가족형태 다양화, 가구 규모 축소, 가족가치관 급변 등에도 불구하고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 편견 등

- \* 동거 동의: (2010) 40.5% → (2018) 56.4%
- 결혼하지 않고 자녀출산: (2010) 20.6% → (2018) 30.3%
- \* 미혼모에 대한 부정적 인식 91.4%(2018 KBS방송문화연구소)
- \* 결혼이민자가 사회적 차별을 경험한 비율 30.9%(2018 다문화가족실태조사)

- 사업 방향: 부모·자녀 중심의 가족 개념에 대한 고정관념을 해소하고, 모든 형태의 가족을 포용할 수 있는 사회적 인식 확산 및 환경 조성

• 추진 계획

- ① (소통행보) 다양한 가족들과 지속적인 현장 소통
  - 캠페인의 지역적 확산을 위한 온라인·오프라인 행사 실시
- ② (온라인·방송) 국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매체 노출 강화
  - 온라인 플랫폼 운영, 캠페인 및 지원제도 안내, 국민참여 이벤트, 사진·영상 콘텐츠 등 게재
  - 인식개선 콘텐츠 제작 및 방송, 라디오, 인터넷, 다중이용시설(극장, KTX, 지하철 등)에 지속적·반복적 노출
  - 다양한 가족의 이야기를 방송프로그램으로 제작·송출
- ③ (모니터링·교육) 가족다양성 인식 확산을 위한 모니터링·교육체계 구축
  - 가족다양성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실시(연 1회)
  - 언론매체 등 가족편견 모니터링 및 개선 추진
  - 오프라인 교육교재·교육매뉴얼 개발, 전문강사 양성 등
- ④ (정보제공) 가족센터 홍보 및 서비스 정보제공 강화
  - 가족 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한 홍보 콘텐츠 제작 및 매체 홍보,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등 추진

[2022년도 다양한 가족 인식확산 및 가족서비스 정보제공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 예산(안) |
|--------------------------|-------|
| 다양한 가족 인식확산 및 가족서비스 정보제공 | 1,900 |
| 가족 행사 개최(2회)             | 500   |
| 인식개선 콘텐츠 제작 및 송출 등       | 1,125 |
| 가족다양성 국민인식조사             | 25    |
| 온라인 플랫폼 유지·보수 및 운영       | 250   |

자료: 여성가족부

다음으로 ‘가족소통 참여 사업’은 2020년도 신규 내역사업으로 편성한 사업으로, 민간단체를 보조사업자로 하여 수행하는 사업이다. 2022년도 예산안은 전년도와 동일한 3억 4,000만원이 편성되었다.

동 내역사업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민간단체가 사업주체로서 다양한 형태의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2021년도의 경우 17개의 민간단체가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사업 주체와 추진 방식이 상이하여 각각의 실적을 점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러한 경우 사업의 성과를 예산안 편성 과정에 연계하고자 하는 성과평가의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여성가족부는 개별 사업성과의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평가 방안을 마련하여 예산이 사업 목적에 따라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족 소통·참여 사업 개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적) 민간단체 협력을 통해 가족 간 소통, 사회참여 등 지원</li> <li>- (예산) 3억 4,000만원</li> <li>- (추진방법) 민간단체 공모를 통하여 사업수행기관 선정</li> </ul> </li> <li>• 주요 추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관계(부부 및 부모·자녀) 개선, 세대·이웃 간 소통 강화 등을 위한 교육, 캠페인 등 사업 지원</li> <li>- 다양한 가족의 역량 강화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 등 지원</li> <li>- 가족·돌봄 친화적 지역사회 문화와 직장문화(환경) 조성, 평등하게 일하고 돌보는 문화 확산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프로그램 운영 사업 등 지원</li> <li>- 가족 다양성 인식과 평등한 가족문화 확산사업</li> <li>- 그 밖에 새로운 가족 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거나 가족 생애주기를 반영한 신규 사업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지원</li> </ul> </li> </ul> |                     |     |
|---|---------------------|-----|
| [2021년도 사업 수행기관 현황]   |                     |     |
| (단위: 백만원)   |                     |     |
| 수행기관  | 지원 사업               | 지원액 |
| 변화된미래를만드는 미혼모협회 인트리   | 양육미혼모가족 지원 사업       | 25  |
| 행복나눔센터  | 온라인프로그램 ‘가족의발견’     | 20  |
| (사)가족상담센터 희망의전화   | 디지털역량강화프로그램 ‘행복로그인’ | 20  |

| (단위: 백만원)                           |                        |     |
|-------------------------------------|------------------------|-----|
| 수행기관                                | 지원 사업                  | 지원액 |
| (사)가정을 건강하게 하는 시민의 모임               | 아빠가 즐거운 돌봄문화 만들기       | 35  |
| (사)한부모가족회 한가지                       | 미(혼)사(별)리(이혼)이야기       | 25  |
| 한국한부모연합                             | 소통하고 행동하며 성장하는 가족      | 30  |
|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 가족꽃이 피었습니다.            | 25  |
| 전라북도마음사랑병원<br>(컨소시엄: 아름다운세상)        | 가족소통프로그램. '가족안(安)내서'   | 8   |
| (사)서원 다문화행복나눔센터                     | 다문화가족 소통참여사업           | 15  |
| (사)서울인구포럼<br>(컨소시엄: 대구카톨릭대학교 산학연구단) | 대구경북 결혼이주여성 사회적경제리더 양성 | 20  |
| (사)한국동요문화협회                         | 가족사랑 캠페인송 페스티벌         | 25  |
| 인구보건복지협회                            | 양육미혼모 역량강화 지원사업        | 25  |
| (재)한국소년보호협회                         | 가족 솔루션 프로젝트            | 15  |
| 아.루다표현예술심리상담사사회적협동조합                | 희망더하기, 나눔 곱하기          | 12  |
| (사)공감연대                             |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돌봄친화마을 구축 | 20  |
| 이주민사회적협동조합                          | 이주민 취업 역량강화 교육         | 10  |
| (사)한국청소년심리상담협회                      | 1인가구 함께하는 싱글라이프        | 10  |
| 계                                   |                        | 340 |

자료: 여성가족부

## 청소년 근로권의 보호 사업의 지자체 보조사업 전환에 대한 대비 필요

### 가. 현 황

청소년 근로권의 보호 사업<sup>1)</sup>은 「청소년 기본법」<sup>2)</sup>에 따라 근로청소년에 대한 상담 및 부당처우 구제 지원 등을 통하여 청소년의 근로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청소년 유해환경개선 및 피해예방 사업의 내역사업이다.

이 사업의 2022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1,000만원이 증액된 12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2년도 청소년 유해환경개선 및 피해예방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20<br>결산 | 2021 <sup>1)</sup> |       | 2022<br>예산안(B) | 증감    |         |
|----------------------|------------|--------------------|-------|----------------|-------|---------|
|                      |            | 본예산                | 추경(A) |                | B-A   | (B-A)/A |
| 청소년 유해환경개선<br>및 피해예방 | 5,841      | 6,094              | 7,406 | 7,762          | 1,668 | 27.4    |
| 청소년 근로권의 보호          | 1,250      | 1,250              | 1,250 | 1,260          | 10    | 0.8     |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하며, 기금은 각각 2021년 당초계획과 9월말 기준 수정계획(자체변경 포함)을 의미

자료: 여성가족부

2020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결과,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소년 중 34.5%는 임금체불 등의 부당한 처우를 경험하였으며 대다수의 청소년은 참고 계속 일을 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sup>3)</sup>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 사업은 권역별 청소년근로보호센터의 설치·운영을 통해 근로청소년에 대한

김정선 예산분석관(moonrise@assembly.go.kr, 6788-4636)

1) 코드: 일반회계 2233-3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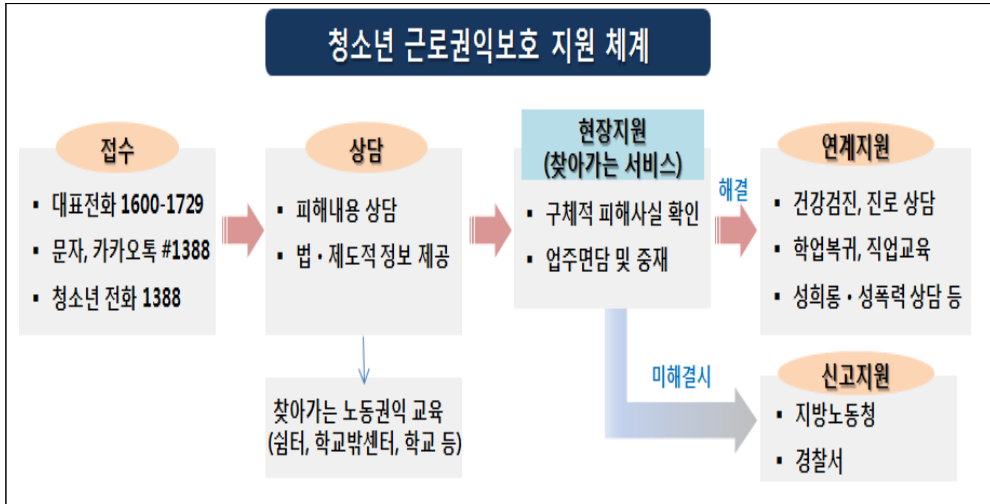
2) 「청소년 기본법」

제52조의3(청소년 근로권의 보호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청소년의 부당처우에 대한 해결을 돕는 등 청소년의 근로권의 보호를 위한 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3) 부당처우 경험자의 74.1%는 참고 계속 일을 했으며, 17.6%는 일을 그만 두었음(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2020년)

상담, 현장방문을 통한 지원 및 중재 등을 수행하고, 건강·진로 상담, 직업교육, 성희롱·성폭력 피해 지원 등 종합서비스 연계<sup>4)</sup> 및 노동인권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다.

[청소년 근로권의 보호 사업 수행 체계]



자료: 여성가족부

## 나. 분석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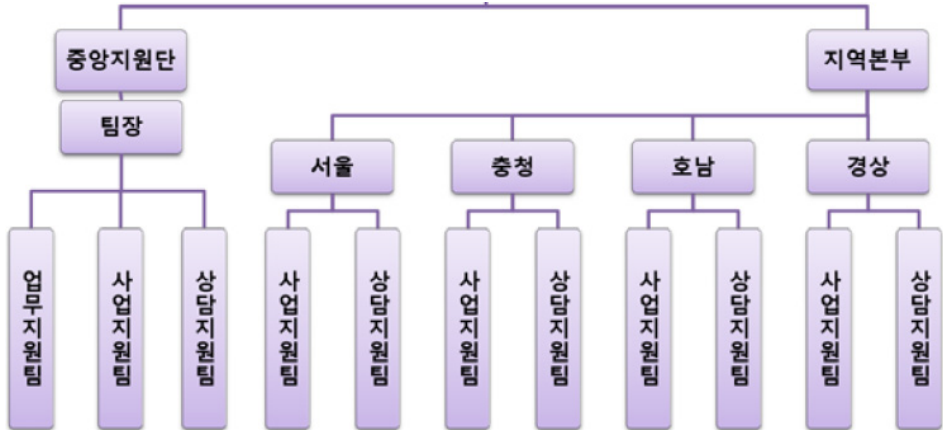
청소년 근로권의 보호 사업은 2022년부터 민간경상보조 사업에서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전환 예정이므로, 여성가족부는 2022년 청소년근로보호센터 설치·운영 등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 근로권의 보호 사업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수도권 대상의 시범사업 운영을 거쳐, 2018년에 수도권, 경상권, 전라권 등 3개 권역에 청소년근로보호센터를 설치하고, 2019년에는 충청권 1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2021년 현재 청소년근로보호중앙지원단 및 4개 권역의 청소년근로보호센터 지역지원본부를 운영하고 있다.

4) 근로 청소년의 근로사유·생활환경 등을 파악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 청소년 관련 기관 연계를 통한 건강·진로상담, 학업복귀, 직업교육 등 종합서비스 연계 지원

[2021년 청소년근로보호센터 사업 운영 현황]

• 조직체계



• 주요사업

| 구분         | 주요 내용  |
|------------|--|
| 상담 지원      | 카카오톡, 문자, 온라인, 전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한 상담 지원                               |
| 현장지원       | 근로현장도우미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업주와의 면담·중재로 신속한 문제해결 지원, 미해결시 노동청 및 경찰서 연계    |
| 종합서비스 연계   | 청소년 관련 기관(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 연계를 통한 건강·진로상담, 학업복귀, 직업교육 등 지원 |
| 노동인권교육     | 학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쉼터 등을 찾아가 노동인권 의식제고, 상담 및 근로현장도우미 안내               |
| 모바일 서비스 제공 | 작성이 쉽고 보관이 용이한 모바일 근로계약서, 학교별 모바일 청소년근로 보호센터 운영으로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자료: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는 2021년까지 민간경상보조를 통하여 청소년근로보호 중앙지원단 및 지역지원본부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하였는데, 2022년부터 지역지원본부 운영 사업은 지자체 보조 방식으로 전환하여 지역지원본부를 8개소로 확대하고 지역의 실정에 따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비 보조율은 50%이다.

[2021·2022년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사업 예산안 비교]

(단위: 백만원)

| 구분     | 2021                | 2022(안)               |
|--------|---------------------|-----------------------|
| 계      | 1,250               | 1,260                 |
| 중앙지원단  | 354(민간경상보조)         | 357(민간경상보조)           |
|        | 1개소×354×100%        | 1개소×357×100%          |
| 지역지원본부 | <b>896(민간경상보조)</b>  | <b>903(지자체보조)</b>     |
|        | <b>4개소×224×100%</b> | <b>8개소×평균 225×50%</b> |

자료: 여성가족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청소년근로보호 지역지원본부 운영의 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전환하고, 지역본부를 확대 설치·운영하는 것은 아르바이트 청소년 등의 근로권익 보호 강화에 대한 필요성<sup>5)</sup>, 지자체 실정을 반영한 사업 추진의 필요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 충북, 광주 등 일부 지자체의 경우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사업을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지자체 협의를 통해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5)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부당처우에 대해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지원하고, 청소년근로보호센터를 확충할 것, 2020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여성가족위원회)

[2021년 청소년 근로권의 보호 관련 지자체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 주요 사업  | 예산  |
|------------------------|--|-----|
| 충청북도<br>청소년알바<br>인권센터  | · 청소년 근로권의 및 인권교육<br>· 알바 피해상담 및 구제활동<br>· 안전한 청소년 근로 사업장 선정<br>· 청소년인권기자단 운영<br>· 청소년 알바 인권 인식개선 사업 등 | 10  |
| 광주광역시<br>청소년노동<br>인권센터 | ·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및 상담<br>· 청소년 알바 친화 사업장 선정<br>· 청소년 노동인권 캠페인 및 찾아가는 노동상담소 등                              | 308 |
| 군포시<br>청소년노동<br>인권센터   | ·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교육<br>· 청소년 고용 사업주 방문 교육<br>· 청소년 노동인권실태조사 등   | 113 |

자료: 여성가족부

그런데 청소년 근로권의 보호 사업의 지자체 보조사업 전환에 대한 두 차례의 수요조사<sup>6)</sup> 결과를 보면 2021년 9월 현재 신청한 지자체는 충북 한 지역에 불과한 상황이다. 따라서 여성가족부는 사업의 주체 및 추진 방식의 전환으로 인해 2022년 청소년근로보호센터 설치·운영 등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 사전 협의 등을 통해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6) 1차 수요조사: 2021.5.~6., 2차 수요조사: 2021.8.~9.



## 가. 현 황

청소년육성기금은 「청소년 기본법」 제53조<sup>1)</sup>에 따라 청소년 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이다. 2022년도 계획안에 따른 수입액은 전년대비 49억 1,200만원이 증액된 1,738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2년도 청소년육성기금 수입 현황]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0<br>결산 | 2021 <sup>1)</sup> |         | 2022<br>계획안(B) | 증감     |         |
|------------------------------|------------|--------------------|---------|----------------|--------|---------|
|                              |            | 당초                 | 수정(A)   |                | B-A    | (B-A)/A |
| 총 계                          | 153,511    | 168,977            | 168,977 | 173,889        | 4,912  | 2.9     |
| 기타재산이자수입<br>(54-546)         | 667        | 395                | 395     | 216            | △179   | △45.3   |
| 기타경상이전수입<br>(59-596)         | 4,083      | 4,976              | 4,976   | 2,338          | △2,638 | △53.0   |
| 기타잡수입<br>(69-691)            | 6,700      | 3,378              | 3,378   | -              | △3,378 | △100.0  |
| 비통화금융기관<br>예치금회수<br>(85-853) | 14,899     | 24,779             | 24,779  | 26,299         | 1,520  | 6.1     |
| 기금전입금<br>(91-913)            | 119,418    | 128,749            | 128,749 | 136,436        | 7,687  | 6.0     |
| 기금예수금<br>(94-943)            | -          | -                  | -       | 8,600          | 8,600  | 순증      |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하며, 기금은 각각 2021년 당초계획과 9월말 기준 수정계획(자체변경 포함)을 의미

자료: 여성가족부

김정선 예산분석관(moonrise@assembly.go.kr, 6788-4636)

## 1) 「청소년 기본법」

제53조(기금의 설치 등) ①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청소년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여성가족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청소년육성기금은 「청소년 기본법」 제54조2)에 따라 조성된 재원 및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3)에 따른 복권기금 전입금으로 조성된다. 2022년에는 기타잡수입(경륜·경정 수익금<sup>4)</sup>의 출연금)은 전액 감액되었고, 공자기금 예수금은 순증하였다.

## 나. 분석의견

**청소년 육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청소년육성기금의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022년 청소년육성기금 계획안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은 총 9개로,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되는 고유자금으로 편성한 4개 사업과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기금 전입금으로 편성한 5개의 소외계층 등 청소년에 대한 지원 사업이다.

### 2) 「청소년 기본법」

제5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제4항제1호 및 「경륜·경정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
3.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출연하는 금전·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 3)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 ③ 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과 제4항에 따른 비용 및 경비를 제외한 복권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3. 저소득층, 장애인,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여성, 불우청소년 등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과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 4) 「경륜·경정법」

제18조(수익금의 사용) ① 경주사업자는 경주의 시행에 따른 제15조제1항의 수익금을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1.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육성기금**·「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 및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의 출연. 다만,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의 출연금은 자전거 및 모터보트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하고,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에의 출연금은 자전거 및 모터보트 선수육성을 위한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2022년도 청소년육성기금 사업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21<br>(A) | 2022(안)<br>(B) | 증 감   |         |
|--|-------------|----------------|-------|---------|
|  |             |                | (B-A) | (B-A)/A |
| 총 계                                      | 139,518     | 144,795        | 5277  | 3.8     |
| 고유자금                                     | 10,769      | 11,359         | 590   | 5.5     |
| 청소년정책 참여지원<br>(2251-431)                 | 2,815       | 2,752          | △63   | △2.2    |
|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지원<br>(2252-436)               | 5,952       | 6,379          | 427   | 7.2     |
| 청소년 매체활용 역기능해소<br>(2253-431)             | 1,961       | 2,187          | 226   | 11.5    |
| 기금관리비<br>(7177-201)                      | 41          | 42             | 1     | 2.4     |
| 복권기금 전입금                                 | 128,749     | 133,436        | 4,687 | 3.6     |
| 청소년방과후활동 지원<br>(2251-432)                | 28,240      | 28,650         | 410   | 1.5     |
|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교육<br>및 피해자 치료재활 (2138-432) | 5,669       | 5,968          | 299   | 5.3     |
| 청소년 사회안전망구축<br>(2254-431)                | 63,687      | 66,961         | 3,274 | 5.1     |
| 청소년복지시설 운영<br>(2254-432)                 | 22,447      | 25,552         | 3,105 | 13.8    |
| 청소년 치료재활센터<br>운영 (2254-434)              | 8,706       | 9,305          | 599   | 6.5     |

자료: 여성가족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경륜·경정 수익금의 출연금은 청소년육성기금의 고유 재원으로, 2021년 계획액<sup>5)</sup>은 33억 7,800만원이다. 그런데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한 수익금의 급감으로 인해 2021년 7월 말 기준 징수결정 및 수납을 하지 못한 상황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은 향후 2024년까지는 수익금 출연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통보한바 있다.

5) 전년도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수익금 추계치×19.5%

[연도별 경륜·경정 수익금(기타잡수입) 현황]

(단위: 백만원, %)

| 연도   | 계획액    |        | 계획현액   | 징수<br>결정액<br>(B) | 수납액<br>(C) | 수납율<br>(C/A) | 수납율<br>(C/B) | 미수납액 | 불납<br>결손액 |
|------|--------|--------|--------|------------------|------------|--------------|--------------|------|-----------|
|      | 당초     | 수정(A)  |        |                  |            |              |              |      |           |
| 2018 | 15,853 | 15,853 | 15,853 | 13,352           | 13,352     | 84.2         | 100.0        | -    | -         |
| 2019 | 14,066 | 14,066 | 14,066 | 8,511            | 8,511      | 60.5         | 100.0        | -    | -         |
| 2020 | 6,922  | 6,922  | 6,922  | 6,900            | 6,900      | 99.7         | 100.0        | -    | -         |
| 2021 | 3,378  | 3,378  | 3,378  | -                | -          | -            | -            | -    | -         |
| 2022 | -      | -      | -      | -                | -          | -            | -            | -    | -         |

자료: 여성가족부

이에 여성가족부는 고유자금 편성 사업의 자원 충당을 위하여 2022년 계획안에 공자기금 예수금 86억원을 편성하였다.

그런데 경륜·경정 매출은 2011년 이후 2014년까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인 후, 2015·2016년 하계 야간경주 시행으로 잠시 반등하였으나 2017년부터 다시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청소년육성기금의 4년간 경륜·경정 수익금의 출연금 수입 현황은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고, 향후에도 매출의 급격한 반등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2025년 이후 다시 수익금 출연이 가능하게 되는 경우에도 기금 사업의 지출 수준을 충당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육성기금의 여유자금 규모는 2019년부터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여성가족부의 예상에 따르면 2022년 말 여유자금은 52억원으로, 이 중 고유자금은 약 27억(공자기금 예수금 86억원 중 잔여액)에 해당한다.

[청소년육성기금 여유자금 현황]

(단위: 억원, %)

| 구분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br>(7월까지) | 2022<br>(계획)     |
|----------------------------------|-------|-------|-------|-------|----------------|------------------|
| 여유자금 규모(A)                       | 182   | 229   | 237   | 216   | 203            | 52 <sup>1)</sup> |
| 공자기금 누적 예탁 규모(B)                 | 0     | 0     | 0     | 0     | 0              | 0                |
| 합계(C)=(A)+(B)                    | 182   | 229   | 237   | 197   | 203            | 87               |
| 총지출(D)                           | 1,298 | 1,419 | 1,576 | 1,642 | 1,690          | 1,739            |
| 총지출 대비 여유자금 등의 비중<br>(E=C/D*100) | 14.0  | 16.1  | 15.0  | 13.2  | 12.0           | 5.0              |

주: 1. 여유자금의 경우 2016~2021년은 운용평잔 기준, 2022년은 연도말 예상 적립금 규모

2. 총지출 규모는 당초예산 기준

1) 2022년 말잔 예상액 52억원 중 고유자금 약 27억(공자기금 예수금 86억원 중 잔여액), 복권기금 약 25억원 예상

자료: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는 경륜·경정 수익금 출연이 어려운 2024년까지 공자기금 예수금을 편성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바, 그 이후에도 사업비 지출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공자기금을 편성하게 되면 상환<sup>6)</sup> 등의 부담으로 청소년 육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기금의 재정건정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6)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예수·예탁 및 용자조건 결정기준」

제6조(예탁 등 기간) ① 자금의 예탁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마지막 이자지급일을 예탁기간 만료일로 한다. 다만, 회계·기금의 성격, 관리기금 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예탁기간 및 만기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예산안분석시리즈 II  
2022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

발간일 2021년 10월  
발행인 국회예산정책처장 임익상  
편 집 예산분석실 사회예산분석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인쇄처 (주)케이에스센세이션 (tel 02·761·0031)

---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http://www.nabo.g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ISBN 979-11-6799-024-2 93350

© 국회예산정책처, 2021

내일을 여는 국민의 국회



(0723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www.nabo.go.kr](http://www.nabo.go.kr)

발 간 등 록 번 호

31-9700460-001506-10



국회에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